

연구보고서 2002-08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I)

방하남 · 장지연 · 황수경
김기현 · 김지경 · 박시내

책머리에 부처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작된 ‘IMF 위기’를 맞게 되면서 1998년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급상승하는 실업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시장의 문제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며 산발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만으로는 실업대책의 방향과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실업정책을 포함한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미시자료의 확보를 위해 시작한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1998년 제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 제3차년도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 시점에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정 표본을 설정하고 이들을 장기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사하는 패널 조사자료는 그 특성상 연차를 더해가면서 자료의 유용성과 분석가치를 더해 가게 되는데 제3차년도 조사자료가 완성됨으로써 시계열 자료가 갖는 장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노동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는 제3차년도 조사자료의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모두 10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노동패널조사의 목적과 3차년도 진행경과를 제시하고 있고, 제2장부터 10장에서는 실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사에 사용된 설문지를 수록하였다. 자료분석은 크게 가구의 특성 및 가계경제분석,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와 임금·비임금·미취업 등 경제활동상태별 실태분석, 그리고 3차년도부터 시행된 부가조사(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이동)의 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자녀교육, 주거생활, 소득 및 생활비, 저축과 부채 등을 보여준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6장에서 제8장은 각 경제활동상태별로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구직활동,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제9장은 주관적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장은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부가조사는 청소년 실업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

나라 최근 청소년의 유휴인력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규명을 위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앞으로 교육·훈련·노동시장 경험을 통한 인적자원의 축적과정,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 등에 대한 분석에 활용됨으로써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청소년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본원의 방하남, 장지연, 황수경 연구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원외의 많은 분들이 보내준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필자들을 대신해서 감사 드린다. 자료정리와 전산분석, 그리고 초고작성은 본원 고용보험연구센터 노동패널팀의 김기현, 김지경, 박시내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출판을 담당한 박찬영 전문위원을 비롯한 출판팀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드린다.

한국노동패널 1~3차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노동시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2001년 10월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되었으며, 제4차년도 자료의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200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원 덕

목 차

제1장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의 개요	1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사업의 진행	1
제2절 조사방법과 조사진행 과정	3
1. 조사방법	3
2. 조사진행 과정	4
제3절 표본유지율과 이사가구의 특성	7
1. 표본유지율	7
2. 이사가구 추적조사와 표본유지율	9
제4절 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0
1. 분가가구의 특성	10
2. 신규 조사자의 특성	12
제2장 조사가구의 특성	14
제1절 세대 및 가구구성	14
제2절 가구주의 특성	17
제3절 가구원의 특성	19
제4절 주거형태 및 비용	24
1. 입주 형태 및 주택의 종류	24
2. 주택 비용	27
제3장 가계경제	29
제1절 가계소득	29
1. 가구의 총소득	29
2. 근로소득	31
3. 금융소득	32

4. 부동산소득	33
5. 사회보험소득	34
6. 이전소득	35
7. 기타소득	36
제2절 가계소비	37
1. 생활비	37
2. 저 축	40
제3절 자산 및 부채	43
1. 부동산 자산	43
2. 금융 자산	45
3. 가구의 부채	46
제4장 자녀교육	49
제1절 사교육·보육시설 현황	49
제2절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54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57
제1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57
1. 경제활동상태	57
2.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62
제2절 취업자의 특성	65
1. 산업·직업별 분포	65
2. 기업 특성별 분포	70
제3절 취업자의 구직활동 및 부업	73
1. 취업자의 구직활동	73
2. 부 업	78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80
제1절 고용형태	80
1. 근로계약 여부	80
2. 종사상 지위	84

3. 시간제/전일제 근로	88
제2절 근로시간	91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고용형태	91
2. 정규근로시간	93
3. 초과근로시간	96
제3절 임금 및 사회보험	100
1. 임금지급 주기 및 결정방식	100
2. 임금수준	102
3. 사회보험	106
제4절 노동조합	109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12
제1절 종사상 지위	112
제2절 근로시간	115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115
2. 주당근로시간	117
제3절 근로소득	120
제8장 미취업자의 특성	123
제1절 미취업자와 구직활동	123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여부	123
2.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이유	127
3. 구직방법과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130
제2절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133
제9장 주관적 만족도 및 사회계층 소속감	136
제1절 생활만족도	136
제2절 직무만족도 및 교육·기술 적합도	139
1. 직무만족도	139
2. 교육수준 적합도	143
3. 기술수준 적합도	145

제3절 사회계층 및 경제적 여건	148
1. 사회계층 소속감	148
2. 경제적 여건	150
3. 사회적 연줄망	155
제10장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일	157
제1절 정규 학교교육	157
제2절 재학중 취업실태	163
제3절 졸업 후 구직활동	166
제4절 졸업 후 첫 일자리	167
부록 :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171

표목차

<표 1- 1> 1~3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2
<표 1- 2>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5
<표 1- 3> 조사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6
<표 1- 4> 조사 가구원의 응답방식 분포	6
<표 1- 5> 유효표본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8
<표 1- 6> 표본탈락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9
<표 1-10> 3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10
<표 1-11> 3차조사시 지역별 분가표본가구의 분포	11
<표 2- 1> 가구원수	15
<표 2- 2> 거주지별 가구원수	15
<표 2- 3> 세대 구성	15
<표 2- 4> 핵가족 구성	16
<표 2- 5> 거주지별 핵가족 구성	16
<표 2- 6> 가구주의 인구 특성	18
<표 2- 7> 성별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19
<표 2- 8> 1-2-3차년도 개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20
<표 2- 9> 남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21
<표 2-10> 여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22
<표 2-11> 1-2-3차년도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	23
<표 2-12> 연령별 현재 거주지	24
<표 2-13> 입주 형태	25
<표 2-14> 거주지별 입주 형태	25
<표 2-15> 가구소득별 입주 형태	25
<표 2-16> 주택 종류	26
<표 2-17> 거주지별 주택 종류	26
<표 2-18> 입주 형태별 주택의 종류	26
<표 2-19> 거주지별 자가금액	28
<표 2-20> 거주지별 임대보증금	28
<표 2-21> 거주지별 월세금	28

<표 3- 1>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30
<표 3- 2> 가구 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30
<표 3- 3>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31
<표 3- 4> 가구의 연간 총 금융소득	32
<표 3- 5>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금융소득	33
<표 3- 6> 가구의 연간 총 부동산소득	33
<표 3- 7>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부동산소득	34
<표 3- 8> 가구의 연간 총 사회보험 수급액	35
<표 3- 9> 가구의 연간 총 이전소득	36
<표 3-10>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이전소득	36
<표 3-11> 가구의 연간 총 기타소득	37
<표 3-12> 1998년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기타소득	37
<표 3-13> 월평균 생활비	38
<표 3-14> 가구소득별 월평균 생활비	39
<표 3-15> 거주지역별 월평균 생활비	40
<표 3-16> 가구원수별 월평균 생활비	40
<표 3-17> 월평균 저축	41
<표 3-18> 가구소득별 월평균 저축액	42
<표 3-19> 거주지역별 월평균 저축액	42
<표 3-20> 가구원수별 월평균 저축액	42
<표 3-21> 부동산 자산 소유 여부와 종류	43
<표 3-22> 부동산 자산 소유 여부와 시가 총액	44
<표 3-23> 부동산 임차 여부와 임차 종류	44
<표 3-24> 부동산 임차 여부와 임차보증금	45
<표 3-25> 가구의 총 금융자산	45
<표 3-26> 가구항목별 금융자산	46
<표 3-27> 가구의 부채유무와 부채잔액	46
<표 3-28> 가구의 월평균 상환금	47
<표 3-29> 가구의 항목별 부채잔액과 월평균 상환금	47
<표 3-30>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여부와 내용	48
<표 4- 1>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이하 자녀 유무	50
<표 4- 2>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50
<표 4- 3> 사교육·보육시설 종류	51

<표 4-4>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특성	52
<표 4-5> 자녀 연령별 이용 사교육·보육시설 개수	52
<표 4-6> 자녀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횟수	53
<표 4-7> 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	53
<표 4-8> 자녀 연령별 일주일 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시간	53
<표 4-9> 사교육·보육시설의 월평균 비용	54
<표 4-10> 자녀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55
<표 4-11> 소득수준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55
<표 4-12> 자녀수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56
<표 4-13> 사교육기관 이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56
<표 5-1> 1-2-3차 경제활동상태 비교	57
<표 5-2> 1-2-3차 취업자 비교	58
<표 5-3> 성별 경제활동상태	59
<표 5-4>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59
<표 5-5>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	60
<표 5-6> 현재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61
<표 5-7>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62
<표 5-8>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63
<표 5-9>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63
<표 5-10> 1-2-3차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65
<표 5-11> 1-2-3차 직업별 취업자 분포	66
<표 5-12>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분포	67
<표 5-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68
<표 5-1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69
<표 5-15> 1-2-3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비교	70
<표 5-16>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 규모	71
<표 5-17> 1-2-3차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종류 비교	72
<표 5-1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업체 종류	73
<표 5-19> 1-2-3차 취업자의 현 직장 지속 여부 비교	74
<표 5-20>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현 직장 지속 여부	75
<표 5-2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현 직장 지속 여부	76
<표 5-22> 1-2-3차 취업자의 구직 여부 비교	76
<표 5-23> 취업자의 구직 여부와 비구직 이유	77

<표 5-24> 취업자의 구직방법	77
<표 5-25> 취업자의 구직기간	78
<표 5-26>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부업	79
<표 6- 1>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유무 비교(1~3차년도)	81
<표 6- 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계약 유무	82
<표 6- 3>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근로계약	83
<표 6- 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1~3차년도)	84
<표 6- 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85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86
<표 6- 7> 임금근로자의 시간제/전일제 근로 비교(1~3차년도)	88
<표 6- 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89
<표 6- 9>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90
<표 6-10>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91
<표 6-1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92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정규근로시간 유무와 근로시간 분포	92
<표 6-1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정규근로시간 분포	94
<표 6-14>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96
<표 6-15>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97
<표 6-16>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98
<표 6-17>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초과근로시간	99
<표 6-18>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101
<표 6-19>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	101
<표 6-2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소득의 변화	102
<표 6-2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103
<표 6-22>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	105
<표 6-2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106
<표 6-24>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	107
<표 6-2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110
<표 6-26>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111
<표 7- 1>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113
<표 7- 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13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	114
<표 7- 4>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비교	115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116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근로일수	116
<표 7- 7>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비교	117
<표 7- 8>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118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119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120
<표 7-11>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비교	121
<표 7-1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122
<표 8- 1> 성별 미취업자의 지난주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	124
<표 8- 2> 성별 미취업자의 지난주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	125
<표 8- 3>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126
<표 8- 4> 미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126
<표 8- 5> 미취업자가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2~3차 비교)	128
<표 8- 6> 미취업자가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28
<표 8- 7> 미취업자로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은 이유	130
<표 8- 8>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구직방법	131
<표 8- 9>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구직기간	132
<표 8-10>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1~3차년도)	133
<표 8-11>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133
<표 8-12>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134
<표 8-13>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135
<표 9- 1> 1-2-3차 생활만족도 비교	136
<표 9- 2> 생활만족도	137
<표 9- 3>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138
<표 9- 4> 경제활동상태별 생활만족도	138
<표 9- 5> 1-2-3차 직무만족도 비교	139
<표 9- 6> 취업자의 직무만족도	140
<표 9- 7>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무만족도	141
<표 9- 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무만족도	142
<표 9- 9>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143
<표 9-10>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교육수준 적합도	144
<표 9-11>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교육수준 적합도	145
<표 9-12>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술수준 적합도	146

<표 9-13>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기술수준 적합도	147
<표 9-14>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 비교	148
<표 9-15>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적 계층 소속감	149
<표 9-16> 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적 계층 소속감	149
<표 9-17> 개인 응답자의 경제적 여건 변화	151
<표 9-18>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적 여건 변화	153
<표 9-19> 경제활동상태별 경제적 여건 변화	154
<표 9-20>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적 여건 변화	154
<표 9-21> 사회적 연줄망	155
<표 10- 1>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의 학력과 이수 여부	158
<표 10- 2>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고등학교의 유형(일반계/실업계)	159
<표 10- 3>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고등학교의 전공계열	159
<표 10- 4>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 유형(전문대/대학교)	160
<표 10- 5>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 유형별 전공계열	161
<표 10- 6>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휴학 여부 및 횟수	162
<표 10- 7>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자격증 취득 여부	164
<표 10- 8>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직업훈련 여부 및 훈련종류	164
<표 10- 9>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학교 유형별 직업훈련 여부	164
<표 10-10>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취업(아르바이트 등) 여부	165
<표 10-12>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방법	166
<표 10-13>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구직기간	167
<표 10-14>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졸업 후 2개월 이상 취업 여부	168
<표 10-15>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첫 일자리의 취업경로	168
<표 10-16>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첫 일자리의 특성	169

그림목차

[그림 1- 1] 유효표본가구의 구성(1~3차년도)	5
[그림 1- 2]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7
[그림 1- 3] 표본탈락가구의 비성공 사유	8
[그림 1- 4] 분가가구 성공률(2~3차년도)	11
[그림 1- 5]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2~3차년도)	12
[그림 5- 1] 1-2-3차 경제활동상태 비교	58
[그림 5- 2] 1-2-3차 임금근로자 비교	58
[그림 5- 3] 1-2-3차 비임금근로자 비교	58
[그림 5- 4] 3차 개인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	59
[그림 5- 5] 실업자의 2~3차 경제활동상태 변화	64
[그림 5- 6] 1-2-3차 산업별 취업자 분포	65
[그림 5- 7] 1-2-3차 직업별 취업자 분포	66
[그림 5- 8] 1-2-3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비교	71
[그림 5- 9] 1-2-3차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종류 비교	72
[그림 5-10] 1-2-3차 취업자의 현 직장 지속 여부	74
[그림 6- 1] 전년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중의 변화(2~3차년도)	84
[그림 6- 2] 산업별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분포	87
[그림 6- 3]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고용형태 간의 관계	93
[그림 7- 1]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비교	118
[그림 7- 2]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비교(1~3차년도)	121
[그림 8- 1] 미취업자의 구직자(1개월 기준) 비중(1~3차년도)	124
[그림 8- 2]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성별 구직방법	131
[그림 9- 1] 생활만족도	137
[그림 9- 2] 취업자의 직무만족도	140
[그림 9- 3]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	151
[그림 9- 4]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	152

[그림 9- 5] 사회적 연줄망 분포	155
[그림 10-1]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교 유형	161
[그림 10-2]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학교 유형별 휴학자의 비중(%)	163

요 약

본 연구는 노동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노동관련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미시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본원이 1998년부터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2000년 제3차 조사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본 조사의 조사 기간은 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개별 주제에 대하여 주로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1, 2차년도 자료와 연결하여 비교 가능하게 하였다. 보고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3차년도 패널조사의 진행 경과와 탈락·이사가구의 특성, 신규 진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차년도의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노동패널 조사에 포함된 총 조사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3차 조사의 총 응답 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제2장에서는 세대 및 가구구성,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비롯하여 주거형태 및 비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 및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5명이고 4명으로 구성된 가구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와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85.2%가 남성 가구주였고 나머지 14.8%가 여성가구주였다.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2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28.6%가 이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가계의 소득, 가계소비 및 저축, 자산 및 부채 등 가계경제에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세금을 제외한 후 소득을 기초로 조사된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은 167만원이었다. 이는 1차년도의 156만 4천원, 2차년도의 160만 4천원에 비해 각각 4만원, 6만6천원 증가한 것이다.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생활비는 107만 6천원으로 2차년도 100만 8천원에 비해 7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가구 부채의 경우, 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34.8%이며 평균 부채 잔액은 2천 467만 6천원으

로 2차년도 3천 647만 6천원에서 무려 1천 18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사교육·보육시설의 현황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등학생(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1.7%이며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66.4%를 차지하였다. 이들 가구 중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는 85.6%,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14.4%였다. 자녀를 사교육·보육시설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2만 3천원이며 자녀연령별로 보았을 때, 미취학 아동기에 비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상태는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고,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학생 인구와 비학생 인구로 세분하였다. 개인 응답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5,920명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922명으로 전체의 45.4%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5,624명으로 51.9%이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3,603명으로 33.2%, 비임금근로자는 2,021명으로 18.6%를 차지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 인구는 1,398명으로 12.9%, 비학생 인구는 3,524명으로 32.5%를 차지한다.

제6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76.6%로 2차년도에 비해서 3.2%p 높아졌다. 시간제/전일제 근로를 살펴보면, 3차년도 조사 결과 전일제 근로의 비중은 90.9%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9.1%였다. 이에 대한 1~3차년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8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차년도의 103만원과 비교하면 5만 8천원이 증가한 결과이며 1차년도의 111만 2천원에 비해서 2만 4천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제7장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가 53.7%, 24.1%로 나타났으며 고용주는 22.1%였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고용주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58.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2차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당근로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43만 8천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서 15만 3천원, 1차년도에 비해서 10만 5천원 증가한 수치이다.

제8장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직방법은 친구나 친지의 소개가 60.2%였으며,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53.7%였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10.1%로 사설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5.4%p 높았다. 구직중인 미취업자의 86.5%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로 임금근로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제9장에서는 주관적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생활만족도의 1~3차년도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변화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3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친인척 관계와 사회적 친분 관계는 모두 3.4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취업의 안정성의 경우 1차년도 2.8점, 2차년도 2.9점, 3차년도 3.0점으로 높아졌으며,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지후생제도 또한 2차에 비해 0.1점 높아졌다. 경제적 계층 소속감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41.0%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중류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31.5%,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24.3%이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계층 소속감은 전체 응답자의 39.5%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32.5%는 중류층, 23.9%는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연줄망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 응답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중 대학교수, 의사, 국회의원 등의 유무와 이들에 대한 친밀도를 조사하였다. 8촌 이내 친인척 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9.7%이며, 대학교수는 8.6%, 대기업 임원급 이상은 6.3%로 나타났다.

제10장에서는 3차년도(2000년) 자료 중에서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고교 유형의 경우 여성의 일반계 대비 실업계 비중이 36.3%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유형의 경우도 여성의 4년제 대학 대비 전문대 비중이 남성보다 4.0%p 높았다. 전공분야의 경우 남성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공학계열 전공자(57.7%)였으며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인문계열의 전공 비중이 25.3%로 가장 높았다.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31.7%가 재학중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20.3%가 재학중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각각 29.0%와 28.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24.6%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98.4%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사업의 진행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¹⁾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전국규모 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특별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통계조사들은 모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 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두 형태의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갖는다. 패널자료만이 가지고 있는 연구상의 장점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미시적인 동태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 사회·경제적인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한 자료가기 때문에 변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를 수행해 왔다. 1960년부터 이미 패널조사를 시행한

1) 한국노동패널 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정책실에 의해 배정되는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표 1-1> 1~3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차 조사(1998)	2차 조사(1999)	3차 조사(1990)
조사성공가구수 ¹⁾	5,000가구	4,509가구	4,267가구
유효표본가구수 ²⁾	5,000가구	4,379가구	4,045가구
표본유지율 ³⁾	-	87.6%	80.9%
분가가구수	-	130가구	222가구
가구원수 ⁴⁾	13,317명	12,042명	11,206명
실사기간	6 ~ 10월	7 ~ 12월	5 ~ 10월

- 주 :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수.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패널조사는 1993년부터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Korea Household Panel Study)가 있으나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노동시장의 동태분석에 초점을 맞춘 패널자료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노동시장 관련 기초조사자료의 미흡 및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분석적인 노동시장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1998년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가 조사 성공되어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 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었다.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의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표본가구²⁾에 대하여 제2차 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³⁾는 4,379가구로

2) “원표본가구”는 제 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3)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를 의미하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지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 분가표본가구⁴⁾를 포함하여 제2차 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1차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한국노동패널의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표본가구에 대하여 제3차 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원표본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3차 조사의 총 응답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17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 데 성공하여 79.1%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가구원에 대한 분석은 노동패널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원표본가구원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조사자의 경우 총 응답자 10,740명 중에서 원가구원인 10,540명이 분석대상이 되며 신규 조사자 466명 중에서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303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가구원의 분석대상은 원표본가구원인 10,843명(10,540명+303명)이 된다.

앞으로 노동패널자료가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특별히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조사방법과 조사진행 과정

1. 조사방법⁵⁾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4) “분가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 5)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⁶⁾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2. 조사진행 과정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 표본가구수는 4,267가구이며 그 가구 내에 포함된 가구원의 총 인원은 14,670명이다.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은 11,757명이며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수는 11,20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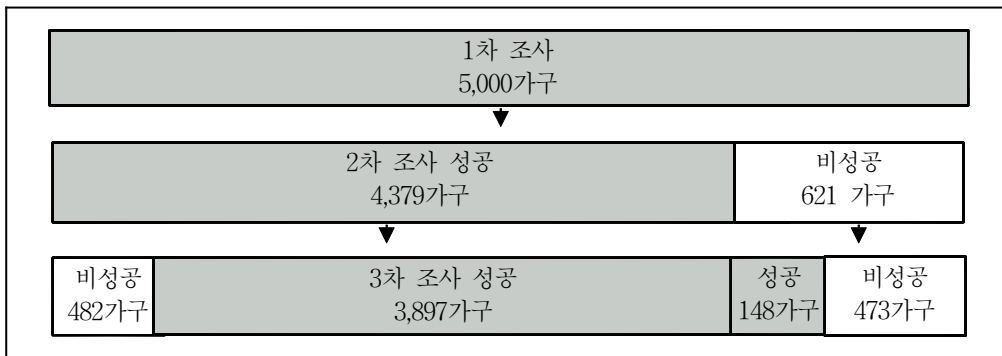
총 조사표본수	→	4,267가구, 총 인원은 14,670명 15세 이상 가구원 11,757명 중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1,206명
총 투입 면접원수	→	129명
실사 기간	→	2000년 5월 ~ 2000년 10월
원표본 성공률	→	원표본 5,000가구 중 80.9% 성공률 : 4,045가구 분가 가구 : 222가구
자료처리 기간	→	2000년 5월 ~ 2000년 11월

[그림 1-1]을 통해서 유효표본가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2차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9가구였으며 이 중 3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수는

6) 참고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897가구로 원표본가구의 77.9%에 해당한다. 2차년도 조사시에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구는 621가구이며 이 중 3차년도 조사에서 실사가 성공한 가구는 148가구로 원표본가구의 3.0%에 해당한다. 그래서 원표본가구 중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하는 유효표본가구는 총 4,045가구(3,897가구+148가구)가 된다. 곧, 3차년도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2차년도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87.6%에서 6.7%p 낮아진 80.9%(77.9%+3.0%)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유효표본가구의 구성(1~3차년도)



<표 1-2>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 년도)

	미국 PSID	독일 GS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2차년도	88%(1969)	88%(1985)	88%(1991)	82%(1994)	88%(1999)
3차년도	85%(1970)	84%(1986)	81%(1992)	72%(1995)	81%(2000)
4차 년도	83%(1971)	83%(1987)	80%(1993)	64%(1996)	-

* 반올림한 수치임.

<표 1-2>는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한 것이다. 2차년도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마찬가지로 88%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대우패널조사에 비해 약 6%p 높음을 알 수 있다. 3차년도의 유지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3~4%p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대우패널조사에 비해서 약 9%p 높음 수치를 알 수 있다.

조사성공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4.6%로 가장 높고, 경기지역이 17.7%, 부산지역이 10.6%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원표본가구의 지역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의 비중은 2.5%p 낮아졌으며 경기도는 0.6%p 높아졌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1~2% 내외로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표 1-3> 조사성공가구의 지역별 분포

(가구수, %)

지 역	조사가구수	지 역	조사가구수
서울	1,049(24.6)	강원	116(2.7)
부산	451(10.6)	충북	93(2.2)
대구	237(5.6)	충남	126(3.0)
대전	134(3.1)	전북	165(3.9)
인천	257(6.0)	전남	131(3.1)
광주	117(2.7)	경북	232(5.4)
울산	122(2.9)	경남	282(6.6)
경기	755(17.7)	제주	0(0.0)
전 체		전 체	4,267(100.0)

<표 1-4> 조사 가구원의 응답방식 분포

(단위 : 명, %)

	본 인	대 리	본인+대 리	전 체
면접	8,519	599	183	9,301
유치	487	67	19	573
전화	444	135	14	593
면접+전화	208	66	160	432
유치+전화	134	14	15	162
면접+유치	68	22	14	104
면접+유치+전화	15	2	1	18
무응답	17	5	1	23
전 체	9,891	908	407	11,206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의 응답은 2000년 5월에서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3차년도 of 가구용 설문지의 응답시기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6월과 8월에 집중되었다. 6월의 경우 전체 응답 중 28.1%인 1,200가구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7월에는 26.1%인 1,115가구, 8월에는 23.6%인 1,007가구의 조사가 이루어져 조사성공가구의 77.8%가 6~8월중에 조사되었다. 조사 가구원의 응답시기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 조사와 마찬가지로 6~8월중에 집중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응답자 중 28.2%가 6월중에 응답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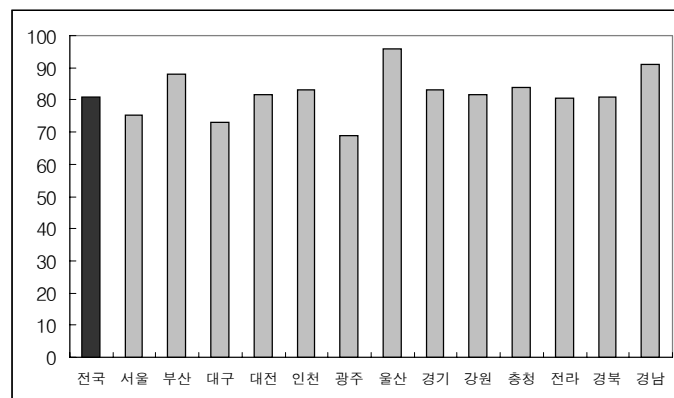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표 1-4>를 통해서 응답 방식의 분포를 살펴보면 본인 응답의 비중은 88.2%인 9,891명이었으며 본인이 전화나 유치 대신 직접 면접한 비중은 76.0%로 8,519명이었다.

제 3 절 표본유지율과 이사가구의 특성

1. 표본유지율

이 절에서는 거주지역별로 지난 1998년 1차 조사의 원표본가구와 2000년 한국노동패널(3차) 유효표본가구의 분포 및 표본탈락가구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3차년도 유효표본가구의 거주지역별 비중을 1차년도 원표본가구와 비교해 볼 때 서울지역과 대구지역의 경우 각각 1.9%p, 0.9%p 낮아졌고, 부산과 경남지역은 각각 0.9%p, 0.8%p 상승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은 0.3~0.5%p 내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3차년도 유효표본가구와 1차년도 원표본가구의 지역별 결과를 통해서 지역별 원표본가구의 유지율을 제시해 보면 <표 1-5>와 [그림 1-2]와 같다. 전체 평균인 80.9%에 비해서 원표본가구 유지율이 높았던 지역은 96.5%로 가장 높은 표본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을 비롯하여 경남(91.1%), 부산(87.9%)지역 등이었다. 반면 전체 평균을 밑돈 지역은 유지율이 69.0%로 가장 낮은 광주 지역을 비롯하여 대구(72.9%), 서울(75.2%) 등이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응답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탈락가구(335가구)의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그림 1-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울산을 제외한 6대 광역도시 지역이 다른 중소도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표 1-5> 유효표본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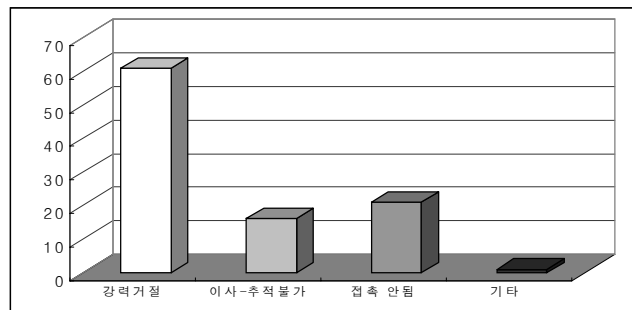
(단위 : 명, %)

	1998년 원표본가구(1차)	1999년 유효표본가구(2차) ¹⁾	2000년 유효표본가구(3차) ²⁾
서울	1,353(27.1)	1,149(26.2)	1,018(25.2)
부산	486(9.7)	440(10.1)	427(10.6)
대구	314(6.3)	264(6.0)	229(5.7)
대전	153(3.1)	128(2.9)	125(3.1)
인천	298(6.0)	255(5.8)	248(6.1)
광주	158(3.2)	124(2.8)	109(2.7)
울산	116(2.3)	112(2.6)	111(2.7)
경기	856(17.1)	772(17.6)	713(17.6)
강원	130(2.6)	114(2.6)	106(2.6)
충북	113(2.3)	99(2.3)	86(2.1)
충남	131(2.6)	120(2.7)	119(2.9)
전북	199(4.0)	177(4.0)	148(3.7)
전남	127(2.5)	117(2.7)	118(2.9)
경북	274(5.5)	245(5.6)	222(5.5)
경남	292(5.8)	263(6.0)	266(6.6)
전 7국	5,000(100.0)	4,379(100.0)	4,045(100.0)

주 : 1) 1998년 원표본가구 중에서 1999년 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의 수 및 그 비중을 나타냄.

2) 1998년 원표본가구 중에서 2000년 조사에서 성공한 가구의 수 및 그 비중을 나타냄.

[그림 1-3] 표본탈락가구의 비성공 사유



이번 3차 조사에서 표본탈락가구는 총 955가구이며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사유를 [그림 1-3]을 통해 살펴보면, 강력 거절이 61.0%로 가장 많았으며, 접촉이 안 되는 경우가 21.0%, 이사 추적 불가능이 16.0%였다.

<표 1-6>을 통해서 원표본가구 대비 2~3차년도에 표본탈락률을 살펴보면, 2차년도에 표본탈락률이 높았던 지역이 3차년도에 들어서 역시 탈락률이 높아지며, 광역시의 탈락률이 중소도시의 탈락률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 표본탈락률이 높았던 서울, 대구, 광주지역의 경우 3차년도에 들어서 표본탈락률이 7~8%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표본탈락률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으로 11.1%에서 25.6%로 14.5%p나 상승하였으며 탈락률이 오히려 감소한 지역은 전남과 경남으로 각각 0.9%p, 1.0%p 감소하였다.

<표 1-6> 표본탈락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1998년 원표본가구(1차)	1999년 표본탈락가구(2차) ¹⁾	2000년 표본탈락가구(3차) ¹⁾
서울	1,353	204(15.1)	335(24.8)
부산	486	46(9.5)	59(12.1)
대구	314	50(15.9)	85(27.1)
대전	153	25(16.3)	28(18.3)
인천	298	43(14.4)	50(16.8)
광주	158	34(21.5)	49(31.0)
울산	116	4(3.5)	5(4.3)
경기	856	84(9.8)	143(16.7)
강원	130	16(12.3)	24(18.5)
충북	113	14(12.4)	27(23.9)
충남	131	11(8.4)	12(9.2)
전북	199	22(11.1)	51(25.6)
전남	127	10(7.9)	9(7.0)
경북	274	29(10.6)	52(19.0)
경남	292	29(9.9)	26(8.9)
전국	5,000	621(12.4)	955(19.1)

주 : 1) () 안은 1998년 한국노동패널(1차) 원표본가구에서의 탈락율을 나타냄.

2. 이사가구 추적조사와 표본유지율

원표본가구와 조사 기간 동안 분가한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총 조사대상 가구(5,256가구) 중 이사가구는 전체의 12.4%인 652가구였다.

<표 1-10> 3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조사 대상 가구수 (a) ¹⁾	가구			비중(%)		
		파악된 총이사 가구(b)	이사추적 불가(c)	이사추적 성공(d)	파악된 총이사 가구(b/a)	이사추적 불가(c/b)	이사추적 성공(d/b)
서울	1,374	176	48	128	12.8	27.3	72.7
부산	497	67	7	60	13.5	10.4	89.6
대구	334	33	5	28	9.9	15.2	84.8
대전	165	27	6	21	16.4	22.2	77.8
인천	315	32	12	20	10.2	37.5	62.5
광주	165	16	6	10	9.7	37.5	62.5
울산	125	9	-	9	7.2	0.0	100.0
경기	941	149	51	98	15.8	34.2	65.8
강원	132	11	-	11	8.3	0.0	100.0
충청	256	27	7	20	10.5	25.9	74.1
전라	360	51	16	35	14.2	31.4	68.6
경북	283	16	4	12	5.7	25.0	75.0
경남	308	38	11	27	12.3	28.9	71.1
제주	1	1	1	-	100.0	100.0	0.0
전국	5,256	652	173	479	12.4	26.5	73.5

주 : 1) 원표본가구와 조사 기간 동안 분가한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총 조사대상 가구수임.

패널조사에서는 원표본가구가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추적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패널조사에서 이사가구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표본유지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전체 이사가구 중 73.5%인 479가구를 조사 성공 하였으며, 지역별 이사가구의 분포는 <표 1-10>과 같다.

제 4 절 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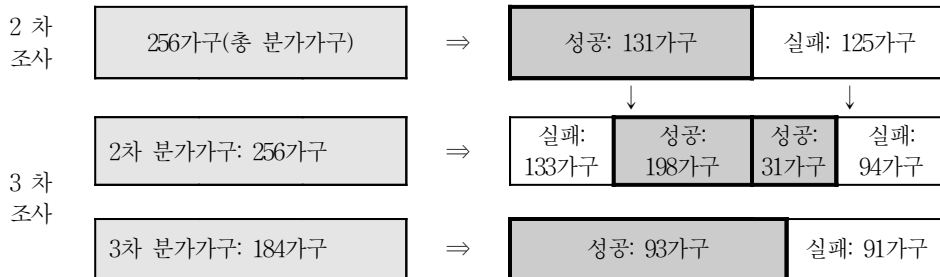
1. 분가가구의 특성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5,000개의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222가구가 표본에 추가되었다. 조사 성공한 4,267가구는 4,045가구의 원표본가구와 222가구의 분가표본가구를 합한 것이다. 분가표본가구인 222가구는 2차년도 조사시에 분가한 256가구 중에서 129가구와 2차년도 조사 이후 분가하여 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분가를 확인한 184가구

중 93가구를 합한 수치이다.

[그림 1-4]를 통해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차년도에 성공한 131가구 중에서 다시 3차 조사시에 성공한 가구는 198가구이며, 2차 조사시에 실패한 125가구 중 3차 조사시에 성공한 가구는 31가구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129가구가 된다. 3차 조사 시점에서 분가 여부를 확인한 184가구 중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93가구로 결국 분가가구 중 총 조사성공가구는 222가구(129가구+93가구)가 된다.

[그림 1-4] 분가가구 성공률(2~3차년도)



[표 1-11] 3차조사시 지역별 분가표본가구의 분포

	조사 가구수 (a) ¹⁾	가 구				비 중(%)			
		분가가구 원이 있는 가구수(b)	분가한 가구수 (c)	조사 성공가구 (d)	조사 실패 가구(e)	분가가구원 이 있는 가구수(b/a)	분가한 가구수 (c/a)	조사성공 가구 (d/c)	조사실패 가구 (e/c)
서울	1,049	31	31	8	23	3.0	3.0	25.8	74.2
부산	452	22	22	9	13	4.9	4.9	40.9	59.1
대구	238	12	12	5	7	5.0	5.0	41.7	58.3
대전	134	9	9	5	4	6.7	6.7	55.6	44.4
인천	257	7	7	-	7	2.7	2.7	0.0	100.0
광주	117	7	7	4	3	6.0	6.0	57.1	42.9
울산	122	4	4	3	1	3.3	3.3	75.0	25.0
경기	753	30	34	14	20	4.0	4.5	41.2	58.8
강원	116	4	4	6	-2	3.4	3.4	150.0	-50.0 ²⁾
충청	219	15	16	7	9	6.8	7.3	43.8	56.3
전라	296	21	22	16	6	7.1	7.4	72.7	27.3
경북	231	5	5	4	1	2.2	2.2	80.0	20.0
경남	282	11	11	12	-1	3.9	3.9	109.1	-9.1 ²⁾
제주	-	-	-	-	-	-	-	-	-
전국	4,266	178	184	93	91	4.2	4.3	50.5	45.7

주 : 1) 3차년도에 조사된 4,267개의 원표본가구 중 이사 여부를 알 수 없는 1가구 제외함.

2) 분가한 가구수는 부모 가구의 지역으로 계산되고, 조사성공가구는 자식 가구의 지역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게 됨.

3차 조사 시점에서 분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성공한 93가구에 대해서는 <표 1-1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3차 조사 결과 분가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모두 178가구였으며 가구원 중에 둘 이상이 분가한 가구로 인해 총 분가가구수는 총 조사가구수의 4.3%에 해당하는 184가구였다. 이 중에서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93가구로 분가한 가구의 50.5%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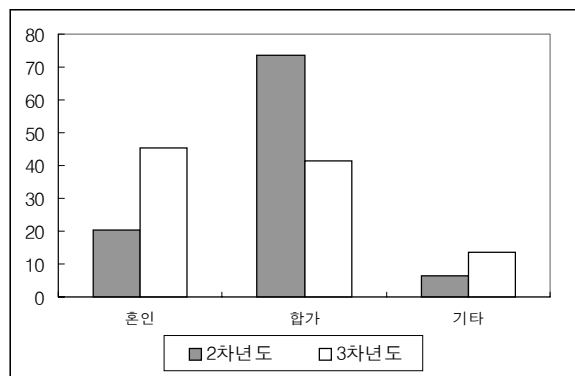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조사성공가구의 비중은 부모-자식간의 지역 이동으로 100%를 초과한 강원도와 경남지역을 제외하고 경북지역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과 전라도 역시 각각 75.0%, 72.7%로 평균을 훨씬 초과했다. 반면 광역시의 경우 이사가구에 대한 추적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분가한 7가구 모두 조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의 경우도 조사실패가구의 비중이 74.2%나 되었다. 이것은 서울지역의 낮은 표본유지율을 일정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2. 신규 조사자의 특성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신규 조사자는 466명으로 이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303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된 가구원은 163명이었다.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1~2차 조사시 원표본가구원이나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3차조사시 연령이 만15세가 되어 새롭게 응답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3차 조사의 경우 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된 응답자는 모두 연령이 만15세가 된 경우로 1~2차 조사시 응답하지 않았다가 3차 조사시에 응답한 사례는 없었다.

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비중은 남성이 61.4%(186명)로 여성보다 높았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5.1%(76명)로 가장 높았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가 93.5%(283명)로 대부분이었다.

[그림 1-5]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2~3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가구원이 아니지만 3차년도에 신규로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의 수는 총 163명이었다. 비원표본가구원이면서도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3차년도에 혼인으로 인해 원표본가구에 편입된 경우가 45.2%(47명)로 가장 많았고 1차년도에 원표본가구원이 아니었으나 합가한 경우가 41.3%(43명)였으며 기타가 13.5%(14명)였다.

[그림 1-5]를 통해서 2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2차년도에는 합가한 가구의 비중이 73.4%로 가장 높았으나 3차년도의 경우 6.3%에 불과했던 혼인의 비중이 45.2%로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본 보고서의 제2장부터 시작되는 가구에 대한 분석은 기존 조사자 중에서 원가구원인 10,540명과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인 303명을 합한 10,84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조사가구의 특성

제 1 절 세대 및 가구구성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평균 3.5명이다. 조사된 가구의 37.8%가 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되고 3인 가구가 19.5%, 5인 가구가 14.0%로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조사가구의 9.9%를 차지하는 단신 가구는 399가구로 현재 거주지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단신 가구 중에서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47.4%,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29.1%,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23.4%이다. 이는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6인 이상의 다가구원도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전체 6인 이상의 다가구의 45.9%가 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도로 도시화된 서울지역은 3~5인으로 구성된 반면,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된 도 지역의 경우는 독거노인들로 이루어지는 1인 가구 혹은 6인 이상의 가구원이 거주하는 다가구원의 가구 형태가 많다.

조사가구의 세대구성⁷⁾을 살펴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2세대에 걸쳐 사는 2세대 가구가 69.4%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전형적인 핵가족화를 보여준다.

7)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9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가구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속한다.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속한다.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4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2-1> 가구원수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1명	517 (10.3)	440 (9.8)	399 (9.9)
2명	655 (13.1)	630 (14.0)	554 (13.7)
3명	965 (19.3)	886 (19.6)	787 (19.5)
4명	1,892 (37.8)	1,673 (37.1)	1529 (37.8)
5명	696 (13.9)	644 (14.3)	567 (14.0)
6명 이상	275 (5.6)	236 (5.2)	209 (5.2)
평균(명)	3.5	3.5	3.5

주 : 1) 광역시에는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이 포함됨.

<표 2-2> 거주지별 가구원수

(단위 : 가구, %)

	3차년도		
	서 울	광역시	도
전 체	1,018 (100.0)	1,249 (100.0)	1,778 (100.0)
1명	94 (9.2)	116 (9.3)	189 (10.6)
2명	137 (13.5)	155 (12.4)	262 (14.7)
3명	194 (19.1)	261 (20.9)	332 (18.7)
4명	407 (40.0)	486 (38.9)	636 (35.8)
5명	138 (13.6)	166 (13.3)	263 (14.8)
6명 이상	48 (4.7)	65 (5.2)	96 (5.4)

<표 2-3> 세대 구성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1인 가구	517 (10.3)	440 (9.8)	399 (9.9)
1세대 가구	506 (10.1)	494 (11.0)	428 (11.0)
2세대 가구	3,339 (68.0)	3,014 (66.8)	2,809 (69.4)
3세대 가구	568 (11.4)	538 (11.9)	406 (10.0)
4세대 가구	11 (0.2)	23 (0.5)	3 (0.1)
평균(명)	3.5	3.5	3.5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1.0%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혹은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10.0%를 차지한다. 가구주와 그의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 가구는 단 3가구에 불과하다.

<표 2-4> 핵가족 구성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059 (100.0)	4,045 (100.0)
부부 단독	452 (9.0)	446 (9.9)	383 (9.5)
부모+미혼자녀	2,987 (59.7)	2,633 (58.4)	2,350 (58.1)
편부모+미혼자녀	349 (7.0)	312 (6.9)	267 (6.6)
1인가구	517 (10.3)	440 (9.8)	399 (9.9)
비핵가구	695 (13.9)	678 (15.0)	646 (16.0)

가족구성 형태로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비핵가구가 16.0%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부부 단독가구로 이루어진 가구는 9.5%, 1인 가구는 9.9%,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6.6%이다. 1, 2차년도 조사에 비해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다소 감소하고 비핵가구는 다소 증가하였다.

가족구성 형태를 현재 거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 지역에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편부모 가구 중 41.9%가 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역시에는 33.7%, 서울지역에는 24.3%이다. 반면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경우, 도지역은 55.1%로 서울지역 60.9%, 광역시 60.1%에 비해 도지역은 그 비율이 낮다. 또한 부부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도 광역시 7.6%, 서울지역 10.3%에 비해 도지역은 11.1%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 거주지별 핵가족 구성

(단위 : 가구, %)

	3차년도		
	서울	광역시	도
전 체	1,018 (100.0)	1,249 (100.0)	1,778 (100.0)
부부 단독	90 (10.3)	95 (7.6)	198 (11.1)
부모+미혼자녀	620 (60.9)	751 (60.1)	979 (55.1)
편부모+미혼자녀	65 (6.4)	90 (7.2)	112 (6.3)
1인가구	94 (9.2)	117 (9.4)	188 (10.6)
비핵가구	149 (14.6)	196 (15.7)	301 (16.9)

제 2 절 가구주의 특성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별로 나누어 본 가구주의 특성은 <표 2-6> 및 <표 2-7>과 같다. 전체 가구의 85.2%인 3,528가구는 남성이 가구주이고, 14.8%인 614가구는 여성이 가구주이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8.4세이고, 그 중 남성 가구주는 47.2세, 여성 가구주는 55.5세로 남성보다는 여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8세 정도 높다.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27.9%가 40대이고, 24.7%가 30대, 60세 이상이 22.4%, 그리고 50대가 20.3% 순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분포는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남성 가구주의 경우 40대가 29.7%, 30대가 27.5%로 절반이 넘는 57.2%가 30~40대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60세 이상이 45.6%, 50대가 20.5%로 76.1%가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 속한다. 한편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3.3%p 높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36.0%가 고졸 학력이며, 33.8%가 고졸 미만, 그리고 16.4%가 대졸 이상의 학력이다. 교육수준 또한 연령과 같이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가구주의 경우는 39.0%가 고졸이고, 32.2%가 고졸 미만이며, 18.2%가 대졸 이상인 반면에,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43.0%가 고졸 미만이고, 28.5%가 무학이며, 대졸 이상의 학력은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71.5%에 해당하는 대다수 여성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저학력임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66.3%가 기혼유배우자이고, 25.7%가 미혼이며, 별거·이혼·사별을 포함하는 기혼무배우자가 8.1%이다. 1차년도 이후 기혼무배우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혼인상태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단지 기혼무배우자의 비율이 여성 가구주의 경우가 약간 높을 뿐이다.

경제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주의 45.4%가 임금근로자이고 28.9%가 비임금근로자이며, 2.6%가 실업자, 그리고 23.1%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1,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1차년도에 7.7%였던 실업자의 비율이 2차년도에 4.1%, 3차년도에 2.6%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1차년도에 18.8%, 2차년도에 20.8%, 3차년도에 23.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감소된 실업자의 상당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6> 가구주의 인구 특성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142 (100.0)
성별	남자	4,259 (85.8)	3,859 (85.6)	3,528 (85.2)
	여자	705 (14.2)	650 (14.4)	614 (14.8)
연령	15~29세	380 (7.6)	281 (6.2)	195 (4.7)
	30~39세	1,357 (27.1)	1,180 (26.2)	1,024 (24.7)
	40~49세	1,397 (27.9)	1,231 (27.3)	1,156 (27.9)
	50~59세	984 (19.7)	920 (20.4)	840 (20.3)
	60세 이상	882 (17.6)	897 (19.9)	927 (22.4)
	평균(세)	46.4	47.4	48.4
교육 수준	무학	306 (6.1)	288 (6.4)	280 (6.8)
	고졸 미만	1,605 (32.1)	1,476 (32.7)	1,401 (33.8)
	고졸	1,819 (36.4)	1,622 (36.0)	1,489 (36.0)
	대학재학 및 중퇴	147 (2.9)	118 (2.6)	91 (2.2)
	전문대졸	241 (4.8)	224 (5.0)	203 (4.9)
	대졸 이상	882 (17.6)	781 (17.3)	677 (16.4)
혼인 상태 ¹⁾	미혼	333 (6.7)	261 (5.8)	1,047 (25.7)
	기혼유배우	3,945 (79.1)	3,607 (80.6)	2,705 (66.3)
	기혼무배우	709 (14.2)	609 (13.6)	329 (8.1)
경제 활동 상태 ¹⁾	임금근로자	2,229 (44.7)	2,058 (46.0)	1,876 (45.4)
	비임금근로자	1,440 (28.9)	1,305 (29.1)	1,192 (28.9)
	실업자	384 (7.7)	183 (4.1)	109 (2.6)
	비경제활동인구	937 (18.8)	931 (20.8)	955 (23.1)

주 : 1) 1차년도의 경우 혼인상태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13명,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미취업자 10명, 2차년도의 경우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3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2-7> 성별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가구, %)

		남 성	여 성
전 체		3,528 (100.0)	614 (100.0)
연 령	15~29세	149 (4.2)	46 (7.5)
	30~39세	970 (27.5)	54 (8.8)
	40~49세	1,048 (29.7)	108 (17.6)
	50~59세	714 (20.2)	126 (20.5)
	60세 이상	647 (18.3)	280 (45.6)
평균(세)		47.2	55.5
교 육 수 준	무 학	105 (3.0)	175 (28.5)
	고졸 미만	1,137 (32.2)	264 (43.0)
	고 졸	1,376 (39.0)	113 (18.4)
	대학재학 및 중퇴	84 (2.4)	7 (1.1)
	전문 대졸	183 (5.2)	20 (3.3)
	대졸 이상	642 (18.2)	35 (5.7)
혼 인 상 태	미 혼	893 (25.7)	154 (25.7)
	기혼유배우	2,311 (66.4)	394 (65.8)
	기혼무배우	278 (8.0)	51 (8.5)
경 제 활 동 상 태	임금근로자	1,692 (48.1)	184 (30.1)
	비임금근로자	1,088 (30.9)	104 (17.0)
	실업자	97 (2.8)	12 (2.0)
	비경제활동인구	643 (18.3)	312 (51.0)

제 3 절 가구원의 특성

가구원에 해당하는 개인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차년도 38.8세에서 3차년도 40.8세로 동일한 원표본가구를 매해 조사하는 본 패널조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30대로 1차년도에 22.3%, 2차년도 22.2%, 3차년도 21.7%를 차지한다. 동일한 원표본가구원 들을 조사하는 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의 비율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였으나 저연령층은 다소 감소하였다.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비율이 1, 2차년도 3.9%에서 3차년도에 3.4%로 다소 감소하여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낮아졌음을 나타낸다. 자녀의 비율도 1차년도에 28.9%, 2차년도 27.1%, 3차년도에 25.9%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결혼으로 인한 분가 혹은 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1-2-3차년도 개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13,738 (100.0)	11,765 (100.0)	10,842 (100.0)
연령	15~19세	1,653 (12.0)	1,366 (11.6)	1,185 (10.9)
	20~24세	1,493 (10.9)	1,033 (8.8)	912 (8.4)
	25~29세	1,525 (11.1)	1,211 (10.3)	1,065 (9.8)
	30~39세	3,064 (22.3)	2,613 (22.2)	2,355 (21.7)
	40~49세	2,557 (18.6)	2,272 (19.3)	2,150 (19.8)
	50~59세	1,701 (12.4)	1,539 (13.1)	1,435 (13.2)
	60세 이상	1,744 (12.7)	1,731 (14.7)	1,740 (16.0)
	평균(세)	38.8	40.1	40.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000 (36.4)	4,423 (37.6)	4,142 (38.2)
	배우자	3,952 (28.8)	3,499 (29.7)	3,227 (29.8)
	부모	540 (3.9)	460 (3.9)	373 (3.4)
	자녀	3,977 (28.9)	3,184 (27.1)	2,814 (25.9)
	형제	166 (1.2)	124 (1.1)	82 (0.8)
	기타	103 (0.7)	75 (0.6)	204 (1.9)
혼인 상태	미혼	3,853 (29.0)	3,367 (28.6)	3,126 (28.8)
	기혼유배우	8,292 (62.3)	7,424 (63.1)	6,733 (62.1)
	별거	134 (1.0)	75 (0.6)	68 (0.6)
	이혼	149 (1.1)	127 (1.1)	131 (1.2)
	사별	855 (6.4)	772 (6.6)	754 (7.0)
교육 수준	무학	866 (6.7)	793 (6.7)	726 (6.7)
	고졸 미만	4,651 (34.4)	4,050 (34.4)	3,755 (34.6)
	고졸	4,530 (32.9)	3,876 (32.9)	3,590 (33.1)
	대학재학 및 중퇴	1,296 (8.2)	967 (8.2)	860 (7.9)
	전문대졸	725 (5.5)	647 (5.5)	625 (5.8)
	대졸 이상	1,662 (12.2)	1,431 (12.2)	1,284 (11.8)

주: 1차년도 연령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 혼인상태가 모름 또는 무응답인 431명, 교육수준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8명, 2차년도의 경우 교육수준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명, 3차년도 혼인상태 모름/무응답 30명, 교육 수준 모름/무응답 2명 분석에서 제외.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이나 기혼유배우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으며, 별거의 경우 1차년도 1.0%, 2차년도 0.6%, 3차년도 0.6%로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에 다소 감소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경우는 1, 2차년도에 1.1%에서 3차년도에 1.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사별의 경우는 1차년도에 6.4%, 2차년도에 6.6%, 3차년도에 7.0%로 증가하였다. 1, 2, 3차년도 교육수준은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가구원의 특성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연령별 혼인상태는 학령기인 15~19세에서는 미혼의 비율이 100%로 나타났고, 20~24세의 젊은 층에서는 미혼의 비율이 98.2%, 기혼유배

<표 2-9> 남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체		5,235 (100.0)	626 (100.0)	343 (100.0)	539 (100.0)	1,181 (100.0)	1,086 (100.0)	733 (100.0)	727 (100.0)
혼인 상태	미혼	1,675 (32.1)	620 (100.0)	332 (98.2)	436 (81.3)	243 (20.0)	37 (3.4)	4 (0.5)	3 (0.4)
	기혼유배우	3,354 (64.3)	-	6 (1.8)	97 (18.1)	914 (77.0)	1,003 (92.5)	687 (93.9)	647 (89.0)
	기혼무배우	186 (3.6)	-	-	3 (0.6)	21 (1.0)	44 (4.1)	41 (5.6)	77 (10.6)
교육 수준	무학	136 (2.6)	-	1 (0.3)	-	6 (0.5)	3 (0.3)	13 (1.8)	113 (15.5)
	고졸 미만	1,700 (32.5)	433 (69.2)	23 (6.7)	38 (7.1)	135 (11.4)	348 (32.0)	344 (46.9)	379 (52.1)
	고졸	1,788 (34.2)	65 (10.4)	96 (28.0)	210 (39.0)	534 (45.3)	479 (44.1)	260 (35.5)	144 (19.8)
	대학재학 및 중퇴	483 (9.2)	128 (20.4)	194 (56.6)	79 (14.7)	35 (3.0)	21 (1.9)	14 (1.9)	12 (1.7)
	전문대졸	310 (5.9)	-	18 (5.2)	92 (17.1)	132 (11.2)	60 (5.5)	4 (0.5)	4 (0.6)
	대졸 이상	817 (15.6)	-	11 (3.2)	120 (22.3)	338 (28.6)	175 (16.1)	98 (13.4)	75 (10.3)

주 : 학력 무응답 1명과 혼인상태 모름/무응답 20명 분석 제외함.

우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20대 중·후반인 25~29세는 미혼의 비율이 감소한 81.3%, 기혼 유배우 비율이 18.1%, 기혼무배우 비율이 0.5%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기혼유배우 비율이 증가하여 50~59세에서 기혼유배우 비율이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혼무배우자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교육 수준은 보면 15~19세는 학령기로 재학중인 자녀들이 많아 고졸 미만이 69.2%로 나타났고, 20~24세는 대학재학 및 중퇴가 56.6%이다. 그러나 60세 이상에는 무학의 비중이 15.5%이며 대졸 이상은 10.3%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은 30~39세에 28.6%로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과 대조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연령별 혼인상태를 보면 남성 응답자들은 25~29세 기혼유배우 비율이 18.1%인 데 비해 여성 응답자들은 25~29세에 기혼유배우 비율이 49.2%로 31.1%p 높다. 또한 60세 이상의 여성 고령층에서 기혼무배우의 비율이 51.3%으로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남성 응답자의 기혼무배

우자의 비율은 10.6%로 여성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많은 여성이 분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15~19세의 학령기에서는 고졸 미만의 학력에 65.2%가 분포되어 있고, 20~24세는 대학재학 및 중퇴가 35.9%, 고졸이 32.5%로 나타났다. 학령기가 끝난 25~29세는 고졸이 5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대졸 이상이 23.6%로 전체 연령층에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남성의 경우는 30~39세에서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게 된 시기가 적어도 5년여는 뒤처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고졸 미만의 저학력 비율이 높아져 50~59세에서 고졸 미만이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에서는 무학과 고졸 미만이 각각 49.4%, 43.0%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무학이 15.5%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며, 대졸 이상의 비율이 10.3% 정도가 있었던 반면, 6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는 1.0%에 그쳐, 고연령층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음이 여실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표 2-10> 여성 응답자의 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체		5,607 (100.0)	559 (100.0)	569 (100.0)	52 (100.0)	1,174 (100.0)	1,064 (100.0)	702 (100.0)	1,013 (100.0)
혼인 상태	미혼	1,451 (25.9)	554 (99.5)	541 (95.2)	265 (50.4)	75 (6.4)	13 (1.2)	2 (0.3)	1 (0.1)
	기혼유배우	3,379 (60.4)	3 (0.5)	27 (4.8)	260 (49.2)	1,059 (90.6)	962 (90.4)	576 (82.2)	492 (48.6)
	기혼무배우	767 (13.7)	-	-	1 (0.2)	35 (3.0)	89 (8.4)	123 (17.5)	519 (51.3)
교육 수준	무학	590 (10.5)	1 (0.2)	1 (0.2)	2 (0.4)	1 (0.1)	14 (1.3)	71 (10.1)	500 (49.4)
	고졸미만	2055 (36.7)	364 (65.2)	7 (1.2)	21 (4.0)	211 (18.0)	536 (50.4)	480 (68.4)	436 (43.0)
	고졸	1,802 (32.1)	81 (14.5)	185 (32.5)	272 (51.7)	679 (57.8)	403 (37.9)	123 (17.5)	59 (5.8)
	대학재학 및 중퇴	377 (6.7)	111 (19.9)	204 (35.9)	22 (4.2)	20 (1.7)	13 (1.2)	4 (0.6)	3 (0.3)
	전문대졸	315 (5.6)	-	96 (16.9)	85 (16.2)	103 (8.8)	21 (2.0)	5 (0.7)	5 (0.5)
	대졸이상	467 (8.3)	1 (0.2)	76 (13.4)	124 (23.6)	160 (13.6)	77 (7.2)	19 (2.7)	10 (1.0)

주 : 학력 무응답 1명과 혼인상태 모름/무응답 10명 분석 제외함.

응답자들의 현재 거주지는 서울지역이 25.5%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가 17.2%, 부산이 10.7%의 비중을 차지한다. 1-2-3차년도의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지역에서 응답자가 줄어든 반면 부산, 인천, 울산 등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울로부터 여타 광역시나 도지역으로의 이동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3차년도 조사시 서울과 대구지역 조사대상 가구의 탈락률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연령별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은 25~29세가 27.5% 40~49세가 28.0%로 25~29세와 40~49세의 비중이 높으며, 광역시는 15~19세 35.6% 20~24세 34.6%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 도는 30~39세 46.0%, 60세 이상 50.7%로 30~39세와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다.

<표 2-11> 1-2-3차년도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13,738 (100.0)	11,765 (100.0)	10,842 (100.0)
서울	3,720 (27.1)	3,087 (26.2)	2,760 (25.5)
부산	1,329 (9.7)	1,180 (10.0)	1,161 (10.7)
대구	918 (6.7)	737 (6.3)	634 (5.8)
대전	433 (3.2)	362 (3.1)	359 (3.3)
인천	844 (6.1)	730 (6.2)	706 (6.5)
광주	443 (3.2)	335 (2.8)	272 (2.5)
울산	329 (2.4)	303 (2.6)	315 (2.9)
경기도	2,257 (16.4)	2,056 (17.5)	1,866 (17.2)
강원도	350 (2.5)	295 (2.5)	274 (2.5)
충청북도	316 (2.3)	269 (2.3)	243 (2.2)
충청남도	355 (2.6)	321 (2.7)	308 (2.8)
전라북도	583 (4.2)	474 (4.0)	399 (3.7)
전라남도	340 (2.5)	299 (2.5)	272 (2.5)
경상북도	705 (5.1)	609 (5.2)	548 (5.1)
경상남도	816 (5.9)	706 (6.0)	725 (6.7)
제주도	-	2 (0.0)	-
서울	3,720 (27.1)	3,087 (26.2)	2,760 (25.5)
광역시	4,296 (31.3)	3,647 (31.0)	3,447 (31.8)
도	5,722 (41.7)	5,031 (42.8)	4,635 (42.8)

주 : 지역간의 점선 표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구분을 나타낸다.

<표 2-12> 연령별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

	전 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전 체	10,842 (100.0)	1,185 (100.0)	912 (100.0)	1,065 (100.0)	2,355 (100.0)	2,150 (100.0)	1,435 (100.0)	1,740 (100.0)
서 울	2,760 (25.5)	313 (26.4)	218 (23.9)	293 (27.5)	592 (25.1)	603 (28.0)	378 (26.3)	363 (20.9)
광역시	3,447 (31.8)	422 (35.6)	316 (34.6)	345 (32.4)	679 (28.8)	721 (33.5)	470 (32.8)	494 (28.4)
도	4,635 (42.8)	450 (38.0)	378 (41.4)	427 (40.1)	1,084 (46.0)	826 (38.4)	587 (40.9)	883 (50.7)

제 4 절 주거형태 및 비용

1. 입주 형태 및 주택의 종류

1, 2차년도와 비교하여 현재 주거지의 입주 형태는 거의 변동이 없다. 전년도와 같이 자가 인 경우가 57.3%로 가장 많으며, 전세는 30.0%, 월세는 8.8%의 순이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자가와 전세의 비중이 높아 각각 45.7%와 40.3%를 차지 하고, 월세는 10.4%, 그리고 기타의 입주 형태는 3.6%이다. 광역시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높 아 56.5%를 차지하고, 전세가 29.8%, 월세가 9.9%, 그리고 기타의 형태가 3.8%순이다. 도지역 의 경우 자가의 비율이 64.0%로 가장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는 24.4%, 월세는 7.1%, 기타의 형태는 3.9%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별 입주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가의 비율이 높아 100만원 미 만의 저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도 자가의 비율이 56.0%가 된다. 자가의 비율은 300만원 이상 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68.5%로 가장 높고, 전세의 경우는 100만~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 는 가구가 35.8%로 가장 높다. 월세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12.9%로 다른 소득범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주택의 종류 또한 입주 형태와 같이 1, 2차년도에 비해 크게 변화된 바 없이 단독주택이 40.5%로 가장 많고, 아파트 30.0%, 다세대주택 16.3%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는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30.0%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28.4%, 아파트 22.5%, 연립주택 13.2% 순이다. 광역시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42.0%로 가장 높고, 아파트 34.9%, 다세대주택 14.3%, 연립주택 4.5%의 순이다.

도지역의 경우는 광역시와 같이 단독주택의 비율이 46.3%로 가장 높고, 아파트 30.9%, 다세대주택 9.9%, 연립주택 8.0%의 순이다. 즉 서울의 경우가 다세대주택-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의 순인 반면에 광역시와 도지역의 경우는 단독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순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높은 단독주택의 주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주형태별로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 45.8%가 단독주택이고, 36.1%가 아파트이다. 전세의 경우 33.4%가 단독주택이고, 비슷한 비율인 31.3%가 다세대주택이다. 월세의 경우에도 전세와 같이 37.5%가 단독주택이고, 33.9%가 다세대 주택이다.

<표 2-13> 입주 형태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자 가	2,791 (55.8)	2,579 (57.2)	2,319 (57.3)
전 세	1,549 (31.0)	1,335 (29.6)	1,215 (30.0)
월 세	472 (9.4)	405 (9.0)	357 (8.8)
기 타	188 (3.8)	190 (4.2)	154 (3.8)

<표 2-14> 거주지별 입주 형태

(단위 : 가구, %)

	서 울	광역시	도
전 체	1,018 (100.0)	1,249 (100.0)	1,778 (100.0)
자 가	465 (45.7)	705 (56.5)	1,149 (64.6)
전 세	410 (40.3)	372 (29.8)	433 (24.4)
월 세	106 (10.4)	124 (9.9)	127 (7.1)
기 타	37 (3.6)	48 (3.8)	69 (3.9)

<표 2-15> 가구소득별 입주 형태

(단위 : 가구,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4,045 (100.0)	1,308 (100.0)	1,499 (100.0)	762 (100.0)	476 (100.0)
자 가	2,319 (100.0)	732 (56.0)	773 (51.6)	488 (64.0)	326 (68.5)
전 세	1,215 (100.0)	342 (26.1)	536 (35.8)	213 (28.0)	124 (26.1)
월 세	357 (100.0)	169 (12.9)	131 (8.7)	43 (5.6)	14 (2.9)
기 타	154 (100.0)	65 (5.0)	59 (3.9)	18 (2.4)	12 (2.5)

<표 2-16> 주택 종류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509 (100.0)	4,045 (100.0)
단독주택	1,952 (39.0)	1,743 (38.7)	1,637 (40.5)
아파트	1,590 (31.8)	1,494 (33.1)	1,215 (30.0)
연립주택	409 (8.2)	365 (8.1)	333 (8.2)
다세대주택	806 (16.1)	680 (15.1)	660 (16.3)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160 (3.2)	146 (3.2)	140 (3.5)
오피스텔	2 (0.0)	1 (0.0)	1 (0.0)
임시막사	11 (0.2)	10 (0.2)	8 (0.2)
상가주택	-	-	49 (1.2)
기 타	66 (1.3)	68 (1.5)	2 (0.1)
모름/무응답	4 (0.1)	2 (0.0)	-

<표 2-17> 거주지별 주택 종류

(단위 : 가구, %)

	서 울	광역시	도
전 체	1,018 (100.0)	1,249 (100.0)	1,778 (100.0)
단독주택	289 (28.4)	524 (42.0)	824 (46.3)
아파트	229 (22.5)	436 (34.9)	550 (30.9)
연립주택	134 (13.2)	56 (4.5)	143 (8.0)
다세대주택	305 (30.0)	179 (14.3)	176 (9.9)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	33 (3.2)	43 (3.4)	64 (3.6)
오피스텔,	1 (0.1)	0 (0.0)	0 (0.0)
막사	3 (0.3)	1 (0.1)	4 (0.2)
상가주택	24 (2.4)	9 (0.7)	16 (0.9)
기타	0 (0.0)	1 (0.1)	1 (0.1)

<표 2-18> 입주 형태별 주택의 종류

(단위 : 가구, %)

	전체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	오피 스텔	임시 막사	상가 주택	기타
전체	4,045 (100.0)	1,637 (40.5)	1,215 (30.0)	333 (8.2)	660 (16.3)	140 (3.5)	1 (0.0)	8 (0.2)	49 (1.2)	2 (0.1)
자가	2,319 (100.0)	1,062 (45.8)	837 (36.1)	229 (9.9)	139 (6.0)	30 (1.3)	0 (0.0)	4 (0.2)	18 (0.8)	0 (0.0)
전세	1,215 (100.0)	406 (33.4)	269 (22.1)	85 (7.0)	380 (31.3)	62 (5.1)	1 (0.1)	0 (0.0)	10 (0.8)	2 (0.2)
월세	357 (100.0)	134 (37.5)	34 (9.5)	15 (4.2)	121 (33.9)	45 (12.6)	0 (0.0)	2 (0.6)	6 (1.7)	0 (0.0)
기타	154 (100.0)	35 (22.7)	75 (48.7)	4 (2.6)	20 (13.0)	3 (2.1)	0 (0.0)	2 (1.3)	15 (9.7)	0 (0.0)

2. 주택 비용

주택비용은 입주 형태에 따라 자가인 경우는 주거지의 시가를 응답하였고, 입주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응답하였다.

입주 형태가 자가인 2,319가구의 자가액수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가 34.0%로 가장 많으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1.7%,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가 20.3%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8.2%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6.7%, 1천만원 미만이 21.5% 순이다. 광역시의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0.7%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24.8%,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8.6% 순이다. 도 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2.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25.9%,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가 18.8%이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10.3%이고, 3억원 이상은 6.7%인 것에 반해 1천만원 미만의 경우도 21.5%나 차지한다. 광역시의 경우는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4.1%이고, 3억원 이상이 1.3%이며, 1천만원 미만은 10.5%로 서울지역에 비해 그 비중이 작다. 도 지역의 경우는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3.7%이고, 3억원 이상이 1.9%이며 1천만원 미만이 17.4%로 서울과 같이 1천만원 미만의 비중이 작지 않다.

입주 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 1,572가구의 임대 보증금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45.4%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고, 23.1%가 1천만원 미만이며, 22.1%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다.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서울의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3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30.4%이고, 1천만원 미만이 16.5%를 차지한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는 16.3%이고, 1억원 이상은 1.7%이다. 광역시의 경우는 절반이상인 52.8%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고, 27.2%가 1천만원 미만이며, 15.9%가 3천만원~5천만원이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4.0%로 서울지역의 16.3%에 비해 낮은 편이고, 1억원 이상은 없다. 도 지역의 경우는 48.4%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고, 25.5%가 1천만원 미만이며, 19.6%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1%로 서울지역에 비해서는 낮지만, 광역시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입주 형태가 월세인 경우, 월세금을 지불하는 가구는 357가구이며, 대다수인 80.1%가 30만원 미만의 월세금을 지불하며, 13.7%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9%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2%가 10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71.7%가 30만원 미만을 지불하고, 19.8%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7%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8%가 10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광역시의 경우 서울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인 83.1%가 30만원 미만의 월세를 지불하고, 11.3%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을 지불하며, 4.8%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지불한다. 도 지역의 경우 광역시보다 더 높은 84.3%가 30만원 미만의 월세를 지불하고, 11.0%가 30만원~50만원 미만, 2.4%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을 지불한다.

<표 2-19> 거주지별 자가금액

(단위 : 가구, %)

	전 체	1천만원 미만	1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2억원 미만	2억~3억원 미만	3억 이상
전 체	2,319 (100.0)	374 (16.1)	504 (21.7)	788 (34.0)	471 (20.3)	120 (5.2)	62 (2.7)
서울	465 (100.0)	100 (21.5)	31 (6.7)	131 (28.2)	124 (26.7)	48 (10.3)	31 (6.7)
광역시	705 (100.0)	74 (10.5)	175 (24.8)	287 (40.7)	131 (18.6)	29 (4.1)	9 (1.3)
도	1,149 (100.0)	200 (17.4)	298 (25.9)	370 (32.2)	216 (18.8)	43 (3.7)	22 (1.9)

<표 2-20> 거주지별 임대보증금

(단위 : 가구, %)

	전 체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미만	5천만~1억 미만	1억원 이상
전 체	1,572(100.0)	363(23.1)	714(45.4)	346(22.1)	138(8.8)	11(0.7)
서울	516(100.0)	85(16.5)	181(35.1)	157(30.4)	84(16.3)	9(1.7)
광역시	496(100.0)	135(27.2)	262(52.8)	79(15.9)	20(4.0)	0(0.0)
도	560(100.0)	143(25.5)	271(48.4)	110(19.6)	34(6.1)	2(0.4)

<표 2-21> 거주지별 월세금

(단위 : 가구, %)

	전 체	30만원 미만	30만~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 체	357(100.0)	286(80.1)	49(13.7)	14(3.9)	8(2.2)
서울	106(100.0)	76(71.7)	21(19.8)	5(4.7)	4(3.8)
광역시	124(100.0)	103(83.1)	14(11.3)	6(4.8)	1(0.8)
도	127(100.0)	107(84.3)	14(11.0)	3(2.4)	3(2.4)

가 계 경 제

제 1 절 가계소득

가계소득에 대한 분석은 1998년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원가구이면서 3차년도에 응답한 가구 중 소득에 대해 보고한 3,947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소득은 세후 소득이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1999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3차년도 조사에서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67만원으로 1차년도의 156만 4천원, 2차년도의 160만 4천원에 비해 각각 4만원, 6만 6천원으로 증가하였다.

가구 총소득을 범주별 살펴보면,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은 1차년도 12.3%에서 2, 3차년도 13.0%로 증가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 1차년도 16.3%, 2차년도 16.8%, 3차년도 19.3%로 증가하였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도 1차년도 9.8%, 2차년도 10.6%, 3차년도 1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50만~100만원 미만, 100만~150만원 미만의 범주에서는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함을 나타내, 경제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3-1>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379 (100.0)	3,947 (100.0)
50만원 미만	614 (12.3)	570 (13.0)	504 (13.0)
50만~100만원 미만	901 (18.0)	840 (19.2)	706 (17.9)
100만~150만원 미만	1,049 (21.0)	932 (21.3)	810 (20.5)
150만~200만원 미만	815 (16.3)	697 (15.9)	694 (17.6)
200만~300만원 미만	815 (16.3)	734 (16.8)	763 (19.3)
300만원 이상	489 (9.8)	465 (10.6)	470 (11.9)
모름 / 무응답	317 (6.3)	141 (3.2)	-
평 균 (만원)	156.4	160.4	167.0

주 : 1998년도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원가구 중에서 3차년도에 응답한 가구만을 분석함. 1차년도의 월 평균 총소득은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이며, 2차년도, 3차년도의 월평균 총소득은 1998년, 1999년 한 해 동안의 소득임.

<표 3-2> 가구 특성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단위 : 가구,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3,947 (100.0)	1,210 (30.7)	1,499 (38.0)	762 (19.3)	476 (12.1)
가구원 수	1명	384 (100.0)	296 (77.1)	73 (19.0)	12 (3.1)	3 (0.8)
	2명	535 (100.0)	328 (61.3)	146 (27.3)	38 (7.1)	23 (4.3)
	3명	765 (100.0)	253 (33.1)	321 (42.0)	123 (16.1)	68 (8.9)
	4명	1,497 (100.0)	230 (15.4)	687 (45.9)	367 (24.5)	213 (14.2)
	5명	559 (100.0)	78 (14.0)	198 (35.4)	162 (29.0)	121 (21.7)
	6명 이상	207 (100.0)	25 (12.1)	74 (35.8)	60 (29.0)	48 (23.2)
가구주 성별	남 성	3,368 (100.0)	827 (24.6)	1,362 (40.4)	724 (21.5)	455 (13.5)
	여 성	574 (100.0)	381 (66.4)	136 (23.7)	37 (6.5)	20 (3.5)
가구주 연령	15~29세	120 (100.0)	52 (43.3)	49 (40.8)	14 (11.7)	5 (4.2)
	30~39세	965 (100.0)	159 (16.5)	502 (52.0)	198 (20.5)	106 (11.6)
	40~49세	1,144 (100.0)	224 (19.6)	463 (35.0)	271 (23.7)	186 (16.3)
	50~59세	821 (100.0)	208 (25.3)	287 (35.0)	197 (24.0)	129 (15.7)
	60세 이상	892 (100.0)	565 (63.4)	197 (22.1)	81 (9.1)	49 (5.5)
가구주 교육 수준	무 학	267 (100.0)	216 (80.9)	41 (15.4)	7 (2.6)	3 (1.1)
	고졸 미만	1,365 (100.0)	578 (42.3)	520 (38.1)	182 (13.3)	85 (6.2)
	고 졸	1,413 (100.0)	309 (21.9)	623 (44.1)	310 (21.9)	171 (12.1)
	대학재학	90 (100.0)	17 (18.9)	39 (43.3)	20 (22.2)	14 (15.6)
	및 중퇴					
	전문대졸	181 (100.0)	27 (14.9)	77 (42.5)	61 (33.7)	16 (8.8)
	대졸 이상	626 (100.0)	61 (9.7)	198 (31.6)	181 (28.9)	186 (29.7)

소득범주별로 가구의 특성을 살펴 보면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가구주가 여성가구주인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15~29세의 저연령층이나 혹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인 경우, 교육수준이 무학이나 고졸 미만으로 낮을 경우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적다는 것은 소득원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적은 가계가 절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소득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소득원을 갖는 다가구원의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고연령층의 여성가구주의 가구가 100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학력을 갖는 고연령층의 여성이 가구주일 경우 게다가 단신가구일 경우 가장 소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100만~200만원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3인 혹은 4인 가구이며, 30~39세의 고졸 학력의 남성 가구주가 중심이며, 200만~300만원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4인 혹은 5인 가구이며, 40~59세의 전문대학 졸업학력의 중·장년층의 남성 가구주가 중심이 된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5인 혹은 6인 이상의 가구이며, 40~59세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는 남성 가구주가 중심이 되는 특징을 갖는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의미하며, 임금근로자가 직장 또는 일자리에 서 받은 임금과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포함된다. 3차년도에 조사된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3,501가구로 전체의 86.6%이며,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던 가구는 544가구로 전체의 13.4%이다. 1차년도에 154만 9천원이었던 월평균 근로소득은 2차년도에 150만 8천원으로 다소 감소

<표 3-3>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993(100.0)	4,379(100.0)	4,045(100.0)
근로소득 없음	743 (14.9)	592 (13.5)	544 (13.4)
근로소득 있음	4,250 (85.1)	3,787 (86.5)	3,501 (86.6)
평 균	154.9	150.8	163.0
50만원 미만	346 (8.1)	388 (8.9)	272 (6.7)
50만~100만원 미만	829 (19.5)	781 (20.6)	631 (15.6)
100만~150만원 미만	1,036 (24.4)	928 (24.5)	812 (20.1)
150만~200만원 미만	790 (18.6)	674 (17.8)	665 (16.4)
200만~250만원 미만	773 (18.2)	471 (12.4)	713 (17.6)
250만~300만원 미만		231 (6.1)	
300만원 이상	406 (9.5)	348 (9.2)	396 (9.8)
모름 / 무응답	72 (1.7)	16 (0.4)	556 (13.7)

주 :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소득도 포함한 것으로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함.

하였다가, 3차년도에 163만원으로 13만원 가량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20.1%가 월평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으며, 17.6%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6.4%가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5.6%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50만원 미만의 매우 적은 근로소득을 갖는 가구는 6.7%이고, 300만원 이상의 높은 근로소득을 갖는 가구는 9.8%이다.

3.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사채이자,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식의 시세가 높아진 경우 등과 같이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1999년 한 해 동안 가구에 금융소득이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금융소득이 있었던 경우 금융소득 항목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사채이자 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과 기타금융소득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소득 유무와 총액을 질문하였다.

금융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1차년도에 전체 가구의 9.4%인 472가구였고, 2차년도에는 11.3%인 496가구로 1차년도에 비해 2%p가량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8.7%인 352가구로 2차년도에 비해 대략 3%p가량 감소하였다. 3차년도에 금융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32.4%의 가구가 연간 총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다. 그 다음으로는 500만원 이상

<표 3-4> 가구의 연간 총 금융소득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995 (100.0)	4,379(100.0)	4,045(100.0)
금융소득 없음	4,523 (90.6)	3,883(88.7)	3,693(91.3)
금융소득 있음	472 (9.4)	496(11.3)	352(8.7)
평 균	493.0	367.3	729.4
50 만원 미만	120 (25.4)	90(18.1)	41(11.6)
50만~100만원 미만		59(11.9)	43(12.2)
100만~250만원 미만	135 (28.5)	149(30.0)	114(32.4)
250만~500만원 미만	58 (12.3)	83(16.7)	47(13.4)
500만~1000만원 미만	70 (14.8)	63(12.7)	68(19.3)
1,000만원 이상	67 (14.2)	45(9.1)	38(10.8)
모름 / 무응답	23 (4.9)	7(1.4)	1(0.3)

1,000만원 미만의 범주에 19.3%,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범주에 13.4% 순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가구가 321가구로 91.2%를 차지하며, 사채 이자 수입이 있는 가구는 17가구로 4.8%,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그리고 배당금이 각각 2%이다.

<표 3-5>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금융소득

	빈도(가구)	비중(%)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소득	321	91.2
사채이자수입	17	4.8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7	2.0
배당금	7	2.0
전 체	352	100.0

4.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월세 등의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3차년도에 조사된 부동산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276가구로 전체의 6.8%이다. 연간 부동산 소득을 갖는 가구의 비율은 1차년도에 전체 가구의 5.5%에서 2차년도에 전체 가구의 6.6%로 1.1%p 정도 증가하였고, 3차년도에는 전체 가구의 6.8%로 점차 증가하였다.

<표 3-6> 가구의 연간 총 부동산소득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996(100.0)	4,379(100.0)	4,045(100.0)
부동산소득 없음	4,723(94.5)	4,089(93.4)	3,769(93.2)
부동산소득 있음	273(5.5)	290(6.6)	276(6.8)
평균	704.8	1,187.9	779.0
100만원 미만	40(14.7)	37(12.8)	32(11.6)
100만~250만원 미만	72(26.4)	75(25.9)	84(30.4)
250만~500만원 미만	44(16.1)	57(19.7)	46(16.7)
500만~1,000만원 미만	55(20.1)	45(15.5)	57(20.7)
1,000만~1,500만원 미만	57(20.9)	32(11.0)	28(10.1)
1,500만원 이상		43(14.8)	29(10.5)
모름 / 무응답	5(1.8)	1(0.3)	0(0.0)

그러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의 연평균 부동산소득액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704만 8천원에서 2차년도 1천 187만 9천원으로 대략 483만원 가량이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연평균 779만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 408만원 가량이 감소하였다. 즉, 부동산소득을 보유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을지라도 소득액은 감소하였다. 3차년도에 조사된 부동산소득을 갖는 가구 중에서 30.4%는 연간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범주에 분포되어 있고, 20.7%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6.7%가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항목별로는 임대료 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276가구 중 231가구로 대다수인 83.7%를 차지하고, 토지를 도지 준 가구가 27가구로 9.8%, 부동산 매매 차익이 17가구로 6.2%를 차지한다.

<표 3-7>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부동산소득

	빈도(가구)	비중(%)
월세 등의 임대료(임대보증금 제외)	231	83.7
부동산 매매차익	17	6.2
토지를 도지 준 것	27	9.8
기타	1	0.4
전 체	276	100.0

5. 사회보험소득

노동패널조사에 포함된 사회보험소득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과 보훈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된다⁸⁾. 조사성공가구 중 사회보험을 받은 가구원이 있었던 가구는 172가구로 전체의 4.3%로, 2차년도의 3.9%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사회보험소득이 있는 경우 가구 전체가 수급한 사회보험소득은 평균 671만5천원으로, 2차년도의 586만 2천원에 비해 대략 85만원 가량 증가하였다. 범주별로는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에 사회보험 소득이 있는 4.3%가구 중 32.6%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사회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 특수직역연금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반환일시금
- 산재보험 - 휴업급여, 장애연금, 유족급여
- 보훈연금
- 실업급여

<표 3-8> 가구의 연간 총 사회보험 수급액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379(100.0)	4,045(100.0)
사회보험소득 없음	4,209(96.1)	3,873(95.7)
사회보험소득 있음	170(3.9)	172(4.3)
평 균	586.2	671.5
100만원 미만	31(18.2)	19(11.0)
100만~250만원 미만	38(22.4)	56(32.6)
250만~500만원 미만	28(16.5)	16(9.3)
500만~1,000만원 미만	33(19.4)	29(16.9)
1,000만~1,500만원 미만	21(12.4)	28(16.3)
1,500만원 이상	17(10.0)	22(12.8)
모름 / 무응답	2(1.2)	2(1.2)

6.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또는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경로우대교통비나 동사무소의 생활보호 대상연금 등이 이에 속하며, 위에서 응답한 사회보험소득은 제외된다.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이전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879가구로 전체 가구의 21.7%이다. 연간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에 11.5%에서 2차년도에 21.9%로 대략 10%가량 증가하였고, 3차년도에는 21.7%로 2차년도에 증가한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의 연 평균 이전소득액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322만 3천원이었던 것이, 2차년도에는 234만 8천원으로 대략 88만원 가량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3차년도에는 221만 6천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 13만원 가량이 다시 감소하였다.

이전소득이 있는 21.7%가구 중 25.5%가 연간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고,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에 21.3%,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16.8%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연간 500만원 이상의 높은 이전소득을 갖는 가구는 12.4%이다. 이전소득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전소득이 있는 879가구 중 524가구인 59.6%가 정부보조금이며, 38.3%에 해당하는 337가구가 친척·친지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가구의 연간 총 이전소득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995(100.0)	4,379(100.0)	4,045(100.0)
이전소득	없음	4,424(88.5)	3,420(78.1)	3,166(78.3)
이전소득	있음	576(11.5)	959(21.9)	879(21.7)
	평 균	322.3	234.8	221.6
	10 만원 미만	115(20.0)	92(9.6)	77(8.8)
	10만~25만원 미만	209(36.3)	189(19.7)	224(25.5)
	25만~50만원 미만	136(23.6)	48(5.0)	56(6.4)
	50만~100만원 미만	83(14.4)	98(10.2)	76(8.6)
	100만 ~250만원 미만	24(4.2)	230(24.0)	187(21.3)
	250만 ~500만원 미만		167(17.4)	148(16.8)
	500만원 이상		133(13.9)	109(12.4)
	모름 / 무응답	9(1.6)	2(0.2)	2(0.2)

<표 3-10>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이전소득

	빈도(가구)	비중(%)
정부보조금	524	59.6
사회단체 보조금	4	0.5
친척, 친지 보조금	337	38.3
기타 보조금	13	1.5
모름/무응답	1	0.1
전 체	879	100.0

7.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 포함)⁹⁾이나 퇴직금, 복권 당첨금과 같이 앞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이다. 3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이 있었던 가구는 224가구로 전체 가구의 5.5%이다. 기타소득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에 10.8%였던 것이 3차년도에 5.5%로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기타소득액도 2차에 1천 110만원이었고 3차에서 1천 507만원으로 397만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소득을 갖는 224가구 중에서 59.8%인 134가구는 보험 해약금을 포함한 보험금이며, 32.1%에 해당하는 72가구는 퇴직금으로 나타났다.

9) 참고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보험계약 환급금은 가계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3-11> 가구의 연간 총 기타소득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379(100.0)	4,045(100.0)
기타소득 없음	3,908(89.2)	3,821(94.5)
기타소득 있음	471(10.8)	224(5.5)
평 균	1,110.2	1057.4
100만원 미만	68(14.4)	26(11.6)
100만 ~250만원 미만	109(23.1)	49(21.9)
250만 ~500만원 미만	100(21.2)	42(18.3)
500만 ~1,000만원 미만	79(16.8)	33(14.7)
1,000만 ~2,500만원 미만	66(14.0)	41(18.8)
2,500만원 이상	46(9.8)	31(13.8)
모름 / 무응답	3(0.0)	2(0.0)

<표 3-12> 1998년 가구의 항목별 연간 총 기타소득

	빈도(가구)	비중(%)
보험금(보험계약금 포함)	134	59.8
퇴직금	72	32.1
기타	18	8.0
전 체	224	100.0

제 2 절 가계소비

생활비란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저축은 한 해 동안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1. 생활비

3차년도 조사의 월평균 생활비는 107만 6천원으로 2차년도 100만 8천원에 비해 대략 7만원 가량이 증가하였다. 1, 2차년도 조사와 차이 없이 월평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소비 지출을 하는 가구가 26%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이 20.7%로 그 다음이다. 150

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 2차년도에는 변화가 없다가 3차년도에 14.5%로 약 3%가량 증가하였으며, 200만원 이상의 경우는 2차년도 8.7%에서 3차년도에 12.6%로 대략 4%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5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는 가구는 1차년도에 18.6%, 2차년도에 16.2%, 3차년도에 15.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결국 3차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가계의 월평균 소비액은 낮은 소비 범주에 속하는 가구의 수가 줄고 높은 소비범주에 속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범주별로 생활비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43.3%이고,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37.1%로 소득이 적은 만큼 적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45.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3.5%를 차지한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34.6%로 가장 높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26.9%, 200만원 이상 지출이 25.6%이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57.6%가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며, 19.1%가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6.0%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평균 생활비 지출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거주지역별로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가구가 26.4%로 가장 많으며,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이 각각 19.4%로 분포되어 있어 대체로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가구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이 23.5%로 그 다음이다. 200만원 이상은 서울지역에 비해 9.2%p가 적은 10.2%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서울지역 8.5% 보다 7.4%p가 많은 15.9%가 분포되어 있다.

<표 3-13> 월평균 생활비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 (100.0)	4,379 (100.0)	4,045 (100.0)
50만원 미만	930 (18.6)	710 (16.2)	631 (15.6)
50만~75만원 미만	1,100 (22.0)	920 (21.0)	836 (20.7)
75만~100만원 미만	583 (11.7)	609 (13.9)	418 (10.3)
100만~150만원 미만	1,263 (25.3)	1,244 (28.4)	1,051 (26.0)
150만~200만원 미만	586 (11.7)	506 (11.6)	588 (14.5)
200만원 이상	524 (10.5)	333 (8.7)	511 (12.6)
모름/무응답	14 (0.3)	7 (0.2)	10 (0.3)
평균(만원)	101.0	100.8	107.6

<표 3-14> 가구소득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 가구, %)

소득 생활비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4045(100.0)	1,308(100.0)	1,499(100.0)	762(100.0)	476(100.0)
50만원 미만	631(15.6)	566(43.3)	57(3.8)	4(0.5)	4(0.8)
50만~75만원 미만	836(20.7)	485(37.1)	287(19.1)	45(5.9)	19(4.0)
75만~100만원 미만	418(10.3)	120(9.2)	238(1.6)	49(6.4)	11(2.3)
100만~150만원 미만	1,051(26.0)	83(6.3)	687(45.8)	205(26.9)	76(16.0)
150만~200만원 미만	588(14.5)	30(2.3)	203(13.5)	264(34.6)	91(19.1)
200만원 이상	511(12.6)	19(1.5)	23(1.5)	195(25.6)	274(57.6)
모름/무응답	10(0.2)	5(0.4)	4(0.3)	0(0.0)	1(0.2)

도 지역의 경우는 광역시와 같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이 21.1%로 그 다음 순이며, 50만원 미만은 광역시보다 4.4%가 많은 19.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와 도 지역은 비슷한 양상이나 낮은 생활비 지출 비율은 도지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가구원이 1명인 단신가구의 경우 65.9%가 50만원 미만에 분포되어 있어 적은 소득만큼이나 적은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경우 35.9%가 50만원 이상 75만원의 생활비 지출을 하며 비슷한 비율인 32.5%가 50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의 경우 28.3%가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의 지출을 하며, 26.9%가 100만원 이상 150만원의 생활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32.5%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9.4%로 그 다음이다.

5인 이상의 가구에서도 3인 가구나 4인 가구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지출 비율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인이나 4인 가구와는 다르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의 경우가 각각 22.4%, 24.5%로 높게 나타나 100만원 이상 150만원 지출비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6명 이상의 경우 3인 4인 5인 가구와 같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비율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무려 33%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생활비는 지출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대다수의 조사 가구는 100만원 이상 150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거주지역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 가구, %)

생활비 \ 지역	전 체	서울	광역시	도
전 체	4045(100.0)	1,018(100.0)	1,249(100.0)	1,778(100.0)
50만원 미만	631(15.6)	87(8.5)	198(15.9)	346(19.5)
50만~75만원 미만	836(20.7)	166(16.3)	294(23.5)	376(21.1)
75만~100만원 미만	418(10.3)	98(9.6)	131(10.5)	189(10.6)
100만~150만원 미만	1,051(26.0)	269(26.4)	324(25.9)	458(25.8)
150만~200만원 미만	588(14.5)	198(19.4)	170(13.6)	220(12.4)
200만원 이상	511(12.6)	198(19.4)	128(10.2)	185(10.4)
모름/무응답	10(0.2)	2(0.2)	4(0.3)	4(0.2)

<표 3-16> 가구원수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 가구, %)

생활비 \ 소득	전 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전 체	4,045 (100.0)	399 (100.0)	554 (100.0)	787 (100.0)	1,529 (100.0)	567 (100.0)	209 (100.0)
50만원 미만	631(15.6)	263(65.9)	180(32.5)	101(12.8)	56(3.7)	21(3.7)	10(4.8)
50만~75만원 미만	836(20.7)	79(19.8)	199(35.9)	223(28.3)	251(16.4)	69(12.2)	15(7.2)
75만~100만원 미만	418(10.3)	19(4.8)	44(7.9)	96(12.2)	193(12.6)	56(9.9)	10(4.8)
100만~150만원 미만	1,051(26.0)	32(8.0)	86(15.5)	212(26.9)	497(32.5)	153(27.0)	71(34.0)
150만~200만원 미만	588(14.5)	5(1.3)	30(5.4)	98(12.5)	296(19.4)	127(22.4)	32(15.3)
200만원 이상	511(12.6)	0(0.0)	13(0.3)	56(7.1)	234(15.3)	139(24.5)	69(33.0)
모름/무응답	10(0.2)	1(0.3)	2(0.4)	1(0.1)	2(0.1)	2(0.4)	2(1.0)

2. 저 축

3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한 가구는 1,919가구로 전체의 47.4%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8만 1천원이다.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의 경우는 438가구로 저축이 있는 가구의 22.8%를 차지한다. 이는 2차년도의 25.4%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변동이 없고,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의 경우는 27.1%로 2차년도 23.3%에 비해 대략 4%p가량 증가하였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비율은 11.3%로 2차년도 8.3%에 비해 3%p 정도 증가하였고, 150만원 이상도 3.7%에서 6.5%로 3%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54.1%가 25만

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34.3%가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은 소득으로 인하여 저축액도 낮게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는 35.6%가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고, 30.6%가 25만원 미만, 27.3%가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비해 저축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37.8%가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22.0%가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5.0%가 100만원 이상 150만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나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의 비율은 소득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와 크게 차이하지 않으나,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비율이 15.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서는 30.3%로 두배 정도 상승하고, 150만원 이상 저축하는 가구의 비율도 29.8%나 되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액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25만원 미만의 저축액 비율은 17.0%로 광역시 28.2%나 도지역 23.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와 도지역의 경우는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범주에 80%가 넘는 비율이 분포되어 있어 대다수의 가구가 75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이상의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율은 서울과 광역시는 각각 7.4%, 7.8%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도지역의 경우는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가구원수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구에서 75만원 미만의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월평균 저축

(단위 : 가구, %, 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5,000(100.0)	4,397(100.0)	4,045(100.0)
저축 안함	2,290(45.8)	2,100(48.0)	2,126(52.6)
저축함	2,710(54.2)	2,279(52.0)	1,919(47.4)
평균	61.8	46.6	58.1
10만원 미만	124(4.6)	168(7.4)	-
10만~25만원 미만	482(17.8)	578(25.4)	438(22.8)
25만~50만원 미만	664(24.5)	593(26.0)	505(26.3)
50만~75만원 미만	849(31.4)	532(23.3)	520(27.1)
75만~100만원 미만		111(4.9)	115(6.0)
100만~150만원 미만	554(20.5)	189(8.3)	217(11.3)
150만원 이상		84(3.7)	124(6.5)
모름/무응답	35(1.3)	24(1.1)	0(0.0)

<표 3-18> 가구소득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가구,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1,919(100.0)	172(100.0)	827(100.0)	547(100.0)	373(100.0)
25만원 미만	438(22.8)	93(54.1)	253(30.6)	78(14.3)	14(3.7)
25만~50만원 미만	505(26.3)	59(34.3)	294(35.6)	120(22.0)	32(8.5)
50만~75만원 미만	520(27.1)	12(7.0)	226(27.3)	207(37.8)	75(20.1)
75만~100만원 미만	115(6.0)	2(1.2)	35(4.2)	50(9.1)	28(7.5)
100만~150만원 미만	217(11.3)	3(1.7)	19(2.3)	82(15.0)	113(30.3)
150만원 이상	124(6.5)	3(1.7)	0(0.0)	10(1.8)	111(29.8)

<표 3-19> 거주지역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가구, %, 만원)

	전 체	서울	광역시	도
전 체	1,919(100.0)	565(100.0)	563(100.0)	791(100.0)
25만원 미만	438(22.8)	96(17.0)	159(28.2)	183(23.1)
25만~50만원 미만	505(26.3)	145(25.7)	141(25.0)	219(27.7)
50만~75만원 미만	520(27.1)	156(27.6)	147(28.1)	217(27.4)
75만~100만원 미만	115(6.0)	37(6.5)	33(5.9)	45(5.7)
100만~150만원 미만	217(11.3)	89(15.8)	39(6.9)	89(11.3)
150만원 이상	124(6.5)	42(7.4)	44(7.8)	38(4.8)

<표 3-20> 가구원수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 가구, %, 만원)

	전 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전 체	1,919 (100.0)	118 (100.0)	164 (100.0)	371 (100.0)	871 (100.0)	300 (100.0)	95 (100.0)
25만원 미만	438(22.8)	34(28.8)	44(26.8)	82(22.1)	189(21.7)	67(22.3)	22(23.2)
25만~50만원 미만	505(26.3)	34(28.8)	46(28.0)	114(30.7)	215(24.7)	74(24.7)	22(23.2)
50만~75만원 미만	520(27.1)	28(23.7)	37(22.6)	101(27.2)	243(27.9)	85(28.3)	26(27.4)
75만~100만원 미만	115(6.0)	10(8.5)	5(3.0)	23(6.2)	56(6.4)	15(5.0)	6(6.3)
100만~150만원 미만	217(11.3)	10(8.5)	26(15.9)	35(9.4)	100(11.5)	36(12.0)	10(10.5)
150만원 이상	124(6.5)	2(1.7)	6(3.7)	16(4.3)	68(7.8)	23(7.7)	9(9.5)

제 3 절 자산 및 부채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부동산 자산에는 현재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타인에게 지불한 임차보증금이 포함된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좌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되며, 가구의 총 금융자산은 이들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이다.

1. 부동산자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821가구로 전체 가구의 20.3%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유부동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토지가 38.9%로 가장 많고, 주택이 33.5%, 건물이 14.3%, 임야가 11.3% 순이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주택의 소유는 37%에서 33.5%로 대략 4%p 가량 감소하였고, 토지는 47.4%에서 38.9%로 대략 9%p가량 감소하였다. 건물의 경우는 2차년도에 13.3%에서 3차년도에 14.3%로 1%p가량 소폭 증가하였다. 소유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5.4%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경우가 30.1%,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3.8%순이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주택이나 상가, 임야, 토지 등을 빌려 쓰고 있는 가구는 2,131가구로 전체 가구의 19.0%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가구 중 대다수인 77.7%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토지가 8.8%, 주택이 8.3% 순이다.

<표 3-21> 부동산자산 소유 여부와 종류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509(100.0)	4,045(100.0)
부동산 소유 안함		3,562(79.0)	3,224(79.7)
부동산 소유 함		947(21.0)	821(20.3)
소유부동산 종류	주택	351(37.1)	275(33.5)
	건물	126(13.3)	117(14.3)
	임야	126(13.3)	93(11.3)
	토지	449(47.4)	319(38.9)
	기타	11(0.1)	17(2.1)

<표 3-22> 부동산자산 소유 여부와 시가 총액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509(100.0)	4,045(100.0)
부동산 소유 안함		3,562(79.0)	3,224(79.7)
부동산 소유함		947(21.0)	821(20.3)
소유부동산 시가 총액	1천만원 미만	84(8.9)	51(6.2)
	1천만~5천만원 미만	273(28.8)	247(30.1)
	5천만~1억원 미만	229(24.4)	195(23.8)
	1억~5억원 미만	231(28.2)	291(35.4)
	5억~10억원 미만	33(3.5)	19(2.3)
	10억~20억원 미만	12(1.3)	9(1.1)
	20억원 이상	1(0.1)	-
잘모르겠음		46(4.9)	9(1.1)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지불한 임차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경우가 39.0%로 가장 많으나, 2차년도의 52.4%에 비해 대략 12%p가량 감소하였다.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16.8%로 2차년도에 비해 대략 5%p가량 감소하였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는 12.2%에서 6.5%로 대략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1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와,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 범주에서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3차년도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응답을 모름/무응답으로 한 가구가 30.4%가량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23> 부동산 임차 여부와 임차 종류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509(100.0)	4,045(100.0)
부동산 임차 안함		3,904(86.6)	3,275(81.0)
부동산 임차함		605(13.4)	770(19.0)
임차부동산 종류 ¹⁾	주택	57(9.4)	64(8.3)
	건물	475(78.5)	598(77.7)
	임야	4(0.6)	12(1.6)
	토지	52(8.6)	68(8.8)
	기타	22(3.6)	28(3.6)

<표 3-24> 부동산 임차 여부와 임차보증금

(단위 : 가구, %)

		빈도(가구)	비중(%)
전 체		4,509(100.0)	4,045(100.0)
부동산 임차 안 함		3,904(86.6)	3,275(81.0)
부동산 임차 함		605(13.4)	770(19.0)
	임차보증금 총액		
	보증금 없음	42(6.9)	45(5.8)
	1천만원 미만	134(22.1)	129(16.8)
	1천만~5천만원 미만	317(52.4)	300(39.0)
	5천만~1억원 미만	74(12.2)	50(6.5)
	1억원 이상	12(2.0)	12(1.6)
	모름/무응답	26(4.3)	234(30.4)

2. 금융자산

3차년도에 조사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131가구로 전체의 52.7%를 차지하며, 이는 2차년도의 70.8%보다 대략 18%p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가구의 총 금융자산은 평균 1천 74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천 856만 5천원에 비하여 560만원 가량이 감소하였다.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범주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상 2천 5백만원 미만의 경우가 27.6%로 가장 많고, 250만원 미만이 23.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9.2%,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0.4% 순이다. 1억원 이상의 경우는 3.4%로 2차년도 2.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표 3-25> 가구의 총 금융자산

(단위 :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509(100.0)	4,045(100.0)
금융자산 없음		1,315(29.2)	1,914(47.3)
금융자산 있음		3,194(70.8)	2,131(52.7)
	평균(만원)	1,856.5	1,741.4
	250만원 미만	694(21.7)	497(23.3)
	250만~500만원 미만	385(12.1)	221(10.4)
	500만~1천만원 미만	569(17.8)	409(19.2)
	1천만~2천5백만원 미만	846(26.5)	588(27.6)
	2천5백만~5천만원 미만	376(11.8)	195(9.2)
	5천만~1억원 미만	188(5.9)	125(5.9)
	1억원 이상	89(2.8)	72(3.4)
	모름/무응답	47(1.5)	24(1.1)

항목별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기타항목을 제외하고는 주식·채권·신탁의 평균 자산이 2천 425만 2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2천 388만 2천원, 은행예금이 1천 719만 9천원 순이다.

<표 3-26> 가구항목별 금융자산

	전 체	은행 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 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기타 금융자산
평균 (만원)	1,741.4	1,719.9	2,425.2	750.0	591.2	2,388.2	2,574.0

3. 가구의 부채

3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1,409가구로 전체의 34.8%를 차지한다. 이는 2차년도에 비해 대략 15%정도 가량이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평균 부채 잔액은 2차년도 3천 647만 6천원에서 3차년도 2천 930만 6천원으로 대략 717만원 정도가 감소하였다. 부채잔액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차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다만 1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31.9%에서 37.4%로 6%가량 증가하였고, 1억원 이상의 경우가 7.3%에서 5.5%로 2%가량 다소 감소하였다.

부채에 대한 월평균 상환금은 32만 6천원으로 2차년도의 39만 3천원에 비해 6만 7천원 감소하였다.

<표 3-27> 가구의 부채유무와 부채잔액

(단위 :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509 (100.0)	4,045 (100.0)
부채 없음		2,227 (49.4)	2,636 (65.2)
부채 있음		2,282 (50.6)	1,409 (34.8)
부 채 잔 액	평균(만원)	3,647.6	2,930.6
	500만원 미만	320 (14.0)	175 (12.4)
	500만~1000만원 미만	320 (14.0)	216 (15.3)
	1,000만~2500만원 미만	729 (31.9)	525 (37.3)
	2,500만~5000만원 미만	437 (19.1)	274 (19.4)
	5,000만~1억만원 미만	278 (12.2)	137 (9.7)
	1억원 이상	167 (7.3)	77 (5.5)
	모름/무응답	31 (1.4)	5 (0.4)

<표 3-28> 가구의 월평균 상환금

(단위 :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509(100.0)	4,045(100.0)
상환금 없음		2,408(53.4)	2,655(65.6)
상환금 있음		2,227(49.4)	1,390(34.4)
	평 균	39.3	32.6
	10만원 미만	341(14.9)	404(29.1)
	10만~25만원 미만	562(24.6)	47(33.9)
	25만~50만원 미만	389(17.1)	282(20.3)
	50만~100만원 미만	208(9.1)	148(10.7)
	100만원 이상	127(5.6)	85(6.1)
	모름/무응답	65(2.8)	-

월평균 상환금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이 33.9%로 가장 많고, 10만원 미만이 29.1%,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0.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0.7% 순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부채 잔액이나 상환금 모두 전세금/임대 보증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다. 앞으로 부어야 할 계의 경우 부채 잔액은 가장 적으나, 월평균 상환금은 40.6%로 전세금/임대 보증금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368가구로 전체의 58.5%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비의 경우가 34.4%로 가장 높으며, 2차년도에 비해 12%p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다. 식비의 경우는 29.3%로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었으며, 1차년도 18.1%, 2차년도 23.1%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채무의 원리금 상환금의 경우도 가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3차년도의 경우 21.8%로 교육비와 식비 다음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비에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의 비율은 2차년도 12.7%에 비해 대략 5%p 가량 감소하여 7.2%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에 어려움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차년도에 16.7%, 2차년도에 16.1%였던 것이 3차년도에 3.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3-29> 가구의 항목별 부채잔액과 월평균 상환금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 기관부채	개인적으로 빌린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앞으로 부어야 할 계	기 타
평균부채잔액(만원)	2930.6	1,480.6	1,785.5	4,637.2	606.5	3,365.0
월평균 원금/이자상환금(만원)	32.6	18.7	13.5	519.7	40.6	16.1

<표 3-30>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여부와 내용

(단위 :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 체	4,997 (100.0)	4,509 (100.0)	4,045 (100.0)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1,874 (37.5)	1,810 (40.1)	1,677 (41.5)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3,123 (62.5)	2,699 (59.9)	2,368 (58.5)
식비	906 (18.1)	1,042 (23.1)	694 (29.3)
교육비	1,260 (25.2)	1,020 (22.6)	815 (34.4)
채무의 원리금 상환	1,121 (22.6)	1,106 (24.5)	516 (21.8)
의료비	627 (12.5)	573 (12.7)	170 (7.2)
주거비	834 (16.7)	727 (16.1)	89 (3.8)
기타	292 (5.8)	329 (7.3)	84 (3.6)

제 4 장

자녀 교육

제 1 절 사교육·보육시설 현황

3차년도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전체 4,045가구 중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1.7%인 2,093가구이다. 자녀의 수는 2명인 가구가 56.6%로 가장 많으며, 1명인 가구가 35.2%, 3명인 가구가 7.4%, 그리고 4명 이상인 가구가 0.9%의 순이다.

고등학생(재수생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보육시설 및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389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2,093가구의 66.4%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의 대다수인 72%는 1곳을 이용하고 있으며, 2곳을 이용하는 경우는 18.4%, 3곳은 6.8%, 4곳은 1.9%, 5곳 이상은 0.9% 순이다. 주당 보육시설 및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횟수는 5회가 7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6회가 10.6%, 3회가 8.0%, 2회가 4.9% 순이다.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사교육기관을 나누어 살펴보면,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는 1,179가구로 이용 가구의 85.6%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198가구로 이용가구의 14.4%이다. 사교육기관의 경우 보습학원이 72.8%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학습지가 6.3%,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이 2.5%, 개인·그룹과외가 2.4% 순이다. 보육시설의 경우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이 5.4%로 가장 많으며, 어린이집이 4.7%, 놀이방이 1.7% 순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 자녀보다는 보습학원을 주로 이용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고등학생(재수생 포함) 이하 자녀 유무

		빈도(가구)	비율(%)
전 체		4,045	100.0
자녀 없음		1,952	48.3
자녀 있음		2,093	51.7
	1명	736	35.2
	2명	1185	56.6
	3명	154	7.4
	4명 이상	18	0.9

<표 4-2>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빈도(명)	비율(%)
전체			2,093	100.0
이용 여부	이용하지 않음		704	33.6
	이용함		1,389	66.4
이용 사교육 기관수	1곳	1000	72.0	
	2곳	256	18.4	
	3곳	94	6.8	
	4곳	27	1.9	
	5곳	12	0.9	
주당 이용 횟수	1회	24	1.9	
	2회	64	4.9	
	3회	104	8.0	
	4회	18	1.4	
	5회	942	72.5	
	6회	137	10.6	
	7회	10	0.8	

가구 특성별로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12.9%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8.4%, 300만원 이상이 50.6%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의 경우 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7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명인 가구가 74.6%로 나타났다. 자녀연령을 나누어 보면 2~7세의 미취학 아동기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7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13세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가 73.7%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30세 이상에서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50~59세 연령대에서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가구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 이상이 53.6%, 고졸이 4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사교육·보육시설 종류

			빈 도(명)	비 율(%)
전 체			1,377 ¹⁾	100.0
사교육· 보육시설 종류	사교육 기관	보습학원	1,003	72.8
		개인·그룹과외	33	2.4
		학습지	86	6.3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34	2.5
		방과후 교실	23	1.7
	보육시설	탁아소	2	0.2
		어린이집	65	4.7
		놀이방	24	1.7
		유아방	5	0.4
		직장보육시설	2	0.2
		유치원(정규시간이외)	14	1.0
		유치원(정규시간만당)	74	5.4
		기타	12	0.9

주 : 1) 보육시설·사교육기관 이용 가구 1,389가구 중 무응답 12가구 제외.

자녀 연령대에 따라 이용하는 사교육·보육시설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1곳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비율은 중·고등학교 학령기로 갈수록 증가한다. 2곳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은 13세 이하에서 22% 정도로 나타났고, 2~7세의 경우 3곳이 10.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 개수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연령별로 주당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연령까지 70%가 넘는 비율이 주당 5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4~16세의 중학교 학령기에 들면서 이 비율은 61.4%로 감소하였다가 17~20세의 고등학교 학령기에 다시 47.6%로 감소하였다. 주당 6회 이용의 경우 17~20세 자녀가 29.1%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2~7세의 미취학 아동이나 8~13세의 초등학교 학령기에 비해 2세 미만의 경우가 각각 4.5%p, 7.8%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보육시설·교육기관에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14.2시간이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10시간 미만이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0~20시간 미만이 28.1%, 20~30시간 미만이 14.2%, 40시간 이상이 5.9%, 30~40시간 미만이 4.8% 순이다. 이는 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가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겨야 할 어린 자녀보다는 보습학원을 주로 이용하는 학령기 자녀들이 많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 혹은 사교육기관 1곳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육시설·사교육기관에 보내는 시간이 주당 10시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특성

(단위 : 가구, %)

특 성	범 주	이용함	이용 안 함
전 체	1,308(100.0)	1,389(66.4)	704(33.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9(12.9)	1,139(87.1)
	100만~200만원 미만	610(40.7)	889(59.3)
	200만~300만원 미만	369(48.4)	393(51.6)
	300만원 이상	241(50.6)	235(49.4)
자녀수	1명	374(50.8)	362(49.2)
	2명	884(74.6)	301(25.4)
	3명	120(77.9)	34(22.1)
	4명 이상	11(61.1)	7(38.9)
자녀 연령 ¹⁾	2세 미만	85(46.7)	97(53.3)
	2~7세	588(79.0)	156(21.0)
	8~13세	423(73.7)	151(26.3)
	14~16세	177(52.2)	162(47.8)
	17~20세	108(44.4)	135(55.6)
가구주 ²⁾ 연령	15~29세	229(17.4)	1,091(82.7)
	30~39세	619(45.5)	747(54.5)
	40~49세	581(40.5)	53(59.6)
	50~59세	71(60.7)	68(39.3)
	60세 이상	49(53.6)	288(46.5)
가구주 교육수준	무학	11(4.4)	240(95.6)
	고졸 미만	229(17.4)	1,091(82.7)
	고졸	623(45.5)	747(54.5)
	대학재학 및 중퇴	36(40.5)	53(59.6)
	전문대졸	105(60.7)	68(39.3)
	대졸 이상	332(53.6)	288(46.5)

주 : 1) 자녀 연령 특성에 분석된 자녀는 1,381명.

2) 가구주 연령과 교육수준 특성에 분석된 가구주는 1,336명.

<표 4-5> 자녀 연령별 이용 사교육·보육시설 개수

(단위 : 가구, %)

	전 체	1곳	2곳	3곳	4곳	5곳
전 체	1,381(100.0)	992(71.8)	256(18.5)	94(6.8)	27(2.0)	12(0.9)
2세 미만	85(100.0)	59(69.4)	19(22.4)	5(5.9)	2(2.4)	1(0.0)
2~7세	588(100.0)	369(62.8)	130(22.1)	61(10.4)	18(3.1)	10(1.7)
8~13세	423(100.0)	305(72.1)	86(20.3)	23(5.4)	7(1.7)	2(0.5)
14~16세	177(100.0)	161(91.0)	11(6.2)	5(2.8)	0(0.0)	0(0.0)
17~20세	108(100.0)	98(90.7)	10(9.3)	0(0.0)	0(0.0)	0(0.0)

<표 4-6> 자녀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횟수

(단위 : 가구, %)

	전 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전 체	1,292(100.0)	24(1.9)	63(4.9)	104(8.1)	18(1.4)	937(72.5)	136(10.5)	10(0.8)
2세 미만	70(100.0)	6(8.6)	2(4.3)	1(1.4)	0(0.0)	50(71.4)	10(14.3)	0(0.0)
2~7세	550(100.0)	12(2.2)	23(4.2)	27(4.9)	2(0.4)	431(78.4)	54(9.8)	1(0.2)
8~13세	398(100.0)	2(0.5)	17(4.3)	45(11.3)	6(1.5)	302(75.9)	26(6.5)	0(0.0)
14~16세	171(100.0)	2(1.2)	14(8.2)	24(14.0)	7(4.1)	105(61.4)	16(9.4)	3(1.8)
17~20세	103(100.0)	2(1.9)	6(5.8)	7(6.8)	3(2.9)	49(47.6)	30(29.1)	6(5.8)

<표 4-7> 사교육·보육시설 주당 이용시간

		빈 도(명)	비 율(%)
전 체		1,389	100.0
일주일 평균 사교육· 보육시설에 보내는 시간	10시간 미만	654	47.1
	10~20시간 미만	390	28.1
	20~30시간 미만	197	14.2
	30~40시간 미만	66	4.8
	40시간 이상	82	5.9
	평균(시간)	14.2	

<표 4-8> 자녀 연령별 일주일 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 가구, %)

	전 체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전 체	1,381(100.0)	561(40.6)	322(23.3)	241(17.5)	117(8.5)	140(10.1)
2세 미만	85(100.0)	34(40.0)	5(5.9)	11(12.9)	16(18.8)	19(22.3)
2~7세	588(100.0)	275(46.8)	86(14.6)	64(10.9)	79(13.4)	84(14.3)
8~13세	423(100.0)	182(43.0)	136(32.2)	84(19.9)	15(3.6)	6(1.4)
14~16세	177(100.0)	48(27.1)	67(37.9)	50(28.3)	4(2.3)	8(4.5)
17~20세	108(100.0)	22(20.4)	28(25.9)	32(29.6)	3(2.8)	23(21.3)

초등학교 학령기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40%대의 비율이 주당 10시간 미만에 분포되어 있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0%대의 비율을 나타낸다. 학령기에 들면서 주당 10~20시간의 이용 비율이 30%대로 증가하여 8~13세의 초등학교 학령기인 경우 32.2%, 14~16세의 중등학교 학령기의 경우 37.9%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17~20세의 연령대에서 25.9%로 1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시간 미만의 이용 비율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17~20세의 경우가 29.6%, 14~16세의 경우가 28.3%, 8~13세의 경우가

19.9%이다. 이와 같이 학령기에 접어드는 8세 이후부터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점차 증가하여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자녀 1명당 보육시설·교육기관에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2만 3천원이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가 39.5%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21.5%,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4.3%,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0.5%, 5만원 미만이 9.1% 순이다. 월평균 5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는 1.4%뿐이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높은 3.7% 수준이다.

자녀 연령별로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의 경우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9.4%, 5만원 미만이 21.2% 순으로 84.7%가 15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기의 경우는 50.5%가 5만원 이상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24.0%가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기에 비해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을 알 수 있다. 8~13세의 경우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0.0%,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17.0%로 2~7세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령기에 접어들어 이 시기에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비율이 10.9%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 이후에 중·고등학교 학령기인 14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표 4-9> 사교육·보육시설의 월평균 비용

		빈 도(명)	비 율(%)
전 체		1,389	100.0
사교육·보육시설 월평균 비용	5만원 미만	126	9.1
	5만~10만원 미만	548	39.5
	10만~15만원 미만	299	21.5
	15만~20만원 미만	199	14.3
	20만~30만원 미만	146	10.5
	30만~50만원 미만	51	3.7
	50만원 이상	20	1.4
	평균(만원)	12.3	

<표 4-10> 자녀 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단위 : 가구, %)

	전 체	2세 미만	2~7세	8~13세	14~16세	17~20세
전 체	1,381(100.0)	85(100.0)	588(100.0)	423(100.0)	177(100.0)	108(100.0)
5만원 미만	125(9.1)	18(21.2)	64(10.9)	30(7.1)	10(5.7)	3(2.8)
5만~10만원 미만	546(39.5)	25(29.4)	297(50.5)	167(40.0)	40(22.6)	17(15.7)
10만~15만원 미만	297(21.5)	29(34.1)	141(24.0)	72(17.0)	39(22.0)	16(14.8)
15만~20만원 미만	196(14.2)	7(8.2)	55(9.4)	90(21.3)	31(17.5)	13(12.0)
20만~30만원 미만	146(10.6)	5(5.9)	26(4.4)	46(10.9)	42(23.7)	27(25.0)
30만~50만원 미만	51(3.7)	0(0.0)	5(0.9)	15(3.6)	12(6.8)	19(17.6)
50만원 이상	20(1.5)	1(1.2)	0(0.0)	3(0.7)	3(1.7)	13(12.0)
평균(만원)	12.3	12.1	5.1	7.8	11.6	30.7

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30만원 이상 50만원 비율이 6.8%에서 17~20세에 17.6%로 1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17~20세에 12.0%로 그 이전 연령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많아지며, 미취학 아동기, 초등학교 학령기,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 수준에서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 소득수준까지 40%대를 유지하던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비용 지불 비율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서 35.3%로 감소한다.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까지는 7%대의 비율을 나타내나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범주에서 14.7%로 두 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은 소득수준 200만원을 기점으로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일수록 20만원 이상의 사교육·보육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소득수준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단위 : 가구, %)

	전 체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 체	1,381(100.0)	168(100.0)	606(100.0)	368(100.0)	239(100.0)
5만원 미만	125(9.1)	23(13.7)	67(11.1)	23(6.3)	12(5.0)
5만~10만원 미만	546(39.5)	69(41.1)	268(44.2)	130(35.3)	79(33.1)
10만~15만원 미만	297(21.5)	41(24.4)	139(22.9)	69(18.8)	48(20.1)
15만~20만원 미만	196(14.2)	17(10.1)	78(12.9)	65(17.7)	36(15.1)
20만~30만원 미만	146(10.6)	13(7.7)	44(7.3)	54(14.7)	35(14.6)
30만~50만원 미만	51(3.7)	3(1.8)	9(1.5)	22(6.0)	17(7.1)
50만원 이상	20(1.5)	2(1.2)	1(0.2)	5(1.4)	12(5.0)

<표 4-12> 자녀수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단위 : 가구, %)

	전 체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 체	1,381(100.0)	368(100.0)	883(100.0)	119(100.0)	11(100.0)
5만원 미만	125(9.1)	30(8.2)	77(8.7)	15(12.6)	3(27.3)
5만~10만원 미만	546(39.5)	110(29.9)	371(42.0)	62(52.1)	3(27.3)
10만~15만원 미만	297(21.5)	90(24.5)	187(21.2)	17(14.3)	3(27.3)
15만~20만원 미만	196(14.2)	55(15.0)	130(14.7)	11(9.2)	0(0.0)
20만~30만원 미만	146(10.6)	46(12.5)	87(9.9)	12(10.1)	1(0.9)
30만~50만원 미만	51(3.7)	24(6.5)	24(2.7)	2(1.7)	1(0.9)
50만원 이상	20(1.5)	13(3.5)	7(0.8)	0(0.0)	0(0.0)

<표 4-13> 사교육기관 이용의 경제적 부담 정도

		빈 도(명)	비 율(%)
전 체		1,384 ¹⁾	100.0
경제적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460	33.2
	약간 부담된다	494	35.7
	보통이다	315	22.8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94	6.8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21	1.5

주 1) :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 1,389가구 중 무응답 5가구 제외.

가구의 자녀수별 총 사교육·보육비용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9.9%이고 이 비율은 자녀가 2명 있는 가구에서는 42.0%, 자녀가 3명 있는 가구에서는 52.1%로 각각 12%, 22% 정도 증가하며, 자녀가 4명 이상 있는 가구에서는 27.3%로 감소한다. 자녀가 4명 이상 있는 가구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지불 비용의 비율이 각각 27.3%로 대부분의 가구가 2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5%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의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35.7%가 약간 부담된다고 하였고, 33.2%가 매우 부담된다고 하여 대략 70%의 가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제 1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 경제활동상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는 크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구와 주부나 군인 등 비학생인구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세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

<표 5-1>과 [그림 5-1]은 개인 응답자들의 1-2-3차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차 55.9%, 2차 55.6%, 3차 54.6%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차 44.1%, 2차 44.4%, 3차 45.4%로 증가했다. 또한 실업자의 비중은 1차 9.1%, 2차 3.7%, 3차 2.7%로 점차 감소했고, 취업자의 비중은 1차 46.8%에서 2, 3차 51.9%로 증가했으며, 미취업자는 1차 50.2%, 2차 48.1%, 3차 48.1%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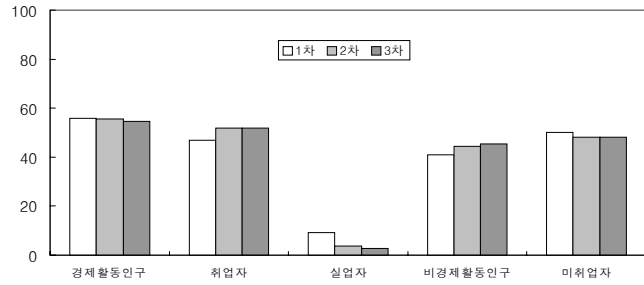
<표 5-1> 1-2-3차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명,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미취업자
1998년 1차(구성비)	7,682(55.9)	6,427(46.8)	1,255(9.1)	5,635(44.1)	6,890(50.2)
1999년 2차(구성비)	6,538(55.6)	6,102(51.9)	436(3.7)	5,227(44.4)	5,663(48.1)
2000년 3차(구성비)	5,920(54.6)	5,624(51.9)	296(2.7)	4,922(45.4)	5,218(48.1)

주 : 구성비는 각 조사년도의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경제활동상태를 분류하는 기준 변수로는 1, 3차에는 설문종류로 2차에는 취업상태 변수를 사용함. 실업자는 미취업자 중 지난 1주 혹은 1개월 간 구직 여부와 취업 가능성 여부를 통해서 분류함.

[그림 5-1] 1-2-3차 경제활동상태 비교



<표 5-2>와 [그림 5-2], [그림 5-3]은 1-2-3차 취업자를 비교한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의 분포 변화를 보면 상용직은 1차 80.7%, 2차 72.3%, 3차 75.8%로 1차에 비해 4.9%p 감소했다. 반면 임시직은 1차 9.6%, 2차 14.2%, 3차 11.9%로 1차에 비해 2.3%p 증가했으며, 일용직 또한 3차 11.2%로 1차 9.6%에 비해 1.6%p 증가했다.

<표 5-2> 1-2-3차 취업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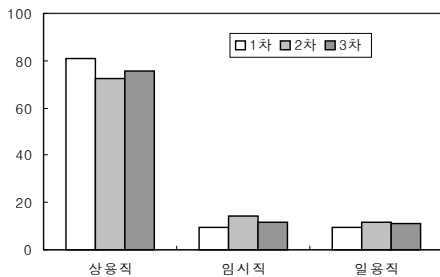
(단위 : 명,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고용주	가족종사자
1차 ¹⁾ 구성비	3,236(80.7)	385(9.6)	386(9.6)	1,886(78.1)	529(21.9)
2차 ²⁾ 구성비	2,819(72.3)	555(14.2)	464(11.9)	1,681(76.4)	520(23.6)
3차 ³⁾ 구성비	2,731(75.8)	430(11.9)	405(11.2)	1,532(75.8)	487(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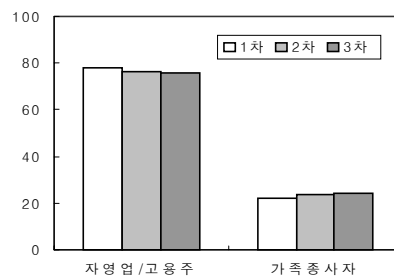
주 : 구성비는 임금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를 각각 기준으로 제시됨.

- 1) 임금근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 분류가 불가능한 1명 분석 제외.
- 2) 임금근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 분류가 불가능한 60명 분석 제외.
- 3) 임금근로자에서 설문종류와 종사상 지위가 일치하는 케이스만 분석에 사용. 두 변수 일치하지 않는 35명과 종사상 지위 모름/무응답인 2명을 포함하여 총 37명 분석에서 제외.

[그림 5-2] 1-2-3차 임금근로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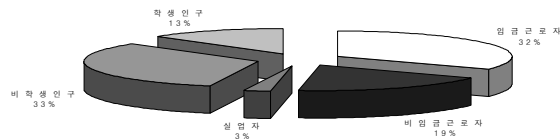


[그림 5-3] 1-2-3차 비임금근로자 비교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변화를 보면 자영업/고용주는 1차 78.1%, 2차 76.4%, 3차 75.8%로 1차에 비해 2.3%p 감소했다. 반면 가족종사자는 1차 21.9%, 2차 23.6%, 3차에 24.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차와 비교했을 때 상용직은 감소하고 임시직은 증가했으며, 자영업자/고용주는 감소하고 가족종사자는 증가하였다.

[그림 5-4]는 3차년도 개인 응답자의 경제활동상태이다. 개인 응답자 중 32%가 임금근로자이며, 19%가 비임금근로자, 13%가 학생인구, 33%가 비학생인구, 3%가 실업자이다.



<표 5-3> 성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0,842 (100)	3,603	2,021	296	3,524	1,398
남 성	5,235 (100)	2,193 (41.9)	1,190 (22.7)	171 (3.3)	919 (17.6)	762 (14.6)
여 성	5,607 (100)	1,410 (25.1)	831 (14.8)	125 (2.2)	2,605 (46.5)	636 (11.3)

주 :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의 구분은 현재 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하고 있는 경우를 학생인구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학생인구로 구분함.

<표 5-4>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0,842 (100)	3,603	2,021	296	3,524	1,398
15~19세	1,185 (100)	89 (7.5)	4 (0.3)	13 (1.1)	109 (9.2)	970 (81.9)
20~24세	912 (100)	365 (40.0)	18 (2.0)	48 (5.3)	140 (15.6)	341 (37.4)
25~29세	1,065 (100)	553 (51.9)	62 (5.8)	52 (4.9)	319 (30.0)	79 (7.4)
30~39세	2,355 (100)	1,136 (48.2)	482 (20.5)	78 (3.3)	654 (27.8)	5 (0.2)
40~49세	2,150 (100)	872 (40.2)	689 (32.0)	55 (2.6)	531 (24.7)	3 (0.1)
50~59세	1,435 (100)	421 (29.3)	452 (31.5)	32 (2.2)	530 (36.9)	-
60세 이상	1,740 (100)	167 (9.6)	314 (18.0)	18 (1.0)	1241 (71.3)	-

주 :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의 구분은 현재 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하고 있는 경우를 학생인구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학생인구로 구분함.

<표 5-3>의 성별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남성은 임금근로자가 41.9%, 비임금근로자 22.7%이며, 여성은 임금근로자가 22.7%, 비임금근로자가 14.8%이다. 남녀 취업자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보다 높다. 실업자는 남성이 3.3%, 여성이 2.2%로 남성이 1.2% 높다. 비학생인구는 여성이 46.5% 남성이 17.6%로 여성이 남성보다 28.9% 높는데 이는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비학생인구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인구는 남성이 14.6%, 여성이 11.3%이다.

<표 5-4>는 연령별 경제활동상태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20~24세 40%, 25~29세 51.9%, 30~39세 48.2%로 20대에서 30대에는 증가추세이지만, 40~49세 40.2%, 50~59세 29.3%, 60세 이상 9.6%로 40세 이후에는 감소한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24세 2.0%, 25~29세 5.8%, 30~39세 20.5%, 40~49세 32.0%로 40대까지 증가하지만, 50~59세 31.5%, 60세 이상 18.0%로 50대 이후는 감소추세이다. 연령별 실업자 비중은 20~24세와 25~29세의 실업자 비중이 각각 5.3%, 4.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여타의 통계치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학생인구는 15~19세 81.9%, 20~24세 37.4%, 25~29세 7.4%, 30~39세 0.2%로 25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다.

<표 5-5>는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이다. 고졸은 임금근로자가 40.3%, 비임금근로자 21.3%이며, 대학 재학 및 중퇴는 임금근로자 18.1%, 비임금근로자 4.5%, 대졸 이상은 임금근로자 55.2%, 비임금근로자 15.3%이다. 임금근로자는 전문대졸이 56.5%, 대졸 이상이 55.2%로 비중이 높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고졸 미만이 21.7%, 고졸이 21.3%로 높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임금근로자에,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비임금근로자에 높은 비중을 보인다. 실업자 비중은 무학이 0.7%, 고졸 미만이 2.0%, 고졸이 3.1%, 대학 재학 및 중퇴가 2.9%, 전문대졸이 5.8%, 대졸 이상이 3.3%로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실업자 비중이 높다. 비학생인구는 무학이 74.9%, 고졸 미만이 32.7%, 고졸이 35.2%, 대학 재학 및 중퇴가 4.4%이며, 학생인구는 고졸 미만 20.3%, 대학 재학 및 중퇴 70.0%, 대졸 이상 2.5%이다.

<표 5-5>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0,842 (100)	3,603	2,021	296	3,524	1,398
무학	726 (100)	62 (8.5)	115 (15.8)	5 (0.7)	544 (74.9)	-
고졸 미만	3,755 (100)	874 (23.3)	815 (21.7)	75 (2.0)	1,227 (32.7)	764 (20.3)
고졸	3,590 (100)	1,448 (40.3)	765 (21.3)	113 (3.1)	1,264 (35.2)	-
대학재학 및 중퇴	860 (100)	156 (18.1)	39 (4.5)	25 (2.9)	38 (4.4)	602 (70.0)
전문대졸	625 (100)	353 (56.5)	90 (14.4)	36 (5.8)	146 (23.4)	-
대졸 이상	1,284 (100)	709 (55.2)	197 (15.3)	42 (3.3)	304 (23.7)	32 (2.5)

주 : 분석대상자에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자도 포함됨.

<표 5-6>은 현재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서울이 34.7%, 대구 36.1%, 대전 36.2%, 울산 37.8%로 높다. 비임금근로자는 서울이 16.2%, 부산 15.1%, 대구 16.1%, 대전 15.9%, 인천 17.1%, 울산 13.0%, 경기 16.4%, 강원 17.5%, 충북 20.6%, 충남 31.2%, 경북 35.0%로 충남과 경북이 타지역에 비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5-6> 현재 거주지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전 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전 체	10,842 (100)	3,603	2,021	296	3,524	1,398
서울	2,760 (100)	957 (34.7)	446 (16.2)	70 (2.5)	921 (33.4)	366 (13.3)
부산	1,161 (100)	385 (33.2)	175 (15.1)	45 (3.9)	379 (32.6)	177 (15.2)
대구	634 (100)	229 (36.1)	102 (16.1)	26 (4.1)	185 (29.2)	92 (14.5)
대전	359 (100)	130 (36.2)	57 (15.9)	15 (4.2)	106 (29.5)	51 (14.2)
인천	706 (100)	235 (33.3)	121 (17.1)	14 (2.0)	239 (33.9)	97 (13.7)
광주	272 (100)	86 (31.6)	49 (18.0)	9 (3.3)	99 (36.4)	29 (10.7)
울산	315 (100)	119 (37.8)	41 (13.0)	6 (1.9)	102 (32.4)	47 (14.9)
경기	1,866 (100)	687 (36.8)	306 (16.4)	35 (1.9)	629 (33.7)	209 (11.2)
강원	274 (100)	76 (27.7)	48 (17.5)	14 (5.1)	101 (36.9)	35 (12.7)
충북	243 (100)	62 (25.5)	50 (20.6)	8 (3.3)	89 (36.6)	34 (14.0)
충남	308 (100)	78 (25.3)	96 (31.2)	6 (1.9)	97 (31.6)	31 (10.1)
전북	399 (100)	111 (27.8)	100 (25.1)	11 (2.8)	127 (31.5)	50 (12.5)
전남	272 (100)	77 (28.3)	76 (27.9)	6 (2.2)	83 (31.8)	30 (11.0)
경북	548 (100)	145 (26.5)	192 (35.0)	11 (2.0)	143 (30.5)	57 (10.4)
경남	725 (100)	226 (31.2)	162 (22.3)	20 (2.8)	224 (26.1)	93 (12.8)
서울	2,760 (100)	957 (34.7)	446 (16.2)	70 (2.5)	921 (30.9)	366 (13.3)
광역시	3,447 (100)	1,184 (34.3)	545 (15.8)	115 (3.3)	1,110 (33.4)	493 (14.3)
도	4,635 (100)	1,462 (31.5)	1,030 (22.2)	111 (2.4)	1,493 (32.2)	539 (11.6)

주 : 지역별 실업자의 구성비가 지역별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별 실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5.1%로 가장 높고 대전 4.2%, 대구 4.1%, 부산 3.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실업자 비중이 높다. 비학생인구는 서울 33.4%, 부산 32.6%, 경기 33.7%, 강원 36.9%, 전남 31.8%, 경북 30.5%, 경남 26.1%이며, 학생인구는 서울 13.3%, 부산 15.2%, 대구 14.5%, 경기 11.2%, 전북 12.5%, 경남 12.8%이다. 도시화율이 높은 서울과 광역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도지역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강원·대전·대구·부산은 실업자 비중이 높다.

2.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표 5-7>은 2차와 3차 두 조사시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 3차 조사 두 시점에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고있는 비중은 비임금근로자가 88.9%로 가장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83.9%, 임금근로자 83.5%, 실업자 14.0%이다. 즉 2차 조사시 비임금근로자였거나 임금근로자였던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가장 적었던 반면 실업자는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가장 크다.

각 경제활동상태별 2, 3차 변화는 다음과 같다. 2차에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였던 3,247명의 3차 경제활동상태는 83.5%가 임금근로자로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했으며, 3.2%가 비임금근로자, 2.7%가 실업자, 10.6%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했다. 2차에 비임금근로자였던 1,889명은 3차에 88.9%가 비임금근로자로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했으며, 4.0%는 임금근로자로, 0.7%는 실업자, 6.4%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했다.

실업자의 2, 3차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는 2차 실업자 중 14.0%가 3차에도 실업자로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했으며, 32.8%가 임금근로자, 5.6%가 비임금근로자, 47.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난다. 참고로 1, 2차 경제활동상태와 비교했을 때 1, 2차 모두 경제활동상태가 실업자인 비중은 13.1%였으며, 39.3%가 임금근로자로, 7.5%가 비임금근로자로 편입되었고, 40%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1, 2차와 2, 3차의 실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2, 3차에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한 비중이 1, 2차보다 7.5% 높으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비중은 9.4% 적다.

2차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4,143명의 3차 경제활동상태는 10.3%는 임금근로자로, 3.5%는 비임금근로자로, 2.4%는 실업자로, 83.9%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석된다. 1, 2차에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비중이 80.8%인 것과 비교했을 때 2, 3차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중은 3.1% 증가했다.

<표 5-7>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명, %)

2차 \ 3차	전 체	임 금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3,247 (100)	2,711 (83.5)	104 (3.2)	89 (2.7)
비임금	1,889 (100)	76 (4.0)	1,680 (88.9)	13 (0.7)	120 (6.4)
실업자	408 (100)	134 (32.8)	23 (5.6)	57 (14.0)	194 (47.5)
비경제활동인구	4,143 (100)	425 (10.3)	144 (3.5)	100 (2.4)	3,474 (83.9)

주 : 3차에 응답한 개인을 기준으로 2차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함. 3차에 응답한 개인 중 2차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경제활동상태가 파악 불가능한 1,155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 괄호 안의 구성비는 2차와 3차에 모두 응답한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비임.

<표 5-8> 남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명, %)

2차 \ 3차	전 체	임금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1,952 (100)	1,718 (88.0)	7 (3.6)	49 (2.5)	114 (5.8)
비임금	1,085 (100)	46 (4.2)	984 (90.7)	9 (0.8)	46 (4.2)
실업자	247 (100)	87 (35.2)	20 (8.1)	41 (16.6)	99 (40.1)
비경제활동인구	1,292 (100)	177 (13.7)	66 (5.1)	46 (3.6)	1,003 (77.6)

<표 5-8>은 2차와 3차 두 조사시점의 남성 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이다. 2, 3차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은 비임금근로자가 90.7%로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 88.0%, 비경제활동인구 77.6%, 실업자 16.6%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가장 적었던 반면 실업자는 경제활동상태의 변화가 가장 크며 이러한 결과는 <표 5-9>의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동일하다.

2, 3차의 변화가 가장 큰 실업자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실업자의 35.2%가 임금근로자로, 8.1%가 비임금근로자로, 16.6%가 실업자, 40.1%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했다. 2차 남성 실업자 중 43.3%가 실업을 탈출하여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한 반면 40.1%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차 실업자 중 52.8%가 경제활동인구로, 31.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한 것과 대비했을 때 2, 3차에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실업자의 비중이 1, 2차보다 9.5% 줄었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비중은 8.8% 증가하였다. 2차에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였던 1,952명은 3차 조사에 88.0%가 임금근로자, 3.6%가 비임금근로자, 2.5%가 실업자, 5.8%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2차에 비임금근로자였던 1,085명은 3차에 90.7%가 비임금근로자, 4.2%가 임금근로자, 0.8%가 실업자, 4.2%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2차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1,292명은 3차에 13.7%가 임금근로자로, 5.1%가 비임금근로자, 3.6%가 실업자, 77.6%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석된다. 1, 2차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중은 77.4%로 2, 3차 77.6%와 거의 동일한 비중을 보인다.

<표 5-9>는 2차와 3차 두 조사시점의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이다. 2, 3차 동일한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가 86.7%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 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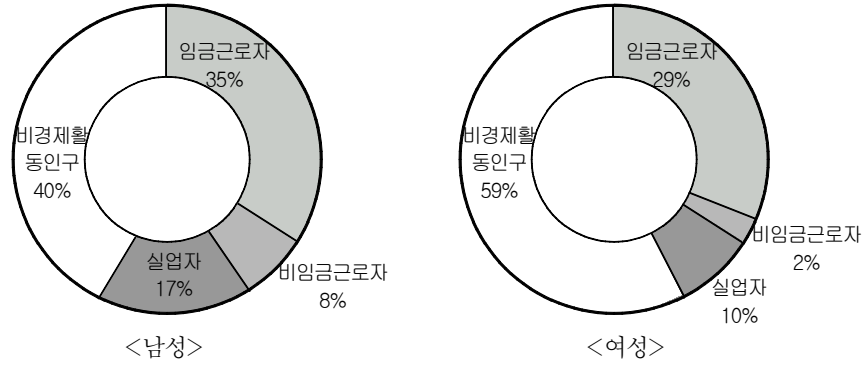
<표 5-9>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명, %)

2차 \ 3차	전 체	임금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	1,295 (100)	993 (76.7)	33 (2.5)	40 (3.1)	229 (17.7)
비임금	804 (100)	30 (3.7)	696 (86.6)	4 (0.5)	74 (9.2)
실업자	161 (100)	47 (29.2)	3 (1.9)	16 (9.9)	95 (59.0)
비경제활동인구	2,851 (100)	248 (8.7)	78 (2.7)	54 (1.9)	2,471 (86.7)

[그림 5-5] 실업자의 2~3차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임금근로자 76.7%, 실업자 9.9%이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남성과 달리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유지율이 가장 높은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2차에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였던 1,295명은 3차 조사에 76.7%가 임금근로자, 2.5%가 비임금근로자, 3.1%가 실업자, 17.7%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2차에 비임금근로자였던 804명은 3차에 86.6%가 비임금근로자, 3.7%가 임금근로자, 0.5%가 실업자, 9.2%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난다.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가장 큰 실업자의 2, 3차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는 2차 실업자 중 9.9%가 3차에도 실업자, 29.2%는 임금근로자, 1.9%는 비임금근로자, 59.0%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난다. [그림 5-5]를 통해서 성별 2, 3차 실업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비교해 보자. 2차 여성 실업자 중 31.3%가 경제활동인구로, 59.0%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것에 비해, 남성은 43.4%가 경제활동인구로 40.1%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비중은 19% 높으며,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비중은 18.9%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2,851명은 3차에 8.7%가 임금근로자, 2.7%가 비임금근로자, 1.9%가 실업자, 86.7%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석된다.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18.8%이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것에 비해 여성은 11.4%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였다.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1. 산업·직업별 분포

<표 5-10>와 [그림 5-6]은 1, 2, 3차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이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1차 8.6%, 2차 8.8%, 3차 8.8%, 광공업은 1차 23.6%, 2차 22.4%, 3차 22.6%, 건설업은 1차 7.6%, 2차 8.3%, 3차 8.7%, 공익설비업은 1차 6.1%, 2차 6.3%, 3차 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차 25.7%, 2차 26.1%, 3차 25.7%의 비중을 차지한다.

1, 2, 3차 산업별 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공익설비업의 비중이 가장 낮다. 1, 2, 3차 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으나, 건설업의 비중이 1, 3차 대비 1.1%p 증가했다.

<표 5-10> 1-2-3차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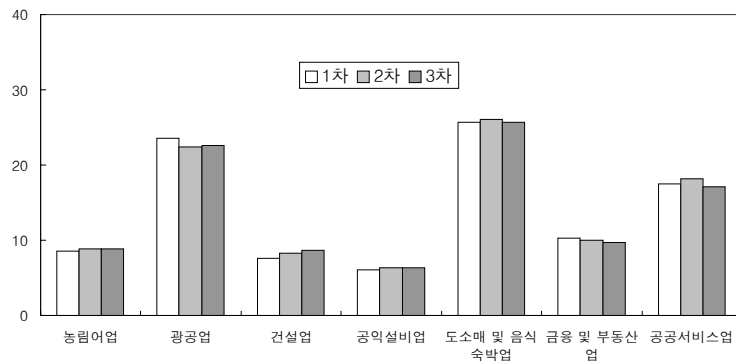
(단위 : 명,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 설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1차 (구성비)	550 (8.6)	1,516 (23.6)	488 (7.6)	394 (6.1)	1,654 (25.7)	663 (10.3)	1,124 (17.5)
2차 (구성비)	530 (8.8)	1,356 (22.4)	500 (8.3)	380 (6.3)	1,582 (26.1)	602 (10.0)	1,103 (18.2)
3차 (구성비)	496 (8.8)	1,271 (22.6)	490 (8.7)	352 (6.3)	1,447 (25.7)	544 (9.7)	963 (17.1)

주 : 구성비는 1차 취업자 전체 6,427명, 2차 취업자 전체 6,102명, 3차 취업자 전체 5,624명 기준임.

[그림 5-6] 1-2-3차 산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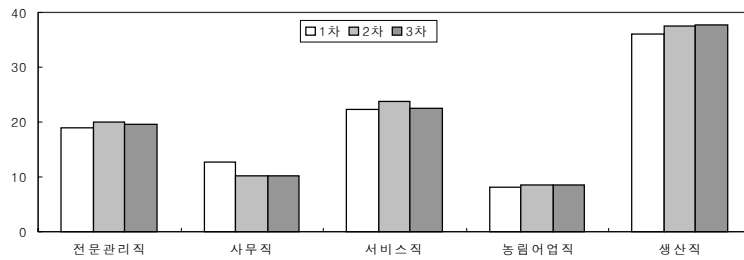


<표 5-11> 1-2-3차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차 (구성비)	1,222 (19.0)	819 (12.7)	1,430 (22.2)	526 (8.2)	2,320 (36.1)
2차 (구성비)	1,213 (20.1)	619 (10.3)	1,436 (23.8)	515 (8.5)	2,258 (37.4)
3차 (구성비)	1,097 (19.5)	578 (10.3)	1,264 (22.5)	484 (8.6)	2,126 (37.8)

주 : 구성비는 1차 취업자 전체 6,427명, 2차 취업자 전체 6,102명, 3차 취업자 전체 5,624명 기준.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직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1, 2차 보고서 직업분류 방식에 맞추어 직업분류를 다섯 범주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함. 1차 110명, 2차 61명, 3차 75명은 직업분류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됨.



<표 5-11>과 [그림 5-7]은 1, 2, 3차에 걸친 직업별 취업자 분포이다. 전문관리직의 비중은 1차 19.0%, 2차 20.1%, 3차 19.5%, 사무직은 1차 12.7%, 2차 10.3%, 3차 10.3%, 서비스직은 1차 22.2%, 2차 23.8%, 3차 22.5%, 농림어업직은 1차 8.2%, 2차 8.5%, 3차 8.6%, 생산직은 1차 36.1%, 2차 37.4%, 3차 37.8%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생산직이 30%대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직이 8%대로 가장 낮다. 산업별 비중의 증감에 큰 변화는 없으나 생산직이 1차에 비해 1.7%p 증가했다.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분포는 <표 5-12>와 같다. 취업자의 산업 분포는 농림어업 8.8%, 광공업 22.6%, 건설업 8.7%, 공익설비업 6.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5.8%, 금융 및 부동산업 9.7%, 공공서비스업 17.1%로 광공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다. 산업별 임금근로

<표 5-12>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명,%)

		전 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5,624 (100) 【100】	3,603 (64.1)	2,021 (35.9)
산 업 ¹⁾	농림어업	496 (100) 【 8.8】	40 (8.1)	456 (91.9)
	광공업	1,271 (100) 【22.6】	1,013 (79.7)	258 (20.3)
	건설업	490 (100) 【 8.7】	390 (79.6)	100 (20.4)
	공익설비업	352 (100) 【 6.3】	353 (71.6)	100 (28.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49 (100) 【25.8】	631 (43.5)	818 (56.5)
	금융 및 부동산업	544 (100) 【 9.7】	456 (83.8)	88 (16.2)
	공공서비스업	963 (100) 【17.1】	776 (80.6)	187 (19.4)
직 업 ²⁾	고위임직원/관리자	93 (100) 【 1.7】	33 (35.5)	60 (64.5)
	전문가	327 (100) 【 5.8】	279 (85.3)	48 (14.7)
	기술공/준전문가	675 (100) 【12.0】	561 (83.1)	114 (16.9)
	사무직	578 (100) 【10.3】	526 (91.0)	52 (9.0)
	서비스근로자	1264 (100) 【22.5】	475 (37.6)	789 (62.4)
	농어업 숙련 근로자	484 (100) 【 8.6】	32 (6.6)	452 (93.4)
	기능원/관련 종사자	883 (100) 【15.7】	641 (72.6)	242 (27.4)
	장치기계 조직원/조립원	669 (100) 【11.9】	499 (74.6)	170 (25.4)
	단순노무직	574 (100) 【10.2】	508 (88.5)	66 (11.5)

주: **【 】** 안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함.

1) 농림어업에는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등을 포함.

공익설비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포함.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포함.

금융 및 부동산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을 포함.

업종 모름/무응답인 59명 분석에서 제외

2) 직종 분류 불가능 2명, 모름/무응답 75명 포함한 77명 분석 제외

자 비중은 농림어업 8.1%, 광공업 79.7%, 건설업 79.6%, 공익설비업 71.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3.5%, 금융 및 부동산업 83.8%, 공공서비스업 80.6%로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 91.9%, 광공업 20.3%, 건설업 20.4%, 공익설비업 28.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5%, 금융 및 부동산업 16.2%, 공공서비스업 19.4%로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7%, 전문가 5.8%, 기술공/준전문가 12.0%, 사무직 10.3%, 서비스근로자 22.5%, 농어업 숙련근로자 8.6%, 기능원/관련 종사자 15.7%, 장치기계조직원/조립원 11.9%, 단순노무직 10.2%으로 서비스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직업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고위임직원/관리자 35.5%, 전문가 85.3%, 기술공/준전문가 83.1%, 사무직 91.0%, 서비스근로자 37.6%, 농어업 숙련근로자 6.6%, 기능원/관련 종사자 72.6%, 장치기계조직원/조립원 74.6%, 단순노무직 88.5%로 사무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 직업

별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고위임직원/관리자 64.5%, 전문가 14.7%, 기술공/준전문가 16.9%, 사무직 9.0%, 서비스근로자 62.4%, 농어업 숙련근로자 93.4%, 기능원/관련 종사자 27.4%, 장치기계조작원/조립원 25.4%, 단순노무직 11.5%로 서비스근로자와 농어업 숙련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표 5-13>은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이다. 성별 산업 분포를 보면 여성의 농림어업 비중은 10.0%, 광공업은 20.5%, 건설업은 1.7%, 공익설비업 2.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7%, 금융 및 부동산업 9.7%, 공공서비스업 22.3%이다.

<표 5-13>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공익 설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성 별	남 성	3,383 (100)	274 (8.2)	815 (24.4)	453 (13.6)	306 (9.2)	699 (20.9)	327 (9.8)	466 (13.9)
	여 성	2,241 (100)	222 (10.0)	456 (20.5)	37 (1.7)	46 (2.1)	750 (33.7)	217 (9.7)	497 (22.3)
연 령	15~19세	93 (100)	2 (2.2)	23 (25.8)	2 (2.2)	3 (3.4)	35 (39.3)	9 (10.1)	15 (16.9)
	20~24세	383 (100)	4 (1.1)	97 (25.7)	13 (3.4)	16 (4.2)	91 (24.1)	47 (12.5)	108 (28.6)
	25~29세	615 (100)	4 (0.7)	152 (25.3)	45 (7.5)	29 (4.8)	141 (23.5)	92 (15.3)	138 (23.0)
	30~39세	1,618 (100)	44 (2.7)	453 (28.2)	141 (8.8)	112 (7.0)	428 (26.7)	167 (10.4)	258 (16.1)
	40~49세	1,561 (100)	87 (5.6)	390 (25.1)	159 (10.2)	118 (7.6)	438 (28.2)	103 (6.6)	257 (16.6)
	50~59세	873 (100)	151 (17.4)	127 (14.6)	92 (10.6)	62 (7.1)	223 (25.7)	79 (9.1)	133 (15.3)
	60세이상	481 (100)	204 (42.8)	29 (6.1)	38 (8.0)	12 (2.5)	93 (19.5)	47 (9.9)	54 (11.3)
교 육 수 준	무학	177 (100)	92 (52.3)	9 (5.1)	6 (3.4)	1 (0.6)	41 (23.3)	9 (5.1)	18 (10.2)
	고졸 미만	1,689 (100)	312 (18.7)	386 (23.1)	174 (10.4)	87 (5.2)	461 (27.6)	81 (4.9)	168 (10.1)
	고졸	2,213 (100)	81 (3.7)	613 (27.9)	212 (9.7)	166 (7.6)	655 (29.8)	206 (9.4)	259 (11.8)
	대학재학 및 중퇴	195 (100)	-	33 (17.0)	16 (8.2)	13 (6.7)	53 (27.3)	29 (14.9)	50 (25.8)
	전문대졸	443 (100)	6 (1.4)	95 (21.7)	30 (6.8)	32 (7.3)	95 (21.7)	58 (13.2)	122 (27.9)
	대졸 이상	906 (100)	5 (0.6)	135 (15.1)	51 (5.7)	53 (5.9)	144 (16.1)	161 (18.0)	346 (38.7)

주 : 산업 모름/무응답 59명 분석에서 제외함.

또한 남성의 8.2%가 농림어업, 24.4%가 광공업, 13.6%가 건설업, 9.2%가 공익설비업, 20.9%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이 여성은 33.7%, 남성이 20.9%로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건설업은 여성이 1.7%, 남성이 13.6%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다.

연령별 산업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은 20~24세 1.1%, 25~29세 0.7%, 30~39세 2.7%, 40~49세 5.6%, 50~59세 17.4%, 60세 이상 42.8%로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농림어업 비중이 높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5~19세 39.3%, 20~24세 24.1%, 25~29세 23.5%, 30~39세 26.7%, 40~49세 28.2%, 50~59세 25.7%, 60세 이상 19.5%로 15~19세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이 높다. 공공서비스업은 15~19세 16.9%, 20~24세 28.6%, 25~29세 23.0%, 30~39세 16.1%로 20~39세의 공공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 산업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은 무학이 52.3%, 고졸 미만이 18.7%, 고졸이 3.7%, 대졸 이상이 0.6%로 저학력층의 농림어업 비중이 높다. 광공업은 무학이 5.1%, 고졸 미만이

23.1%, 고졸이 27.9%, 대학 재학 및 중퇴가 17.0%, 대졸 이상이 15.1%이며, 건설업은 무학이 3.4%, 고졸 미만인 10.4%, 고졸이 9.7%로 나타난다. 금융 및 부동산업은 무학이 5.1%, 고졸 미만이 4.9%, 고졸이 9.4%, 전문대졸이 13.2%, 대졸 이상이 18.0%이며, 공공서비스업은 고졸 미만이 10.1%, 고졸이 11.8%, 대학 재학 및 중퇴가 25.8%, 전문대졸이 27.9%, 대졸 이상이 38.7%로 고학력의 비중이 높다.

<표 5-14>는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이다. 성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전문관리직 비중이 21.5%, 사무직이 7.9%, 서비스직이 16.5%, 농림어업직이 8.0%, 생산직이 46.1%이며, 여성은 전문관리직이 17.1%, 사무직 14.2%, 서비스직 32.2%, 농림어업직 9.9%, 생산직 26.7%이다. 남자는 전문관리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높고 여자는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다.

연령별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15~19세는 사무직이 28.9%, 서비스직 28.9%, 농림어업직 1.1%, 생산직 30.0%이며, 20~24세는 전문관리직이 25.3%, 사무직이 31.1%, 서비스직이 21.8%, 생산직이 20.7%이다. 25~29세는 전문관리직 32.0%, 사무직이 21.0%, 서비스직 16.5%이고, 30~39세는 전문관리직 25.3%, 사무직 10.3%, 서비스직 21.3%, 농림어업직 2.7%, 생산직 40.4%이며, 60세 이상은 전문관리직 8.4%, 서비스직 17.6%, 농림어업직 42.6%이다. 15~19세는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고, 20~39세는 전문관리직이, 60세 이상은 농림어업직의 비중이 높다.

<표 5-14>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성 별	남 성	3,383 (100)	718 (21.5)	263 (7.9)	551 (16.5)	265 (8.0)	1,535 (46.1)
	여 성	2,241 (100)	379 (17.1)	315 (14.2)	713 (32.2)	219 (9.9)	591 (26.7)
연 령	15~19세	93 (100)	10 (11.1)	26 (28.9)	26 (28.9)	1 (1.1)	27 (30.0)
	20~24세	383 (100)	95 (25.3)	117 (31.1)	82 (21.8)	4 (1.1)	78 (20.7)
	25~29세	615 (100)	192 (32.0)	126 (21.0)	99 (16.5)	3 (0.5)	180 (30.0)
	30~39세	1,618 (100)	405 (25.3)	165 (10.3)	340 (21.3)	43 (2.7)	646 (40.4)
	40~49세	1,561 (100)	254 (16.4)	112 (7.2)	406 (26.3)	79 (5.1)	693 (44.9)
	50~59세	873 (100)	101 (11.7)	27 (3.1)	227 (26.3)	151 (17.5)	357 (41.4)
	60세이상	481 (100)	40 (8.4)	5 (1.0)	84 (17.6)	203 (42.6)	145 (30.4)
학 력	무학	177 (100)	3 (1.7)	-	32 (18.2)	92 (52.3)	49 (27.8)
	고졸 미만	1,689 (100)	48 (2.9)	35 (2.1)	437 (26.3)	306 (18.4)	837 (50.3)
	고졸	2,213 (100)	270 (12.4)	275 (12.6)	568 (26.0)	76 (3.5)	996 (45.6)
	대학재학및중퇴	195 (100)	44 (22.7)	48 (24.7)	54 (27.8)	1 (0.5)	47 (24.2)
	전문대졸	443 (100)	150 (34.5)	91 (20.9)	84 (19.3)	6 (1.4)	104 (23.9)
	대졸 이상	906 (100)	582 (65.0)	129 (14.4)	89 (9.9)	3 (0.3)	92 (10.3)

주 : 직업 모름/무응답 77명 분석에서 제외함. 전문관리직에는 임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교육수준별 직업분포를 보면 무학은 전문관리직이 1.7%, 서비스직이 18.2%, 농림어업직이 52.3%, 생산직 27.8%이며, 고졸 미만은 서비스직이 26.3%, 농림어업직 18.4%, 생산직 50.3%이고, 고졸은 전문관리직 12.4%, 서비스직 26.0%, 생산직 45.6%이다. 전문대졸은 전문관리직이 34.5%, 사무직이 20.9%, 서비스직이 19.3%, 생산직이 23.9%이며, 대졸 이상은 전문관리직이 65.0%, 사무직이 14.4%, 서비스직이 9.9%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은 전문관리직 비중이 높고, 고졸 미만과 고졸은 생산직의 비중이 높으며, 대학 재학과 전문대졸은 사무직이, 고졸 미만과 고졸은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기업 특성별 분포

<표 5-15>는 1, 2, 3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자영업은 1차 33.1%, 2차 28.6%, 3차 28.3%이고, 1~4인 사업체 비중은 1차 17.5%, 2차 18.2%, 3차 18.4%이며, 5~9인 사업체 비중은 1차 8.5%, 2차 8.6%, 3차 8.1%이다. 10~49인 사업체 비중은 1차 14.8%, 2차 16.8%, 3차 16.9%이며, 50~99인 사업체 비중은 1차 4.9%, 2차 4.4%, 3차 5.2%, 500인 이상은 1차 13.3%, 2차 11.0%, 3차 10.9%이다. 1, 2, 3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비중 변화를 보면 자영업자는 1차 33.1%, 3차 28.3%로 1차에 비해 4.8%p 감소했고,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 비중도 1차에 비해 2.4%p 감소했다. 반면 1~4인, 10~49인의 중소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각각 0.9%p, 2.1%p 증가했다.

<표 5-16>은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 규모이다. 성별 사업체 규모를 보면 남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6%, 1~4인 사업체 비중은 16.6%, 5~9인 8.0%, 10~49인 18.6%, 50~99인 5.9%, 500인 이상은 11.7%이며, 여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31.9%, 1~4인 21.0%, 5~9인 8.3%, 10~49인 14.3%, 500인 이상은 9.6%이다. 성별 사업체 규모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성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5.9%p 높으며,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2.1%p 높다.

<표 5-15> 1-2-3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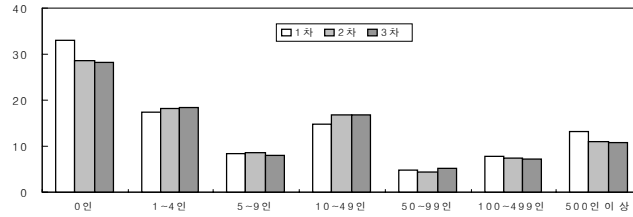
(단위 : 명, %)

	자영업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1차 (구성비)	1,786 (33.1)	947 (17.5)	460 (8.5)	799 (14.8)	264 (4.9)	426 (7.9)	717 (13.3)
2차 (구성비)	1,552 (28.6)	986 (18.2)	465 (8.6)	912 (16.8)	241 (4.4)	406 (7.5)	596 (11.0)
3차 (구성비)	1,450 (28.3)	940 (18.4)	417 (8.1)	866 (16.9)	266 (5.2)	371 (7.2)	557 (10.9)

주 : 구성비는 사업체 규모에 응답한 취업자(1차 취업자 : 5399명, 2차 취업자 : 5425명, 3차 취업자 : 5121명)를 기준으로 제시됨. 취업자의 규모에 정부기관 소속 취업자는 응답 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체 규모는 유급종업원수로 범주화.

2차 모름·무응답 267명, 3차 모름·무응답 254명 분석에서 제외.

[그림 5-8] 1-2-3차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 비교



연령별 사업체 규모를 보면 20~24세의 자영업 비중은 3.3%, 1~4인 사업체 비중은 19.9%, 5~9인은 10.5%, 10~49인은 24.1%, 50~99인 6.4%, 500인은 이상 9.6%이며, 30~39세의 자영업 비중은 20.4%, 1~4인은 19.6%, 5~9인 8.6%, 10~49인 18.4%, 50~99인 6.0%, 500인 이상은 15.4%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중 자영업은 66.2%, 1~4인은 10.0%, 5~9인 4.9%, 500인 이상은 1.2%이다. 20~24세는 자영업 비중이 3.3%인데 비해,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66.2%가, 50~59세의 취업자는 44.9%가 자영업자로 고연령층의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를 보면 무학은 자영업이 71.5%, 1~4인이 11.4%, 5~9인 4.4%, 10~49인 8.9%이며, 고졸은 자영업이 23.8%, 1~4인 19.5%, 5~9인 8.6%, 10~49인 18.7%, 500인 이상은 12.0%이고, 대졸 이상은 자영업이 10.1%, 1~4인이 15.2%, 10~49인 18.9%, 500인 이상이 22.1%이다. 특히 자영업의 비중은 무학이 71.5%, 고졸 미만이 44.2%로 저학력층의 비중이 높으나, 대졸 이상의 자영업 비중은 10.1%으로 낮다. 반면 대졸 이상은 5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중이 22.1%으로 높다.

<표 5-16>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

	전체	자영업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 이상	모름/무응답
남성	3,081 (100)	800 (26.0)	511 (16.6)	248 (8.0)	574 (18.6)	181 (5.9)	258 (8.4)	362 (11.7)	147 (4.8)
여성	2,040 (100)	650 (31.9)	429 (21.0)	169 (8.3)	292 (14.3)	85 (4.2)	113 (5.5)	195 (9.6)	107 (5.2)
15~19세	89 (100)	3 (3.4)	22 (24.7)	8 (9.0)	15 (16.9)	7 (7.9)	8 (9.0)	16 (18.0)	10 (11.2)
20~24세	361 (100)	12 (3.3)	72 (19.9)	38 (10.5)	87 (24.1)	23 (6.4)	47 (13.0)	55 (15.2)	27 (7.5)
25~29세	564 (100)	40 (7.1)	96 (17.0)	65 (11.5)	134 (23.8)	32 (5.7)	62 (11.0)	92 (16.3)	43 (7.6)
30~39세	1,472 (100)	300 (20.4)	289 (19.6)	126 (8.6)	271 (18.4)	88 (6.0)	97 (6.6)	227 (15.4)	74 (5.0)
40~49세	1,413 (100)	454 (32.1)	288 (20.4)	116 (8.2)	212 (15.0)	66 (4.7)	104 (7.4)	124 (8.8)	49 (3.5)
50~59세	790 (100)	355 (44.9)	130 (16.5)	43 (5.4)	105 (13.3)	39 (4.9)	43 (5.4)	38 (4.8)	37 (4.7)
60세 이상	432 (100)	286 (66.2)	43 (10.0)	21 (4.9)	42 (9.7)	11 (2.5)	10 (2.3)	5 (1.2)	14 (3.2)
무학	158 (100)	113 (71.5)	18 (11.4)	7 (4.4)	14 (8.9)	1 (0.6)	-	1 (0.6)	4 (2.5)
고졸 미만	1,566 (100)	692 (44.2)	295 (18.8)	116 (7.4)	203 (13.0)	73 (4.7)	67 (4.3)	53 (3.4)	67 (4.3)
고졸	2,076 (100)	494 (23.8)	405 (19.5)	179 (8.6)	389 (18.7)	101 (4.9)	161 (7.8)	250 (12.0)	97 (4.7)
대학재학 및 중퇴	176 (100)	25 (14.2)	38 (21.6)	14 (8.0)	37 (21.0)	13 (7.4)	16 (9.1)	25 (14.2)	8 (4.5)
전문대졸	404 (100)	51 (12.6)	71 (17.6)	35 (8.7)	83 (20.5)	26 (6.4)	44 (10.9)	64 (15.8)	30 (7.4)
대졸 이상	741 (100)	75 (10.1)	113 (15.2)	66 (8.9)	140 (18.9)	52 (7.0)	83 (11.2)	164 (22.1)	48 (6.5)

주 : 전체 취업자 중 사업체 규모에 응답한 5,121명만 분석에 포함. 정부기관이나 특정 소속이 없는 경우 사업체 규모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자 중 502명은 분석에서 제외됨. 사업체 규모는 임금을 받는 종업원수만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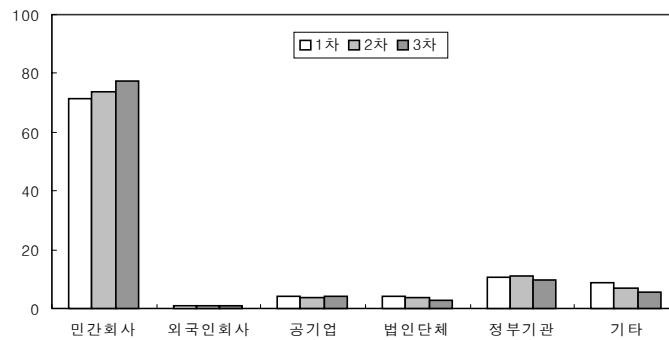
<표 5-17> 1-2-3차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종류 비교

(단위 : 명,%)

	민간회사	외국인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기 타
1차 (구성비)	2,869 (71.5)	36 (0.9)	160 (4.0)	173 (4.3)	430 (10.7)	343 (8.6)
2차 (구성비)	2,810 (73.7)	29 (0.8)	137 (3.6)	150 (3.9)	416 (10.9)	272 (7.1)
3차 (구성비)	2,789 (77.4)	32 (0.9)	146 (4.1)	99 (2.7)	345 (9.6)	192 (5.3)

주 : 구성비는 각 조사년도의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제시됨. 민간회사에는 민간회사와 개인사업체 등을 포함. 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등을 포함. 법인단체에는 재단 및 사단법인단체를 포함. 정부기관에는 군인, 공무원 등을 포함. 기타에는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3차년도 기업체 종류 모름/무응답 4명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5-9] 1-2-3차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종류 비교



<표 5-17>과 [그림 5-9]는 1,2,3차 기업체 종류를 비교한 것이다. 민간회사의 비중은 1차 71.5%, 2차 73.7%, 3차 77.4%, 외국인회사 비중은 1차 0.9%, 2차 0.8%, 3차 0.9%, 공기업 비중은 1차 4.0%, 2차 3.6%, 3차 4.1%, 법인단체 비중은 1차 4.3%, 2차 3.9%, 3차 2.7%, 정부기관 비중은 1차 10.7%, 2차 10.9%, 3차 9.6%이다. 민간회사의 비중은 1차보다 5.9%p증가했으며, 법인단체와 정부기관의 비중은 1차보다 각각 1.6%p, 1.1%p감소했다.

<표 5-18>은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업체 종류이다. 성별 기업체 종류는 남성 취업자의 77.0%가 민간회사, 0.9%가 외국인 회사, 5.0%가 공기업, 10.3%가 정부기관에 종사하며, 여성 취업자의 78.3%가 민간회사, 0.9%가 외국인 회사, 2.6%가 공기업, 8.5%가 정부기관에 종사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공기업과 정부기관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민간회사와 법인단체 비중이 높다.

<표 5-1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기업체 종류

(단위 : 명, %)

		전 체	민간회사	외국인 회사	공기업	법인단체	정부기관	기 타
성 별	남 성	2,193 (100)	1,687 (77.0)	19 (0.9)	110 (5.0)	57 (2.6)	225 (10.3)	93 (4.2)
	여 성	1,410 (100)	1,102 (78.3)	13 (0.9)	36 (2.6)	42 (3.0)	120 (8.5)	95 (6.7)
연 령	15~19세	89 (100)	77 (86.5)	3 (3.4)	4 (4.5)	1 (1.1)	1 (1.1)	3 (3.4)
	20~24세	365 (100)	313 (85.8)	2 (0.5)	11 (3.0)	14 (3.8)	15 (4.1)	10 (2.7)
	25~29세	553 (100)	455 (82.3)	8 (1.4)	24 (4.3)	13 (2.4)	43 (7.8)	10 (1.8)
	30~39세	1,136 (100)	891 (78.5)	13 (1.1)	49 (4.3)	28 (2.5)	105 (9.3)	49 (4.3)
	40~49세	872 (100)	646 (74.2)	3 (0.3)	43 (4.9)	22 (2.5)	96 (11.0)	61 (7.0)
	50~59세	421 (100)	302 (71.9)	3 (0.7)	12 (2.9)	15 (3.6)	62 (14.8)	26 (6.2)
	60세 이상	167 (100)	105 (63.3)	-	3 (1.8)	6 (3.6)	23 (13.9)	29 (17.5)
교 육 수 준	무 학	62 (100)	38 (61.3)	-	1 (1.6)	-	8 (13.1)	14 (23.0)
	고졸 미만	874 (100)	720 (82.4)	1 (0.1)	14 (1.6)	9 (1.0)	42 (4.8)	85 (9.8)
	고 졸	1,448 (100)	1,227 (84.7)	9 (0.6)	47 (3.2)	21 (1.5)	93 (6.4)	51 (3.5)
	대학재학 및 중퇴	156 (100)	122 (78.2)	5 (3.2)	6 (3.8)	3 (1.9)	10 (6.4)	10 (6.4)
	전문대졸	353 (100)	273 (77.3)	3 (0.8)	22 (6.2)	15 (4.2)	37 (10.5)	3 (0.8)
	대졸 이상	709 (100)	409 (57.7)	14 (2.0)	56 (7.9)	51 (7.2)	155 (21.9)	24 (3.4)

연령대별 기업체 종류를 보면 20~24세의 민간회사 비중은 85.8%, 외국인 회사 0.5%, 공기업 3.0%, 법인단체 3.8%이며, 30~39세의 민간회사 비중은 78.5%, 공기업 4.3%, 정부기관 9.3%이다. 50~59세는 민간회사가 71.9%, 공기업 2.9%, 정부기관 14.8%이고, 60세 이상은 민간회사가 63.3%, 정부기관 13.9%, 기타 17.5%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회사 및 외국인 회사의 비중이 낮아지고, 정부기관 및 법인단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별 기업체 종류를 보면 무학은 민간회사가 61.3%, 정부기관 13.1%, 기타 23.0%이며, 고졸 미만은 민간회사가 82.4%, 정부기관 4.8%, 기타가 9.8%이다. 고졸은 민간회사가 84.7%, 정부기관은 6.4%이며, 대졸 이상은 민간회사 57.7%, 공기업 7.9%, 정부기관 21.9%이다. 대졸 이상은 정부기관의 비중이 21.9%로 전체 취업자의 정부기관 비중인 9.6%p보다 높으며, 고졸은 민간회사 비중이 84.7%로 가장 높다.

제 3 절 취업자의 구직활동 및 부업

1. 취업자의 구직활동

한국노동패널 설문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 직장 지속 여부를 설문하고 있으며, 현재 부업(副業)을 원하거나 전직(轉職)을 원한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다시 구직 여부를 묻고 있다. 또한 구직활동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구직방법, 구직기간, 구직이유, 희망 수

입 등을 묻고 있으며, 비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취업자의 구직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취업자의 현 직장 지속 여부에 대한 분석 내용을 먼저 제시하겠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1, 2, 3차 비교분석 내용은 다음의 <표 5-19>과 [그림 5-10]과 같다. 계속근무 희망자는 1차 73.5%에서 2차 77.8%, 3차 82.5%로 증가했으나,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은 1차 10.1%에서 2차 5.1%, 3차 3.8%로 감소했다. 현지 일자리에 더 많이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1차 8.9%, 2차 10.7%, 3차 8.9%이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은 1차 4.7%, 2차 5.0%, 3차 3.8%이고, 현재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원한다는 응답은 1차 2.8%, 2차 1.4%, 3차 0.9%로 감소했다. 취업자 중 계속근무 희망자는 증가했고,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취업자는 감소했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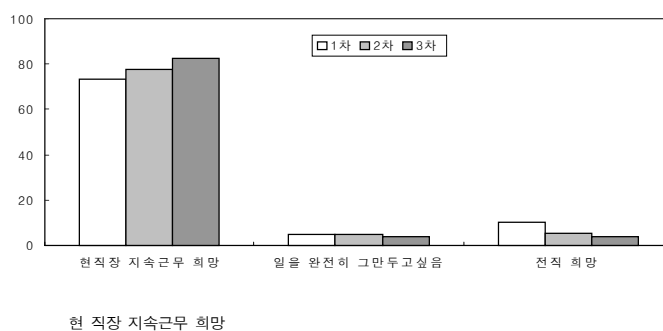
<표 5-20>은 산업, 직업별 현 직장 지속 여부이다. 계속근무 희망 비중은 농림어업이 85.7%, 광공업 85.2%, 건설업 78.4%, 공익설비업 8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5.5%, 금융 및 부동산업 87.9%로 금융 및 부동산업의 계속근무 희망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계속근무 희망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은 농림

<표 5-19> 1-2-3차 취업자의 현 직장 지속 여부 비교

(단위 : %)

	전 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1차(98년)	6,427 (100)	73.5	8.9	4.7	2.8	10.1
2차(99년)	6,102 (100)	77.8	10.7	5.0	1.4	5.1
3차(00년)	5,624 (100)	82.5	8.9	3.8	0.9	3.8

[그림 5-10] 1-2-3차 취업자의 현 직장 지속 여부



10) 이것이 취업자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외부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계속근무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업이 6.0%, 광공업 2.0%, 건설업 1.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1%, 공공서비스업 4.0%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다.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농림어업 2.6%, 광공업 3.6%, 건설업 4.3%, 공익서비스업 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2%으로 농림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건설업 종사자의 전직(轉職)
의사가 타업종에 비해 높다.

직업별 현 직장 지속 여부를 보면 계속근무 희망 비중은 전문관리직 86.3%, 사무직 86.9%,
서비스직 76.5%, 농림어업직 85.1%, 생산직 82.4%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계속근무 희망자
의 비중이 높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은 전문관리직 2.4%, 사무직 3.6%, 서비스
직 5.5%, 농림어업직 6.4%, 생산직 3.1%로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다. 다른 일자리
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은 전문관리직 2.9%, 사무직 4.8%, 서비스직 5.1%, 농림어업직 2.7%,
생산직 3.5%로 서비스직의 비중이 높다.

<표 5-20>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현 직장 지속 여부

(단위 : %)

		전 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	현재의 일자 리에서 더 많 이 일하기를 원함	일을 완전 히 그만두 고 싶음	현재의 일자 리에 추가하 여 다른 일 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 리로 바꾸 고 싶음
산 업	농림어업	496 (100)	85.7	4.2	6.0	1.4	2.6
	광공업	1,271 (100)	85.2	8.3	2.0	0.9	3.6
	건설업	490 (100)	78.4	15.1	1.4	0.8	4.3
	공익설비업	352 (100)	83.2	9.7	3.1	0.9	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49 (100)	75.5	12.1	6.1	1.1	5.2
	금융 및 부동산업	544 (100)	87.9	6.4	2.6	0.7	2.4
	공공서비스업	963 (100)	86.5	5.4	4.0	0.7	3.3
직 업	전문관리직	1,097 (100)	86.3	7.3	2.4	1.1	2.9
	사무직	578 (100)	86.9	3.8	3.6	0.9	4.8
	서비스직	1,264 (100)	76.5	11.9	5.5	1.0	5.1
	농림어업직	484 (100)	85.1	4.3	6.4	1.4	2.7
	생산직	2,126 (100)	82.4	10.3	3.1	0.7	3.5

<표 5-21>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현 직장 지속 여부이다. 임금근로자의 계속근무 회
망비중은 상용직이 91.5%, 임시직 78.6%, 일용직 72.3%로 상용직의 계속근무 희망 비중이 가
장 높고 일용직이 가장 낮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비중은 상용직 2.8%, 임시직
7.0%, 일용직 16.0%로 일용직이 높으며,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비중은 상용직이 2.9%,
임시직 6.5%, 일용직이 6.9%로 역시 일용직이 가장 높다. 비임금근로자의 계속근무 희망 비중
은 고용주 73.6%, 자영업자 73.4%, 가족종사자 72.9%이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고용
주가 2.5%, 자영업자 5.6%, 가족종사자 8.4%이고,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는 응답의 비중

<표 5-2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현 직장 지속 여부

(단위 : 명,%)

			전 체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종 사 상 지 위 ¹⁾	임금 근로자	상용직	2,731 (100)	91.5	2.8	2.1	0.7	2.9
		임시직	430 (100)	78.6	7.0	6.7	1.2	6.5
		일용직	405 (100)	72.3	16.0	4.0	0.7	6.9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447 (100)	73.6	18.3	2.5	1.1	4.5
		자영업자	1,077 (100)	73.4	16.4	5.6	1.2	3.3
		가족 종사자	487 (100)	72.9	12.7	8.4	1.4	4.5

주 : 1) 설문종류와 종사상 지위가 일치하는 케이스만 분석에 사용. 두 변수 일치하지 않는 3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5-22> 1-2-3차 취업자의 구직 여부 비교

(단위 : 명, %)

		1차(1998년)	2차(1999년)	3차(2000년)
전 체		824(100) [12.8]	398(100) [6.5]	268(100) [4.8]
구직 여부	구하고 있다	288(34.9)	165(41.8)	79(29.5)
	구하고 있지 않다	536(65.1)	233(58.5)	189(70.5)

주 : 각 차에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자들을 구성비의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구직활동 유무를 보여주고 있음. **[]** 안의 수치는 각 차의 전체 취업자 중 부업, 전직을 원하는 취업자의 비중임.

은 고용주 4.5%, 자영업자 3.3%, 가족종사자 4.5%이다. 즉 고용주의 계속근무 희망 비중이 73.6%로 가장 높고, 가족종사자 중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8.4%로 가장 높다.

<표 5-22>는 1-2-3차 취업자의 구직 여부이다. 한국노동패널 설문지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지속 여부를 묻고 있으며, 이 응답의 범주 중 '현재의 일에 추가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싶다'(부업희망자)고 응답하거나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전직희망자)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구직 여부를 묻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부업(副業) 혹은 전직(轉職)을 원하는 비중은 1차 12.8%, 2차 6.5%, 3차 4.8%로 차수를 거듭할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부업 혹은 전직을 원하는 취업자 중 실질적으로 구직(求職)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차 34.9%, 2차 41.8%, 3차 29.5%로 2차에 증가하였다가 3차에 감소했다. 즉 새로운 직장 및 부가적인 직장을 원하는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질적인 구직작업 또한 둔화되고 있다.

<표 5-23>은 취업자의 구직 여부와 비구직(非求職) 이유이다. 70.5%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29.5%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자의 비구직 이유로는 일

<표 5-23> 취업자의 구직 여부와 비구직 이유

(단위 : 명, %)

		빈도(명)	비중(%)
전 체		268	100
구하고 있다		79	29.5
구하고 있지 않다		189	70.5
비구직 이유 ¹⁾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59	31.2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27	14.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15	7.9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5	2.6
	구직 결과를 기다림	3	1.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7	3.7
	가사일 때문에	2	1.1
	건강상 이유로 기 타	6 65	3.2 34.4

주: 1) 비구직 이유의 비중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189명을 기준으로 제시됨.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가 31.2%,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함 14.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7.9%, 여성, 고령자, 장애인 차별 때문에 2.6%, 구직 결과를 기다림 1.6%, 육아 때문에 3.7%, 가사일 때문에 1.1%, 건강상 이유 3.2%로 구직활동 제약요인으로 일자리 부족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표 5-24>는 취업자의 구직방법이다. 취업자의 구직빈도의 비중은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4.7%, 친구·친지의 소개 28.9%,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3.9%,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1.6%,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19.5%,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표 5-24> 취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명, %)

		빈도(명)	비중 ¹⁾ (%)	비중 ²⁾ (%)
구직방법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6	4.7	7.6
	친구·친지의 소개	37	28.9	46.8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5	3.9	6.3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2	1.6	2.5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25	19.5	31.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24	18.8	30.4
	가족을 통해서	10	7.8	12.7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해서	14	10.9	17.7
	기타	5	3.9	6.3
평균구직방법수	1.62(가지)			

주 : 복수 응답 처리한 것임.

- 1) 전체 응답자의 구직횟수 128회에 대한 비중임.
- 2) 전체 구직활동중인 79명에 대한 비중임.

18.8%, 가족을 통해 7.8%, 전산망을 통해 10.9%이다. 또한 구직자 중 비중을 보면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7.6%, 친구·친지의 소개 46.8%,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6.3%,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 2.5%, 신문, 벽보 등의 구인광고 31.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30.4%, 가족을 통해 12.7%, 전산망을 통해 17.7%이다. 구직방법 중 친구·친지의 소개를 통한 방법, 구인광고를 통한 방법, 일하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방법이 높은 비중을 보이며, 구직자는 평균 1.62가지의 구직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5-25> 취업자의 구직기간

(단위 : 명, %)

		빈도(명)	비중(%)
전 체		59	100
구직기간 ¹⁾	1~4주	24	40.7
	5~8주	10	16.9
	9~24주	16	27.1
	25~48주	7	11.9
	49주 이상	2	3.4
	평균(주)	15.2(주)	

주 : 1) 구직기간이 모름/무응답인 20명 분석에서 제외

<표 5-25>는 취업자의 구직 기간이다.¹¹⁾ 취업자가 실질적으로 구직활동한 기간은 1~4주 40.7%, 5~8주 16.9%, 9~24주 27.1%, 25~48주 11.9%, 49주 이상 3.4%으로 1~4주가 40.7%로 비중이 가장 크고, 9~24주는 27.1%를 차지한다. 또한 평균 구직활동 기간은 15.2주로 2차년도의 20.9주와 비교하면 5.7주가 짧아져 구직활동을 단기간에 끝내는 경향을 보인다.

2. 부업

취업자 중 주업 이외의 활동인 부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¹²⁾ 전체 취업자 중 부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335명으로 전체의 취업자의 6%이다. 이는 2차년도의 150명 2.5%에 비하여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5-26>은 부업이 있는 취업자의 특성이다.

부업이 있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68.7%는 임금근로자, 31.3%는 비임금근로자이며, 남성은 66.6%, 여성은 33.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15~19세가 0.9%, 20~24세 1.8%, 25~29세 6.9%, 30~39세 37.3%, 40~49세 27.5%, 50~59세 18.5%, 60세 이상 7.2%으로 30세에서 49세의 비중이 높다.

11) 구직 기간은 지난 2차 조사 이후 실질적으로 구직활동한 기간을 묻고 있다.

12) 1, 2차에는 부업관련 문항이 있었으나, 3차에는 문항이 삭제되어 현재 두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5-26> 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부업

(단위 : 명, %)

		부업 있음	
전 체		335(100)	
취업자	임금근로자	230(68.7)	
	비임금근로자	105(31.3)	
성별	남 성	223(66.6)	
	여 성	112(33.4)	
연령	15~19세	3(0.9)	
	20~24세	6(1.8)	
	25~29세	23(6.9)	
	30~39세	125(37.3)	
	40~49세	92(27.5)	
	50~59세	62(18.5)	
	60세 이상	24(7.2)	
혼인 상태	남 성	미 혼	20(9.0)
		기혼유배우	198(88.8)
		기혼무배우	5(2.2)
	여 성	미 혼	16(14.3)
		기혼유배우	89(79.5)
		기혼무배우	7(6.3)
교육 수준	무 학	8(2.4)	
	고졸 미만	87(26.0)	
	고 졸	147(43.9)	
	대학재학 및 중퇴	14(4.2)	
	전문대졸	28(8.4)	
	대졸 이상	51(15.2)	

혼인상태별 비중은 남성 중 9.0%이 미혼이고, 88.8%가 기혼유배우, 2.2%가 기혼무배우이며, 여성은 14.3%이 미혼이고 79.5%가 기혼유배우, 6.3%가 기혼무배우이다. 남녀 모두 기혼유배우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미혼자의 비중은 여성이 높다. 교육수준별 비중을 보면 고졸 미만이 26.0%, 고졸이 43.9%, 대학재학 및 중퇴가 4.2%, 전문대졸이 8.4%, 대졸 이상이 15.2%로 고졸 미만과 고졸의 비중이 높다.

부업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임금근로자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30~49세의 남성 기혼유배우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부업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2차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2차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62%, 임금근로자 비중이 38%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반해, 3차에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31.3%, 임금근로자 비중이 68.7%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임금근로자의 특성

제 1 절 고용형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종사상의 지위인 상용·임시·일용 근로자로 구분되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1-2차년도까지 응답자 본인의 판단(self-report)에 따라 현재의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나 3차년도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이 제외되고 계속 근무 가능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파견근로 여부, 다른 직원의 관리·감독 여부, 승진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로 대체되었다. 이 절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계약 여부

우선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기 이전에 근로계약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3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해진 기간 없이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해 계약직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을 보면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94.5%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5.5%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94.6%, 여성 근로자의 94.4%가 근로계약기간 없이 일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유무 비교(1~3차년도)

(단위 : 명, %)

조사 차수	구분	전 체		남 성		여 성	
		계약기간이 없다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계약기간이 있다
1차 ¹⁾ (’98)	인원 (%)	3,831 (95.5)	179 (4.5)	2,424 (95.8)	106 (4.2)	1,407 (95.1)	73 (4.9)
2차 ²⁾ (’99)	인원 (%)	3,633 (94.3)	220 (5.7)	2,195 (95.0)	116 (5.0)	1,438 (93.3)	104 (6.7)
3차 ³⁾ (’00)	인원 (%)	3,185 (94.5)	186 (5.5)	1,947 (94.6)	112 (5.4)	1,238 (94.4)	74 (5.6)

-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계약기간 유무를 모른다고 응답한 23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차년도의 경우 1-2차년도와는 달리 질문 항목에 “모른다”는 문항이 추가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된 사례가 크게 늘어남.

1~2차년도와 비교하면 1차년도에 비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고용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0%p 하락하였으나 2차년도에 비해 0.2%p 상승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남성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없이 고용된 비중이 0.4%p 하락한 반면, 여성의 경우 1.1%p 상승하였다.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남성(16.5개월)이 여성(11.1개월)에 비해 5.4개월 더 길었다. 이것은 2차년도의 성별 차이(5.1개월)보다 0.3개월 증가한 수치이다.

<표 6-2>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로계약 유무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이상의 고령층과 20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높았고,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60세 이상(9.6개월)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근로계약 유무를 살펴보면, 무학인 응답자의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10.5%)이 가장 높았으며, 재학생 및 휴학생이 대부분인 대학 재학 및 중퇴 집단에서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의 비중(7.9%)이 높았다. 반면 전문대졸(4.5%)이나 고졸(5.0%)의 경우 95%에 이르는 응답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대졸 이상이 22.0개월로 가장 길었고 무학이 2.1개월로 가장 짧았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높았으며 미혼이나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94% 이상의 응답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2~3차년도를 비교해 볼 때 혼인상태별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 큰 폭으로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줄어들어 눈길을 끈다. 2차년도에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18.2%인 데 비해 3차년도에는 계약직 비중이 7.7%로 나타나, 계약직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4.3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기혼남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18.2개월로 가장 길었다.

<표 6-2>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계약 유무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전 체		3,371(100.0)	186(5.5)	3,185(94.5)	
연령	15~19세	84(100.0)	8(9.5)	76(90.5)	
	20~24세	344(100.0)	15(4.4)	329(95.6)	
	25~29세	511(100.0)	28(5.5)	483(94.5)	
	30~39세	1,067(100.0)	40(3.7)	1,027(96.3)	
	40~49세	821(100.0)	29(3.5)	792(96.5)	
	50~59세	395(100.0)	38(9.6)	357(90.4)	
	60세 이상	149(100.0)	28(15.1)	121(81.2)	
교육 수준 ¹⁾	무 학	57(100.0)	6(10.5)	51(89.5)	
	고졸 미만	808(100.0)	44(5.4)	764(94.6)	
	고 졸	1,361(100.0)	68(5.0)	1,293(95.0)	
	대학재학 및 중퇴	151(100.0)	12(7.9)	139(92.1)	
	전문대졸	334(100.0)	15(4.5)	319(95.5)	
	대졸 이상	659(100.0)	41(6.2)	618(93.8)	
혼인 상태 ²⁾	남 성	미 혼	514(100.0)	27(5.3)	487(94.7)
		기혼유배우	1,484(100.0)	79(5.3)	1,405(94.7)
		기혼무배우	55(100.0)	6(10.9)	49(89.1)
	여 성	미 혼	466(100.0)	25(5.4)	441(94.6)
		기혼유배우	726(100.0)	40(5.5)	686(94.5)
		기혼무배우	117(100.0)	9(7.7)	108(92.3)

주 : 1) 근로계약 유무를 모른다고 응답한 232명과 교육수준 무응답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근로계약 유무를 모른다고 응답한 232명과 혼인상태 무응답 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3>에서는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로 근로계약기간 유무를 통해 계약직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농림어업(11.1%)과 공공근로 참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서비스업(11.1%)이었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산업은 광공업(1.8%)이었다.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공익설비업(21.9개월), 금융 및 부동산업(19.3개월), 광공업(16.1개월) 부분에서 전체 평균 14.3개월을 상회하는 데 비해 일용근로자가 많은 농림어업(7.8개월), 건설업(9.4개월) 부분은 계약기간이 짧았다.

직업별로 근로계약기간 유무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10.7%가 계약기간이 있다고 답해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2.7%로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표 6-3>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근로계약

(단위 : 명, %)

		전 체	계약기간이 있다	계약기간이 없다
전 체		3,371(100.0)	186(5.5)	3,185(94.5)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4(11.1)	32(88.9)
	광공업	951(100.0)	17(1.8)	934(98.2)
	건설업	363(100.0)	13(3.6)	350(96.4)
	공익설비업	243(100.0)	11(4.5)	232(95.5)
	도소매및음식숙박업	590(100.0)	17(2.9)	573(97.1)
	금융및부동산업	425(100.0)	39(9.2)	386(90.8)
	공공서비스업	722(100.0)	80(11.1)	642(88.9)
직업 ²⁾	전문관리직	822(100.0)	51(6.2)	771(93.8)
	사무직	504(100.0)	33(6.5)	471(93.5)
	서비스직	440(100.0)	12(2.7)	428(97.3)
	농림어업직	28(100.0)	3(10.7)	25(89.3)
	생산직	1,531(100.0)	83(5.4)	1,448(94.6)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2,609(100.0)	106(4.1)	2,503(95.9)
	외국인회사	30(100.0)	2(6.7)	28(93.3)
	공기업	138(100.0)	11(8.0)	127(92.0)
	법인단체	94(100.0)	11(11.7)	83(88.3)
	정부기관	328(100.0)	43(13.1)	285(86.9)
	기 타	172(100.0)	13(7.6)	159(92.4)
사업체 규모 ³⁾	0인	2(100.0)	0(0.0)	2(100.0)
	1~4인	482(100.0)	16(3.3)	466(96.7)
	5~9인	339(100.0)	5(1.5)	334(98.5)
	10~49인	732(100.0)	23(3.1)	709(96.9)
	50~99인	226(100.0)	14(6.2)	212(93.8)
	100~499인	344(100.0)	31(9.0)	313(91.0)
	500인 이상	532(100.0)	31(5.8)	501(94.2)

주 : 근로계약 유무를 모른다고 응답한 23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사업체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직업별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농림어업직 종사자들의 경우 5.0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20.0개월로 가장 길었다.

기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13.1%로 민간회사(4.1%), 외국인회사(6.7%)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근로 참여자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전년대비 정부기관의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은 1차 조사(7.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나 2차 조사(20.0%)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평균 고용계약기간은 정부기관이 8.4개월로 가장 짧았고 공기업이 25.0개월로 가장 길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계약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근로계약이 있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50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다소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평균 고용계약기간은 5~9인 규모의 사업체가 25.2개월로 가장 길었고 1~4인 사업체가 12.9개월로 가장 짧았다.

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표 6-4>와 [그림 6-1]은 1~3차년도 사이의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3차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6-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1~3차년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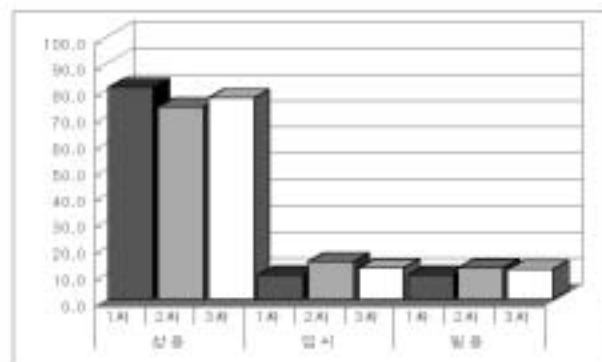
조사 차수	구분	전 체			남 성			여 성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1차 ¹⁾ (’98)	인원 (%)	3,236 (80.8)	385 (9.6)	386 (9.6)	2,119 (83.8)	182 (7.2)	227 (9.0)	1,117 (75.5)	203 (13.7)	159 (10.8)
2차 ²⁾ (’99)	인원 (%)	2,819 (73.4)	555 (14.5)	464 (12.1)	1,802 (78.2)	236 (10.2)	265 (11.5)	1,017 (66.3)	319 (20.8)	199 (13.0)
3차 ³⁾ (’00)	인원 (%)	2,731 (76.6)	430 (12.1)	405 (11.4)	1,737 (80.3)	175 (8.1)	251 (11.6)	994 (70.8)	255 (18.2)	154 (11.0)

주 : 1) 1차년도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6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3차년도 종사상지위가 모름/무응답인 3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6-1] 전년대비 종사상 지위별 비중의 변화(2~3차년도)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76.6%로 가장 컸으며, 임시근로자는 12.1%, 일용근로자는 11.4%로 나타났다. 1-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3차년도의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1차년도에 비해서 4.2%p 낮으나 2차년도에 비해서 3.2%p 높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반대로 1차년도에 비해서 각각 2.5%p, 1.8%p 높으나 2차년도에 비해서 각각 2.4%p, 0.7%p 낮다.

성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9.5%p 높았다. 이것은 1차년도(8.3%)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수치이나 2차년도에 비해서 2.5%p 낮아진 수치로 성별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성 상용직 비중이 전년도 대비 4.0%p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6-5>는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의 상용직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 준·고령층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81.0%)이며, 가장 낮은 연령층은 60대(42.6%)였다. 임시직 비중의 경우 15~19세 연령층(25.8%)이 가장 높았으며 25~29세 연령층(9.1%)이 가장 낮았고 일용직 비중은 60대(34.0%)가 가장 높았고 25~29세 연령층(2.6%)이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임시직은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구성된 대학 재학의 비중(26.9%)이 가장 높았고, 일용직은 무학의 비중(35.0%)이 가장 높았다.

<표 6-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3,566(100.0)	2,731(76.6)	430(12.1)	405(11.4)
연령	15~19세	89(100.0)	58(65.2)	23(25.8)	8(9.0)
	20~24세	364(100.0)	286(78.6)	66(18.1)	12(3.3)
	25~29세	547(100.0)	483(88.3)	50(9.1)	14(2.6)
	30~39세	1,126(100.0)	912(81.0)	110(9.8)	104(9.2)
	40~49세	862(100.0)	654(75.9)	84(9.7)	124(14.4)
	50~59세	416(100.0)	269(64.7)	59(14.2)	88(21.2)
	60세 이상	162(100.0)	69(42.6)	38(23.5)	55(34.0)
교육 수준 ¹⁾	무 학	60(100.0)	25(41.7)	14(23.3)	21(35.0)
	고졸 미만	856(100.0)	489(57.1)	146(17.1)	221(25.8)
	고 졸	1,437(100.0)	1,153(80.2)	149(10.4)	135(9.4)
	대학 재학	156(100.0)	101(64.7)	42(26.9)	13(8.3)
	전문대졸	353(100.0)	319(90.4)	26(7.4)	8(2.3)
	대졸 이상	703(100.0)	644(91.6)	53(7.5)	6(.9)

주: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3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별,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공익설비업(91.3%), 금융 및 부동산업(87.0%) 및 광공업(85.7%) 부문의 상용직 비중이 8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임시직 비중은 농림어업(22.9%)이 가장 높았으며 공익설비업(5.6%)이 가장 낮았다.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일용직 비중이 각각 50.3%, 42.9%로 전체 일용직 비중(11.4%)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상용직 비중이 3.0%p 하락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6-6>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3,566(100.0)	2,731(76.6)	430(12.1)	405(11.4)
산업 ¹⁾	농림어업	35(100.0)	12(34.3)	8(22.9)	15(42.9)
	광공업	1,011(100.0)	866(85.7)	100(9.9)	45(4.5)
	건설업	386(100.0)	157(40.7)	35(9.1)	194(50.3)
	공익설비업	252(100.0)	230(91.3)	14(5.6)	8(3.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26(100.0)	457(73.0)	109(17.4)	60(9.6)
	금융및부동산업	453(100.0)	394(87.0)	45(9.9)	14(3.1)
	공공서비스업	772(100.0)	593(76.8)	114(14.8)	65(8.4)
직업 ²⁾	전문관리직	867(100.0)	786(90.7)	75(8.7)	6(0.7)
	사무직	525(100.0)	474(90.3)	38(7.2)	13(2.5)
	서비스직	472(100.0)	339(71.8)	91(19.3)	42(8.9)
	농림어업직	27(100.0)	8(29.6)	5(18.5)	14(51.9)
	생산직	1,641(100.0)	1,096(66.8)	217(13.2)	328(20.0)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2,762(100.0)	2,165(78.4)	328(11.9)	269(9.7)
	외국인회사	32(100.0)	30(93.8)	1(3.1)	1(3.1)
	공기업	144(100.0)	121(84.0)	19(13.2)	4(2.8)
	법인단체	99(100.0)	90(90.9)	8(8.1)	1(1.0)
	정부기관	343(100.0)	280(81.6)	33(9.6)	30(8.7)
	기 타	186(100.0)	45(24.2)	41(22.0)	100(53.8)
사업체 규모 ³⁾	1~4인	503(100.0)	315(62.6)	107(21.3)	81(16.1)
	5~9인	342(100.0)	251(73.4)	43(12.6)	48(14.0)
	10~49인	795(100.0)	646(81.3)	77(9.7)	72(9.1)
	50~99인	255(100.0)	217(85.1)	25(9.8)	13(5.1)
	100~499인	368(100.0)	326(88.6)	25(6.8)	17(4.6)
	500인 이상	555(100.0)	504(90.8)	42(7.6)	9(1.6)

주: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3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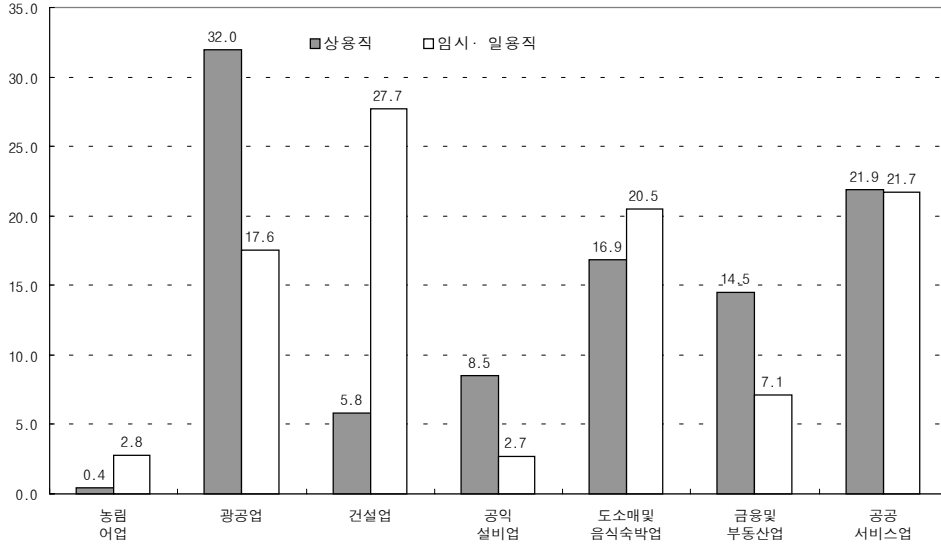
1)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사업체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6-2] 산업별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분포

(단위, %)



[그림 6-2]에서는 전체 산업에서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의 비중은 광공업이 두드러지며,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건설업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27.7%로 2차년도에 비해서 4.3%p 상승하였으며 공익서비스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2차년도에 비해서 3.9%p 하락하였다.

<표 6-6>에서 직업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는 종사자의 약 90%가 상용직으로 나타나, 여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직에서는 임시근로자(19.3%)의 비중이, 농림어업직과 생산직에서는 일용근로자의 비중(51.9%, 20.0%)이 높게 나타났다. 2차년도의 조사 결과와 대비해 볼 때 농림어업직과 서비스직의 상용직 비중이 각각 14%p, 6.9%p 상승한데 비해 농림어업직은 일용직이, 서비스직은 임시직이 각각 10.6%p, 6.4%p로 줄어들었다.

기업체 종류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회사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었으며, 법인단체와 공기업, 정부기관 등이 타기업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임시직의 경우 공기업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민간회사와 정부기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법인단체와 정부기관의 경우 2차년도에 비해서 상용직 비중이 약 6%p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데 반해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50인 이상의 기업체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증가한 반면, 49인 이하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반대로 50인 이상의 기업체의 경우 감소한 반면, 49인 이하의 경우 증가하여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비중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간제/전일제 근로

임금근로자를 시간제/전일제로 구분해 살펴보면, 3차년도 조사 결과 전일제 근로의 비중은 90.9%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9.1%였다. <표 6-7>을 통해서 1~3차년도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시간제/전일제 근로 비교(1~3차년도)

(단위 : 명, %)

조사 차수	구분	전 체		남 성		여 성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1차 ¹⁾ (’98)	인원 (%)	478 (11.9)	3,530 (88.1)	194 (7.7)	2,335 (92.3)	284 (19.2)	1,195 (80.8)
2차 ²⁾ (’99)	인원 (%)	387 (10.1)	3,449 (89.9)	122 (5.3)	2,180 (94.7)	265 (17.3)	1,269 (82.7)
3차 ³⁾ (’00)	인원 (%)	323 (9.1)	3,242 (90.9)	102 (4.7)	2,061 (95.3)	221 (15.8)	1,181 (84.2)

주 : 1) 1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6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38은 분석에서 제외함.

2차년도 조사와 3차년도를 비교해 보면, 3차년도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차년도에 비해서 1.0%p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볼 때 남성은 1.6%p, 여성은 1.5%p 감소하였다.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나, 12.0%였던 전년도 조사에 비해서 성별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8>은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연령대 별로는 20대 후반의 전일제 비중이 95.1%로 가장 높고, 20대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하락하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90.0% 내외의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일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96.0%로 전일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재학생과 휴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대학 재학 및 중퇴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26.9%로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미혼인 응답자의 시간제 비중이 7.8%로 가장 높고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혼인 경우보다는 기혼인 응답자의 시간제 비중이 더 높았으며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간제 비중이 19.0%,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7%로 나타났다. 시간제 비중이 가장 낮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성과 시간제 비중이 가장 높은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간의 차

<표 6-8>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3,565(100.0)	323(9.1)	3,242(90.9)	
연령	15~19세	88(100.0)	24(27.3)	64(72.7)	
	20~24세	364(100.0)	39(10.7)	325(89.3)	
	25~29세	547(100.0)	27(4.9)	250(95.1)	
	30~39세	1,125(100.0)	110(9.8)	1,015(90.2)	
	40~49세	864(100.0)	71(8.2)	793(91.8)	
	50~59세	416(100.0)	28(6.7)	388(93.3)	
	60세 이상	161(100.0)	24(14.9)	137(85.1)	
교육 수준	무 학	60(100.0)	10(16.7)	50(83.3)	
	고졸 미만	856(100.0)	99(11.6)	757(88.4)	
	고 졸	1,437(100.0)	115(8.0)	1,322(92.0)	
	대학재학 및 중퇴	156(100.0)	42(26.9)	114(73.1)	
	전문대졸	353(100.0)	14(4.0)	339(96.0)	
	대졸 이상	702(100.0)	43(6.1)	659(93.9)	
혼인 상태	남성	미 혼	553(100.0)	43(7.8)	510(92.2)
		기혼유배우	1,551(100.0)	56(3.6)	1,495(96.4)
		기혼무배우	56(100.0)	3(5.4)	53(94.6)
	여성	미 혼	501(100.0)	50(10.0)	451(90.0)
		기혼유배우	777(100.0)	148(19.0)	629(81.0)
		기혼무배우	123(100.0)	23(18.7)	100(84.2)

주: 근로시간 형태가 모름/무응답인 3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는 15.4%나 되었다.

<표 6-9>에서는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근로시간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공익설비업과 농림어업의 전일제 비중이 각각 97.6%, 97.1%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84.5%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62.1%인 서비스직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16.1%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직 시간제 근로자의 75.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의 비중은 농림어업직이 96.3%, 사무직이 95.2%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법인단체의 전일제 비중이 9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정부기관의 경우 전일제 비중이 1.4%p 증가하는 등 대부분 전일제의 비중이 증가했으나 외국인회사의 경우 2.5%p 감소하였다.

<표 6-9>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단위 : 명, %)

		전 체	시간제	전일제
전 체		3,565(100.0)	323(9.1)	3,242(90.9)
산업 ¹⁾	농림어업	35(100.0)	1(2.9)	34(97.1)
	광공업	1,012(100.0)	66(6.5)	946(93.5)
	건설업	385(100.0)	18(4.7)	367(95.3)
	공익설비업	252(100.0)	6(2.4)	246(97.6)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26(100.0)	97(15.5)	529(84.5)
	금융및부동산업	452(100.0)	34(7.5)	418(92.5)
	공공서비스업	773(100.0)	100(12.9)	673(87.1)
직업 ²⁾	전문관리직	867(100.0)	76(8.8)	791(91.2)
	사무직	524(100.0)	25(4.8)	499(95.2)
	서비스직	472(100.0)	76(16.1)	396(83.9)
	농림어업직	27(100.0)	1(3.7)	26(96.3)
	생산직	1,641(100.0)	145(8.8)	1,496(91.2)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2761(100.0)	249(9.0)	2512(91.0)
	외국인회사	32(100.0)	3(9.4)	29(90.6)
	공기업	144(100.0)	6(4.2)	138(95.8)
	법인단체	99(100.0)	5(5.1)	94(94.9)
	정부기관	344(100.0)	11(3.2)	333(96.8)
	기 타	185(100.0)	49(26.5)	136(73.5)
사업체 규모 ³⁾	1~4인	2(100.0)		2(100.0)
	5~9인	503(100.0)	79(15.7)	424(84.3)
	10~49인	342(100.0)	50(14.6)	292(85.4)
	50~99인	795(100.0)	48(6.0)	747(94.0)
	100~499인	255(100.0)	15(5.9)	240(94.1)
	500인 이상	369(100.0)	15(4.1)	354(95.9)
		553(100.0)	30(5.4)	523(94.6)

주 : 근로 시간 형태가 무응답인 3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기사업체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95.9%로 전일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9인 사업체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15.7%로 가장 높았다.

제 2 절 근로시간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우선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은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였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을 물었다. 이 절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규칙성과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 혹은 고용형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고용형태

우선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을 살펴보면 <표 6-10>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89.5%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다만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0.7%p 감소한 것이어서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6-10>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단위 : 명, %)

	1차년도(1998년)	2차년도(1999년)	3차년도(2000년)
전 체	4,012(100.0)	3,901(100.0)	3,603(100.0)
불규칙적	390(9.7)	510(13.1)	379(10.5)
규칙적	3,620(90.2)	3,361(86.2)	3,223(89.5)
모름/무응답	2(0.0)	30(0.8)	1(0.0)

<표 6-11>을 통해서 고용형태별로 규칙성 유무를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97%를 상회하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의 많고 적음에 상관 없이 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단위 : 명, %)

		전 체	불규칙적	규칙적
전 체		3,602(100.0)	379(10.5)	3,223(89.5)
종사상 지위	상용직	2,731(100.0)	56(2.1)	2,675(97.9)
	임시직	431(100.0)	92(21.3)	339(78.7)
	일용직	405(100.0)	221(54.6)	184(5.8)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324(100.0)	103(31.8)	221(68.2)
	전일제	3,243(100.0)	265(8.2)	2,978(91.8)

주 : 근로시간 규칙성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종사상 지위가 무응답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근로시간형태가 무응답인 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반면, 임시직의 경우 78.7%만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 5.8%만이 규칙적으로 일한다고 답하였다.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68.2%만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했으며, 전일제 근로자는 91.8%가 규칙적으로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정규근로시간 유무와 근로시간 분포

(단위 : 명, %)

		1차년도 ¹⁾ (1998년)	2차년도 ²⁾ (1999년)	3차년도 ³⁾ (2000년)
전 체		4,008(100.0)	3,853(100.0)	3599(100.0)
정규 근로시간	유	3,180(79.3)	3,189(82.8)	2,970(82.5)
	무	828(20.7)	664(17.2)	629(17.5)
주당 정규 근로 시간 ⁴⁾	1~18시간	107(2.7)	118(3.1)	126(3.5)
	19~35시간	256(6.4)	261(6.8)	217(6.0)
	36~43시간	484(12.1)	399(10.4)	316(8.8)
	44시간	829(20.7)	755(19.6)	869(24.1)
	45~54시간	1,270(31.7)	1,119(29.0)	997(27.7)
	55~70시간	699(17.4)	813(21.1)	747(20.7)
	71시간이상	340(8.5)	387(10.0)	324(9.0)
	모름/무응답	23(0.6)	1(0.0)	7(0.2)
	평균(시간)	49.6	50.6	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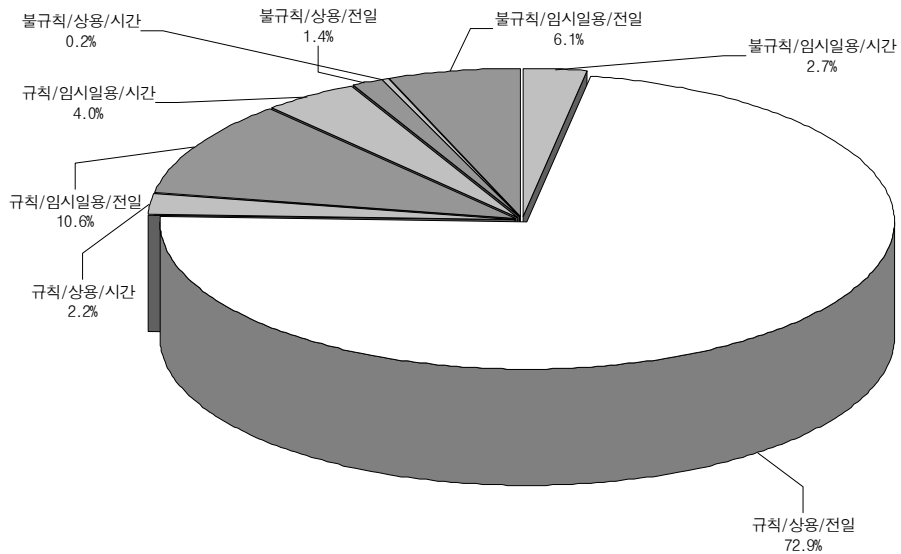
주 : 1) 정규근로시간 유무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정규근로시간 유무가 무응답인 4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정규근로시간 유무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진 응답자의 경우 주당정규근로시간을,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계산함.

[그림 6-3]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고용형태 간의 관계



주 : 각 비중(%)은 종사상 지위, 근무시간 형태, 고용 형태 중 하나라도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한 3,563 명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림 6-3]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와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분포하고 있는 유형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면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고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인 경우로 전체의 7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면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이고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인 경우로 10.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임시·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뿐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는 전일제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현재의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면서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이고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인 경우도 6.1%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 형태나 취업 형태에 관한 용어들의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2. 정규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82.5%는 현재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에서 고용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도 조사(82.8%)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결과이며 1차년도(79.4%)에 비해서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주당 정규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8.5%가 36시간 미만의 단시

<표 6-1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시간)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3,596(100.0)	3.5	6.0	8.8	24.2	27.7	20.8	9.0	50.1
성별	남 성	2,190(100.0)	2.6	3.7	6.9	25.3	27.2	23.8	10.5	51.8
	여 성	1,406(100.0)	4.9	9.7	11.7	22.5	28.6	16.0	6.7	47.5
혼인 상태	미 혼	1,063(100.0)	3.3	4.2	8.2	24.5	30.2	22.0	7.6	50.2
	기혼 유배우	2,343(100.0)	3.4	6.4	8.7	25.5	27.0	19.5	9.4	50.0
	기혼 무배우	181(100.0)	6.6	11.6	13.3	5.0	22.7	28.7	12.2	51.0
연령	15~19세	89(100.0)	7.9	12.4	6.7	16.9	29.2	16.9	10.1	47.5
	20~24세	365(100.0)	3.3	5.2	8.5	24.4	32.1	18.4	8.2	49.8
	25~29세	551(100.0)	2.2	3.4	8.3	28.5	29.4	21.8	6.4	50.1
	30~39세	1,135(100.0)	2.7	6.1	10.0	24.1	28.8	20.8	7.5	49.7
	40~49세	871(100.0)	3.4	5.3	7.3	27.7	25.7	22.3	8.3	50.3
	50~59세	419(100.0)	3.3	6.2	9.3	19.1	25.8	19.6	16.7	53.0
	60세 이상	166(100.0)	12.0	16.3	9.6	8.4	19.9	19.9	13.9	46.6
교육 수준	무 학	61(100.0)	4.9	18.0	9.8	6.6	14.8	36.1	9.8	52.3
	고졸 미만	870(100.0)	5.5	9.3	9.0	9.5	27.7	25.3	13.7	51.7
	고 졸	1,448(100.0)	1.9	5.0	8.4	21.4	30.3	23.1	9.9	51.7
	대학재학 및 중퇴	156(100.0)	12.2	13.5	9.0	20.5	21.8	17.3	5.8	44.0
	전문대졸	353(100.0)	1.4	2.0	6.5	35.1	29.5	18.4	7.1	50.3
	대졸 이상	707(100.0)	3.4	3.5	10.2	44.7	24.0	11.2	3.0	46.1

주: 주당정규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 교육수준과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1명, 6명 분석에서 제외.

간 근로를 하고 있고, 24.2%가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자가 57.4%로 조사되어 전년도에 비해 2.5%p 감소하였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의 주당 정규근로시간은 평균 50.1시간이며, 전년도(50.6시간)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으나 1차년도(49.6%)보다는 0.5%p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51.8시간, 여성이 47.5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여성의 경우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13.1%p 높은 반면, 정규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인 응답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길어 51.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71시간 이상인 응답자 비중 역시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미혼(7.6%)에 비해 4.6%로,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9.4%)에 비해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평균 53.0시간으로 가장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최하위 및 최상위

연령층은 정규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당 정규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18시간 이하는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36시간 미만 근로는 20세 미만 저연령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대 후반에서 가장 높았다. 정규근로시간이 71시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높은 연령층일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장시간 근로의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근로시간도 대체로 짧아지고 있다. 즉, 고졸 및 고졸 미만의 경우 초과근무를 제외하더라도 주당 평균 52시간 전후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졸은 50.3시간, 대졸 이상은 46.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44시간인 응답자의 비중이 44.7%로 타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6-14>를 통해 산업별 정규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공익설비업, 농림어업 부문이 약 55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평균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50시간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서비스업이 45.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부문 종사자의 63.4%는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의 평균 근로시간이 55.4시간으로 타직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직 근로자 가운데 44시간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2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관리직은 서비스직에 비해 9.7시간이 짧은 4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은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44시간인 응답자의 비중(4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4시간~54시간 사이에 70% 이상의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민간기업의 정규근로시간이 타기업형태에 비해 6.3~11.6시간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민간기업의 경우 70%에 근접하고 있어 이 비중이 24.4%에 불과한 정부기관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기업형태는 외국인 회사로서 평균 44.7시간으로 조사되었으나, 민간기업을 제외하면 기업형태간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근로시간의 분포에서 공기업과 정부기관 종사자의 과반수가 44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별 정규근로시간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평균 근로시간이 47.6시간으로 가장 짧은 반면, 1~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는 가장 긴 53.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이 55시간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이 46.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의 비중은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14>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3,596(100.0)	3.5	6.0	8.8	24.2	27.7	20.8	9.0	50.1
산업 ¹⁾	농림어업	36(100.0)	8.3	13.9	5.6	5.6	16.7	30.6	19.4	53.6
	광공업	1,013(100.0)	1.4	2.9	6.9	25.6	38.1	21.5	3.7	49.9
	건설업	390(100.0)	4.4	11.8	9.0	8.2	26.9	31.0	8.7	50.5
	공익설비업	252(100.0)	1.6	0.4	2.8	29.0	22.2	26.2	17.9	55.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31(100.0)	4.9	8.1	6.5	9.2	24.7	31.5	15.1	54.0
	금융및부동산업	456(100.0)	2.4	5.3	10.5	34.6	25.9	12.7	8.6	48.7
	공공서비스업	774(100.0)	5.7	7.6	14.2	35.9	20.4	8.1	8.0	45.9
	직업 ²⁾	전문관리직	872(100.0)	4.4	5.3	11.2	37.8	25.3	13.5	2.4
사무직	526(100.0)	1.0	1.7	6.7	44.9	30.4	11.0	4.4	48.2	
서비스직	475(100.0)	4.0	8.6	7.4	8.6	21.9	30.1	19.4	55.4	
농림어업직	29(100.0)	10.3	17.2	3.4	-	17.2	31.0	20.7	52.4	
생산직	1,647(100.0)	3.6	6.9	8.7	15.2	29.9	24.8	10.8	51.5	
기업체종류	민간회사	2,788(100.0)	2.9	5.4	7.7	18.4	30.7	24.6	10.3	51.8
	외국인회사	32(100.0)	-	3.1	28.1	28.1	34.4	6.3	-	44.7
	공기업	146(100.0)	2.1	0.7	5.5	58.9	23.3	8.2	1.4	46.2
	법인단체	98(100.0)	7.1	1.0	10.2	53.1	16.3	6.1	6.1	45.3
	정부기관	345(100.0)	1.7	4.6	11.9	57.4	15.7	4.1	4.6	45.5
	기 타	187(100.0)	15.5	25.1	17.1	5.9	14.4	14.4	7.5	40.2
	사업체규모 ³⁾	1~4인	509(100.0)	5.9	9.0	8.3	5.3	24.6	31.2	15.7
5~9인		348(100.0)	5.7	8.0	8.6	9.2	33.6	25.9	8.9	50.3
10~49인		801(100.0)	2.0	4.0	5.9	18.9	36.1	23.2	10.0	52.3
50~99인		258(100.0)	0.4	1.6	7.0	29.8	31.4	19.4	10.5	52.2
100~499인		370(100.0)	1.9	1.1	5.9	31.1	28.1	21.4	10.5	51.8
500인 이상		557(100.0)	2.3	3.6	10.2	38.2	25.7	15.8	4.1	47.6

주: 주당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7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사업체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초과근로시간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2,970명(82.5%)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는 2,970명 가운데 33.3%(990명)로 나타나, 전년도 조사 결과인 32.5%(1,269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

근로자의 38.0%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이보다 크게 낮은 14.2%, 1.9%만이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인 응답자가 임금근로자 전체의 30.6%로 가장 많았으며, 11~15시간이 10.6%로 가장 적었다.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8.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어, 1-2차년도(8.9시간, 8.5시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표 6-15> 임금근로자의 초과 근로

		1차년도 ¹⁾ (1998년)	2차년도 ²⁾ (1999년)	3차년도 ³⁾ (2000년)
전 체		3,170(100.0)	3,189(100.0)	2,970(100.0)
초과근로를 안함		1,901(60.0)	2,152(67.5)	1,980(66.7)
초과근로를 함		1,269(40.0)	1,037(32.5)	990(33.3)
주당 초과 근로 시간	1~4시간	343(27.0)	356(34.3)	303(30.6)
	5~6시간	246(19.4)	206(19.9)	238(24.0)
	7~10시간	327(25.8)	214(20.6)	204(20.6)
	11~15시간	170(13.4)	127(12.2)	105(10.6)
	16시간 이상	151(11.9)	127(12.2)	131(13.2)
	모름/무응답	32(2.5)	7(0.7)	9(0.9)
	평균(시간)	8.9	8.5	8.6

주: 1)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84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71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초과근로 여부가 모름/무응답인 63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16>을 통해서 초과급여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과근로를 하는 응답자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전년도 조사(54.5%)와 비슷한 수준(55.1%)을 보였다. 초과급여는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3.7%)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11.6%에 달하였다.

월평균 초과급여는 15.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만원 상승하였으며 이것은 1차년도 조사보다도 1.4만원 높은 수치이다. 초과급여의 수준은 월평균 10만원 이하가 53.4%, 1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 2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3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년도(4.6%)에 비해서 2.6%p 상승하였으며 21만원 이상 3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11.4%로 전년도(9.6%)에 비해 1.8%p 상승하였다.

시간당 초과급여로 환산해 보면, 1,5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5천원 이상 3천원 미만과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이 전년도에 비해 3.4%p 상승하였으며, 3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년도(27.4%)에 비해서 3.8%p 감소하였다.

<표 6-16>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1차년도 ¹⁾ (1998년)	2차년도 (1999년)	3차년도 (2000년)
전 체		1,268(100.0)	1,037(100.0)	990(100.0)
초과급여가 없음		582(45.9)	472(45.5)	445(44.9)
초과급여가 있음		686(54.1)	565(54.5)	545(55.1)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504(73.6)	451(79.8)	456(83.7)
	일정금액	153(22.3)	93(16.5)	63(11.6)
	기준없음	26(3.8)	18(3.2)	26(4.8)
	모름/무응답	2(0.3)	3(0.5)	-
월평균 초과급여	10만원 이하	366(53.4)	334(59.1)	291(53.4)
	11만~20만원	189(27.6)	141(25.0)	144(26.4)
	21만~30만원	57(8.3)	54(9.6)	62(11.4)
	31만원 이상	44(6.4)	26(4.6)	39(7.2)
	모름/무응답	30(4.8)	10(1.8)	9(1.7)
	평균(만원)	14.2	13.1	15.6
시간당 초과급여 ²⁾	1.5천원 미만	95(13.8)	84(14.9)	61(11.2)
	1.5천~3천원 미만	188(27.4)	145(25.7)	159(29.1)
	3천~5천원 미만	193(28.1)	155(27.4)	129(23.6)
	5천~1만원 미만	119(17.3)	123(21.8)	138(25.2)
	1만원 이상	52(7.6)	45(8.0)	42(7.7)
	모름/무응답	39(5.7)	13(2.3)	18(3.3)
평균(천원)		4.6	4.6	5.2

주 : 1) 초과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시간당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근로시간) 계산에 사용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임.

<표 6-17>을 살펴보면,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공업(46.7%)이었으며,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건설업이 10.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광공업, 공익설비업 부문의 초과근로시간도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농림어업을 제외할 경우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로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20.6%로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 사무직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이 평균 7.5~8.0시간대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서비스직의 초과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많은 임금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생산직도 주당 평균 8.6시간이었다.

초과근로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은 정규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전문관리직(38.6%)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에 41.8%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다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직 또한 36.2%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관리직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6-17>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초과근로시간

(단위 : 명, %)

		전 체	초과근로를 한다		초과근로를 안한다
				주당평균 초과근로시간 (시간)	
전 체		2,970(100.0)	990(33.3)	8.6	1,980(66.7)
산업 ¹⁾	농림어업	15(100.0)	2(13.3)	3.0	13(86.7)
	광공업	887(100.0)	414(46.7)	9.0	473(53.3)
	건설업	250(100.0)	54(21.6)	10.0	196(78.4)
	공익설비업	218(100.0)	82(37.6)	9.4	136(62.4)
	도소매및음식숙박업	496(100.0)	102(20.6)	7.6	394(79.4)
	금융및부동산업	385(100.0)	131(34.0)	7.7	254(66.0)
	공공서비스업	685(100.0)	192(28.0)	8.0	493(72.0)
직업 ²⁾	전문관리직	752(100.0)	290(38.6)	7.5	462(61.4)
	사무직	497(100.0)	180(36.2)	8.0	317(63.8)
	서비스직	394(100.0)	87(22.1)	9.5	307(77.9)
	농림어업직	10(100.0)	-	-	10(100.0)
	생산직	1278(100.0)	416(32.6)	8.6	862(67.4)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2291(100.0)	743(32.4)	8.6	1548(67.6)
	외국인회사	30(100.0)	13(43.3)	6.6	17(56.7)
	공기업	141(100.0)	65(46.1)	8.5	76(53.9)
	법인단체	88(100.0)	30(34.1)	9.0	58(65.9)
	정부기관	335(100.0)	132(39.4)	8.8	203(60.6)
	기타	85(100.0)	7(8.2)	8.7	78(91.8)
사업체 규모 ³⁾	1~4인	377(100.0)	45(11.9)	5.9	332(88.1)
	5~9인	268(100.0)	46(17.2)	5.2	222(82.8)
	10~49인	671(100.0)	230(34.3)	8.7	441(65.7)
	50~99인	246(100.0)	93(37.8)	8.4	153(62.2)
	100~499인	328(100.0)	141(43.0)	9.7	187(57.0)
	500인 이상	499(100.0)	251(50.3)	8.9	248(49.7)

- 주: 1)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사업체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기업형태별로는 법인단체와 민간회사가 초과근로를 한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낮았다. 반면 외국인회사는 종사자 중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법인이나 민간회사에 비해 약 10%p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6시간으로 가장 짧았으며, 법인단체와 정부기관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에서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법정 정규-초과근로시간이 정확하

게 구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규근무시간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100~499인 이하인 사업체에서 9.7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미만 사업체는 주당 6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임금 및 사회보험

이 절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주기 및 결정방식, 성과급제의 유무 및 형태, 그리고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지급 주기 및 결정방식

우선 <표 6-18>을 통해 임금지급 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인 93.6%는 월 주기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매일 지급받고 있다는 응답과 수시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3.1%, 2.0%에 불과하였다.

임금결정방식을 보면 월급제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79.1%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일당제가 10.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적급제와 연봉제는 각각 3.5%, 3.3%에 그치고 있다.

임금결정방식의 분포에서 두드러지는 남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연봉제 응답자는 남성이 4.1%인 데 반해 여성은 1.9%에 불과하며, 반대로 여성 임금근로자의 6.0%가 실적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반면 남성은 1.9%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

본인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임금결정시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과급제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1.8%로 전년도 조사에 비해 0.7%p, 1차년도 조사에 비해 5.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10.6%, 여성 임금근로자의 13.0%가 임금결정에 성과급제도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과급제의 유형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개인성과급제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가 적용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416명 가운데 74.0%가 개인성과급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집단성과급제가 16.0%, 회사성과급제가 1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특히 두드러진 것은 회사성과급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5.7%p 증가한 점이다. 반면, 개인성과급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1.5%p 감소하였다.

<표 6-18>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결정방식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3,599(100.0)	2,191(100.0)	1,408(100.0)
임금 지급 주기	한달	3367(93.6)	2041(93.2)	1326(94.2)
	보름/주	37(1.0)	23(1.0)	14(1.0)
	일	72(2.0)	37(1.7)	35(2.5)
	수시	110(3.1)	80(3.7)	30(2.1)
	기타	13(0.4)	10(0.5)	3(0.2)
임금 결정 방식	연봉계약제	117(3.3)	90(4.1)	27(1.9)
	월급	2848(79.1)	1753(80.0)	1095(77.8)
	주급/격주	4(0.1)	1(0.0)	3(0.2)
	일당	363(10.1)	238(10.9)	125(8.9)
	시간급제	84(2.3)	38(1.7)	46(3.3)
	도급제	42(1.2)	19(0.9)	23(1.6)
	실적급	126(3.5)	42(1.9)	84(6.0)
	기타	15(0.4)	10(0.5)	5(0.4)

주: 임금지급 주기 및 임금결정방식이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6-19>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3,537(100.0)	2,193(100.0)	1,410(100.0)
성과급제가 없다		3,121(88.2)	1,921(97.6)	1,200(85.1)
성과급제가 있다		416(11.8)	232(10.6)	184(13.0)
	개인성과급제 ¹⁾	308(74.0)	149(61.8)	159(81.1)
	집단(팀, 부서)성과급제	70(16.0)	48(19.9)	22(11.2)
	회사성과급제	55(12.6)	42(17.4)	13(6.6)
	해당사항 없음	4(0.9)	2(0.8)	2(1.0)
모름		66(1.8)	40(1.8)	26(1.8)

주: 1) 개인성과급제라고 답한 응답자 중 집단성과급제와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5명이
고, 회사성과급제와 함께 채택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이며, 이 모두를 다 채택하고 있다
고 답한 응답자는 5명임.

성과급제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분포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은 개인성과급제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낮은 반면, 집단성과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여성의 약 2배에 이르는 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성과급제의 경우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10.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금수준

먼저 근로소득의 변화추세를 <표 6-20>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임금은 2차년도에 비해서 58,000원 증가한 1,08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에 비해서는 24,000원 적은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차년도에 비해서 64,000원 증가한 1,235,000원이며 여성은 38,000원 증가한 760,000원이었다.

시간당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은 1차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5,400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2차년도에 비해서 500원 증가한 6,200원이나 여성은 200원 증가한 4,000원이었다.

2000년 한국노동패널에서 임금근로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¹³⁾은 108.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103.0만원과 비교하면 5.8만원 증가한 결과이며 1차년도의 111.2만원에 비해서 2.4만원 감소한 결과이다. 50만원 단위로 월평균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150만원 이상의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전년대비 3.4%p 증가한 반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약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근로소득의 변화

(단위 : 천원, 만원, %)

		월평균 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천원)		
		1998년 ¹⁾	1999년 ²⁾	2000년 ³⁾	1998년	1999년	2000년
전 체		111.2	103.0	108.8	5.4	5.0	5.4
성 별	남 성	130.8	123.5	129.9	6.1	5.7	6.2
	여 성	77.7	72.2	76.0	4.2	3.8	4.0

주: 1) 1998년 임금근로자 4,012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을 응답한 3,966명에 대한 자료임.

2) 1999년 임금근로자 3,901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을 응답한 3,820명에 대한 자료임.

3) 2000년 임금근로자 3,603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을 응답한 3,577명에 대한 자료임.

<표 6-21>은 월평균 임금과 함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129.9만원이며, 150만원 이상의 비중이 54.3%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58.5%에 불과한 7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78.1%는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여성보다 2,120원 많았다. 평균시간당 임금이 10,000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8.2%p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혼유배우자가 미혼 및 기혼무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

13) 본 절에서의 임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표 6-2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단위 : 명, %)

			월평균 임금(만원) ¹⁾	평균 시간당 임금(천원) ²⁾
전 체			108.8	5.37
성 별	남 성		129.9	6.17
	여 성		76.0	4.05
혼인상태	남 성	미 혼	99.2	4.65
		기혼유배우	141.5	6.73
		기혼무배우	94.5	4.94
	여 성	미 혼	79.3	4.06
		기혼유배우	77.0	4.21
		기혼무배우	55.1	2.64
연 령	15~19세		58.2	2.99
	20~24세		77.0	3.84
	25~29세		98.5	4.81
	30~39세		123.9	5.90
	40~49세		120.1	5.96
	50~59세		110.5	5.75
	60세 이상		72.9	4.64
교육수준	무 학		49.4	2.54
	고졸 미만		80.0	3.71
	고 졸		105.9	4.83
	대학재학 및 중퇴		86.0	4.90
	전문대졸		111.3	5.34
	대졸 이상		158.8	8.36

주: 1) 월평균 임금 유무가 무응답인 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2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2)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33명은 분석에서 제외.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총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임.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유배우자 간의 임금 차이는 미미하나, 기혼무배우자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각 혼인상태별로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미혼 여성이 4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기혼무배우자가 25.2로 가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기혼유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인 141.5만원에 비해 여성 기혼무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은 55.1만원이었다.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미혼인 경우 남녀간의 차이는 적었으나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남녀간의 차이가 2,520원으로 가장 컸다. 기혼남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730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았으며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640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간당 평균임금이 10,000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성이 14.7%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점차 증가하다가 30대 123.9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의 경우 임금수준이 1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4%인 데 비해서 40대는 31.2%, 50대는 25.6%, 60대는 11.0%였다. 연령별로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30~50세 연령층의 시간당 임금이 전체 평균(5,370원)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3,400원 미만은 20세 미만(79.0%)이, 3,400원에서 7,500원 미만은 20대 후반(62.7%), 7,500원 이상은 50대(25.9%)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월평균 임금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월평균 158.8만원을 받는 반면, 고졸은 105.9만원, 고졸 미만은 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학생과 재학생이 대부분인 대학 재학 및 중퇴의 경우에도 86.0만원이었다.

<표 6-22>를 통해서 산업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공익설비업 부문으로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126.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이 121.2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2차년도에 비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 업종에서 임금수준이 상승하였다.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2차년도에 비해 7.7%p 상승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에서 124.8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냈던 것에 비하면 10.1%p 감소한 수치이다. 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임금 하락은 월평균 60만원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사업 확대와 함께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이 6,460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250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관리직(147.5만원)이며, 농림어업직을 제외하면 서비스직(88.9만원)의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56.1%인 데 비해서 사무직은 25.5%, 생산직은 14.2%, 서비스직은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시간당 7,920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이 3,940원으로 가장 적었다. 7,500원 이상 평균 시간당 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비해 각각 19.2%p씩 낮았다.

기업체 종류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회사를 제외하면, 모든 기업형태의 임금수준이 전체 월평균 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기업의 임금수준은 민간 기업보다 64.7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의 비중은 기타를 제외하고 외국인 회사가 28.1%로 가장 높았고 민간 회사가 6.9%로 가장 낮았다.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법인단체와 외국인 회사가 각각 9,350원, 8,610원 등으로 전체 평균(5,370원)보다 훨씬 높았다. 시간당 평균임금이 7,500원 이상인 응답자의 비중은 외국인 회사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민간 회사가 13.2%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 수준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143.9만원으로 4인 이하 사업체의 약 2배에 이르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표 6-22>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

(단위 : 명, %)

		평균 임금(만원) ¹⁾	평균 시간당 임금(천원) ²⁾
전 체		108.8	5.37
산업 ³⁾	농림어업	75.4	4.53
	광공업	106.5	4.97
	건설업	109.2	5.01
	공익설비업	126.0	5.6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91.8	4.25
	금융및부동산업	121.2	5.94
	공공서비스업	114.7	6.46
직업 ⁴⁾	전문관리직	147.5	7.92
	사무직	113.4	5.37
	서비스직	88.9	3.94
	농림어업직	71.8	4.31
	생산직	93.4	4.34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103.7	4.88
	외국인회사	168.4	8.61
	공기업	146.4	7.32
	법인단체	155.8	9.35
	정부기관	136.1	6.71
	기타	69.6	4.73
사업체 규모 ⁵⁾	1~4인	77.7	3.75
	5~9인	90.5	4.77
	10~49인	107.8	4.83
	50~99인	115.9	5.19
	100~499인	117.4	5.78
	500인 이상	143.9	6.86

주 : 1) 월평균 임금 유무가 무응답인 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월평균임금이 무응답인 26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주당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33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

4)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

5) 사업체 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500인 이상이 21.2%로 가장 높았고 4인 이하 사업체와 5~9인 사업체가 2.0%로 가장 낮았다.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시간당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의 기업은 6,860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았고, 4인 이하의 기업은 3,750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간당 임금이 10,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이 16.4%로 4인 이하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3. 사회보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임금근로자에게 직장을 통하여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임금근로자의 54.5%를 차지하여 다섯 가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이 각각 47.5%, 8.6%, 49.6%, 41.0%로 나타났다. 각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인구학적 특성과 기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23> 임금근로자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

		국민연금 ¹⁾	특수직역 ²⁾	직장의료 ³⁾	고용보험 ⁴⁾	산재보험 ⁵⁾	
전 체		1696(47.5)	307(8.6)	1952(54.5)	1741(49.6)	1405(41.0)	
성 별	남 성	1198(55.1)	210(9.7)	1375(63.0)	1210(56.6)	1012(48.5)	
	여 성	498(35.7)	97(7.0)	577(41.3)	531(38.6)	393(29.4)	
혼 인 상 태	남성	미 혼	294(53.1)	26(4.7)	314(56.5)	291(53.6)	233(44.0)
		기혼유배우	885(56.7)	183(11.8)	1037(66.3)	898(58.6)	756(50.5)
		기혼무배우	18(31.6)	-	22(38.6)	20(35.1)	21(36.8)
	여성	미 혼	260(52.3)	29(5.9)	287(57.4)	276(56.0)	194(41.1)
		기혼유배우	220(28.5)	67(8.7)	268(34.8)	232(30.7)	178(24.1)
		기혼무배우	18(14.5)	-	21(16.9)	22(17.7)	20(16.0)
연 령	15~19세	35(41.7)	1(1.2)	41(47.1)	39(47.0)	30(37.0)	
	20~24세	185(51.1)	12(3.4)	201(55.4)	194(54.3)	145(41.9)	
	25~29세	308(56.5)	38(7.0)	336(61.5)	321(59.8)	236(46.1)	
	30~39세	565(50.0)	104(9.3)	643(56.7)	578(51.8)	487(44.6)	
	40~49세	393(45.3)	99(11.5)	462(53.3)	395(46.5)	338(40.6)	
	50~59세	189(45.2)	46(11.1)	217(52.0)	186(45.4)	149(37.1)	
	60세 이상	21(12.7)	7(4.2)	52(31.5)	28(17.5)	20(12.6)	
교 육 수 준	무 학	10(16.4)	-	9(14.8)	10(16.7)	8(13.3)	
	고졸 미만	283(32.7)	7(0.8)	297(34.4)	286(33.4)	247(29.3)	
	고 졸	735(51.1)	75(5.3)	785(54.4)	744(52.3)	620(44.7)	
	대학재학 및 중퇴	63(41.2)	8(5.2)	71(46.1)	72(46.5)	55(36.4)	
	전문대졸	213(60.5)	40(11.5)	250(71.2)	220(64.0)	169(50.9)	
	대졸 이상	392(56.0)	177(25.2)	540(76.4)	409(61.0)	306(47.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사회보험의 미가입 대비 가입자의 비중임. 가입 여부가 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각 사회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다음과 같음.

- 1)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대해 28명(0.8%)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 2) 특수직역연금 가입여부에 대해 48명(1.3%)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 3)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20명(0.6%)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 4)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88명(2.4%)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 5)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170명(4.7%)이 '잘 모르겠다'로 응답함.

다섯 가지 사회보험 모두 남성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가입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19~24%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녀 모두 직장의료보험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임금근로자 중 사회보험 가입자의 산업, 직업 및 기업체 특성

(단위 : 명, %)

		국민연금	특수직역	직장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 체		1696(47.5)	307(8.6)	1952(54.5)	1741(49.6)	1405(41.0)
산업 ¹⁾	농림어업	9(24.3)	-	10(27.0)	8(22.2)	7(20.0)
	광공업	674(66.9)	7(0.7)	681(67.6)	662(66.3)	585(60.1)
	건설업	123(31.8)	1(0.3)	110(28.5)	124(32.5)	127(33.2)
	공익설비업	177(70.5)	31(12.5)	208(82.5)	190(76.0)	156(65.3)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90(30.4)	1(0.2)	186(29.7)	186(30.0)	132(21.8)
	금융및부동산업	282(62.3)	7(1.6)	292(64.5)	274(61.4)	183(43.1)
	공공서비스업	227(29.6)	258(33.8)	447(57.8)	284(38.4)	207(28.6)
직업 ²⁾	전문관리직	462(53.5)	161(18.7)	590(67.8)	471(56.4)	352(43.7)
	사무직	326(62.5)	82(15.8)	401(76.5)	349(67.6)	262(52.4)
	서비스직	111(23.6)	35(7.5)	134(28.6)	114(24.7)	84(18.5)
	농림어업직	5(17.2)	-	5(17.2)	5(17.2)	5(17.2)
	생산직	772(47.1)	27(1.7)	798(48.7)	782(48.1)	689(43.2)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1429(51.6)	10(0.4)	1418(51.2)	1408(51.4)	1141(42.6)
	외국인회사	23(71.9)	2(6.3)	27(84.4)	24(77.4)	20(69.0)
	공기업	112(77.2)	18(12.9)	126(86.3)	118(84.3)	93(69.4)
	법인단체	58(59.8)	27(28.1)	84(84.8)	58(61.1)	44(48.4)
	정부기관 ³⁾	61(17.9)	245(71.6)	280(81.4)	123(38.6)	99(31.7)
	기타	13(7.0)	5(2.7)	17(9.0)	10(5.4)	8(4.4)
사업체 규모 ³⁾	0인	-	-	-	-	-
	1~4인	46(9.0)	2(0.4)	32(6.3)	50(9.9)	35(6.9)
	5~9인	95(27.8)	2(0.6)	82(24.0)	96(28.6)	74(22.3)
	10~49인	450(56.4)	6(0.8)	470(58.8)	427(54.3)	342(44.7)
	50~99인	183(71.5)	19(7.5)	205(79.5)	186(72.7)	134(55.4)
	100~499인	304(83.5)	9(2.5)	316(86.1)	307(84.8)	251(72.5)
	500인 이상	433(78.0)	16(2.9)	444(80.1)	436(79.6)	364(69.1)

주 : 각 사회보험의 가입여부가 무응답인 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각 사회보험별 가입여부가 불확실한 응답자의 비중은 앞의 <표 6-23> 참조.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 종사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사 결과 평균 가입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사업체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혼인상태별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미혼자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가입률이 3~10%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미혼상태인 응답자의 각 사회보험 가입률이 41~57%로 나타나고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일 경우 그 가입률은 약 20%p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각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증가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은 20대 후반 이후 가입자의 비율이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20세~4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가입자의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47.1~37.0%에 머물고 있으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의 이 비중은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17.5~4.2% 내외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직장의료보험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률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고졸의 경우 특수직역연금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각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약 50%대에 이르고 있으나, 전문대졸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61~71%까지 상승하고 있다. 대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직장의료보험 가입률은 각각 56.0%와 76.4%로 나타나, 국민연금은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낮게, 직장의료보험은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공익설비업 부문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가입률이 70%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설비업 부문 종사자의 82.5%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도 각각 70.5%, 76.0%에 이르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된 특수직역연金的 경우 공공서비스업의 가입률이 가장 높아 33.8%였다.

금융 및 부동산업과 광공업의 각 사회보험 가입률이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43~67%로 공익설비업 부문에 이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30% 안팎의 종사자만이 직장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 종사자 가운데 76.5%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62.5%, 고용보험 가입자가 67.6%, 산재보험 가입자가 52.4%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입자의 비중이 20%에서 25%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생산직 종사자 가운데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의 비중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특수직역연금을 제외하고 외국인 회사와 공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러나 종사자의 70%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회사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된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정부기관의 경우 가입률이 71.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100~499인 규모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4 절 노동조합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표 6-25>와 같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75.2%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66.1%)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더 높고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중도 더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남성의 경우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미혼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노조 가입비중은 미혼남성의 경우가 74.2%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56.3%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노동조합이 있다는 비중(24.1%)이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비중(5.4%)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40대 이상으로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뀐다.

교육수준별 노동조합의 유무에 관련된 분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의 여부는 교육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체일수록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나 가입률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6-2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명, %)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가입	미가입 ¹⁾			
전 체		751(20.9)	485(66.1)	249(33.9)	2708(75.2)	140(3.9)	
성 별	남 성	542(24.7)	369(69.5)	162(30.5)	1576(71.9)	73(3.3)	
	여 성	209(14.8)	116(57.1)	87(42.9)	1132(80.4)	67(4.8)	
혼 인 상 태	남성	미 혼	93(16.6)	66(74.2)	23(25.8)	432(77.0)	36(6.4)
		기혼유배우	437(27.9)	294(68.4)	169(31.6)	1092(69.7)	37(2.4)
		기혼무배우	10(17.2)	7(70.0)	3(30.0)	48(82.8)	-
	여성	미 혼	113(22.5)	64(58.2)	46(41.8)	361(71.8)	29(5.8)
		기혼유배우	89(11.4)	49(56.3)	38(43.7)	654(84.1)	35(4.5)
		기혼무배우	6(4.8)	3(60.0)	2(40.0)	115(92.7)	3(2.4)
연 령	15~19세	14(15.7)	8(61.5)	5(38.5)	61(68.5)	14(15.7)	
	20~24세	66(18.1)	36(56.3)	28(43.8)	274(75.1)	25(6.8)	
	25~29세	120(21.7)	77(66.4)	39(33.6)	409(74.0)	24(4.3)	
	30~39세	273(24.1)	195(72.8)	73(27.2)	835(73.6)	27(2.4)	
	40~49세	194(22.3)	125(65.4)	66(34.6)	655(75.2)	22(2.5)	
	50~59세	75(17.9)	43(58.9)	30(41.1)	326(77.6)	19(4.5)	
	60세 이상	9(5.4)	1(11.1)	8(88.9)	148(89.2)	9(5.4)	
교 육 수 준	무 학	1(1.6)	-	-	58(95.1)	2(3.3)	
	고졸 미만	88(10.1)	70(81.4)	16(18.6)	738(84.7)	45(5.2)	
	고 졸	291(20.1)	210(73.7)	75(26.3)	1109(76.6)	48(3.3)	
	대학재학 및 중퇴	32(20.5)	22(68.8)	10(31.3)	120(76.9)	4(2.6)	
	전문대졸	84(23.8)	45(56.3)	35(43.8)	253(71.7)	16(4.5)	
	대졸 이상	255(36.0)	138(55.0)	113(45.0)	429(60.5)	25(3.5)	

주: 1) 미가입이라 함은 설문지에서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고 있지 않다'와 '가입자격은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를 합한 것임.

<표 6-26>을 통해서 기업체 특성별 노조 유무와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로는 공익설비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이 55.6%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이 8.4%로 가장 낮았다. 노조 가입에 있어서도 공익설비업의 가입 비중이 82.5%로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은 28.3%로 낮았으나 가입 비중은 72.3%로 공익설비업 다음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직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은 18.6%로 높지 않았으나 노조 가입 비중이 82.3%로 가장 높았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공기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회사의 경우 노조 가입 비중이 81.8%로 가장 높았다. 법인단체의 경우 노조가 있는 비중은 전체 평균(20.9%)보다 훨씬 높은 42.4%로 나타났으나 노조 가입 비중은 전체 평균(66.1%)을 훨씬

밀도는 33.3%여서 대조를 보여주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노조가 있는 비중과 함께 노조 가입의 경우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가 있는 비중은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59.4%로 가장 높았으며, 노조 가입 비중은 100~499인과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가 약 7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26>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명, %)

		있다			없다	모름/ 무응답
		가입	미가입 ¹⁾			
전 체		751(20.9)	485(66.1)	249(33.9)	2708(75.2)	140(3.9)
산업 ²⁾	농림어업	5(13.2)	3(60.0)	2(40.0)	33(86.8)	-
	광공업	287(28.3)	201(72.3)	77(27.7)	686(67.7)	40(3.9)
	건설업	39(10.0)	21(53.8)	18(46.2)	339(86.9)	12(3.1)
	공익설비업	140(55.6)	113(82.5)	24(17.5)	97(38.5)	15(6.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53(8.4)	28(53.8)	24(46.2)	558(88.4)	20(3.2)
	금융및부동산업	96(21.1)	64(67.4)	31(32.6)	336(73.7)	24(5.3)
	공공서비스업	127(16.3)	54(42.9)	72(57.1)	623(80.2)	27(3.5)
직업 ³⁾	전문관리직	265(30.3)	124(47.9)	135(52.1)	574(65.7)	35(4.0)
	사무직	142(26.9)	93(66.4)	47(33.6)	364(69.1)	21(4.0)
	서비스직	31(6.5)	17(56.7)	13(43.3)	432(90.9)	12(2.5)
	농림어업직	1(3.3)	-	1(100.0)	29(96.7)	-
	생산직	306(18.6)	247(82.3)	53(17.7)	1271(77.1)	71(4.3)
기업체 종류	민간회사	543(19.5)	365(68.9)	165(31.1)	2138(76.6)	109(3.9)
	외국인회사	12(37.5)	9(81.8)	2(18.2)	20(62.5)	-
	공기업	81(55.5)	55(69.6)	24(30.4)	57(39.0)	8(5.5)
	법인단체	42(42.4)	14(33.3)	28(66.7)	54(54.5)	3(3.0)
	정부기관	70(20.2)	40(58.0)	29(42.0)	260(75.1)	16(4.6)
	기타	3(1.6)	2(66.7)	1(33.3)	181(96.3)	4(2.1)
사업체 규모 ⁴⁾	1~4인	1(0.2)	-	1(100.0)	509(99.8)	-
	5~9인	3(0.9)	2(66.7)	1(33.3)	339(97.4)	6(1.7)
	10~49인	46(5.7)	26(57.8)	19(42.2)	722(89.9)	35(4.4)
	50~99인	66(25.6)	44(66.7)	22(33.3)	179(69.4)	13(5.0)
	100~499인	173(46.8)	115(68.9)	52(31.1)	172(46.5)	25(6.8)
	500인 이상	331(59.4)	222(68.7)	101(31.3)	207(37.2)	19(3.4)

주: 1) 미가입이라 함은 설문지에서 '가입자격이 없어서 가입하고 있지 않다'와 '가입자격은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를 합한 것임.

2) 산업이 분류불가인 3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3) 직업이 군인 및 분류불가인 3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4) 사업체 규모가 모름인 74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제 1 절 종사장 지위

본 절에서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장 지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및 직·산업, 사업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이 있어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평소 주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가족종사자로 구분하였다.

<표 7-1>은 종사장 지위별 3차년도와 1-2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고용주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간 감소했으나 고용주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가족종사자의 비중으로 매년 1%p 내외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3차년도에 조사한 내용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기업체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은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40대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용주의 경우 고졸 이상의 비중이, 자영업자의 경우 고졸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성이며 배우자가 있고 40대이며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주 비중이 여성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가족종사자의 89%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 고용주의 비중은 1%p, 여성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3%p 상승하였다.

성별에 따른 혼인 여부에서도 남성의 경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인 경우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기혼여

<표 7-1>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98년)	2,415(100.0)	519(21.5)	1,367(56.6)	529(21.9)
2차('99년)	2,201(100.0)	517(23.5)	1,164(52.9)	520(23.6)
3차('00년)	2,019(100.0)	447(22.1)	1,085(53.7)	487(24.1)

<표 7-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019(100.0)	447(22.1)	1,085(53.7)	487(24.1)	
성별	남성	1,189(100.0)	370(31.1)	764(64.3)	55(4.6)	
	여성	830(100.0)	77(9.3)	321(38.7)	432(52.0)	
혼인상태 ¹⁾	남성	미 혼	89(100.0)	22(24.7)	45(50.6)	22(24.7)
		기혼유배우	1,066(100.0)	339(31.8)	694(65.1)	33(3.1)
		기혼무배우	34(100.0)	9(26.5)	25(73.5)	-
	여성	미 혼	26(100.0)	5(19.2)	12(46.2)	9(34.6)
		기혼유배우	698(100.0)	64(9.2)	220(31.5)	414(59.3)
		기혼무배우	105(100.0)	8(7.6)	89(84.8)	8(7.6)
연령	15~19세	4(100.0)	-	-	4(100.0)	
	20~24세	18(100.0)	3(16.7)	6(33.3)	9(55.0)	
	25~29세	62(100.0)	14(22.6)	28(45.2)	20(32.3)	
	30~39세	482(100.0)	149(30.9)	221(45.9)	112(23.2)	
	40~49세	689(100.0)	179(26.0)	348(50.5)	162(23.5)	
	50~59세	452(100.0)	83(18.4)	265(58.6)	104(23.0)	
	60세 이상	312(100.0)	19(6.1)	217(69.6)	76(24.4)	
교육수준	무 학	114(100.0)	1(0.9)	76(66.7)	37(32.5)	
	고졸 미만	815(100.0)	83(10.2)	486(59.6)	246(30.2)	
	고 졸	764(100.0)	202(26.4)	394(51.6)	168(22.0)	
	대학재학 및 중퇴	39(100.0)	10(25.6)	18(46.2)	11(28.2)	
	전문대졸	90(100.0)	35(38.9)	41(45.6)	14(15.6)	
	대졸 이상	197(100.0)	116(58.9)	70(35.5)	11(5.6)	

주 :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

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10대와 20대 초반의 경우는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나 나머지 연령대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의 경우 55.0%가 가족 종사자인 데 비해서 60세 이상의 경우 69.6%가 자영업자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경우,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은 반면,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는 반대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019(100.0)	447(22.1)	1,085(53.7)	487(24.1)
산업 ¹⁾	농림어업	455(100.0)	15(3.3)	282(62.0)	158(34.7)
	광공업	258(100.0)	93(36.0)	100(38.8)	65(25.2)
	건설업	100(100.0)	44(44.0)	47(47.0)	9(9.0)
	공익설비업	100(100.0)	16(16.0)	80(80.0)	4(4.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818(100.0)	188(23.0)	426(52.1)	204(24.9)
	금융및부동산업	88(100.0)	33(37.5)	43(48.9)	12(13.6)
	공공서비스업	186(100.0)	56(30.1)	99(53.2)	31(16.7)
사업체 규모 ²⁾	0인	1,445(100.0)	-	1,077(74.5)	386(25.5)
	1~4인	429(100.0)	337(78.6)	-	92(21.4)
	5~9인	67(100.0)	56(83.6)	-	11(16.4)
	10인 이상	69(100.0)	54(78.3)	-	15(21.7)

주 : 3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산업이 분류불가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인 경우 66.7%가 자영업자인 데 반해서 대졸 이상의 경우 58.9%가 고용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종사자의 경우 농림어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종업원 수가 1~4인으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표 7-4>를 통해서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차년도와 1~2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비교해 보면 1차년도에 비해서 2차년도에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1.3%p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들어서 4.1%p 증가하여 80.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가족종사자의 경우 2차년도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다소 규칙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응답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고용주가 가장 낮았다. 1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족 종사자의 경우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5.3%에 불과하였으나 22.5%로 크게 증가하였고 고용주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질문한 월평균 근로일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차년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3차년도에 들어서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4.9일로 1차년도에 비해서 1.6일, 2차년도에 비해서 1.8일 감소한 결과이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1.3일, 가족 종사자는 1.6일 감소하였다.

<표 7-4>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 근로일수 비교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 (1998년) ¹⁾	규칙적	2,154(89.2)	479(92.3)	1,174(85.9)	501(94.7)
	월평균근로일수(일)	26.5	26.3	26.3	26.9
	불규칙적	260(10.8)	40(7.7)	192(14.1)	28(5.3)
2차 (1999년) ²⁾	규칙적	1,709(77.9)	445(87.4)	861(74.0)	403(77.5)
	월평균근로일수(일)	26.7	26.2	26.7	27.3
	불규칙적	484(22.1)	64(12.6)	303(26.0)	117(22.5)
3차 (2000년) ³⁾	규칙적	1,545(80.1)	398(90.9)	779(76.6)	368(77.5)
	월평균근로일수(일)	24.9	24.9	24.7	25.7
	불규칙적	385(19.9)	40(9.1)	238(23.4)	107(22.5)

주 : 월평균 근로일수는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고 한 응답자에게만 질문함.

- 1) 1차년도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와 월평균 근로일수에 각각 모름/무응답 1명, 9명은 분석에서 제외.
- 2) 2차년도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와 월평균 근로일수에 각각 모름/무응답 8명, 5명은 분석에서 제외.
- 3) 3차년도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와 월평균 근로일수에 각각 모름/무응답 12명은 분석에서 제외.

다음은 <표 7-5>를 통해서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로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근로일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53.9%로 가장 높았으며, 규칙적인 경우는 공공서비스업이 98.3%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을 제외할 경우 건설업의 경우가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근로시간의 규칙성

(단위 : 명, %)

		전 체	규칙적	불규칙적
산 업 ¹⁾	농림어업	445(100.0)	205(46.1)	240(53.9)
	광공업	243(100.0)	213(87.7)	30(12.3)
	건설업	92(100.0)	67(72.8)	25(27.2)
	공익설비업	90(100.0)	73(81.1)	17(18.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88(100.0)	727(92.3)	61(7.7)
	금융 및 부동산업	86(100.0)	78(90.7)	8(9.3)
	공공서비스업	176(100.0)	173(98.3)	3(1.7)
사업체 규모 ²⁾	0인	1,368(100.0)	1,036(75.7)	332(24.3)
	1~4인	423(100.0)	387(91.5)	36(8.5)
	5~9인	64(100.0)	53(82.8)	11(17.2)
	10인 이상	67(100.0)	61(91.0)	6(9.0)

주 : 근로시간의 규칙성이 모름/무응답인 12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산업이 분류 불가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근로일수

(단위 : 명, %)

		월평균 근로일수				
		전 체	1~14일	15~23일	24~26일	27일 이상
산 업 ¹⁾	농림어업	452(100.0)	20(4.4)	43(9.5)	101(22.3)	288(63.7)
	광공업	258(100.0)	8(3.1)	15(5.8)	187(72.5)	48(18.6)
	건설업	99(100.0)	8(8.1)	16(16.2)	64(64.6)	11(11.1)
	공익설비업	100(100.0)	6(6.0)	27(27.0)	48(48.0)	19(1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13(100.0)	19(2.3)	25(3.1)	309(38.0)	460(56.6)
	금융 및 부동산업	88(100.0)	3(3.4)	5(5.7)	45(51.1)	35(39.8)
	공공서비스업	88(100.0)	7(3.7)	30(16.0)	80(42.8)	70(37.4)
사업체 규모 ²⁾	0인	1,436(100.0)	62(4.3)	125(8.7)	515(35.9)	734(51.1)
	1~4인	428(100.0)	3(0.7)	25(5.8)	228(53.3)	172(40.2)
	5~9인	67(100.0)	5(7.5)	6(9.0)	37(55.2)	19(28.4)
	10인 이상	69(100.0)	1(1.4)	4(5.8)	52(75.4)	12(17.4)

주 : 월평균 근로일수가 모름/무응답인 12명은 분석에서 제외.

1) 산업이 분류 불가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2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건설업으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8.8%p나 감소하였다.

사업체 규모 면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자수가 0인 사업체의 경우 24.3%가 근로일수가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7-6>을 통해서 사업체 특성별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7일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의 경우 24~26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0인 사업체의 경우 27일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75.4%가 24~26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당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에 대해 3차년도와 1~2차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당근로시간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2차년도 모두 59.8시간에서 3차년도 58.4시간으로 1.4시간 감소하였다. <표 7-7>과 [그림 7-1]을 통해서 종사상 지위별로도 모두 주당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고용주의 경우 2차년도에 다소 상승하였으며 3차년도 들어서 다시 감소하였고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주의 근로시간은 60.6시간으로 2차년도에 비해 1.7시간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 역시 각각 1.4시간, 0.9시간 감소하였다. 1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감소한 것은 가족 종사자로 3.2시간 감소하였다.

<표 7-7>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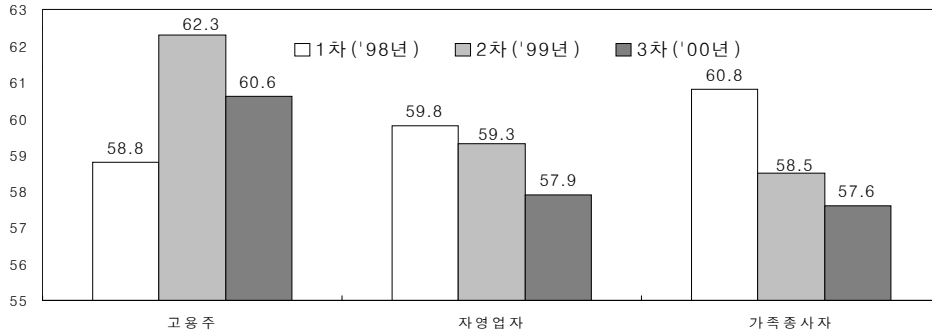
(단위 : 시간, 명)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1998년)	59.8(2,378)	58.8(516)	59.8(1,340)	60.8(522)
2차(1999년)	59.8(2,185)	62.3(504)	59.3(1,161)	58.5(520)
3차(2000년)	58.4(2,006)	60.6(446)	57.9(1,075)	57.6(485)

주 : ()은 응답자의 수임.

[그림 7-1]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비교

(단위 : 시간)



<표 7-8>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006(100.0)	446(100.0)	1,075(100.0)	485(100.0)
주당 평균근로시간 (시간)		58.4	60.6	57.9	57.6
주당 근로 시간	1~18시간	124(6.1)	20(4.5)	84(7.7)	20(4.1)
	19~35시간	219(10.9)	15(3.4)	124(11.4)	80(16.4)
	36~43시간	153(7.6)	27(6.0)	77(7.1)	49(10.1)
	44~54시간	334(16.6)	111(24.9)	167(15.4)	56(11.5)
	55~70시간	615(30.5)	152(34.0)	310(28.6)	153(31.4)
	71시간이상	561(27.8)	121(27.1)	313(28.9)	127(26.1)
	모름/무응답	12(0.6)	1(0.2)	9(0.8)	2(0.4)

주 : 주당근로시간이 모름/무응답인 15명은 분석에서 제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자 주당 정규근로시간인 50.1시간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8.6%)을 고려할 경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근로시간의 분포를 <표 7-8>을 통해서 살펴보면, 3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의 비중은 17.0%로 나타났으며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20.5%로 고용주(7.9%), 자영업자(19.1%)보다 높았다. 5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의 비중은 전체 58.3%로 이 중 고용주의 비중이 가장 높아 61.1%였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비교해 보면, 55시간 이상의 비중이 25.9%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9>를 통해서 비임금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주당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주당 5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58.5

시간, 여성이 58.2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60.2시간)이 남성(59.6시간)보다 길었던 2차년도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혼인상태별로 주당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59.3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49.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연령별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연령층은 20대 후반으로서 62.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경우 63.1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40대의 경우 57.5시간으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면, 젊은 연령층의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상승한 반면 30~40대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60.1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반면, 대졸 미만과 대졸 이상은 54.7시간으로 무학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사업체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산업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장시간 근로하는 산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주당 66.2시간 일하는 것으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2,019(100.0)	6.2	10.8	7.6	16.6	30.5	27.8	0.6	58.4	
성 별	남 성	1,189(100.0)	6.0	8.8	6.6	20.4	30.6	27.0	0.6	58.5	
	여 성	830(100.0)	6.5	13.7	8.9	11.1	30.2	28.9	0.7	58.2	
혼 인 상 태	남성	미 혼	88(100.0)	3.4	9.1	9.1	20.5	31.8	25.0	1.1	59.3
		기혼유배우	1,067(100.0)	6.3	8.9	6.3	20.3	30.3	27.4	0.6	58.5
		기혼무배우	34(100.0)	2.9	5.9	11.8	20.5	38.2	20.6	-	59.1
	여성	미 혼	26(100.0)	11.5	26.9	3.8	11.5	23.1	23.1	-	49.6
		기혼유배우	698(100.0)	5.4	13.2	8.7	11.1	30.8	30.1	0.6	59.3
		기혼무배우	105(100.0)	12.4	13.3	11.4	10.5	28.6	22.9	1.0	53.4
연 령	15~19세	4(100.0)	-	25.0	25.0	-	25.0	25.0	-	57.0	
	20~24세	17(100.0)	5.9	17.6	5.9	11.8	47.1	5.9	5.9	50.2	
	25~29세	62(100.0)	3.2	11.3	9.7	16.1	24.2	35.5	-	62.6	
	30~39세	482(100.0)	4.4	7.5	5.6	20.1	31.5	30.3	0.6	60.1	
	40~49세	689(100.0)	4.6	7.8	7.5	17.0	31.2	31.5	0.3	57.5	
	50~59세	452(100.0)	6.9	11.3	6.4	16.8	31.0	26.5	1.1	49.1	
	60세 이상	313(100.0)	12.1	21.4	11.8	10.3	26.8	17.3	0.3	49.6	
교 육 수 준	무 학	114(100.0)	9.6	28.1	8.8	6.1	29.8	17.5	-	49.5	
	고졸 미만	815(100.0)	6.4	12.6	7.7	11.6	31.5	29.6	0.5	60.0	
	고 졸	764(100.0)	5.8	8.4	6.8	18.6	28.7	30.9	0.9	60.1	
	대학 재학	39(100.0)	7.7	12.8	7.7	10.3	38.5	23.1	-	54.7	
	전문대졸	90(100.0)	3.3	6.7	6.7	23.3	34.4	24.4	1.1	59.7	
	대졸 이상	197(100.0)	6.1	4.6	9.6	33.0	29.9	16.8	0.6	54.7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근로시간 분포

(단위 : 명, %)

		전 체 (명)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5~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모름/ 무응답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2,019(100.0)	6.2	10.8	7.6	16.6	30.5	27.8	0.6	58.4
산업 ¹⁾	농림어업	455(100.0)	8.6	23.5	14.3	10.3	29.0	13.6	0.7	49.0
	광공업	258(100.0)	2.7	7.8	6.6	32.9	36.0	14.0	0.0	55.3
	건설업	100(100.0)	11.0	12.0	7.0	31.0	22.0	16.0	1.0	48.6
	공익설비업	100(100.0)	5.0	8.0	4.0	25.0	31.0	26.0	1.0	57.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818(100.0)	5.3	5.6	4.3	11.5	30.8	41.7	0.9	66.2
	금융 및 부동산업	88(100.0)	6.8	5.7	9.1	26.1	37.5	14.8	0.0	54.2
	공공서비스업	187(100.0)	6.4	9.6	8.6	15.0	26.7	33.7	0.0	59.4
사업체 규모 ²⁾	0인	1,444(100.0)	6.8	13.1	8.0	14.0	28.8	28.5	0.8	57.6
	1~4인	429(100.0)	3.7	5.1	5.8	18.0	36.4	31.0	0.0	62.0
	5~9인	67(100.0)	11.9	6.0	7.5	25.4	34.3	13.4	1.5	53.2
	10인 이상	69(100.0)	2.9	4.3	8.7	46.3	27.5	10.1	0.0	53.6

주 : 1) 산업이 분류불가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2) 사업체 규모가 모름/무응답인 3명은 분석에서 제외.

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로 구분했을 때 1~4인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가 62.0시간으로 가장 길다.

제 3 절 근로소득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다룬다. 단, 여기서 고려하게 될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의미하며, 월평균 근로소득과 시간당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다.

<표 7-11>과 [그림 7-2]를 통해서 3차년도와 1~2차년도의 전체 비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2차년도에 비해서 월평균 근로소득의 경우 15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1차년도보다도 105,000원 증가한 수치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2차년도에 비해서 고용주의 경우 41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도 7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경우 2차년도에 449,000원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1>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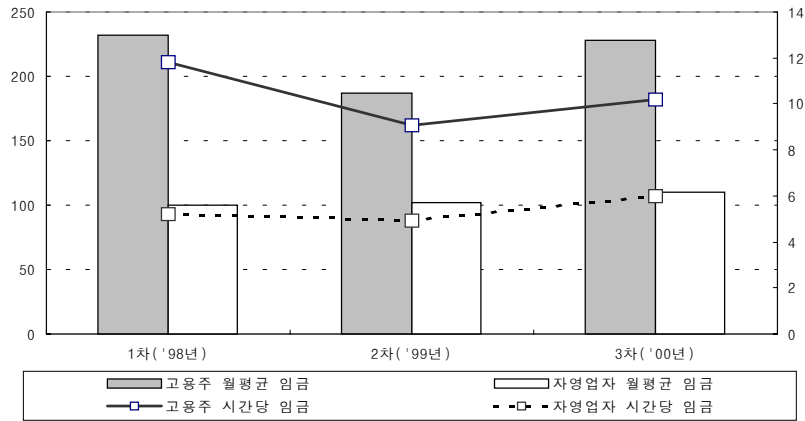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월평균(만, 명)	시간당(천, 명)	월평균(만, 명)	시간당(천, 명)	월평균(만, 명)	시간당(천, 명)
1차(1998년)	133.3(1,475)	6.8(1,455)	232.2(369)	11.8(367)	100.2(1,106)	5.2(1,088)
2차(1999년)	128.5(1,419)	6.2(1,418)	187.3(435)	9.1(434)	102.5(984)	4.9(984)
3차(2000년)	143.8(1,316)	7.3(1,307)	228.5(375)	10.2(374)	110.1(941)	6.0(933)

주 : ()값은 응답자의 수입.

시간당 근로소득=(월평균 근로소득/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

[그림 7-2]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비교(1~3차년도)

(만원) (천원)



<표 7-12>를 통해서 범주화된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21.0%에 해당하는 200만원 이상이였다. 2차년도에 16.0%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근로소득은 50만~100만원 이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자를 본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6%를 차지하여 9.4%에 불과했던 2차년도에 비해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의 향상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평균근로소득은 1,609,000만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서 172,000원이 상승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943,000원으로 2차년도에 비해서 94,000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적자를 본다고 응답한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12.1%로 2차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5.6%로 나타나, 2차년도에 비해서 20%p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12>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

		전 체	평균 근로소득 (만원)	50만원 미만	50만~ 100만원 미만	100만~ 150만원 미만	150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적 자	
전 체		1,579(100.0)	143.8	179(11.3)	300(19.0)	301(19.1)	214(13.6)	332(21.0)	253(16.0)	
성 별	남성	1,122(100.0)	160.9	104(9.3)	173(15.4)	224(20.0)	190(16.9)	295(26.3)	136(12.1)	
	여성	457(100.0)	94.3	75(16.4)	127(27.8)	77(16.8)	24(5.3)	37(8.1)	117(25.6)	
혼 인 상 태	남 성	미 혼	68(100.0)	130.0	6(8.8)	16(23.5)	14(20.6)	10(14.7)	13(19.1)	9(13.2)
		기혼 유배우	1,021(100.0)	164.0	93(9.1)	150(14.7)	203(19.9)	175(17.1)	278(27.2)	122(11.9)
		기혼 무배우	33(100.0)	125.4	5(15.2)	7(21.2)	7(21.2)	5(15.2)	4(12.1)	5(15.2)
	여 성	미 혼	18(100.0)	116.2	-	4(22.2)	4(22.2)	4(22.2)	1(5.6)	5(27.8)
		기혼 유배우	344(100.0)	104.7	41(11.9)	93(27.0)	62(18.0)	18(5.2)	32(9.3)	98(28.5)
		기혼 무배우	94(100.0)	59.2	34(36.2)	30(31.9)	11(11.7)	2(2.1)	4(4.3)	13(13.8)
연 령	15~19세	1(100.0)	-	-	-	-	-	-	1(100.0)	
	20~24세	9(100.0)	113.8	-	5(55.6)	1(11.1)	1(11.1)	1(11.1)	1(11.1)	
	25~29세	47(100.0)	108.2	1(2.1)	11(23.4)	17(36.2)	4(8.5)	4(8.5)	10(21.3)	
	30~39세	379(100.0)	168.4	11(2.9)	66(17.4)	80(21.1)	75(19.8)	93(24.5)	54(14.2)	
	40~49세	546(100.0)	171.2	35(6.4)	92(16.8)	96(17.6)	86(15.8)	160(29.3)	77(14.1)	
	50~59세	357(100.0)	125.1	48(13.4)	72(20.2)	77(21.6)	35(9.8)	62(17.4)	63(17.6)	
60세 이상	240(100.0)	72.4	84(35.0)	54(22.5)	30(12.5)	13(5.4)	12(5.0)	47(19.6)		
교 육 수 준	무 학	78(100.0)	45.9	38(48.7)	16(20.5)	3(3.8)	2(2.6)	1(1.3)	18(23.1)	
	고졸 미만	595(100.0)	108.5	101(17.0)	141(23.7)	121(20.3)	57(9.6)	66(11.1)	109(18.3)	
	고 졸	612(100.0)	158.0	27(4.4)	114(18.6)	127(20.8)	109(17.8)	159(26.0)	76(12.4)	
	대학 재학	32(100.0)	143.4	2(6.3)	3(9.4)	9(28.1)	4(12.5)	7(21.9)	7(21.9)	
	전문대졸	77(100.0)	173.3	4(5.2)	10(13.0)	11(14.3)	16(20.8)	25(32.5)	11(14.3)	
	대졸 이상	185(100.0)	232.2	7(3.8)	16(8.6)	30(16.2)	26(14.1)	74(40.0)	32(17.3)	

주 : 월평균 근로소득이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

한편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가장 높은 근로소득을 얻은 집단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성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1,640,0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기혼 여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592,000원이었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혼남성의 배우자 있는 경우 182,000원 증가하였으나 배우자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 오히려 6,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월평균 근로소득은 40대에서 1,712,000원으로 가장 근로소득이 높았고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근로소득이 724,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40대의 경우 188,000원 증가하였으나 20대 초반은 31,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근로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서 학력별 차이를 보여주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차이가 540,000원에서 742,000원으로 늘어났으며, 대졸자와 전문대졸자의 경우도 418,000원에서 589,000원으로 늘어났다.

미취업자의 특성

제 1 절 미취업자와 구직활동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여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난주와 지난 1개월 이내의 구직활동 여부를 질문하였다.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83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5.4%였으며, 지난주에 일자리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는 경우는 62명으로 1.2%였다. 대부분의 미취업자(93.4%)가 지난주는 물론 지난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를 포함하여 지난 1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구직자로 정의해 볼 때, <표 8-1>과 [그림 8-1]을 통해서 구직자 비중을 살펴보면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중은 6.6%로 지난 2차년도 조사에 비해 3.8%p 감소하였으며, 1차년도와 비교해 보면 15.2%p 감소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직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10.3%, 여성은 6.5%로 나타나, 남성의 구직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6.7%p 감소한 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2.0%p 감소하여 남성의 감소폭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와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는 20.9%p, 여성은 1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구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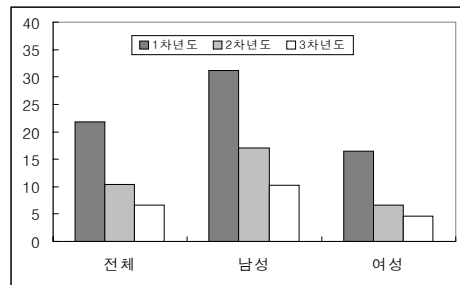
인구특성별 구직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구직자 비중의 차이는 연령별 구분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 남성은 20대 초반에 8.6%이던 구직자의 비중이 20대 중반에 22.5%,

<표 8-1> 성별 미취업자의 지난주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 안함	전 체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안함
1차년도	2,516 (100.0)	645 (25.6)	141 (5.6)	1,730 (68.8)	4,352 (100.0)	530 (12.2)	184 (4.2)	3,638 (83.6)
2차년도	2,038 (100.0)	294 (14.4)	54 (2.6)	1,690 (82.9)	3,625 (100.0)	188 (5.2)	51 (1.4)	3,386 (93.4)
3차년도	1,852 (100.0)	165 (8.9)	26 (1.4)	1,661 (89.7)	3,366 (100.0)	118 (5.4)	36 (1.1)	3,212 (95.4)

[그림 8-1] 미취업자의 구직자(1개월 기준) 비중(1~3차년도)



30대에 43.1%로 증가한 이후 40대에 26.6%로 하락하여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은 20대 초반에 11.5%로 가장 높게 오르고 20대 후반에는 7.1%로 떨어지며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의 경우 남성은 40대까지 증가하였다가 5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해 보면, 구직 포기 시점이 앞당겨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30대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0대 후반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직자의 비중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미혼일 때 구직자의 비중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모두 기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구직자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자의 경우가 남녀 각각 41.4%, 14.1%로 공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구직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졸 이상자와 고졸자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문대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남성의 경우 고졸자의 구직자 비중이 대졸자의 구직자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 대졸자들의 구직 노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2> 성별 미취업자의 지난주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남 성				여 성			
		전 체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 안함	전 체	지난 주 구직 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안함
연령	15~19세	586 (100.0)	14 (2.4)	1 (0.2)	571 (97.4)	506 (100.0)	4 (0.8)	2 (0.4)	500 (98.8)
	20~24세	231 (100.0)	16 (6.9)	4 (1.7)	211 (91.3)	298 (100.0)	24 (8.1)	10 (3.4)	264 (88.6)
	25~29세	169 (100.0)	32 (18.9)	6 (3.6)	131 (77.5)	281 (100.0)	18 (6.4)	2 (0.7)	261 (92.9)
	30~39세	102 (100.0)	40 (39.2)	4 (3.9)	58 (56.9)	635 (100.0)	28 (4.4)	11 (1.7)	596 (93.9)
	40~49세	143 (100.0)	34 (23.8)	4 (2.8)	105 (73.4)	446 (100.0)	21 (4.7)	5 (1.1)	420 (94.2)
	50~59세	166 (100.0)	19 (11.4)	1 (0.6)	146 (88.0)	396 (100.0)	15 (3.8)	3 (0.8)	378 (95.5)
	60세 이상	455 (100.0)	10 (2.2)	6 (1.3)	439 (96.5)	804 (100.0)	8 (1.0)	3 (0.4)	793 (98.6)
혼인 상태	미혼	1,025 (100.0)	76 (7.4)	14 (1.4)	935 (91.2)	922 (100.0)	50 (5.4)	14 (1.5)	858 (93.1)
	기혼유배우	719 (100.0)	82 (11.4)	12 (1.7)	625 (86.9)	1,901 (100.0)	58 (3.1)	18 (0.9)	1,825 (96.0)
	기혼무배우	94 (100.0)	6 (6.4)	0 (0.0)	88 (93.6)	537 (100.0)	9 (1.7)	4 (0.7)	524 (97.6)
교육 수준	무학	92 (100.0)	1 (1.1)	0 (0.0)	91 (98.9)	457 (100.0)	4 (0.9)	2 (0.4)	451 (98.7)
	고졸미만	825 (100.0)	45 (5.5)	6 (0.7)	774 (93.8)	1,241 (100.0)	34 (2.7)	10 (0.8)	1,197 (96.5)
	고졸	372 (100.0)	55 (14.8)	14 (3.8)	303 (81.5)	1,005 (100.0)	40 (4.0)	16 (1.6)	949 (94.4)
	대학재학 및 중퇴	356 (100.0)	17 (4.8)	3 (0.8)	336 (94.4)	309 (100.0)	9 (2.9)	3 (1.0)	297 (96.1)
	전문대졸	41 (100.0)	16 (39.0)	1 (2.4)	24 (58.5)	141 (100.0)	16 (11.3)	4 (2.8)	121 (85.8)
	대졸이상	166 (100.0)	31 (18.7)	2 (1.2)	133 (80.1)	212 (100.0)	15 (7.1)	1 (0.5)	196 (92.5)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 단념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주와 지난 1개월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경우, 알맞은 일

<표 8-3>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없었다
1차년도	1,500 (100.0)	1,257 (83.8)	243 (16.2)
2차년도	587 (100.0)	520 (88.6)	67 (11.4)
3차년도	345 (100.0)	296 (85.8)	49 (14.2)

<표 8-4> 미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없었다	
성별	남성	191 (100.0)	171 (89.5)	20 (10.5)	
	여성	154 (100.0)	125 (81.2)	29 (18.8)	
혼인 상태	남성	미혼	90 (100.0)	77 (85.6)	13 (14.4)
		기혼유배우	94 (100.0)	87 (92.6)	7 (7.4)
		기혼무배우	6 (100.0)	6 (100.0)	0 (0.0)
	여성	미혼	64 (100.0)	56 (87.5)	8 (12.5)
		기혼유배우	76 (100.0)	56 (73.7)	20 (26.3)
		기혼무배우	13 (100.0)	12 (92.3)	1 (7.7)
연령	15~19세	21 (100.0)	13 (61.9)	8 (38.1)	
	20~24세	54 (100.0)	48 (88.9)	6 (11.1)	
	25~29세	58 (100.0)	52 (89.7)	6 (10.3)	
	30~39세	83 (100.0)	78 (94.0)	5 (6.0)	
	40~49세	64 (100.0)	55 (85.9)	9 (14.1)	
	50~59세	38 (100.0)	32 (84.2)	6 (15.8)	
	60세 이상	27 (100.0)	18 (66.7)	9 (33.3)	
교육 수준	무학	7 (100.0)	5 (71.4)	2 (28.6)	
	고졸 미만	95 (100.0)	75 (78.9)	20 (21.1)	
	고졸	125 (100.0)	113 (90.4)	12 (9.6)	
	대학재학 및 중퇴	32 (100.0)	25 (78.1)	7 (21.9)	
	전문대졸	37 (100.0)	36 (97.3)	1 (2.7)	
	대졸 이상	49 (100.0)	42 (85.7)	7 (14.3)	

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지난주 일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졸업을 앞둔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 기간에는 학업 때문에 취업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을 들 수 있다. <표 8-3>을 통해서 지난주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직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미취업자는 구직자 중 85.8%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보다 2.0%p 증가한 수치이나 2차년도에 비해서는 2.8%p 감소한 수치이다.

<표 8-4>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별로 구직자의 취업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89.5%였으며 여성은 그보다 낮은 81.2%였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중이 낮고 취업이 가능한 경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 가능성 비중이 3.3%p 낮아졌으며 여성의 경우 그보다 낮은 1.2%p 하락하여 성별 차이는 10.4%에서 8.3%로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구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우에 취업 가능성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앞의 <표 8-2>에서 남성의 경우 구직자의 비중은 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취업 가능성 비중도 사례수가 적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성의 비중이 92.6%로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구직자의 비중이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미혼이 높았듯이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 가능성 비중이 87.5%로 기혼유배자의 7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30대의 경우 취업 가능성 비중에 있어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를 정점으로 점차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구직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전문대졸의 경우 지난주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하였다는 응답이 9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졸이 90.4%, 대졸이 85.7% 순이었다.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비중과 비교해 본다면 대졸 구직자의 비중이 고졸보다 높지만 취업 가능성 비중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92.3%로 구직자 중 취업 가능성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고졸의 경우 비중이 1.9%p 낮아졌으며 고졸 미만의 경우 취업 가능성 비중이 11.3%p나 하락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2.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이유

지난 1개월간 한 번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561명으로 미취업자 5,218명 중 10.7%였다. 이들에게 취업 의사가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다.

<표 8-5>를 통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9.4%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22.6%는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이라고 답하였다. 2차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는 6.7%p 상승한 반면, 자녀양육이나 가사부담 등은 각각 2.6%p, 4.1%p로 감소하였다.

<표 8-6>을 통해서 인구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56.2%가 일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또는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여성은 그보다 낮은 49.4%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사일 때문에

<표 8-5> 미취업자가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2~3차 비교)

(단위 : %)

	전 체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일자리를 찾을수 없어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여성, 고령자, 장애인 차별	구직 결과를 기다림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	가사일 때문	건강상 이유로	기타
2차년도	100.0	22.7	24.3	5.9	4.7	1.9	11.0	8.7	6.3	14.5
3차년도	100.0	29.4	22.6	4.8	5.5	2.9	8.4	4.6	7.1	14.6

<표 8-6> 미취업자가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전 체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일자리를 찾을수 없어 포기함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여성, 고령자, 장애인 차별	구직 결과를 기다림	어린 아이를 돌보기 때문	가사일 때문	건강상 이유로	기타	
전 체		561 (100.0)	165 (29.4)	127 (22.6)	27 (4.8)	31 (5.5)	16 (2.9)	47 (8.4)	26 (4.6)	40 (7.1)	82 (14.6)	
성별	남 성	219	27.9	28.3	5.9	5.9	5.0	-	-	9.1	17.8	
	여 성	342	30.4	19.0	4.1	5.3	1.5	13.7	7.6	5.8	12.6	
혼인 상태	남 성	미혼	99	22.2	26.3	11.1	-	7.1	-	-	9.1	24.2
		기혼유배우	111	31.5	28.8	1.8	10.8	3.6	-	-	9.9	13.5
	여 성	미혼	89	25.8	22.5	14.6	1.1	5.6	-	1.1	4.5	24.7
		기혼유배우	223	32.3	17.5	0.4	4.0	-	20.6	10.8	5.4	9.0
	기혼무배우	29	31.0	19.1	4.1	5.3	1.5	-	3.4	13.8	3.4	
	연령	15~19세	49	18.4	22.4	26.5	-	4.1	-	-	2.0	26.5
	20~24세	70	25.7	18.6	10.0	-	8.6	2.9	1.4	2.9	30.0	
	25~29세	63	23.8	20.6	6.3	1.6	3.2	11.1	3.2	12.7	17.5	
	30~39세	128	26.6	21.1	-	1.6	3.1	27.3	7.8	2.3	10.2	
	40~49세	97	38.1	19.6	1.0	2.1	1.0	3.1	8.2	13.4	13.4	
	50~59세	82	32.9	32.9	2.4	6.1	1.2	-	6.1	8.5	9.8	
	60세 이상	72	34.7	23.6	-	29.2	-	-	-	8.3	4.2	
교육 수준	무학	18	33.3	16.7	-	33.3	-	-	-	16.7	-	
	고졸 미만	182	32.4	25.8	4.4	7.7	0.5	1.6	4.9	9.9	12.6	
	고졸	235	28.1	24.7	6.0	3.0	2.1	13.6	5.1	5.5	11.9	
	대학재학 및 중퇴	50	24.0	18.0	8.0	-	6.0	4.0	4.0	2.0	34.0	
	전문대졸	24	29.2	25.0	-	-	8.3	12.5	4.2	12.5	8.3	
	대졸 이상	52	28.8	7.7	1.9	7.7	9.6	13.5	3.8	3.8	23.1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는 여성의 경우 각각 13.7%와 7.6%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사 부담 등의 현실적인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

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남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87.5%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경우와는 달리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6%, 가사일 때문에가 10.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찾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20대 후반에는 44.4%이나 50대에는 65.8%, 60대 이상에는 58.3%로 증가하였다.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높아 응답 비중이 27.3%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는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의 경우 일자리가 없거나 찾을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58.2%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이상이 36.5%로 가장 낮았다.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고졸과 대졸이 약 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을 원하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무학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20대 후반의 경우 어린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3%이고 이 비중은 30대에는 32.8%로 오른다. 30대의 경우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중이 15.2%, 40대에는 15.6%이다. 여성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24.6%가 자녀양육 때문에, 19.8%가 가사일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표 8-7>을 통해서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고,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 응답자의 32.1%가 학업을 들었다. 이는 구직의사와 취업의사가 모두 없는 응답자 가운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인구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업을 주된 이유로 든 경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인 응답자가, 연령대별로는 20대 전반 이하의 응답자가, 교육수준은 재학생과 휴학생이 대부분인 대학 재학 및 중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이유로 든 경우는 각각 12.1%와 13.6%였다. 이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0.8%만이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이유로 든 반면 여성은 18.0%가 자녀양육을, 20.3%가 가사일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기혼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30.8%로 다른 경우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녀양육의 경우 30대가 58.6%로 가장 높았다. 가사일의 경우 40대 연령층에서 비중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부담은 30대 연령층의 경우 취업의사를 저하시키는 주된 이유로 80.4%를 차지하여 30대 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하여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는 21.3%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70.4%가 이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한 50대의 경우 건강문제로 일을 않으려는 경우가 31.9%로 40대나 60세 이상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표 8-7> 미취업자로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전 체	학업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일때문	가사일 때문에	은퇴 하여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 문제로	당분간 쉬고 싶어서	기타	
전 체		100.0 (4,360)	32.1 (1,399)	12.1 (526)	13.6 (592)	21.3 (927)	13.6 (591)	3.3 (145)	4.1 (180)	
성별	남 성	1,462	50.5	0.3	0.5	21.3	16.8	4.5	6.3	
	여 성	2,898	22.8	18.0	20.3	21.2	11.9	2.7	3.0	
혼인 상태	남 성	미혼	849	85.0	0.1	-	0.2	3.8	3.2	7.7
		기혼유배우	521	1.5	0.6	0.4	50.7	35.1	6.9	4.8
		기혼무배우	80	-	-	3.8	56.3	35.0	3.8	1.3
	여 성	미혼	776	84.1	2.3	1.7	0.1	2.6	5.2	4.0
		기혼유배우	1,622	0.3	30.8	34.0	16.6	13.3	1.9	3.0
		기혼무배우	496	-	1.0	4.2	69.4	22.2	1.6	1.6
연령	15~19세	1,030	96.1	0.2	0.1	-	0.3	1.1	2.2	
	20~24세	411	75.4	3.4	1.7	0.2	2.9	5.4	10.9	
	25~29세	334	26.3	45.5	6.9	0.3	6.6	5.7	8.7	
	30~39세	531	1.1	58.6	21.8	-	8.7	5.8	4.0	
	40~49세	437	1.1	7.3	50.8	1.1	26.3	7.6	5.7	
	50~59세	448	-	2.9	33.5	21.4	31.9	4.5	5.8	
	60세 이상	1,169	-	0.2	6.2	70.4	21.4	0.8	0.9	
교육 수준	무학	529	-	0.4	4.0	71.1	23.0	0.2	1.3	
	고졸 미만	1,809	41.7	3.7	12.9	21.3	16.8	1.4	2.2	
	고졸	1,029	7.7	31.1	25.6	11.4	11.8	6.2	6.3	
	대졸 미만	590	87.5	1.9	1.0	1.0	1.7	2.2	4.7	
	전문대졸	122	5.7	48.4	20.5	3.3	6.6	8.2	7.4	
	대졸 이상	283	15.2	23.3	15.5	14.2	9.5	11.0	11.0	

3. 구직방법과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사용하는 구직방법을 복수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별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구직활동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직방법은 친구나 친지의 소개로 54.4%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로 53.7%였으며,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경우도 38.5%나 됐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10.1%로 사설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5.4%p 높았다.

<표 8-8>을 1-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차년도에 비해서 학교, 학원, 스승의 소

<표 8-8>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구직방법

(단위 : 명, %)

	전체	학교, 학원, 스승의 소개	친구, 친지의 소개	공공 직업 안내소	사설 직업 안내소	신문, TV 등의 구인광고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족을 통해서	인터넷 등 전산망	기타
1차년도	1,500	9.8	57.0	11.3	5.3	53.3	32.1	12.8	6.7	2.6
2차년도	520	8.7	60.2	13.7	2.7	50.0	26.9	14.6	9.0	3.7
3차년도	296	8.4	54.4	10.1	4.7	53.7	38.5	10.1	14.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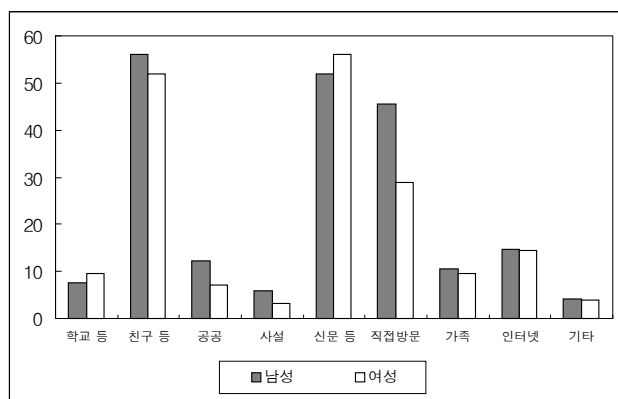
주 : 296명중의 비중으로 복수응답임

개나 친구·친지의 소개는 각각 5.8%p, 3.6%p 감소하였으나 신문 등의 구인방법이나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를 구한 경우가 각각 3.7%p, 11.6%p 증가하였다. 공공직업안내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3.6%p 감소한 반면, 사설직업안내소는 2.0%p 상승하여 대조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등 전산망을 이용한 구직방법은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나 학원, 스승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8-2]를 통해서 성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친구·친지의 소개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56.1%로 가장 높은 데 비해서 여성은 신문, TV 등의 구인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56.0%로 가장 높았다. 공공직업안내소를 활용하는 정도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경우에 있어서도 남녀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각각 5.1%, 16.8% 이러한 방법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학원, 스승의 소개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2.0% 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취업자의 구직기간은 평균 14.5주로 나타나 2차년도의 조사 결과에 비해서 10주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1~4주 사이인 경우가 39.8%로 가장 많았고, 9~24주 미만인 경우도 28.5%에 달하였다.

[그림 8-2]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성별 구직방법



<표 8-9> 미취업자 중 구직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구직기간

(단위 : 명, %)

		전 체	1~4주	5~8주	9~24주	25~48주	49주 이상	평균구직기간(주)
전 체		100.0 (274)	39.8 (109)	12.8 (35)	28.5 (78)	14.2 (39)	4.7 (13)	14.5
성별	남성	158	31.0	15.8	31.6	14.6	7.0	18.3
	여성	116	51.7	8.6	24.1	13.8	1.7	13.6
연령	15~19세	13	84.6	15.4	-	-	-	2.1
	20~24세	46	32.6	17.4	34.8	10.9	4.3	14.8
	25~29세	49	36.7	10.2	34.7	18.4	-	12.2
	30~39세	71	49.3	7.0	22.5	14.1	7.0	20.3
	40~49세	49	22.4	16.3	30.6	20.4	10.2	19.2
	50~59세	31	35.5	19.4	35.5	9.7	-	9.0
	60세 이상	15	53.3	6.7	20.0	13.3	6.7	21.1
교육 수준	무학	4	75.0	-	25.0	-	-	7.0
	고졸 미만	70	38.6	14.3	25.7	15.7	5.7	15.2
	고졸	99	42.4	16.2	21.2	17.2	3.0	13.8
	대학재학 및 중퇴	24	58.3	8.3	29.2	4.2	-	7.5
	전문대졸	36	27.8	11.1	38.9	13.9	8.3	18.0
	대졸 이상	41	31.7	7.3	41.5	12.1	7.3	16.4

주 : 구직활동기간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2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8-9>를 통해서 인구학적 특성별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의 구직기간이 평균 18.3주인 데 반해서 여성의 경우 그보다 짧은 13.6주 나타났다. 구직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4주가 51.7%로 절반 가까이가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서 남성의 경우 9~24주가 31.6%로 구간별 비중이 가장 높았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구직기간은 28.4주에서 18.3주로 10.1주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보다 적은 4.3주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1.1주로 평균 구직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15~19세는 2.1주로 가장 짧았다. 30~39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균 구직기간이 20.3주로 전체 평균에 비해 훨씬 길게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19.0주였던 20~24세는 14.8주로 4.2주 감소하였으며 34.0주나 되었던 60세 이상은 21.1주로 12.9주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구직기간이 각각 18.0주, 16.4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길었으며, 무학과 대졸 미만의 경우 각각 7.0주, 7.5주로 가장 짧았다.

제 2 절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중인 미취업자의 86.5%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로 임금근로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으며 가족 종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없었다.

<표 8-10>을 통해서 1-2차년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2차년도와 비교해 볼 때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은 0.6%p 감소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은 0.8%p 증가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에 비해서 3차년도의 경우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20%p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8-10>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1~3차년도)

(단위 : 명, %)

	전 체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가족 종사자
1차년도(1998)	823	63.5	34.4	2.2
2차년도(1999)	520	87.1	12.7	0.2
3차년도(2000)	296	86.5	13.5	0.0

<표 8-11>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

(단위 : %, 명)

		전 체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전 체		296 (100.0)	256 (86.5)	40 (13.5)
성별	남성	171	81.9	18.1
	여성	125	92.8	7.2
연령	15~19세	13	100.0	-
	20~24세	48	93.8	6.3
	25~29세	52	92.3	7.7
	30~39세	78	83.3	16.7
	40~49세	55	76.4	23.6
	50~59세	32	78.1	21.9
	60세 이상	18	100.0	-
교육 수준	무학	5	100.0	-
	고졸미만	75	88.0	12.0
	고졸	113	81.4	18.6
	대학재학 및 중퇴	25	100.0	-
	전문대졸	36	91.7	8.3
	대졸이상	42	83.3	13.5

<표 8-11>을 통해서 인구학적 특성별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미취업자 중 92.8%가 임금근로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10.9% 높았다. 2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임금근로자를 더 선호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2.3%p에 불과해 3차년도 들어서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경우 100%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40세 미만까지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40세 이상부터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차년도 조사에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22.6%로 가장 높았던 30대의 경우 3차년도에서 그 비중이 16.7%로 크게 감소한 반면, 40~50대의 경우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학력인 경우 고용주 및 자영업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18.6%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과 대학 재학의 경우 100%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를 통해서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4.8%가 전일제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 중 시간제를 선호하는 비중은 25.1%인 데 비해서 남성은 7.9%에 불과해 여성이 시간제를 더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여성이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은 29.3%에서 25.1%로 5.2%p 감소하였으며 남성 역시 시간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8.5%에서 7.9%로 0.6%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2>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단위 : %, 명)

		전 체	전일제	시간제
전 체		256 (100.0)	217 (84.8)	39 (15.2)
성별	남성	140	92.1	7.9
	여성	116	75.9	25.1
연령	15~19세	13	30.8	69.2
	20~24세	45	91.1	8.9
	25~29세	48	97.9	2.1
	30~39세	65	73.8	26.2
	40~49세	42	85.7	14.3
	50~59세	25	96.0	4.0
	60세 이상	18	94.4	5.6
교육수준	무학	5	80.0	20.0
	고졸 미만	66	86.4	13.6
	고졸	92	80.4	19.6
	대학재학 및 중퇴	25	60.0	40.0
	전문대졸	33	97.0	3.0
	대졸 이상	35	100.0	-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은 20대 후반이 97.9%로 가장 높았다.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은 50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50대의 경우 96.0%, 60세 이상의 경우 94.4%가 전일제를 희망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아져 대졸 이상의 경우 100%가 전일제를 희망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재학생과 휴학생이 대부분인 대학 재학 및 중퇴를 제외하고 무학인 경우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80.0%로 가장 낮았다.

<표 8-13>을 통해서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사나 학업이 25.6%로 비중이 높았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학업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8-13> 미취업자 중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

	전 체	남성	여성
전 체	39(100.0)	11(100.0)	28(100.0)
아이를 돌보려고	14(35.9)	-	14(50.0)
가사일 때문에	10(25.6)	1(9.1)	9(32.1)
학업을 위하여	10(25.6)	7(63.6)	3(10.7)
전일제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서	1(2.6)	1(9.1)	-
다른 일을 같이 하려고	1(2.6)	1(9.1)	-
건강 등 개인사정	3(7.7)	1(9.1)	2(7.1)

제 9 장

주관적 만족도 및 사회계층 소속감

제 1 절 생활만족도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생활 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 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의 일곱 가지 영역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 항목들은 '매우 만족스럽다'부터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9-1>에는 1-2-3차 생활만족도 비교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1-2-3차 생활만족도의 큰 변화점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생활 전체/전반 만족도가 1, 2차 2.9점, 3차 3.0점으로 0.1점 높아졌고, 가족관계는 1, 2차 3.7점, 3차 3.6점으로 0.1점 낮아졌으며,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1, 2, 3차 동일하게 3.1점이다. 가족의 수입은 1차 2.5점, 2차 2.6점, 3차 2.5점이고 다른 항목에 비하여 만족도가 가장 낮다. <표 9-2>와 [그림 9-1]은 3차년도 응답자들의 생활만족도를 5점척도로 보여준다. 가족관계의 만족도 점수가 3.6으로 가장 높으며 가족의 수입 만족도가 2.5로 가장 낮다. 또한 3차에 새로이 추가된 항목인 친인척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는 각각 3.4점으로 보통(3점)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표 9-1> 1-2-3차 생활만족도 비교

(단위 : 5점 척도)

	생활전체/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	여가활동	주거환경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
1차(1998년)	2.9	2.5	3.7	2.8	3.1	-	-
2차(1999년)	2.9	2.6	3.7	2.8	3.1	-	-
3차(2000년)	3.0	2.5	3.6	2.8	3.1	3.4	3.4

주 : 수치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생활만족도 평균 점수를 제시함. '매우 만족스럽다'를 5점으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를 1점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낸. 친인척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 항목은 3차에 추가된 항목이다.

<표 9-2>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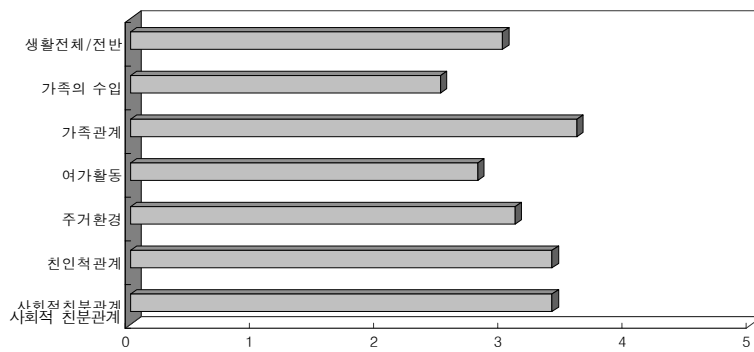
(단위 : 점, %)

	평균점수 (점)	매우 만족 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생활 전체/전반	3.0	0.4	21.5	62.0	14.2	1.8
가족의 수입	2.5	0.2	8.6	44.7	37.7	8.8
가족관계	3.6	4.2	53.7	38.0	3.6	0.4
여가활동	2.8	0.3	15.9	49.2	29.4	5.2
주거환경	3.1	0.9	29.7	53.1	14.6	1.6
친인척관계	3.4	1.9	41.3	50.9	5.3	0.6
사회적 친분관계	3.4	2.1	38.1	54.8	4.5	0.4

주 : 구성비는 전체 응답자 10842를 기준으로 함.

[그림 9-1]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만족도 각 항목의 비중을 보면 생활 전반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62.0%이며, 가족의 수입은 ‘보통이다’ 44.7%, ‘불만족스럽다’ 3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만족도는 ‘보통이다’ 44.7%, ‘불만족스럽다’ 37.7%, 여가활동은 ‘보통이다’ 49.2%, ‘불만족스럽다’ 29.4%이다.

<표 9-3>은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만족도이다. 성별 생활만족도를 보면 여성의 생활 전반 만족도는 3.04, 가족의 수입은 2.53, 가족관계 3.57, 여가활동 2.77, 주거환경 3.14, 친인척관계 3.37이며, 남성의 생활 전반 만족도는 3.05, 수입은 2.55, 가족관계 3.58, 여가활동 2.76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활동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으며 나머지 항목은 남성의 만족도가 높다. 혼인상태별 생활만족도는 기혼유배우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3.65, 주거환경 3.17, 친인척관계 3.45, 사회적 친분관계 3.41로 높으며, 미혼은 가족의 수입 2.68, 여가활동 2.88로 높다. 교육수준과 가구소득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표 9-3> 사회경제적 특성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전체 /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 관계	여가 활동	주거 환경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성별	남성	3.05	2.55	3.58	2.76	3.13	3.40	3.40
	여성	3.04	2.53	3.57	2.77	3.14	3.37	3.35
혼인 상태	미혼	3.09	2.69	3.54	2.88	3.10	3.31	3.38
	기혼 유배우	3.06	2.50	3.65	2.73	3.17	3.45	3.41
	기혼 무배우	2.75	2.29	3.23	2.72	3.03	3.17	3.12
교육 수준	무학	2.74	2.30	3.30	2.73	3.10	3.23	3.11
	고졸 미만	2.94	2.42	3.50	2.68	3.08	3.34	3.30
	고졸	3.05	2.54	3.62	2.72	3.10	3.40	3.39
	대학재학 및 중퇴	3.20	2.74	3.66	3.01	3.21	3.39	3.49
	전문대졸	3.18	2.67	3.66	2.80	3.22	3.49	3.48
	대졸 이상	3.32	2.81	3.75	3.01	3.34	3.52	3.56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2.69	2.01	3.39	2.61	2.98	3.26	3.23
	50만~100만원 미만	2.81	2.18	3.47	2.59	2.95	3.30	3.29
	100만~150만원 미만	2.99	2.40	3.59	2.71	3.08	3.41	3.38
	150만~200만원 미만	3.12	2.63	3.59	2.78	3.14	3.39	3.37
	200만~250만원 미만	3.20	2.78	3.65	2.82	3.22	3.42	3.44
	250만원 이상	3.33	3.04	3.75	3.00	3.33	3.52	3.53

주 :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임.

<표 9-4>는 경제활동상태별 생활만족도이다. 생활 전제, 가족의 수입, 가족관계에 임금근로자의 생활만족도가 각각 3.13, 2.64, 3.63으로 높다. 그러나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생활만족도가 각각 2.87, 3.15점으로 높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친인척관계 3.44, 사회적 친분관계에 3.42점으로 높다. 즉 비경제활동인구는 다수가 주부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여가활동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4> 경제활동상태별 생활만족도

(단위 : 점)

		생활전체 /전반	가족의 수입	가족 관계	여가 활동	주거 환경	친인척 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취업자	임금	3.13	2.64	3.63	2.74	3.14	3.42	3.34
	비임금	2.99	2.38	3.62	2.59	3.12	3.44	3.42
미취업자	실업자	2.74	2.12	3.44	2.69	2.95	3.28	3.29
	비경제활동인구	3.02	2.55	3.53	2.87	3.15	3.34	3.31

주 : 생활만족도 평균 점수를 제시함.

제 2 절 직무만족도 및 교육·기술 적합도

1. 직무만족도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설문하였다. 직무만족도 조사 항목은 임금, 비임금의 취업자 공통 8항목(소득·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반적인 만족도)과 임금근로자에게만 설문한 2항목(인사고과의 공정성, 복지후생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5>는 취업자의 1-2-3차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1-2-3차 직무만족도를 보면 차수에 따른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취업의 안정성이 1차 2.8, 2차 2.9, 3차 3.0으로 높아졌으며, 인사고과의 공정성이 2차 2.9, 3차 3.0으로 0.1점 높아졌다. 또한 근로환경은 1차 2.9점, 2, 3차 3.0점이며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1차 2.8, 2, 3차 2.9로 0.1점 높아졌다. 직무만족도의 항목 중에 3차에 낮아진 항목은 없으며 모든 항목이 2차보다 높아지거나 동일하다.

<표 9-5> 1-2-3차 직무만족도 비교

(단위 : 점)

	취업자공통					임금근로자	
	소득·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개인의 발전가능성	근로환경	인사고과 공정성	복지후생 제도
1차(1998년)	2.4	2.8	3.2	2.8	2.9	2.9	2.7
2차(1999년)	2.5	2.9	3.2	2.9	3.0	2.9	2.7
3차(2000년)	2.5	3.0	3.2	2.9	3.0	3.0	2.8

주 : 직무만족도 항목은 1-2-3차에 각각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는 1차에는 임금근로자에게만 물었으나 2, 3차에는 취업자 모두에게 묻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1차에는 비임금근로자에게 2, 3차에는 취업자 모두에게 묻고 있음. <표 10-5>는 1, 2, 3차의 비교를 위하여 1차의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됨.

<표 9-6>과 [그림 9-2]은 취업자의 직무만족도를 보여준다. 각 항목의 평균점수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가 3.3점, 일의 내용이 3.2점으로 비교적 높으며 소득·임금이 2.5로 보통(3점) 이하로 가장 낮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보면 소득·임금이 만족스럽다 10.4%, 보통이다 37.8%, 매우 불만족스럽다 10.5%이며, 취업의 안정성은 만족스럽다 26.2%, 보통이다 45.3%, 불만족스럽다 22.9%,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6%이다. 일의 내용은 매우 만족스럽다 1.1%, 만족스럽다 32.0%, 보통이다 49.6%, 불만족스럽다 15.6%이며 근무환경은 매우 만족스럽다 0.6, 만족스럽다 24.8%, 보통이다 50.3%, 불만족스럽다 22.1%이다.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이 '보통이다'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우 만족스럽다'의 비중은 모두 2% 이하이다.

<표 9-6> 취업자의 직무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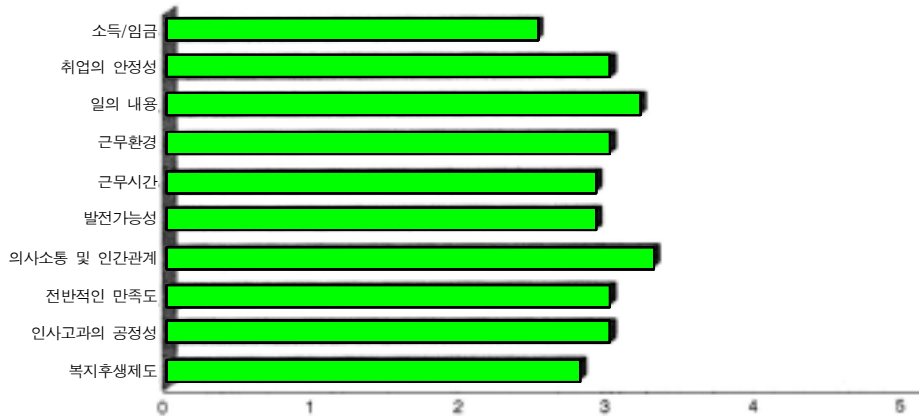
(단위 : 점, %)

		평균 점수 (점)	매우 만족 스럽다	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 스럽다
취업자 공통	소득·임금	2.5	0.2	10.4	37.8	41.1	10.5
	취업의 안정성	3.0	0.9	26.2	45.3	22.9	4.6
	일의 내용	3.2	1.1	32.0	49.6	15.6	1.6
	근무환경	3.0	0.6	24.8	50.3	22.1	2.1
	근무시간	2.9	0.5	22.3	47.3	26.6	3.2
	개인의 발전가능성	2.9	0.9	18.9	52.3	24.7	3.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3	1.8	32.8	57.5	7.2	0.7
	전반적인 만족도	3.0	0.4	19.6	57.8	20.2	2.0
임금 근로자	인사고과의 공정성	3.0	0.4	18.0	61.3	15.6	3.0
	복지후생정도	2.8	0.4	15.0	51.0	26.3	5.9

주 : 취업자 공통 항목의 구성비는 취업자 전체(5,624명)를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항목은 임금근로자(3,603명)를 기준으로 제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그림 9-2] 취업자의 직무만족도

(단위 : 점)



<표 9-7>을 통해 취업자의 직무만족도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살펴보자. 성별 직무만족도는 여성의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3.04, 2.92로 남자보다 높으며, 소득, 안정성, 일의 내용,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반적 만족도 등의 나머지 항목에선 모두 남자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혼인상태별 직무만족도를 보면 미혼은 소득 2.67, 취업의 안정성 3.09, 일의 내용 3.28, 근무환경 3.13, 근무시간 3.0, 발전 가능성 3.04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소득과 취업안정성은 미혼이 기혼무배우자보다 각각 0.41, 0.43으로 높게 나타난다. 생활만족도의 각 항목에서 기혼유배우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직무만족도는 미혼이 높다. 교육과 개인소득별 직무만족도는 교육수준과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표 9-7>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직무만족도

(단위 : 점)

		소득 임금	취업의 안정성	하고있는 일의 내용	근무 환경	근무 시간	개인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반적인 만족도
성별	남성	2.49	2.96	3.17	2.97	2.89	2.93	3.30	2.97
	여성	2.48	2.96	3.13	3.04	2.92	2.85	3.25	2.96
혼인 상태	미혼	2.67	3.09	3.28	3.13	3.00	3.04	3.34	3.11
	기혼 유배우	2.45	2.95	3.14	2.97	2.88	2.88	3.28	2.94
	기혼 무배우	2.26	2.66	2.94	2.83	2.78	2.67	3.05	2.74
교육 수준	무학	2.18	2.63	2.80	2.65	2.71	2.56	3.01	2.62
	고졸 미만	2.26	2.72	2.93	2.81	2.76	2.68	3.14	2.76
	고졸	2.50	2.97	3.15	2.98	2.88	2.89	3.30	2.96
	대학재학 및 중퇴	2.65	2.98	3.23	3.17	3.07	2.91	3.30	3.08
	전문대졸	2.65	3.16	3.35	3.17	3.00	3.08	3.38	3.10
	대졸 이상	2.81	3.33	3.53	3.33	3.19	3.28	3.48	3.32
개인 소득	50만원 미만	2.17	2.56	2.95	2.84	2.93	2.58	3.13	2.73
	50만~100만원 미만	2.36	2.85	3.08	2.94	2.85	2.77	3.22	2.89
	100만~150만원 미만	2.60	3.06	3.20	2.96	2.89	2.98	3.30	3.00
	150만~200만원 미만	2.73	3.24	3.33	3.10	2.94	3.07	3.40	3.15
	200만~250만원 미만	2.95	3.36	3.46	3.25	3.11	3.22	3.46	3.27
	250만원 이상	3.18	3.47	3.59	3.49	3.27	3.39	3.59	3.52

주 : 취업자 중 소득이 없거나(0) 적자를 보고 있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9-8>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무만족도이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직무만족도는 임금 2.7, 안정성 2.7, 일의 내용 3.2, 근무환경 3.11, 근무시간 3.0, 발전 가능성 3.03이며, 임시직은 임금 2.47, 안정성 2.65, 일의 내용 3.05, 근무환경 2.99, 발전 가능성 2.66이고, 일용직은 임금 2.21, 안정성 2.26, 일의 내용 2.79, 근무환경 2.62, 근무시간 2.71, 발전 가능성 2.48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의 직무만족도는 소득 2.54, 안정성 3.06, 일의 내용 3.28, 근무환경 3.12, 근무시간 2.95이며, 자영업자는 소득 2.14, 안정성 2.71, 일의 내용 2.93, 근무환경 2.83, 근무시간 2.75이고, 가족 종사자는 취업안정성 2.77, 일의 내용 2.86, 근무환경 2.85, 근무 시간 2.72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의 직무만족도가 임금 2.7, 취업의 안정성 2.7, 일의 내용 3.22, 근무환경 3.11, 근무시간 3.0, 발전 가능성 3.03으로 모든 항목에서 높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고용주의 만족도가 소득 2.54, 취업안정성 3.06, 일의 내용 3.28, 근무환경 3.12, 근무시간 2.95로 가장 높다.

임금만족도, 근무환경, 개인의 발전 가능성은 상용직이 임시직보다 각각 0.5점, 0.49점, 0.55점 높으며, 고용주는 가족 종사자보다 일의 내용, 발전 가능성의 항목에서 각각 0.42점, 0.41점 만족도가 높다.

<표 9-8>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무만족도

(단위: 점)

		소득, 임금	취업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전반적인 만족도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2.70	2.70	3.22	3.11	3.00	3.03	3.38	3.14
		임시직	2.47	2.65	3.05	2.99	2.90	2.66	3.19	2.90
		일용직	2.21	2.26	2.79	2.62	2.71	2.48	3.02	2.60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2.54	3.06	3.28	3.12	2.95	3.15	3.39	3.09
		자영업자	2.14	2.71	2.93	2.83	2.75	2.74	3.14	2.71
		가족종사자	-	2.77	2.86	2.85	2.72	2.74	3.16	2.72

주 : 상용/임시/일용직의 구분은 종사상 지위와 설문종류가 일치하는 경우만 분석에 사용함.

상용직과 고용주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소득·임금과 근무시간을 제외한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등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용주의 만족도가 상용직보다 높다. 특히 취업의 안정성은 고용주가 상용직보다 0.26점 높다. 종사상 지위별 직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이,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주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모든 종사상 지위 중 고용주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다.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의 자율성¹⁴⁾, 지시·감독받는 지의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유무¹⁵⁾, 근로시간의 형태, 노조의 유무를 묻고 있다. <표 9-9>는 이러한 변인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근무시간 자율성이 없다(근무시간 정해짐)는 소득·임금 2.62, 안정성 3.06, 일의 내용 3.23, 발전 가능성 2.93,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32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근무시간 자율성이 있다(근무시간 스스로 정함)보다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시한 출퇴근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응답하게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용직이 근로시간 자율성이 없다(근로시간 정해짐)에 응답하였고, 따라서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시감독을 받는지의 여부, 즉 노동통제의 여부를 통한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보면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소득·임금만족도 2.73, 안정성 3.14, 일의 내용 3.38, 근무환경 3.17, 근무시간 3.06, 발전가능성 3.07로 감독받는 임금근로자보다 모든 항목의 직무만족도가 높다.

근로계약기간의 유무에 대한 직무만족도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금근로자의 소득·임금만족도 2.62, 안정성 3.06, 일의 내용 3.24, 근무환경 3.05, 근무시간 2.95, 발전 가능성 2.92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보다

14)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는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는가?'를 통해서 묻고 있다.

15)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만 일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

<표 9-9>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단위 : 점)

		소득 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 의 공정성	복지후생 정도	전반적인 만족도
근무시간 자율성	스스로 정함	2.51	2.80	3.16	3.07	3.06	2.85	3.29	2.84	2.53	3.02
	정해짐	2.62	3.06	3.23	3.04	2.95	2.93	3.32	2.98	2.79	3.05
지시감독 여부	받음	2.59	3.02	3.19	3.01	2.93	2.89	3.29	2.95	2.76	3.02
	받지 않음	2.73	3.14	3.38	3.17	3.06	3.07	3.46	3.08	2.86	3.17
근로계약 기간유무	정해짐	2.55	2.60	3.11	3.09	3.02	2.77	3.27	2.80	2.61	3.00
	정해지 지않음	2.62	3.06	3.24	3.05	2.95	2.92	3.33	2.99	2.79	3.06
근로시간 형태	시간제	2.51	2.72	3.15	3.07	3.06	2.76	3.25	2.81	2.60	2.96
	전일제	2.63	3.08	3.23	3.04	2.94	2.94	3.33	2.99	2.79	3.06
노조 유무	유	2.79	3.36	3.41	3.18	3.07	3.06	3.43	3.14	3.09	3.22
	무	2.57	2.95	3.08	3.00	2.91	2.88	3.28	2.92	2.68	3.00

만족도가 높으며, 근로시간 형태에 있어서는 전일제가 시간제보다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높다. 노조의 유무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보면 현재의 일자리에 노조가 '있다'는 소득·임금만족도 2.79, 안정성 3.36, 일의 내용 3.41, 근무환경 3.18, 근무시간 3.07로 노조가 '없다'는 근로자보다 소득·임금, 취업의 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발전 가능성 등 직무만족도의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다.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을수록, 노동통제를 받지 않을수록,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수록, 전일제일수록, 현재 일자리에 노조가 있을수록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육수준 적합도

성별 교육수준 적합도는 남성의 19.7%가 수준이 낮다, 77.1%가 수준이 맞는다, 1.4%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은 78.5%가 수준이 맞는다, 19.1%가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남성 취업자 중 77.1%가 현재 하는 일이 교육수준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여성보다 1.4%p 낮다. 또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이 21.3%, 여성이 20%이다. 교육수준 적합도에 대한 성별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남성 취업자가 여성보다 교육수준적합도를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교육수준 적합도는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미혼은 74.6%, 기혼유배우는 78.3%, 기혼무배우는 81.1%이다. 또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

혼이 21.7%, 기혼유배우가 19.0%, 기혼무배우가 17.1%이다. 교육수준별 교육수준 적합도는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무학은 91.0%, 고졸 미만은 83.3%로 저학력층일수록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 및 중퇴는 56.4%만이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육수준 적합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개인 소득에 따른 교육수준 적합도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0만원 미만 소득자는 69.8%, 100만~150만원 미만은 78.2%, 250만원 이상은 87.8%이다. <표 9-10>을 통하여 여자일수록, 기혼유배우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업무가 교육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 9-10>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교육수준 적합도

(단위: 명, %)

		전 체	수준이 매우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수준이 매우높다
성별	남성	3,383 (100)	1.6	19.7	77.1	1.4	0.1
	여성	2,241 (100)	0.9	19.1	78.5	1.4	0.0
혼인 상태	미혼	1,179 (100)	2.0	21.7	74.6	1.6	0.1
	기혼유배우	4,113 (100)	1.2	19.0	78.3	1.4	0.0
	기혼무배우	322 (100)	1.2	17.1	81.1	0.6	-
교육 수준	무학	177 (100)	-	7.9	91.0	1.1	-
	고졸 미만	1,689 (100)	0.5	14.9	83.3	1.3	-
	고졸	2,213 (100)	1.5	21.9	74.7	1.7	0.0
	대학재학 및 중퇴	195 (100)	4.6	37.9	56.4	1.0	-
	전문대졸	443 (100)	1.1	23.3	74.7	0.7	-
	대졸 이상	906 (100)	2.0	18.7	77.8	1.3	0.2
개인 소득	50만원 미만	527 (100)	2.7	26.4	69.8	1.1	-
	50만~100만원 미만	1,726 (100)	1.6	23.8	73.5	1.0	0.1
	100만~150만원 미만	1,264 (100)	20.2	18.1	78.2	2.1	-
	150만~200만원 미만	727 (100)	0.4	17.3	80.5	1.7	0.1
	200만~250만원 미만	350 (100)	0.6	10.9	87.4	1.1	-
	250만원 이상	312 (100)	0.6	9.0	87.8	2.2	0.3

주 : 구성비는 취업자 전체 5,621명을 기준으로 제시함. 1, 2차에는 수준이 낮다, 보통이다, 수준이 높다는 세 범주로 측정했으나, 3차는 다섯 범주로 측정함. 개인소득이 0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표 9-11>은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교육수준 적합도이다. 산업별 교육수준 적합도를 보면 농림어업의 12.3%가 수준이 낮다, 85.3%가 수준이 맞는다, 2.2%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고, 광공업의 1.1%가 수준이 매우 낮다, 20.1%가 수준이 낮다, 77.3%가 수준이 맞는다, 1.4%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고, 공공서비스업의 1.2%가 수준이 매우 낮다, 17.0%가 수준이 낮다, 80.2%가 수준이 맞는다, 1.5%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표 9-11>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교육수준 적합도

(단위 : %)

		전 체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수준이 매우 높다
산업	농림어업	496 (100)	-	12.3	85.3	2.2	-
	광공업	1,271 (100)	1.1	20.1	77.3	1.4	-
	건설업	490 (100)	1.6	17.8	78.8	1.8	-
	공익설비업	352 (100)	2.0	27.3	70.2	0.3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49 (100)	1.7	23.2	74.3	0.8	0.1
	금융및부동산업	544 (100)	1.7	15.1	80.1	2.9	0.2
	공공서비스업	963 (100)	1.2	17.0	80.2	1.5	-
직업	전문관리직	1,097 (100)	0.7	10.9	85.7	2.4	0.1
	사무직	578 (100)	0.2	17.3	80.3	2.2	-
	서비스직	1,264 (100)	1.8	23.6	73.7	0.8	0.1
	농림어업직	484 (100)	0.2	11.8	85.7	2.3	-
	생산직	2,126 (100)	1.9	23.7	73.4	0.9	0.0

산업별 교육수준 적합도는 농림어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중 각각 85.3%, 80.1%, 80.2%가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타산업 종사자에 비해 교육수준 적합도가 높다.

직업별 교육수준 적합도를 보면 전문관리직의 10.9%가 수준이 낮다, 85.7%가 수준이 맞는다, 2.4%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생산직의 1.9%가 수준이 매우 낮다, 23.7%가 수준이 낮다, 73.4% 수준이 맞는다, 0.9%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직업별 교육수준 적합도는 전문관리직과 농림어업직의 각각 85.7%가 교육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23.6%, 23.7%가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표 9-11>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업, 금융 및 부동산업 종사자들과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의 업무와 교육수준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반면 광공업, 공익설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직, 생산직 종사자들은 교육수준에 비해 업무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3. 기술수준 적합도

<표 9-12>는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술수준 적합도이다. 성별 기술수준 적합도를 보면 남성의 1.7%가 수준이 매우 낮다, 18.0%가 수준이 낮다, 78.4%가 수준이 맞는다, 1.8%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1.1%가 수준이 매우 낮다, 16.7%가 수준이 낮다, 80.4%가 수준이 맞는다라고 응답했다.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자가 78.4%, 여자가 80.4%로 여성이 남성보다

2.0%p 많고,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이 18.0%, 여성이 16.7%로 남성이 1.3%p 많다.

혼인상태별 기술수준 적합도는 미혼의 76.3%, 기혼유배우 79.8%, 기혼무배우의 81.4%가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이 19.3%, 기혼유배우 17.0%, 기혼무배우 16.8%이다. 즉 미혼일수록 현재 업무가 기술수준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기술수준 적합도는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무학은 91.0%, 고졸 미만은 84.0%로 저학력층일수록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학 및 중퇴는 59.5%만이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개인의 소득별 기술수준 적합도는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50만원 미만 소득자는 70.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79.7%, 250만원 이상은 88.5%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9-12>를 통하여 여자일수록, 기혼유배우 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업무가 기술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2> 취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기술수준 적합도

(단위 : %)

		전 체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수준이 매우 높다
성별	남성	3,383 (100)	1.7	18.0	78.4	1.8	0.1
	여성	2,241 (100)	1.1	16.7	80.4	1.6	0.0
혼인 상태	미혼	1,179 (100)	2.0	19.3	76.3	2.1	0.1
	기혼유배	4,113 (100)	1.3	17.0	79.8	1.7	0.0
	기혼무배	322 (100)	1.6	16.8	81.4	0.3	-
교육 수준	무학	177 (100)	-	7.3	91.0	1.7	-
	고졸 미만	1,689 (100)	0.5	14.2	84.0	1.3	-
	고졸	2,213 (100)	1.7	19.6	76.5	2.0	0.0
	대학재학 및 중퇴	195 (100)	4.6	33.8	59.5	2.1	-
	전문대졸	443 (100)	1.8	19.9	76.7	1.4	-
	대졸 이상	906 (100)	2.0	15.8	80.1	1.7	0.2
개인 소득	50만원 미만	527 (100)	2.8	25.0	70.6	1.5	-
	50만~100만원 미만	1,726 (100)	1.6	21.6	75.3	1.4	0.1
	100만~150만원 미만	1,264 (100)	1.6	16.3	79.7	2.2	0.2
	150만~200만원 미만	727 (100)	0.7	14.6	82.5	1.9	0.1
	200만~250만원 미만	350 (100)	0.9	8.9	88.9	1.1	0.3
	250만원 이상	312 (100)	0.3	8.3	88.5	2.6	0.3

주 : 구성비는 취업자 전체 5,621명을 기준으로 제시됨. 1, 2차에서는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는 세 범주로 응답하게 함. 개인소득 0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표 9-13>은 취업자의 산업, 직업별 기술수준 적합도이다. 산업별 기술수준 적합도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10.3%가 수준이 낮다, 86.7%가 수준이 맞는다, 2.6%가 수준이 높다고 응

답했으며, 공익설비업의 2.8%가 수준이 매우 낮다, 23.6%가 수준이 낮다, 71.6%가 수준이 맞는다, 1.4%가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중 각각 86.7%, 81.6%, 81.4%가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타산업 종사자에 비해 기술수준 적합도가 높다. 직업별 기술수준 적합도를 보면 전문관리직과 농림어업직의 각각 86.9%, 86.8%가 기술수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22.2%, 21.1%가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표 9-13>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업, 농림어업, 건설업 종사자들과 전문관리직 종사자들이 업무와 기술수준이 일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공익설비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직, 생산직 종사자들은 기술수준에 비해 업무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3>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기술수준 적합도

(단위 : %)

		전 체	수준이 매우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수준이 매우높다
산업	농림어업	496 (100)	0.2	10.3	86.7	2.6	-
	광공업	1,271 (100)	1.3	17.2	79.4	2.1	-
	건설업	490 (100)	1.6	14.9	81.6	2.4	-
	공익설비업	352 (100)	2.8	23.6	71.6	1.4	0.3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449 (100)	1.9	21.6	75.6	0.8	0.1
	금융및부동산업	544 (100)	1.5	14.5	81.1	2.6	0.2
	공공서비스업	963 (100)	1.0	16.0	81.4	1.5	-
직업	전문관리직	1,097 (100)	0.6	9.7	86.9	2.5	0.1
	사무직	578 (100)	0.5	14.7	82.2	2.4	-
	서비스직	1,264 (100)	1.9	22.2	74.8	0.9	0.1
	농림어업직	484 (100)	0.4	10.1	86.8	2.7	-
	생산직	2,126 (100)	2.1	21.1	75.4	1.4	0.0

<표 9-14>은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에 대한 비교표이다.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의 평균값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기술수준 적합도 2.81, 교육수준 적합도 2.79로 기술수준 적합도가 교육수준 적합도보다 0.02점 높다. 그러나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적합도 모두 3점(수준에 맞는다)에는 미치지 못한다.

각 응답의 비중을 보면 교육수준 적합도는 수준이 매우 낮다 1.3%, 수준이 낮다 19.5%, 수준이 맞는다 77.7%이며, 기술수준 적합도는 수준이 매우 낮다 1.4%, 수준이 낮다 17.5%, 수준이 맞는다 79.2%, 수준이 높다 1.7%이다.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 모두 수준이 맞는다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

<표 9-14> 교육수준 적합도와 기술수준 적합도 비교

(단위 : 명, %)

	평균	수준이 매우낮다	수준이 낮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다	수준이 매우높다
교육수준 적합도	2.79	75 (1.3)	1,095 (19.5)	4,368 (77.7)	80 (1.4)	3 (0.1)
기술수준 적합도	2.81	81 (1.4)	984 (17.5)	4,454 (79.2)	96 (1.7)	3 (0.1)

제 3 절 사회계층 및 경제적 여건

1. 사회계층 소속감

한국노동패널 3차 조사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가장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통해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을 조사했다.¹⁶⁾ 응답자의 경제적 계층 소속감은 <표 9-15>와 같다.

성별 경제적 계층 소속감은 남성의 23.5%가 하층, 42.1%가 중하층, 31.0%가 중류층, 3.3%가 중상층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25.0%가 하층, 40.0% 중하층, 32.0%가 중류층, 2.9%가 중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혼인상태별 경제적 계층 소속감은 미혼의 19.2%가 하층, 41.4%가 중하층, 36.3%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혼무배우의 47.4%가 하층, 34.5% 중하층, 16.9%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여 기혼무배우자 중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 경제적 계층 소속감은 무학의 47.0%가 하층, 35.3%가 중하층, 17.2%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고졸은 21.7%가 하층, 45.2%가 중하층, 30.8%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다. 대졸 이상은 6.9%가 하층, 34.9%가 중하층, 48.0%가 중류층의 비중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층보다는 중류층 이상에 속한다는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 경제적 계층 소속감은 50만원 미만의 55.5%가 하층, 31.5%가 중하층, 12.3%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26.4%가 하층, 48.7%가 중하층, 23.7%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2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하층은 6.1%, 중하층 32.3%, 중류층 52.3%, 중상층 9.0%의 비중을 보인다. 경제적 계층 소속감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류층 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16) 한국노동패널 2차 조사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계층 소속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항으로 설문하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주관적 계층 소속감을 경제적 계층 소속감과 사회적 계층 소속감 두 문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표 9-15>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적 계층 소속감

(단위 : 명, %)

		전 체	하 층	중하층	중류층	중상층	상 층
성별	남성	5,235 (100)	1,229 (23.5)	2,206 (42.1)	1,623 (31.0)	171 (3.3)	5 (0.1)
	여성	5,607 (100)	1,403 (25.0)	2,244 (40.0)	1,794 (32.0)	160 (2.9)	5 (0.1)
혼인 상태	미혼	3,126 (100)	599 (19.2)	1,294 (41.4)	1,134 (36.3)	97 (3.1)	2 (0.1)
	기혼유배우	6,733 (100)	1,569 (23.3)	2,717 (41.8)	2,114 (31.4)	224 (3.3)	7 (0.1)
	기혼무배우	953 (100)	452 (47.4)	329 (34.5)	161 (16.9)	10 (1.0)	1 (0.1)
교육 수준	무학	726 (100)	341 (47.0)	256 (35.3)	125 (17.2)	3 (0.4)	-
	고졸 미만	3,755 (100)	1,242 (33.1)	1,524 (40.6)	947 (24.7)	60 (1.6)	1 (0.0)
	고졸	3,590 (100)	778 (21.7)	1,621 (45.2)	1,104 (30.8)	86 (2.4)	1 (0.0)
	대학재학 및 중퇴	860 (100)	97 (11.3)	340 (39.5)	384 (44.7)	38 (4.4)	1 (0.1)
	전문대졸	625 (100)	84 (13.4)	261 (41.8)	260 (41.6)	20 (3.2)	-
	대졸 이상	1,284 (100)	89 (6.9)	448 (34.9)	616 (48.0)	124 (9.7)	7 (0.5)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555 (100)	307 (55.5)	174 (31.5)	68 (12.3)	4 (0.7)	-
	50만~100만원 미만	1,601 (100)	661 (41.3)	635 (39.7)	293 (18.3)	12 (0.7)	-
	100만~150만원 미만	2,143 (100)	565 (26.4)	1,043 (48.7)	508 (23.7)	26 (1.2)	-
	150만~200만원 미만	1,861 (100)	333 (17.9)	907 (48.7)	586 (31.5)	33 (1.8)	1 (0.1)
	200만~250만원 미만	1,565 (100)	178 (11.4)	675 (43.1)	664 (42.4)	48 (3.1)	-
	250만원 이상	2,013 (100)	122 (6.1)	650 (32.3)	1,053 (52.3)	181 (9.0)	7 (0.3)

<표 9-16> 사회경제적 특성별 사회적 계층 소속감

(단위 : 명, %)

		전 체	하 층	중하층	중류층	중상층	상 층
성별	남성	5,235 (100)	1,209 (23.1)	2,103 (40.2)	1,684 (32.2)	220 (4.2)	17 (0.3)
	여성	5,607 (100)	1,379 (24.6)	2,175 (38.8)	1,835 (32.7)	206 (3.7)	11 (0.2)
혼인 상태	미혼	3,126 (100)	611 (19.5)	1,244 (39.8)	1,122 (35.9)	141 (4.5)	8 (0.3)
	기혼유배우	6,733 (100)	1,517 (22.5)	2,696 (40.0)	2,227 (33.1)	271 (4.0)	19 (0.3)
	기혼무배우	953 (100)	447 (46.9)	328 (34.4)	163 (17.1)	14 (1.5)	1 (0.1)
교육 수준	무학	726 (100)	347 (47.8)	257 (35.4)	119 (16.4)	2 (0.3)	-
	고졸 미만	3,755 (100)	1,242 (33.1)	1,525 (40.6)	920 (24.5)	67 (1.8)	-
	고졸	3,590 (100)	753 (21.0)	1,542 (43.0)	1,170 (32.6)	121 (3.4)	4 (0.1)
	대학재학 및 중퇴	860 (100)	94 (10.9)	323 (37.6)	379 (44.1)	59 (6.9)	5 (0.6)
	전문대졸	625 (100)	79 (12.6)	250 (40.0)	268 (42.9)	26 (4.2)	2 (0.3)
	대졸 이상	1,284 (100)	72 (5.6)	381 (29.7)	662 (51.6)	151 (11.8)	17 (1.3)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555 (100)	307 (55.5)	166 (30.0)	72 (13.0)	8 (1.4)	-
	50만~100만원 미만	1,601 (100)	648 (40.5)	616 (38.5)	315 (19.7)	22 (1.4)	-
	100만~150만원 미만	2,143 (100)	563 (26.3)	978 (45.6)	558 (26.0)	42 (2.0)	1 (0.0)
	150만~200만원 미만	1,861 (100)	335 (18.0)	881 (47.3)	592 (31.8)	47 (2.5)	5 (0.3)
	200만~250만원 미만	1,565 (100)	166 (10.6)	647 (41.3)	682 (43.6)	70 (4.5)	-
	250만원 이상	2,013 (100)	114 (5.7)	627 (31.1)	1,052 (52.3)	202 (10.0)	18 (0.9)

<표 9-16>은 개인 응답자의 사회적 계층 소속감이다. 성별 사회적 계층 소속감은 남성의 23.1%가 하층, 40.2%가 중하층, 32.2%가 중류층, 4.2%가 중상층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24.6%가 하층, 38.8%가 중하층, 32.7%가 중류층, 3.7%가 중상층으로 응답했다.

혼인상태별 사회적 계층 소속감은 미혼의 19.5%가 하층, 39.8%가 중하층, 35.9%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기혼무배우의 46.9%가 하층, 34.4% 중하층, 17.1%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여 기혼무배우자 중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 사회적 계층 소속감은 무학의 47.8%가 하층, 35.4%가 중하층, 16.4%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고졸은 21.0%가 하층, 43.0%가 중하층, 32.6%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다. 대졸 이상은 5.6%가 하층, 29.7%가 중하층, 51.6%가 중류층의 비중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하층보다는 중류층 이상에 속한다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 사회적 계층 소속감은 50만원 미만의 55.5%가 하층, 30.0%가 중하층, 13.0%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26.3%가 하층, 45.6%가 중하층, 26.0%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25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하층은 5.7%, 중하층 31.1%, 중류층 52.3%, 중상층은 10.0%의 비중을 보인다. 사회적 계층 소속감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류층 이상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다.

2. 경제적 여건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설문지에서는 개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어떠한지,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IMF 이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네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9-17>와 [그림 9-3], [그림 9-4]는 개인 응답자의 경제적 여건 변화¹⁷⁾이다.

IMF와 비교한 현재 가구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응답의 비중을 보면 매우 악화 16.8%, 약간 악화 39.8%, 변화 없음 36.4%, 약간 향상 6.9%의 비중을 보이며,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악화 4.1%, 약간 악화 16.6%, 변화 없음 51.9%, 약간 향상 26.7%의 비중을 보인다.

즉 IMF와 비교한 가구의 실질적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6.9%만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나, 1~2년 후의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26.7%가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

17) 참고로 해당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03176 IMF 원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귀댁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P03177 앞으로 1~2년 후에 귀댁의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P03178 IMF 원조가 시작된 2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여건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P03179 앞으로 1~2년 후에 우리 나라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9-17> 개인 응답자의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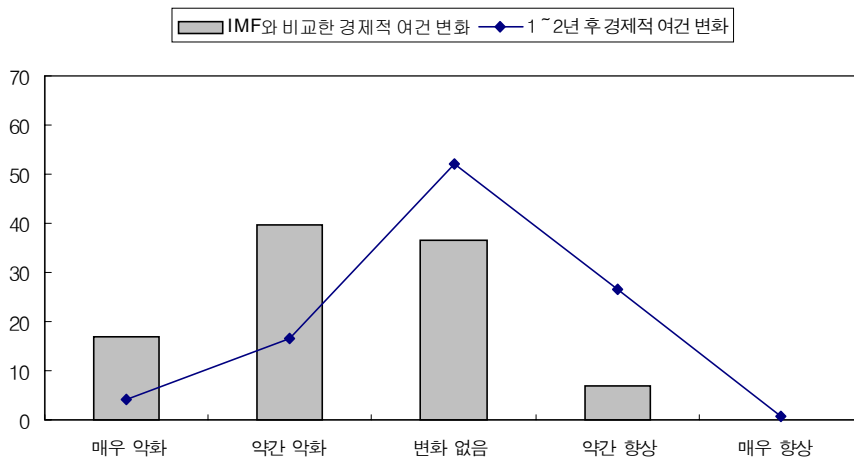
		매우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가구 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 변화 ¹⁾	1,819 (16.8)	4,310 (39.8)	3,948 (36.4)	746 (6.9)	14 (0.1)
	1~2년 후 경제적 여 건 변화 ²⁾	448 (4.1)	1,804 (16.6)	5,628 (51.9)	2,895 (26.7)	61 (0.6)
국가 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 적 여건 변화 ³⁾	1,100 (10.1)	3,840 (35.4)	3,696 (34.1)	2,171 (20.0)	28 (0.3)
	1~2년 후 경제적 여 건 변화 ⁴⁾	359 (3.3)	1,963 (18.1)	4,849 (44.7)	3,560 (32.8)	104 (1.0)

주 : 각 셀의 구성비는 전체 응답자 10,842를 100으로 하여 구성함.

- 1) 모름/무응답 5명 분석 제외함.
- 2) 모름/무응답 6명 분석 제외함.
- 3) 모름 무응답 7명 분석 제외함.
- 4) 모름/무응답 7명 분석 제외함.

[그림 9-3]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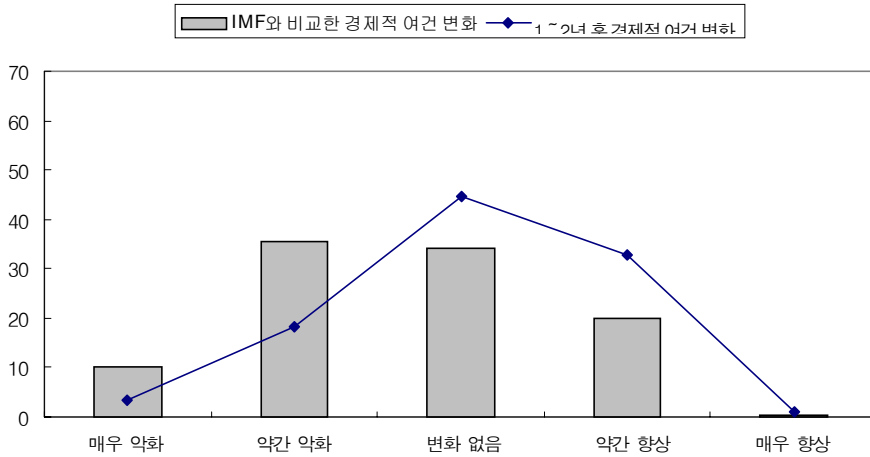


하여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비추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그림 9-3]을 보자.

IMF와 비교한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응답은 좌편으로, 1~2년 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응답은 보다 우편에 위치하고 있다. 즉 IMF와 비교한 실질적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 내지는 약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으나, 향후의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다.

[그림 9-4]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



[그림 9-4]의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 또한 [그림 9-3]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즉 IMF와 비교한 실질적인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악화되었거나 변화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으나,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는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인 응답비율을 보면 IMF와 비교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34.1%가 ‘변화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3%, ‘악화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5.5%이다.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44.7%가 ‘변화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3.8%는 ‘향상될 것이다’, 21.4%는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IMF와 비교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악화되었다’의 비중이 ‘향상되었다’의 비중보다 25.2%p 더 높다. 그러나 1~2년 후의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향상될 것이다’의 비중이 ‘악화될 것이다’의 비중보다 12.4%p 더 높다.

<표 9-18>은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적 여건 변화이다. 성별 경제적 여건 변화를 보면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 변화 항목의 값은 남성이 2.33, 여성 2.35이며,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는 남성이 3.04, 여성 3.02이다. 성별간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IMF와 비교한 가구와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혼인 상태별 경제적 여건을 보면 경제적 여건에 대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점수가 높으며, 기혼무배우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가장 점수가 낮다.

특히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응답은 미혼이 기혼유배우보다 0.21점 높게 나타나, 미혼자가 경제적 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 경제적 여건 변화를 보면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와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IMF보다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1~2년 후의 가구와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9-18> 사회경제적 특성별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점)

		가구여건 변화		국가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변화	1~2년 후 경제적 여건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변화	1~2년후 경제적 여건변화
성	남성	2.33	3.04	2.64	3.10
	여성	2.35	3.02	2.66	3.10
혼인 상태	미혼	2.38	3.07	2.70	3.15
	기혼유배	2.32	3.03	2.62	3.08
	기혼무배	2.30	2.86	2.69	3.07
교육 수준	무학	2.39	2.84	2.76	3.11
	고졸미만	2.25	2.92	2.63	3.07
	고졸	2.32	3.07	2.60	3.08
	대학재학	2.39	3.09	2.71	3.16
	전문대졸	2.46	3.17	2.73	3.19
	대졸이상	2.54	3.24	2.69	3.15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2.15	2.83	2.69	3.10
	50만~100만원 미만	2.13	2.91	2.64	3.07
	100만~150만원 미만	2.25	3.01	2.62	3.13
	150만~200만원 미만	2.39	3.09	2.68	3.12
	200만~250만원 미만	2.39	3.05	2.60	3.02
	250만원 이상	2.62	3.22	2.68	3.15

주 : 각 셀의 수치는 5점척도의 평균값임. 모름 무응답 7명 분석에서 제외함.

<표 9-19>는 경제활동상태별 경제적 여건 변화이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IMF와 비교한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각각 2.45점, 3.12점, IMF와 비교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각각 2.67점, 3.12점으로 경제적 여건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점수가 가장 높다. 비임금근로자는 IMF와 비교한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각각 2.19점, 3.0점, IMF와 비교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각각 2.54점, 3.06점이다.

즉 임금근로자는 IMF와 비교한 가구와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 및 1~2년 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실업자는 IMF와 비교한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각각 1.97점, 2.87점, IMF와 비교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와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각각 2.66점, 3.04점으로 경제적 여건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점수가 가장 낮다.

<표 9-19> 경제활동상태별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명)

		가구여건 변화		국가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 변화	1~2년 후 경제적 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 변화	1~2년 후 경제적 여건 변화
취업자	임금근로자	2.45	3.12	2.67	3.12
	비임금근로자	2.19	3.00	2.54	3.06
미취업자	실업자	1.97	2.87	2.66	3.04
	비경제활동인구	2.34	2.99	2.67	3.10

주 : <표 9-18>을 참조바람.

<표 9-20>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적 여건 변화

(단위 : 점)

		가구여건 변화		국가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 변화	1~2년 후 경제적 여건 변화	IMF와 비교한 경제적 여건 변화	1~2년 후 경제적 여건 변화
임금근로자	상용직	2.50	3.16	2.68	3.13
	임시직	2.33	3.07	2.67	3.15
	일용직	2.19	2.90	2.64	3.07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2.35	3.25	2.61	3.16
	자영업	2.13	2.90	2.52	3.02
	가족종사자	2.18	2.96	2.54	3.07

주 :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었음을 뜻함(향상 될 것임을 뜻함).

<표 9-20>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적 여건 변화이다. IMF와 비교한 가구의 실질적 경제적 여건 변화는 상용직이 2.50점, 고용주가 2.35점, 임시직이 2.33점, 가족 종사자 2.18점, 자영업자 2.13이다. 즉 IMF와 비교했을 때 상용직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나아진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가장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1~2년 후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3.25점, 상용직이 3.16점, 임시직이 3.07점으로 향후의 가구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와 비교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이 2.66점,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이 2.55점으로 임금근로자들이 비임금근로자들보다 IMF에 비한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2년 후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3.16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가 3.02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9-20>을 통하여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이,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주가 가구와 국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MF에 비한 실질적인 경제 여건 점수는 2점 대신 데 비해 1~2년 후 경제적 여건 점수는 3점 대로 높다.

3. 사회적 연줄망

한국노동패널 3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연줄망(social capital, social network)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 중 대학교수, 의사,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유무와 친밀도를 설문에 추가로 조사했다.

<표 9-21>과 [그림 9-5]를 보면 개인응답자 중 대학교수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6%,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5%,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9.7%, 중앙일간지/방송의 기자급 이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2%, 국회의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2%이다.

<표 9-21> 사회적 연줄망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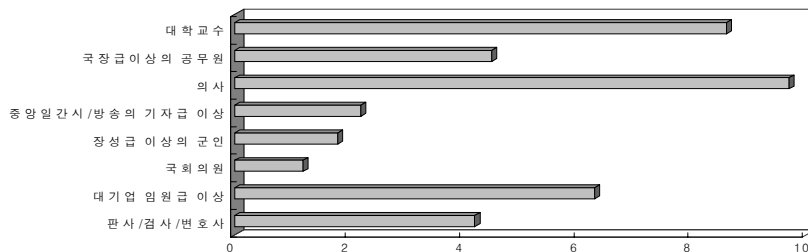
	친척 유무 ¹⁾		친분 정도 ²⁾		
	있 다	없 다	아주 가깝게 지냄	가깝게 지내는 편	가깝게 지내지 않음
대학교수	934 (8.6)	9,908 (91.4)	256 (27.4)	423 (45.3)	253 (27.1)
국장급이상 공무원	492 (4.5)	10,350 (95.5)	116 (23.6)	242 (49.2)	133 (27.0)
의사	1,047 (9.7)	9,795 (90.3)	270 (25.8)	498 (47.6)	271 (25.9)
중앙일간지/방송의 기자급 이상	242 (2.2)	10,600 (97.8)	70 (28.9)	120 (49.6)	51 (21.1)
장성급 이상의 군인	190 (1.8)	10,652 (98.2)	39 (20.5)	77 (40.5)	71 (37.4)
국회의원	126 (1.2)	10,716 (98.8)	10 (7.9)	49 (38.9)	66 (52.4)
대기업 임원급 이상	682 (6.3)	10,160 (93.7)	139 (20.4)	368 (54.0)	171 (25.1)
판사/검사/변호사	450 (4.2)	10,392 (95.8)	83 (18.4)	206 (45.8)	160 (35.6)

주 : 1) 친척 유무의 구성비는 개인 응답자 10,842명을 기준으로 함.

2) 친분 정도 구성비는 친척 유무에 ‘있다’라고 응답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함.

[그림 9-5] 사회적 연줄망 분포

(단위 : %)



<표 9-21>의 응답의 분포를 보면 8촌 이내 사회지도층 중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9.7%로 가장 높으며,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1.2%로 가장 적다.

8촌 이내에 사회지도층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적으로 이들과의 친밀도를 물어보았다. 대기업 임원급과 가깝게 지낸다는 응답이 54.0%,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응답이 20.4%로 이들과의 친분 정도가 가장 두터운 것으로 나타나며, 국회의원과 가깝게 지낸다는 응답이 38.9%,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응답이 7.9%로 친밀도가 가장 낮다.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일

본 장의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3차년도(2000년)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자료 중에서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부가조사(youth module) 자료를 이용하였다.¹⁸⁾ 청년층 부가조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 유형, 전공 계열, 학교 소재지, 졸업 또는 수료시기 등의 상세한 학력사항과 함께 재학중 휴학 여부,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첫 일자리 진입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첫 일자리 진입 과정(school to work transition)에 대한 내용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한 이후 일자리 취득 여부 및 취업시기, 취업경로, 업종 및 직업 등 첫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학력사항과 함께 재학중 취업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졸업 후 구직활동 및 첫 일자리의 특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정규 학교교육

1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층의 정규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청년층 부가조사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전공 계열을 비롯하여 대학의 유형 및 전공 등 상세한 학력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학력 수준을 살펴보면 <표 10-1>과 같다.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절부터 주로 분석될 졸업 및 수료

18) 응답자는 총 3,302명이며 개인 분석의 경우 원가구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도 원가구원(3,116명)에 한해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1명)도 제외하여 최종 분석표본은 3,095명이 되었다. 그리고 제2절부터는 분석 내용의 특성상 학교를 졸업(수료·중퇴·휴학 포함)한 1,7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0-1>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의 학력과 이수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졸업 및 수료	중퇴	재학 및 휴학
전 체		3,089(100.0)	1,525(49.4)	75(2.4)	1,488(48.2)
학력 ¹⁾	초등학교	10(100.0)	8(80.0)	2(20.0)	0(0.0)
	중학교	105(100.0)	48(45.7)	8(7.6)	49(46.7)
	고등학교	1,626(100.0)	898(55.2)	44(2.7)	684(42.1)
	전문대	445(100.0)	289(64.9)	11(2.5)	145(32.6)
	대학교(4년제)	847(100.0)	268(31.6)	9(1.1)	570(67.3)
	대학원	56(100.0)	15(26.8)	1(1.7)	40(71.4)

주: 학력 이수여부가 모름/무응답인 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학력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이수여부는 각 범주별 학력을 100%로 놓았을 때의 비중임.

자의 비중은 49.4%로 재학 및 휴학생(48.2%)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표 10-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중퇴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학력의 경우 응답자 비중 전체가 낮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중퇴자의 비중이 20.0%이며, 중학교 학력의 경우에도 중퇴자의 비중이 7.6%였다. 반면 그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들의 중퇴자 비중은 1~2% 내외였다.

<표 10-2>는 응답자들의 출신 고등학교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general high school) 출신들이 64.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실업계 고등학교(vocational high school) 출신들은 34.7%, 예·체능계 등 기타 고교 출신들은 1.1%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계열별 분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이 15세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층임을 고려할 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통계연보』에서 제시된 일반계 대 실업계의 비중은 6 대 4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의 실업계 비중이 36.3%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인문고의 비중(65.2%, 62.2%)이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업고의 비중이 20.3%로 그 다음을 차지한 데 비해 여성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 것은 상업고 30.3%였다. 연령별로는 점진적으로 일반계 고교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15~19세의 경우 64.9%가 일반계 고교였다. 이것은 공급 측면에서 점차 일반계 고교가 증가하고 실업계 고교가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975년을 정점으로 일반계 고교 대 실업계 고교의 비중이 역전된 이후 지금까지 일반계 고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계 고교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14세 무렵 성장지가 서울/경기도 지역일수록 일반계 고교의 비중이 약간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0-2>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고등학교의 유형(일반계/실업계)

(단위 : 명, %)

		전 체	일반계 고교 ¹⁾	실업계 고교	기타 고교
전 체		2,950(100.0)	1,895(64.2)	1,024(34.7)	31(1.1)
성별	남성	1,412(100.0)	934(66.1)	465(32.9)	13(0.9)
	여성	1,538(100.0)	961(62.5)	559(36.3)	18(1.2)
연령	15~19세	1,082(100.0)	702(64.9)	364(33.6)	16(1.5)
	20~24세	880(100.0)	570(64.8)	304(34.5)	6(0.7)
	25~29세	988(100.0)	623(63.1)	356(34.8)	9(0.9)
지역 ²⁾	서울/경기도	1,249(100.0)	855(68.5)	383(30.7)	11(0.9)
	경상도	993(100.0)	591(59.5)	388(39.1)	14(1.4)
	전라도	333(100.0)	212(63.7)	118(35.4)	3(0.9)
	충청도	276(100.0)	177(64.1)	98(35.5)	1(0.4)
	기타	84(100.0)	49(58.3)	33(39.3)	2(2.4)

주 :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일반계 고등학교는 인문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되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고 등이 포함됨. 기타는 예·체능계와 기타 특수목적고 등이 포함됨.

2) 14세 무렵 성장지역이 모름/무응답인 1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다음으로 개인들의 고등학교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일반계 일반과정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3>은 성별 전공분야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일반계 일반과정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업 계열로 21.6%에 이르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전공분야는 상업 계열로 31.7%로 나타나, 여자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육 단계에서부터 성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

<표 10-3>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고등학교의 전공계열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2,944(100.0)	1,409(100.0)	1,535(100.0)
전 공 ¹⁾	인문계 일반과정	1,869(63.5)	916(65.0)	953(62.1)
	인문계 직업과정	21(0.7)	9(0.6)	12(0.8)
	농업계열	40(2.0)	40(2.8)	19(1.2)
	공업계열	324(11.0)	305(21.6)	19(1.2)
	상업계열	594(20.2)	107(7.6)	487(31.7)
	수산계열	7(0.2)	7(0.5)	0(0.0)
	과학계열	8(0.3)	3(0.2)	5(0.3)
	외국어계열	13(0.4)	9(0.6)	4(0.3)
	가사계열	1(0.0)	0(0.0)	1(0.1)
	예능계열	28(0.7)	5(0.4)	23(1.5)
	기타	20(0.7)	8(0.6)	12(0.8)

주 : 1) 고등학교 전공계열이 무응답인 15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점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전공분야 중 인문계 직업과정의 경우 전체 전공분야 중 비중이 0.7%에 불과해 제도 취지와는 상관없이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문계 직업과정은 인문계 고등학교 자체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학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 실업계 고교와 마찬가지로 직업·기술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되었으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인문계 직업과정 학생수는 1993년을 정점으로(56,236명)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 현재 16,768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직업과정 학생들의 중도탈락률도 1999년도 기준 4.6%로 일반계 고등학생의 1.5%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형편이다.

<표 10-4>를 통해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년제 대학교의 비중이 65.6%로 전문대에 비해 절반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1]을 통해서 대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자 비중에 있어서 일반대학이 88.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대학(3.5%), 교육대학(2.9%), 방송통신대학(1.5%), 기능대학(0.6%) 순이었다.

<표 10-4>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 유형(전문대/대학교)

(단위 : 명, %)

		전 체	전문대	대학교(4년제)
전 체		1,292(100.0)	445(34.4)	847(65.6)
성 별	남성	604(100.0)	195(32.3)	409(67.7)
	여성	688(100.0)	250(36.3)	438(63.7)
연 령	19세 이하	239(100.0)	47(19.7)	192(80.3)
	20~24세	586(100.0)	201(34.3)	385(65.7)
	25~29세	467(100.0)	197(42.2)	270(57.8)
지 역 ¹⁾	서울/경기도	488(100.0)	165(33.8)	323(66.2)
	경상도	479(100.0)	177(37.0)	302(63.0)
	전라도	165(100.0)	49(29.7)	116(70.3)
	충청도	110(100.0)	38(34.5)	72(65.5)
	기타	45(100.0)	15(33.3)	30(66.7)

주 : 학력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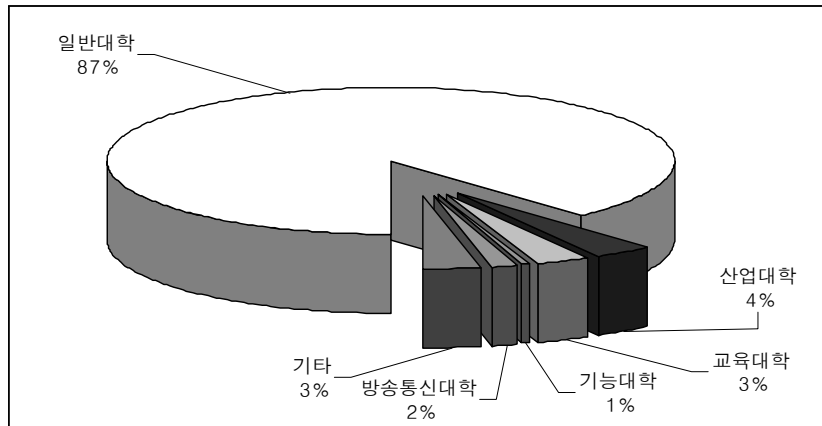
1) 14세 무렵 성장지역이 모름/무응답인 1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년제 대학교 비중이 4.0% 높았다. 이것은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여성 응답자들의 출신 고등학교의 실업계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일부 설명될 수 있는데, 일반계 고교 출신들의 경우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중이 73.2%인데 비해서 실업계 고교 출신들의 경우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35.5%에 불과하였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 19세 이하의 경우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한 비중이 80.3%인 데 반해서 25~29세의 경우 57.8%에 불과하였다.

[그림 10-1]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교 유형

(단위, %)



지역별로는 전라도 지역 응답자들의 대학 진학 비중이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도의 경우 63.0%로 가장 낮았다. 다른 한편으로, 4년제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고 경상도 지역의 비중이 36.4%였으며 전문대 대비 4년제 대학 진학 비중이 가장 높았던 전라도의 비중은 14.1%로 나타났다.

<표 10-5>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 유형별 전공계열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문대 ¹⁾	인문계열	102(18.6)	29(11.2)	73(25.3)
	사회계열	61(11.1)	14(5.4)	47(16.3)
	자연계열	76(13.9)	30(11.5)	46(16.0)
	공학계열	197(35.9)	150(57.7)	47(16.3)
	의약계열	26(4.7)	8(3.1)	18(6.3)
	사범계열	9(1.6)	0(0.0)	9(3.1)
	예체능계열	35(6.2)	11(4.3)	24(8.3)
	기타	42(7.7)	18(6.9)	24(8.3)
대학교 ²⁾	인문계열	226(28.7)	82(21.4)	144(35.6)
	사회계열	106(13.5)	50(13.1)	56(13.9)
	자연계열	120(15.2)	55(14.4)	65(16.1)
	공학계열	198(25.2)	156(40.7)	42(10.4)
	의약계열	28(3.6)	11(2.9)	17(4.2)
	사범계열	29(3.7)	7(1.8)	22(5.4)
	예체능계열	52(6.6)	14(3.7)	38(9.5)
	기타	28(3.6)	8(2.1)	20(5.0)

주: 1) 전문대 전공계열이 무응답인 1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대학교(4년제) 전공계열이 무응답인 18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10-5>를 통해서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대학 유형별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전문대의 경우 공학계열의 비중이 35.9%로 가장 높은 데 비해서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인문계열의 비중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전문대의 전공계열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들은 절반 이상이 공학계열 전공자(57.7%)였으며 다음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비중이 약 11%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인문계열의 전공 비중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계열과 자연, 공학계열의 비중이 약 1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전공계열의 확연한 차이는 사회 진출 이후의 성별 직무분화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의 전공계열 분포는 남성의 경우 전문대의 전공계열 분포와 마찬가지로 공학계열의 비중이 40.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인문계열의 비중이 35.6%로 전문대의 인문계 전공 분포에 비해서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전공계열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비중이 전문대의 인문계 전공분포에 비해서 10.2%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계열 역시 전문대 전공분포에 비해서 7.7%로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대학교 전공계열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비중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인문계열 비중에 비해서 14.2%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학계열의 경우 여성의 비중은 10.4%인 데 반해서 남성의 비중은 40.7%로 무려 30.3%p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전공계열은 예체능계열로 남성에 비해서 5.8%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6>은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휴학 여부 및 횟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휴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14.8%로 나타났으며 휴학 횟수는 1번이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휴학한 비중이 5.0%로 낮은 데 비해서 남성은 25.6%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휴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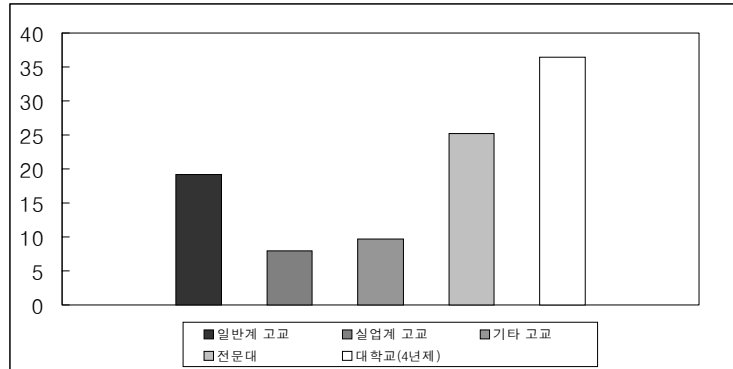
[그림 10-2]를 통해서 학교 유형별 휴학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출신 고등학교별로는 일반계 출신의 휴학자 비중이 19.2%로 실업계 출신(8.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25.2%)보다는 4년제 대학교(36.4%)의 휴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6>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휴학 여부 및 횟수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3,095(100.0)	1,482(100.0)	1,613(100.0)
휴학한 적이 없다	2,636(85.2)	1,103(74.4)	1,533(95.0)
휴학한 적이 있다	459(14.8)	379(25.6)	80(5.0)
1번	433(94.3)	356(93.9)	77(96.3)
2번	24(5.2)	21(5.5)	24(5.2)
3번	2(0.4)	2(0.5)	0(0.0)

[그림 10-2]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학교 유형별 휴학자의 비중(%)



제 2 절 재학중 취업실태

이 절에서는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 중 학교를 졸업 및 수료한 1,525명과 중퇴한 75명, 휴학한 127명 등 총 1,727명을 대상으로 계약 중 취업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재학중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해서 <표 10-7>을 통해서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31.7%가 재학중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자격증 취득 비중이 2.2%p로 높으며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실업계가 일반계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 비중이 25.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가 40.1%로 나타나 4년제 대학교에 비해서 8.8%p로 높았다.

<표 10-8>의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0.3%가 재학중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들의 직업훈련 경험에 관한 응답 분포와 비교해 보면, 젊은 층의 직업훈련 경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2차년도 15세 이상 전체 응답자들 중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성별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중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현장실습이 60.1%로 직업훈련을 경험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종류별 비중에 있어서 성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지도 및 진로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이 28.4%로 남성(18.4%)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7>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자격증 취득 여부

(단위 : 명, %)

		전 체	취득함	취득하지 않음
전 체		1,727(100.0)	548(31.7)	1,179(68.9)
성별	남성	770(100.0)	235(30.5)	535(69.5)
	여성	957(100.0)	313(32.7)	644(67.3)
고교 유형 ¹⁾	일반계	932(100.0)	206(22.1)	726(77.9)
	실업계	691(100.0)	328(47.5)	363(52.5)
	기타	18(100.0)	4(22.7)	14(77.8)
대학 유형 ²⁾	전문대	334(100.0)	134(40.1)	200(59.9)
	대학교(4년제)	367(100.0)	115(31.3)	252(68.7)

주: 1) 고교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대학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10-8>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직업훈련 여부 및 훈련종류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727(100.0)	770(100.0)	957(100.0)
받은 적이 없다		1,377(79.7)	616(80.0)	761(79.5)
받은 적이 있다		350(20.3)	154(20.0)	196(20.5)
횟수	1번	281(80.3)	124(80.5)	157(80.1)
	2번	57(16.3)	23(14.9)	34(17.3)
	3번	12(3.4)	7(4.5)	5(2.6)
종류 ¹⁾	현장실습	208(60.1)	96(63.2)	122(57.7)
	학교내 실험/실습	121(35.0)	59(38.8)	62(32.0)
	취업지도/진로교육	83(24.0)	28(18.4)	55(28.4)
	위탁교육	6(1.7)	4(2.6)	2(1.0)
	인턴	3(0.9)	0(0.0)	3(1.5)
	기타	6(1.8)	2(1.4)	4(2.0)

주: 1)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350명 중 무응답 4명을 제외한 346명의 비중으로 복수응답임.

<표 10-9>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학교 유형별 직업훈련 여부

(단위 : 명, %)

		전 체	받은 적이 있음	받은 적이 없음
고교 유형 ¹⁾	일반계	932(100.0)	115(12.3)	817(87.7)
	실업계	691(100.0)	231(33.4)	460(66.6)
	기타	18(100.0)	1(5.6)	17(94.4)
대학 유형 ²⁾	전문대	334(100.0)	87(26.0)	247(74.0)
	대학교(4년제)	367(100.0)	52(14.2)	315(85.8)

주: 1) 고교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대학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10-9>를 통해서 학교 유형별 직업훈련 여부를 살펴보면, 자격증 취득 여부와 마찬가지로 일반계(12.3%)에 비해서 실업계(33.4%) 출신들의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 유형별로도 전문대(26.0%)가 4년제 대학교(14.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10>을 통해서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재학중 돈을 받고 취업하거나 일(아르바이트 등)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23.7%)이 남성(19.1%)에 비해서 취업 비중이 높았으며 고교 유형별로는 실업계(22.9%)가 일반계(21.7%)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가 33.5%로 전문대(28.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학중 취업한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직이 40.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직이 28.3%였다. 성별로 취업한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직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생산직이 38.8%로 가장 높았다.

재학중 취업한 기간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평균 일한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9.0개월, 여성의 경우 13.8개월이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실업계가 13.7개월로 10.1개월인 일반계보다 길었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가 10.3개월인 데 비해서 전문대는 9.1개월로 약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0>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재학중 취업(아르바이트 등) 여부

(단위 : 명, %)

		전 체	한 적이 있음	한 적이 없음
전 체		1,727(100.0)	374(21.7)	1,353(78.3)
성별	남성	770(100.0)	147(19.1)	623(80.9)
	여성	957(100.0)	227(23.7)	730(76.3)
고교 유형 ¹⁾	일반계	932(100.0)	202(21.7)	730(78.3)
	실업계	691(100.0)	158(22.9)	533(77.1)
	기타	18(100.0)	3(16.7)	15(83.3)
대학 유형 ²⁾	전문대	334(100.0)	96(28.7)	238(71.3)
	대학교(4년제)	367(100.0)	123(33.5)	244(66.5)

주: 1) 고교 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대학 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제 3 절 졸업 후 구직활동

이 절에서는 청년용 부가조사 응답자 중에서 졸업 후 구직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 분석 학교를 졸업 및 수료한 1,525명과 중퇴한 75명, 휴학한 127명 등 총 1,7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0-12>를 통해서 응답자들의 구직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38.7%가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36.9%)보다는 여성(40.1%)의 구직활동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가 39.5%, 실업계 38.9%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 출신이 48.2%, 4년제 대학교 출신이 45.5%로 전문대 출신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학교, 학원, 스승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친지를 통한 경우(39.0%), 신문, TV, 벽보 등을 통한 경우(34.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3차년도 패널 전체 응답자들 중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 비중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3차년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비중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친구·친지의 소개(54.4%)였으며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이것은 젊은 층일수록 학교를 통한 구직활동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12>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방법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727(100.0)	770(100.0)	957(100.0)
구해 본 적이 없다		1,059(61.3)	486(63.1)	573(59.9)
구해 본 적이 있다		668(38.7)	284(36.9)	384(40.1)
방법 ¹⁾	학교, 학원, 스승 통해	304(45.8)	122(43.1)	182(47.8)
	친구·친지 통해	259(39.0)	109(38.5)	150(39.4)
	공공직업안내소 통해	38(5.7)	17(6.0)	21(5.5)
	사설직업안내소 통해	13(2.0)	4(1.4)	9(2.4)
	신문, TV, 벽보 통해	230(34.6)	94(33.3)	136(35.7)
	직접 방문	120(18.1)	62(21.9)	58(15.2)
	가족 통해	57(8.6)	20(7.1)	37(9.7)
	인터넷 등 전산망 통해	59(8.9)	35(12.4)	24(6.3)

주 : 구직방법 모름/무응답자인 4명을 제외한 응답자의 비중으로 복수응답임.

<표 10-13>을 통해서 응답자들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구직기간은 11.6주로 미취업자 전체의 평균 구직기간인 14.5주보다 짧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미취업자의 경우(남성:여성 =

<표 10-13>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구직기간

(단위 : %)

		전 체	1~4주	5~8주	9~24주	25~48주	49주 이상	평균구직 기간(주)
전 체		100.0 (668)	42.7 (285)	16.9 (113)	31.7 (212)	7.2 (48)	1.5 (10)	11.6
성별	남성	284	37.0	16.5	37.7	7.4	1.4	12.2
	여성	384	46.9	17.2	27.3	7.0	1.6	11.2
고교 유형 ¹⁾	일반계	368	38.9	17.4	35.1	7.1	1.6	12.2
	실업계	269	46.8	16.4	27.5	7.8	1.5	11.1
	기타	6	50.0	16.7	33.3	-	-	8.8
대학 유형 ²⁾	전문대	161	44.1	16.1	31.7	7.5	0.6	11.5
	대학교(4년제)	167	34.1	17.1	37.7	8.4	1.8	12.9

주 : 구직활동기간이 모름 또는 무응답인 12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 고교 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대학 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8.3주:13.6주)와 마찬가지로 남성이 12.2주로 11.2주인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직기간이 4주 이내에 이루어지는 비중의 경우 여성은 46.9%로 절반 정도가 짧은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7.0%로 여성보다 비중이 낮았다.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별로는 일반계가 12.2주로 실업계(11.1주)보다 길었으며 1~4주의 비중에서도 일반계가 38.9%로 46.8%인 실업계보다 적었다.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교의 평균 구직기간이 12.9주로 11.5주인 전문대보다 약간 길었으며 1~4주의 비중에서도 전문대가 4년제 대학교에 비해서 10.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졸업 후 첫 일자리

이 절에서는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 분석대상은 최종적으로 학교를 마치거나 그만둔 이후 취업한 일자리 중에서 처음 취업한 일자리이다. 다만, 여기에서 첫 일자리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 마친 이후에도 계속된 일자리도 포함된다.

<표 10-14>를 통해서 졸업 후 2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77.5%가 취업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취업 경험 비중이 80.9%로 남성(73.4%)보다 높았으며,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실업계가 83.1%로 74.0%인 일반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가 79.9%로 4년제 대학교에 비해서 11.0% 높게 나타났다.

<표 10-14>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졸업 후 2개월 이상 취업 여부

(단위 : 명, %)

		전 체	한 적이 있음	한 적이 없음
전 체		1,727(100.0)	1,339(77.5)	388(22.5)
성별	남성	770(100.0)	565(73.4)	205(26.6)
	여성	957(100.0)	774(80.9)	183(19.1)
고교 유형 ¹⁾	일반계	932(100.0)	690(74.0)	242(26.0)
	실업계	691(100.0)	574(83.1)	117(16.9)
	기타	18(100.0)	13(72.2)	5(27.8)
대학 유형 ²⁾	전문대	334(100.0)	267(79.9)	67(20.1)
	대학교(4년제)	367(100.0)	253(68.9)	114(31.1)

주: 1) 고교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2) 대학유형이 모름/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10-15>는 첫 일자리의 취업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경로의 전체 비중에서 가족, 친지의 추천 및 소개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사용한 취업경로는 학교 추천 및 소개(23.6%)이었다.

성별 취업경로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 추천 및 소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7.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자의 추천 및 소개나 본인의 직접 방문 등은 남성이 여성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응답자들의 구직방법과 취업경로를 비교해 보면, 학교 추천 및 소개가 45.8%로 구직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으나 실제 취업시에는 가족, 친지의 추천 및 소개가 30.4%로 23.6%인 학교 추천 및 소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6>을 통해서 첫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광공업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5.0%로 다음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표 10-15>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첫 일자리의 취업경로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328(100.0)	559(100.0)	769(100.0)
경로 ¹⁾	공개채용	230(17.3)	90(16.1)	140(18.2)
	학교 추천/소개	314(23.6)	109(19.5)	205(26.7)
	회사 스카우트	24(1.8)	10(1.8)	14(1.8)
	가족, 친지 추천/소개	404(30.4)	177(31.7)	227(29.5)
	근무자의 추천/소개	125(9.4)	63(11.3)	62(8.1)
	본인 직접 방문	173(13.0)	78(14.0)	95(12.4)
	기타	58(4.4)	32(5.7)	26(3.4)

주: 1) 2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취업경로에 대해 모름/무응답인 1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비중이 각각 29.0%와 28.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24.6%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98.4%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광공업과 건설업이 각각 38.7%, 10.3%로 여성(28.1%, 3.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27.4%로 남성(10.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광공업에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서 건설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표 10-16>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들의 첫 일자리의 특성

(단위 :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287 (100.0)	545(100.0)	745(100.0)
산 업 ¹⁾	농림어업	4 (0.3)	3 (0.6)	1 (0.1)
	광공업	419 (32.6)	210 (38.7)	209 (28.1)
	건설업	80 (6.2)	56 (10.3)	24 (3.2)
	공익설비업	49 (3.8)	25 (4.6)	24 (3.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2 (25.0)	131 (24.2)	191 (25.6)
	금융 및 부동산업	154 (12.0)	62 (11.4)	92 (12.3)
	공공서비스업	259 (20.1)	55 (10.1)	204 (27.4)
직 업 ²⁾	전문관리직	316 (24.6)	122 (22.6)	194 (26.0)
	사무직	373 (29.0)	62 (11.5)	311 (41.6)
	서비스직	235 (18.3)	98 (18.1)	137 (18.3)
	농림어업직	1 (0.1)	1 (0.2)	0 (0.0)
	생산직	362 (28.1)	257 (47.6)	105 (14.1)
종사상 지위 ³⁾	상용직 임금근로자	614 (75.8)	216 (65.5)	398 (82.9)
	임시직 임금근로자	144 (17.8)	78 (23.6)	66 (13.8)
	일용직 임금근로자	39 (4.8)	30 (9.1)	9 (1.9)
	종업원을 둔 고용주	3 (0.4)	3 (0.9)	0 (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5 (0.5)	2 (0.6)	3 (0.6)
	가족 종사자	5 (0.6)	1 (0.3)	4 (0.8)

- 주 : 1) 농림어업에는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등이 포함.
 공익설비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이 포함.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포함.
 금융 및 부동산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등이 포함.
 분류 불가 및 모름/무응답인 1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2)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이 포함.
 서비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이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이 포함.
 모름/무응답인 16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 3) 종사상 지위가 모름/무응답인 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10~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광공업과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전체 응답 비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하고 있으며 건설업이나 공익설비업 등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남성의 경우 생산직의 비중이 47.6%로 14.1%p에 머문 여성에 비해 무려 33.5%p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의 비중은 반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0.1%p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성별 직무의 분절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직의 비중은 남성과 여성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녀 모두 98% 이상이었으며 상용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17.4%p 높았으며 임시직 비중은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9.6%p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응답자들의 성별 상용직 비중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인데 그 이유는 남성 응답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군 복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5% 내외로 매우 적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8%로 1.4%인 여성에 비해 약간 높았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은 종업원을 둔 고용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執筆陣

-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황수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기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지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박시내(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Ⅲ)

- | | |
|-----------|-------------------------------------------------------------------|
| ▪ 발행연월일 | 2001년 12월 31일 초판
2002년 4월 25일 재판 |
| ▪ 발 행 인 | 이 원 덕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11510-0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
| ▪ 조판·인쇄 | ☎ 대표 (02) 782-0141 Fax : (02) 786-1862
거목정보산업(주) (02) 853-2255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정 가 16,000원

ISBN 89-7356-360-2

부 록

3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설문지

한국노동패널조사

(가구용 설문지 및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올바른 노동관련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취업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전화 02-780-2355, Fax 02-784-768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0. 4

한국노동연구원

면접원 주지사항

1.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

- (1) 조사가구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동사항이나 수정사항은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2) 이사가구의 경우는 변동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입하십시오.

2. 기존 가구인 경우

- (1) 기존 가구란 지난 조사에 포함되어 응답한 가구를 말합니다.
- (2) 먼저 info-sheet를 참조하여 지난 조사 당시의 가구원 명단을 확인합니다. (문 1.)
- (3) 가구원의 동거 여부와 지난 조사 이후 분가 또는 사망한 가구원을 파악합니다. (문 2.)
 - 분가란 이 가구와 더 이상의 경제적 교류가 없고 따로 떨어져 사는 관계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되거나, 자녀가 장성하여 독립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부부간의 일시적 별거, 군복무나 학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만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분가가 아닌 비동거에 해당됩니다. 비동거 이유는 문 3.에서 파악합니다.
- (4) 지난 조사 이후 혼인이나 출산, 입양 등으로 가구에 새로 들어온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답지에 기입합니다. 또한 지난 조사시 빠진 가구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구원에 포함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아래의 기준으로 가구원을 기입하십시오.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가구원 (조사해야 할 사람)

-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제외)
- 나. 미혼 자녀 중 교육,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나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 다. 미혼 자녀 중 부모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경우

2. 비가구원 (조사해서는 안될 사람)

- 가.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 경제적 교류가 없는 사람
- 나.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

- (5) 기존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문 4.부터 문 7.까지 확인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만약 지난 번 응답과 차이가 날 경우(info-sheet의 내용과 다른 경우) '확인란'에 이번 조사에서 받은 응답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가구주가 바뀌어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모두 바뀌는 경우에도 가구원 각각에 대해 그 바뀐 내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또한 문 7.의 학력 변화를 주의하여 질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한 경우 그 변화 여부와 내용 등)
- (6) 새로 들어온 가구원(추가 가구원)에 대해서는 문 2.부터 문 7.까지 질문합니다.

- (7) 다음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문 8.을 질문합니다.
- (8) 새로 들어온 가구원에 대해서 문 9.를 질문합니다. 또한 분가한 가구원과 사망한 가구원에 대해서도 각각 문 10.과 문 11.을 질문합니다.
- (9) 그 후 문 12.로 가십시오.

3. 신규 가구(올해 처음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인 경우

- (1) 신규 가구는 원가구원(1998년 1차 조사 대상자와 그 자녀)의 분가로 형성되며, 올해 처음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입니다.
- (2) 신규 가구는 새로운 가구로서 조사를 수행하며, 따라서 지난 조사의 info-sheet가 없습니다.
- (3) 가구원 판단 기준에 따라 가구원 여부를 결정하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문 1.~문 3.)
- (4) 원가구원에 한해서, 신규 가구의 형성(원가구의 분가) 이후 또다시 분가한 가구원과 사망한 가구원을 파악합니다. (문 2.)
 - 아래의 “분가 가구원의 추적”을 참조하십시오.
- (5)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서 문 4.부터 문 8.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 (6) 원가구원에 한해서 문 9.부터 문 10.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신규 가구의 경우는 문 9.를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7) 그 후 곧바로 문 14.로 가십시오. (문 12.와 문 13.은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분가 가구원의 추적

<1> 지난 조사 이후 분가한 가구원 중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과 그 자녀)은 반드시 추적하여야 합니다.

ex) 1998년에 서울에서 조사한 원가구(1번 가구)에서 1999년 12월에 형과 아우가 대전으로 분가하여 같은 집(2번 가구)에서 살다가, 2000년 3월(조사일 이전)에 형이 또 부산으로 분가(3번 가구)하여 나갔습니다. 이 경우 형과 동생 모두 원가구원이므로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형은 대전에서 혼자 사는 동생(신규 가구인 2번 가구)의 분가 가구원이 됩니다.

<2> 그러나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과 그 자녀)이 아닌 경우는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 1998년에 서울에서 조사한 원가구에 1999년 1월 가구의 아들이 잠시 합가하였고, 1999년 10월에 패널 설문지를 받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다시 2000년 3월(조사일 이전)에 분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아들은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이 아니므로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존 가구의 경우는 먼저 가구원을 작년 조사 당시와 비교하여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 1.~문 3.)

문 1 _____님 닥의 가구원은 ‘누구 누구(가구원 이름)’가 맞습니까?

문 2 _____님은 이 집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 ▶ 비동거란 학업,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와 같이 일시적으로만 따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가구원 각각에 대하여 동거 여부를 확인하고 비동거 중인 경우에는 문 3.에서 비동거 이유를 파악합니다.

(1) 동거 → 문 4.로 가십시오

(2) 비동거

(3) 분가 → 다음 가구원 질문

(4) 사망 → 다음 가구원 질문



문 3 (비동거 이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다른 지방에 근무

(2) 해외 근무 중

(3) 학업(해외 유학 포함)

(4) 군복무

(5) 장기입원, 요양

(6) 별거

(7) 가출

(8) 기타 _____

◎ 그 외에 다른 가구원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 문 1.부터 문 3.까지를 질문하십시오.

문 4 _____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문 5 이 닥의 가구주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다른 가구원 각각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표 》

10. 가구주

- 01. 가구주의 할아버지
- 02. 가구주의 할머니
- 05. 가구주의 아버지
- 06. 가구주의 어머니
-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14, 다섯째=15, ...)
-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
-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20. 가구주의 배우자

- 03.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아버지
-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24, 다섯째=25, ...)
-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첫째=41, 둘째=42...)
-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61, 둘째=62...)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13, 넷째는 214, ...)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23, 넷째는 224, ...)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33, 넷째는 234, ...)
-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문 6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음력, 양력)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 7 다음은 교육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7-1)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 (1) 미취학 → 문 8로 가십시오.
- (2) 무학 → 문 8로 가십시오.
- (3) 초등학교
- (4)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5) 고등학교
- (6) 2년제 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구 사범학교 포함)

- (7) 4년제 대학(구 2년제 교육대학 포함)
- (8) 대학원 석사
- (9) 대학원 박사

문 7-2 그 학교를 마치셨습니까? 이수 여부를 답해 주십시오.

- (1) 졸업 → 문 8로 가십시오.
- (2) 수료
- (3) 중퇴
- (4) 재학 중
- (5) 휴학 중

문 7-3 (졸업이 아닌 경우에만) 몇 학년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 대학원의 석사, 박사의 경우에는 두 학기를 한 학년으로 환산하여 표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대학원 1, 2학기 중인 경우에는 1학년이 되며, 3, 4학기 중인 경우에는 2학년이 됩니다.

■ _____ 학년

문 8 _____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 (2) 건강한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 (5) 매우 건강이 나쁘다

◎ 빠진 가구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 기존 가구는 지난 조사일 이후의 변화를 답하여 주십시오.
- 신규 가구는 문 10.부터 원가구원(1998년 1차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과 그 자녀)이 분가한 이후의 변화를 원가구원에 한하여 답해 주십시오. 원가구원이 아닌 가구원의 변화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1〉 새로 들어온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문 9.를 질문하십시오.
 - 〈2〉 분가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문 10.을 질문하십시오.
 - 〈3〉 사망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문 11.을 질문하십시오.

(지난 조사 이후/분가 이후) 새로 들어온 가구원이 있는 경우

문 9 새로 들어온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신규 가구의 경우에는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 9-1) _____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택에서 함께 사셨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문 9-2) 어떻게 이 택의 가구원이 되셨습니까?

- (1) 출생
- (2) 입양
- (3) 혼인
- (4) 합가(따로 살다가 부모님 또는 친지 택으로 살러 들어옴)
- (5) 기타 _____

(지난 조사 이후/분가 이후) 같이 살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문 10 분가한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신규 가구의 경우는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에 한하여 질문합니다. 또한 이 분가한 원가구원은 반드시 추적하여야 합니다.
 - ex) 1998년에 서울에서 조사한 원가구에서 1999년 12월에 형과 아우가 대전으로 분가하여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00년 3월(조사일 이전)에 형이 또 부산으로 분가하여 나갔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대전에서 혼자 사는 동생이 추적되어 신규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은 신규가구의 분가가구원이 되며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 ▶ 그러나 원가구원이 아니면 분가가구원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인 한 아가씨가 1999년 12월에 결혼하여 시택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택 식구 중 한명(시동생)이 2000년 3월(조사일 이전)에 시택에서 분가하여 나갔습니다. 이 경우 분가한 시동생은 원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적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10-1) 언제 분가하셨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문 10-2) 분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혼인하여서 따로 살게 됨
- (2) 이혼하여서 따로 살게 됨
- (3)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 (4) 장성하였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되어 분가
- (5) 기타 _____

(문 10-3) 이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름 _____
가구원 일련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지난 조사 이후/분가 이후) 사망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문 11 사망한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신규 가구의 경우는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에 한하여 질문합니다.
 - ex) 1998년에 서울에서 조사한 원가구에서 1999년 12월에 형과 아우가 대전으로 분가하여 같은 집에서 살다가, 2000년 3월(조사일 이전)에 형이 사망하였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대전에서 혼자 사는 동생이 추적되어 신규 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은 신규 가구에서 사망한 가구원이 되며 아래의 문 11-1과 11-2에 답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원가구원이 아니면 사망가구원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 원가구원(1998년 조사 가구원)인 한 아가씨가 1999년 12월에 결혼하여 시댁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댁 식구 중 한명(시할머니)께서 2000년 3월(조사일 이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시할머니는 원가구원이 아니므로 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11-1) 언제 사망하셨습니다?

■ _____년 _____월

(문11-2) 주된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 ▶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질병(암, 당뇨, 고혈압 등)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주된 사망 원인이 '(3) 질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질병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1) 노환’이 됩니다.

- (1) 노환
- (2) 사고
- (3) 질병
- (4) 기타

※ 기존 가구는 문 12.로, 신규 가구는 문 14.로 가십시오.

다음은 주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2 지난 조사 이후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 문 14.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 13 이사하신 적은 없더라도 다음 사항 중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 (1) 입주형태
- (2) 주택의 종류
- (3) 주택의 평수
- (4) 주거지의 시가, 전(월)세금
- (5) 달라진 것 없음 → 문 15.로 가십시오.

문 14 다음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사하신 경우와 이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주거지에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규 가구인 경우만 답하여 주십시오.

(문 14-1) _____님 닻은 자가입니까? 아니면 전·월세입니까?

(문 14-2)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주택의 종류는 응답자의 원응답을 존중합니다.
- ▶ ‘(5)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공간이 아닌 곳, 예를 들어 상점이나 사무실 안쪽에서 주거를 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8) 상가 주택’이란 아래층이 모두 상가나 사무실이고 윗층은 일반 가구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 14-3 _____ 님 닻은 몇 평입니까?

- ▶ 단독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연건평/평수'란에 닻에서 사용하시는 주거면적만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때 대지면적은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아파트 등의 평수는 분양평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14-4 (자가인 경우) 이 집의 시가는 대략 얼마입니까?

(전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월세/기타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 ▶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이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아니라면 관리비(수도세, 전기세 등)를 월세로 잘못 알고 포함시킨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 14-5 언제부터 이 집에서 사셨습니까?

- ▶ 결혼하여 배우자의 가족과 같이 살게 된 경우와 같이, 원가구원이 분가하여 다른 가구에 들어간 경우는 기존의 가구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시점을 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가구원인 여성이 결혼하여 남편의 가족과 같이 살기 시작한 경우, 그 집에서 남편 가족이 살기 시작한 시기를 답하여야 합니다.

문12. 이사여부	문14-1. 입주형태	문14-2. 주택의 종류	문14-3. 주택의 평수	문14-4. 주거지의 시가
(1) 이사→문14-1.로 (2) 비이사	(1) 자가	(1) 단독주택	대지면적 _____평 연건평/평수 _____평	자가_____만원
문13. 변동사항	(2) 전세	(2)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3) 연립주택(빌라 포함) (4)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5) 비주거용 건물내의 주택 (6) 오피스텔 (7) 임시막시 (8) 상가 주택 (9) 기타	평수 _____평	전세/월세/기타 전세금 _____만원 월세금 월_____만원
(1) 입주 형태 (2) 주택 종류 (3) 주택 평수 (4) 주거지 시가/ 전·월세금 (5) 변화 없음 →문15.로				(3) 월세
	(4) 기타			_____년 _____월

다음은 귀댁의 자녀교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15 _____ 님 댁에는 0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재수생 포함)의 자녀가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문 19로 가십시오.

문 16 자녀(들)는 누구입니까? 또 자녀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자녀와 어머니의 가구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가구원 번호에 '99'로 적어주십시오.

※ 다음은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

- | | |
|-------------------------------------------------------------------------------------------------------------------------------------------------------------|---------------------------------------------------------------------------------------------------------------------------|
| (1) 학원
(2) 개인·그룹과외
(3) 학습지
(4)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5) 방과후 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 (6) 탁아소
(7) 어린이집
(8) 놀이방
(9) 유아원
(10) 직장보육시설
(11)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12)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13) 기타 |
|-------------------------------------------------------------------------------------------------------------------------------------------------------------|---------------------------------------------------------------------------------------------------------------------------|

문 17 자녀는 위 《보기》의 사교육·보육을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이용한다
- (2) 이용하지 않는다 → 문 18로 가십시오.

(문17-1) 위의 보기 중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보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 주십시오.

- ▶ (6)부터 (12)까지의 선택지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보육 기관을 모두 답해주십시오. 그 후 각각의 사교육·보육에 대해 수업(이용) 시간과 비용을 순서대로 질문합니다.

(문17-2) 일주일에 몇 회, 1회 평균 몇 시간이나 이용합니까?

- ▶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주일 _____ 회, 1회 평균 _____ 시간

(문17-3) 수업료는 한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답해 주십시오.

■ 수업료(부대비용 포함) : 한달 평균 _____만원

(문17-4) 위의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자녀 모두에게 지불하는 사교육비 전체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 (1) 매우 부담된다
- (2) 약간 부담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5)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다음은 탁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만 답하여 주십시오. 중학생 이상인 경우는 다음 문 19로 가십시오.

문 18 아이들의 어머니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에서 답하신 탁아소, 유아원, 놀이방 등의 시설은 제외됩니다.

- (1) 예
- (2) 아니오 → 문 19로 가십시오.

(문18-1) 그렇다면 누가 아이들을 돌보아 줍니까?

▶ 같은 집에서 여러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 보는 아주머니가 아이 두 명을 같이 돌보는 경우에는 아이별로 각각 보살피는 사람의 번호와 돌보는 시간을 동일하게 적습니다.

- (1) 동거하고 있는 가족·친지
- (2)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친지
- (3) 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 (4)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아이보는 아줌마, 파출부 등)
- (5) 기타

(문18-2) 아이를 돌보아주는 분은 일주일에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돌보아 주니까?

■ 일주일 _____일, 하루 평균 _____시간

(문18-3)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여기에서 '비용'은 아이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불하

는 대가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이따금씩 주는 돈은 제외됩니다.

- ▶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고 비용은 아이 구분 없이 지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아이보는 아주머니가 두 아이를 동시에 돌봐주고 전체 50만원을 받은 경우는 '(3) 아이 구분없이 지불'에 답하여 주십시오.

- (1) 비지불 → 문 18-5로 가십시오.
- (2) 아이별로 지불
- (3) 아이 구분없이 지불

문18-4 돌보는 비용으로 한달에 얼마씩 지불하십니까?

- ▶ 파출부 등과 같이 집안일과 아이보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아이보는 일의 비중에 따라 한달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파출부에게 매달 30만원씩 지불하고, 파출부의 일에서 아이보는 일의 비중이 1/3일 경우 한달 비용은 10만원입니다.
- ▶ 또한 아이 구분없이 지불하는 경우는 가장 주로 돌보는 한 아이에게만 비용의 총액을 적어주십시오. 즉 두 아이를 돌보고 모두 50만원을 받을 경우 가장 주로 돌보는 한 아이에게만 50만원으로 적어주십시오.

■ 한달 평균 _____만원

문18-5 탁아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자녀 모두에게 지불하는 탁아비 전체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탁아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1) 매우 부담된다
- (2) 약간 부담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5)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응답표》

자 녀 번 호	엄 마 번 호	문 17. 사교육· 기관					문 18. 탁아모							
		이용 여부	종류	시간		월평균 수업료 (부대비용 포함)	경제적 부담 정도	이용 여부	탁아모	시간		탁아비 지불 여부	월평균 탁아비	경제적 부담정 도
				주당 횟수	1회당 시간					주당 횟수	1회당 시간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1)이용함 (2)이용안함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회	시간		만원		

다음은 귀택의 소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작년 한해(1999년) 동안 얻은 소득을 세금을 제외한 후 답하여 주십시오.

- 문 19** 작년 한해(1999년) 동안 _____ 님댁 가족들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까?
 ▶ 근로소득이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1) 있었다
 (2) 없었다 → 문 20.으로 가십시오.

(문19-1) 있었다면, 작년(1999년) 한해 동안 _____ 님 댁 전체의 근로소득은 한달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1999년 근로소득 : 월평균 _____ 만원

- 문 20** _____ 님 댁에서는 작년 한해(1999년) 동안 금융소득이 있었습니까?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있었다
 (2) 없었다 → 문 21.로 가십시오.

(문20-1) 있었다면, 작년(1999년) 한해 동안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 목	금 액
(1)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자 소득	1999년 총액 _____ 만원
(2) 사채 등 비금융기관의 이자 소득	1999년 총액 _____ 만원
(3)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1999년 총액 _____ 만원
(4) 배당금	1999년 총액 _____ 만원
(5) 기타 ()	1999년 총액 _____ 만원

- 문 21** _____ 님 댁에서는 작년 한해(1999년) 동안 부동산 소득이 있었습니까?
 ▶ 부동산 소득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있었다
 (2) 없었다 → 문 22로 가십시오.

문21-1 있었다면, 작년(1999년) 한해 동안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 목	금 액
(1) 월세 등의 임대료(보증금 제외)	1999년 총액 _____만원
(2) 부동산 매매차익	1999년 총액 _____만원
(3) 토지를 도지 준 것	1999년 총액 _____만원
(4) 기타()	1999년 총액 _____만원

문 22 _____님 님께서는 작년 한해(1999년) 동안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까? 사회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연금 • 장해연금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반환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급여 • 장해연금 • 유족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연금 • 실업급여 • 기타

(1) 있었다
 (2) 없었다 → 문 23으로 가십시오.

문22-1 있었다면 사회보험을 받은 분은 누구누구였습니까?

▶ 사회보험을 실제로 받는 분(수령자)의 가구원 번호를 답하십시오.

문22-2 그분(들)이 작년 한해(1999년) 동안 받으신 사회보험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면접원은 지난 한해 동안 받은 사회보험을 계산하여 주십시오. 만일 공무원 연금을 1999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면 총액은 '100만원×7개월 = 700만원'이 됩니다. 일시불로 받은 경우는 받은 액수 전체를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구원 번호	액 수
	1999년 총액 _____만원
	1999년 총액 _____만원
	1999년 총액 _____만원

문 23 _____님 닉에서는 작년 한해(1999년) 동안 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받은 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이전 소득이 있었습니까?

- ▶ 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경로우대교통비, 동사무소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1) 있었다
 (2) 없었다 → 문 24로 가십시오.

(문23-1) 있었다면, 작년(1999년) 한해 동안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 목	금 액
(1) 정부 보조금	1999년 총액 _____만원
(2) 사회단체 보조금	1999년 총액 _____만원
(3) 친척·친지 보조금	1999년 총액 _____만원
(4) 기타 ()	1999년 총액 _____만원

문 24 _____님 닉에서는 작년 한해(1999년) 동안 위의 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었습니까?

- ▶ 기타소득이란,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돈과 같이 위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1) 있었다
 (2) 없었다 → 문 25로 가십시오.

(문24-1) 있었다면, 작년(1999년) 한해 동안 각각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 목	금 액
(1) 보험금	1999년 총액 _____만원
(2) 퇴직금	1999년 총액 _____만원
(3) 기타 ()	1999년 총액 _____만원

다음은 소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작년 한해(1999년) 동안의 소비를 답해 주십시오.

문 25 작년 한해(1999년) 동안 _____님 닥의 생활비는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 ▶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 냉장고나 TV, 가구 등 내구재(사용해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 구입비는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혼수 장만이나 교통사고 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됩니다.

■ 1999년 월평균 생활비 _____만원

문 26 작년 한해(1999년) 동안 _____님 닥은 한달 평균 얼마나 저축을 하셨습니까? 저축에는 일반 저축, 적금, 보험, 개인 연금, 계 등이 포함됩니다.

■ 1999년 월평균 저축액 _____만원

다음은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조사당시)의 시세를 답하여 주십시오.

문 27 _____님 닥에서는 현재 살고 계신 집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 28로 가십시오.

(문27-1)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신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1) 주택
- (2) 건물
- (3) 임야
- (4) 토지
- (5) 기타 _____

(문 27-2) 이 부동산들의 시가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 부동산 시가 총액 _____ 만원 → 문 28.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 27-2-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1천만원 미만
- (2) 1천~2천5백만원 미만
- (3) 2천5백~5천만원 미만
- (4) 5천~7천5백만원 미만
- (5) 7천5백만원~1억원 미만
- (6) 1억~2억원 미만
- (7) 2억~3억원 미만
- (8) 3억~4억원 미만
- (9) 4억~5억원 미만
- (10) 5억~10억원 미만
- (11) 10억원 이상

문 28 현재 살고 계신 집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남에게 빌려주고(임대하고) 계십니까?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방이나 층을 세놓는 것도 포함됩니다.

- (1) 예
- (2) 아니요 → 문 29.로 가십시오.

(문 28-1) 임차인(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총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방 하나를 월세 주는 경우는 '(2) 전세금·임대보증금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총액 _____ 만원 → 문 29.로 가십시오.
- (2) 전세금·임대보증금 없음
- (3) 잘 모르겠다

(문 28-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1천만원 미만
- (2) 1천~2천5백만원 미만
- (3) 2천5백~5천만원 미만

- (4) 5천~7천5백만원 미만
- (5) 7천5백만원~1억원 미만
- (6) 1억~2억원 미만
- (7) 2억~3억원 미만
- (8) 3억~4억원 미만
- (9) 4억~5억원 미만
- (10) 5억~10억원 미만
- (11) 10억원 이상

문 29 _____님 댁에서는 현재 살고 계시는 집 이외에 보증금을 내고 주택이나 상가, 임야, 토지 등을 빌려 쓰고(임차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 30.으로 가십시오.

문29-1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빌려 쓰고(임차하고) 계십니까?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 (1) 주택
- (2) 건물
- (3) 임야
- (4) 토지
- (5) 기타 _____

문29-2 부동산의 주인에게 낸 보증금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 보증금 _____만원 → 문 30.으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 29-2-1 잘 모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 (1) 1천만원 미만
- (2) 1천~2천5백만원 미만
- (3) 2천5백~5천만원 미만
- (4) 5천~7천5백만원 미만
- (5) 7천5백만원~1억원 미만
- (6) 1억~2억원 미만
- (7) 2억~3억원 미만
- (8) 3억~4억원 미만
- (9) 4억~5억원 미만
- (10) 5억~10억원 미만
- (11) 10억원 이상

문 30 _____님 닥은 아래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 ▶ ‘(3) 저축성 보험’에는 저축성 보험만 해당되며, 지금까지 낸 돈(불입총액)을 써 주십시오.
- ▶ ‘(4) 아직 타지 않은 계’는 지금까지 부은 것돈의 총액을 써 주십시오. 만약 이미 일부를 탔다면 탄 액수를 빼고 써 주십시오. 그러나 미리 탄 돈이 지금까지 부은 돈보다 많으면 이는 부채에 속하게 되므로 다음의 문 31. ‘(5)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에 포함됩니다.

항 목	소유여부	금 액
(1) 은행예금	(1) 예 (2)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2) 주식, 채권 신탁	(1) 예 (2)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3) 저축성 보험	(1) 예 (2)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4) 아직 타지 않은 계	(1) 예 (2)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5)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1) 예 (2)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6) 기타	(1) 예 (2) 아니오	현재 총액 _____만원

문 31 _____님 닥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과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한달 평균 상환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 ▶ ‘(5)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란 먼저 돈을 타서 앞으로 계속 돈을 부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목	부채 유무	잔액	원금과 이자 상환금
(1) 금융기관 부채	(1) 예 (2) 아니오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2) 비금융기관 부채(회사를 통해 빌린 돈 등)	(1) 예 (2) 아니오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3) 개인적으로 빌린 돈(사채나 친척/친지에게 빌린 돈 등)	(1) 예 (2) 아니오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4)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1) 예 (2) 아니오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5)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1) 예 (2) 아니오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6) 기타 ()	(1) 예 (2) 아니오	_____만원	월평균 _____만원

문 32 _____님 닥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 33으로 가십시오.

(문 32-1)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답해 주십시오.

- (1) 식비(식료품비)

- (2) 교육비
- (3) 각종 빚(채무)의 원리금 상환
- (4) 의료비
- (5) 주거비(관리비, 월세 등)
- (6)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몇가지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33 저희가 감사의 뜻으로, 사진의 선물 중 한 가지를 조사가 끝난 후 택으로 부쳐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 주세요.

- (1) 공중전화 카드
- (2) 주방용 수세미

- ▶ 만일 이사를 가시거나 식구 중에 분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사선물을 드립니다. (면접원 : 이사 선물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 ▶ 마지막으로 면접원은 가구기입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일지를 횡수별로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인용 예비조사)

안녕하십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올바른 노동관련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취업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전화 02-780-2355, Fax 02-784-768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0. 4

한국노동연구원

※ 작년 조사 당시(____ 월 ____ 일)에 ____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1 지난 조사당시 ____님께서서는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1)가지고 있었다 혹은 (2)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틀리다면 맞는 내용을 “조사당시 바른 내용”에 응답(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작년 조사 당시 응답	조사 당시 바른 내용	
(1) 가지고 있었다	(1) 가지고 있었다	→ 문 2.로 가십시오.
	(2)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문 4.로 가십시오.
(2) 가지고 있지 않았다	(1) 가지고 있었다	→ 문 4.로 가십시오.
	(2)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문 4.로 가십시오.

※ 작년 조사 당시 ____님이 하신 일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2.부터 문 3.까지의 응답내용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주십시오.(굵은 선 안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문 2 ____님께서서는 작년 조사당시

- (1) 아래의 응답란(작년 응답내용)에 써 있는 직장/사업체/일터에서
- (2) 아래의 응답란(작년 응답내용)에 써 있는 일을 주로 하시면서
- (3)아래의 응답란(작년 응답내용)에 써 있는 종사상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년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용이 맞습니까?

만일 틀리다면 맞는 내용을 바로 아래 칸(작년 조사 당시의 바른 내용)에 적어 주십시오.

문 3 지금도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해당 일자리 옆에 표시해 주십시오.
(조사 당시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각각의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1) 현재도 일하고 있다
- (2) 지금은 그만두었다

《 응답란 : 문 2. ~ 문 3. 》

번호		문2.			문3.	설문 종류
		(1) 직장/사업체명	(2) 주로 하던 일	(3) 종사상 지위	현재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1	작년 응답내용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작년 조사당시 바른내용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2) 지금은 그만두었다	
가-2	작년 응답내용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작년 조사당시 바른내용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2) 지금은 그만두었다	
가-3	작년 응답내용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작년 조사당시 바른내용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2) 지금은 그만두었다	

《종사상의 지위 - 용어해설》

- (1)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 (2) 자영업/고용주 :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상 및 노점상 등)
- (3)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앞에서 응답했던 직장/일자리를 제외하고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얻으신 일자리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4.부터 문 6.까지의 응답내용을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주십시오. (굵은 점선 안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문 4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취업하여 1주일 이상 다니신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가 있습니까?
지난 조사 이후를 곰곰이 돌이켜보아 주십시오.

- (1) 있다 → 문5.로 가십시오.
- (2) 없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5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취업한 일자리가 있다면,

- (1) 직장/사업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 : 성공기계, 풍년상사, 성우건설 아파트 건축현장 등)
- (2) 거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 동사무소 공공근로, 개인택시, 과외아르바이트, 단추달기 등)

또 다른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 (직장, 아르바이트 등)
- (2) 내 사업을 하거나 (예: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업, 임업, 수산업, 행상 및 노점상 등)
-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말합니다.

《주 의》

- 새벽시장이나 인력사무소, 인맥(십장 혹은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매일매일 필요에 의해 고용되고 일거리나 일터가 매우 불규칙한 경우, 다음 기준으로 일자리를 파악합니다.
- (1) 일하는 장소(○○건설현장, ○○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 (2)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없이 같은 일(건설 현장 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합니다.
 - (3)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합니다.

※ 문 6.에서 문 7.까지는 문 5.에서 응답한 일자리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그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
(직장, 아르바이트 등)
- (2) 자영업/고용주 : 내 사업을 한다(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상 및 노점상 등)
- (3) 무급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문 7 지금도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1) 현재도 일하고 있다
- (2) 지금은 그만두었다

《응답란 : 문 2. ~ 문 3.》

번호	문5. 지난 조사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		문6. 종사상의 지위는?	문7. 현재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설문 종류
	(1) 사업체 이름	(2) 주로 하는 일			
나-1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2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3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4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5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6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7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나-8			(1)임금근로자 (2)자영업/고용주 (3)무급가족종사자	(1)현재에도 일하고 있다 (2)지금은 그만두었다	유형5 유형6 유형7 유형8

문 8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 어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입니까? 일자리가 여러 개 일 경우 가장 중요한 일자리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 가 - 2

■ _____

문 9 _____님의 나이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이십니까?

- (1) 만 30세 이상이다
- (2) 만 30세 미만이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 1

이름	
일련번호	가 -

☞ 다음은 지난 조사 당시에 다니셨고 현재도 계속 다니시는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지난 조사 당시 _____님의 일자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확인’란에 응답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 1-1) 확인 시 틀렸다면, 아래 빈칸에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으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님의	지난 조사당시 응답한 내용	문 1. 확인	문 1-1.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
• 주로 하는 일 (예 : 자동차정비, 잡화판매, 경비, 제품검사 등)		(1) 맞다 (2) 틀리다	
• 직책/직위 (예 : 판매원, 인사과 대리, 경비원 등)		(1) 맞다 (2) 틀리다	
• 취업형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 맞다 (2) 틀리다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 근로형태 (시간제, 전일제)		(1) 맞다 (2) 틀리다	(1) 시간제 (2) 전일제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문 2 _____님께서는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전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문 3.으로 가십시오.

(2) 있다

(문 2-1) 전근하신 적이 있다면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몇 번 전근하셨습니다까?

_____번

※ 문 2-2.부터 문 2-3.까지는 전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근하신 것부터 그 전의 전근까지만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은 아래의 <응답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2-2) 전근은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2-3) 어디에서 어디로 전근하셨습니다까? 지역명은 시, 도 단위까지 써주십시오.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응답표>

전근 순서	문 2-2. 전근 시점	문 2-3. 전근 장소
가장 최근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그 이전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문 3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_____님께서 일하시는 일자리의 이름(직장명)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교사나 공무원의 경우, 전근으로 인해 일자리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2) 바뀌었다'고
응답해주십시오)

(1) 바뀌지 않았다 → 문 4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3-1) 그렇다면 현재 이 일자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곳의 이름: _____

문 4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이 일자리의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5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4-1) 바뀌었다면, 현재 이 일자리의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일하는 곳의 이름: _____

(문 4-2) 그렇다면 언제 위의 사업 내용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5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6으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5-1) 바뀌었다면,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주로 하는 일: _____

(문 5-2) 그렇다면 언제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6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직책이나 직위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7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6-1 바뀌었다면 현재의 직책이나 직위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직책 또는 직위: _____

문 6-2 그렇다면 언제 현재의 직책 또는 직위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7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 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1) 바뀌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7-1 바뀌었다면, 현재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무엇입니까?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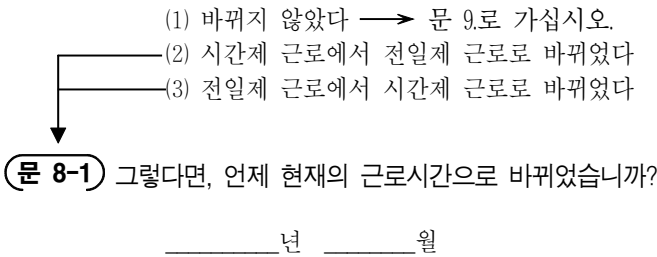
문 7-2 그렇다면, 언제 현재의 취업형태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8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근로 시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문 11로 가십시오.**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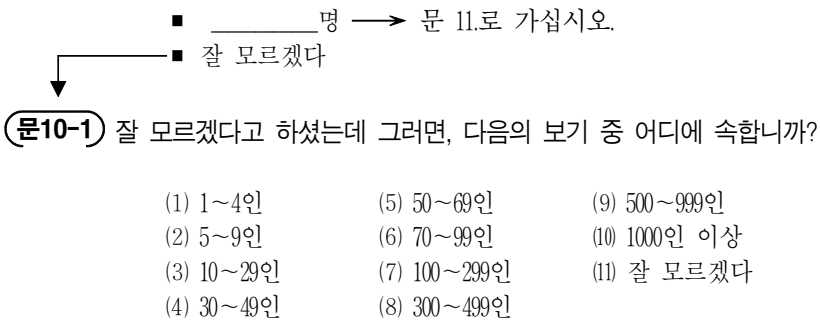


문 9 이 일자리(직장)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 (7) 기타 _____

문 10 현재 이 일자리(직장)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11 주로 일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재택 근로)
- (3)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4) 건설현장
- (5) 기타 _____

다음은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2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정해져 있다
- (2) 정해져 있지 않다 → 문 12-3.으로 가십시오.
- (3) 모른다 → 문 13.으로 가십시오.

문12-1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문12-2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 문 13.으로 가십시오.

문12-3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문13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 (3) 모른다

다음은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 _____님께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문15 _____님의 이 자리는 현재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예 → 문 16.으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15-1 이 자리에서 _____님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 일 일한다

→ 문 19.로 가십시오.

문16 현재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_____ 시간
- 일주일 _____ 일 일한다

문17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일)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 (1) 없다 → 문 19.로 가십시오.
- (2) 있다

문17-1 이 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초과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초과근로를 하십니까?

- 일주일 _____ 시간
- 일주일 _____ 일 일한다

문18 _____님의 경우 잔업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 (1) 지급되지 않는다 → 문 19.로 가십시오.
- (2) 지급된다

문18-1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1)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3) 일정한 기준이 없다

문18-2 그러면 _____님께서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_____만원

다음은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9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된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문20 _____님의 임금은 어떤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또 현재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어풀이 및 해설>

- 도급제 :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여 주시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적어주십시오.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액수
(1) 연 봉 계 약 제		연 _____만원
(2) 월 _____ 급		월평균 _____만원
(3) 주급제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원
(4) 일 당 제		일당 _____원
(5) 시 간 급 제		시간당 _____원
(6) 도 급 제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만원
(8) 기타		

문21 _____님의 이 일자리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_님은 해당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1) 그렇다’에 해당합니다)

-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른다 ⇒ 문 22로 가십시오.

(문21-1) 그렇다면 _____님께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를 하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1) 개인 성과급제
(2) 집단 성과급제(팀, 부서)
(3) 회사 성과급제
(4) 해당되지 않는다

문22 일자리(직장)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 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

문23 _____님께서는 이 일자리(직장)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문23-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3-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3-3 직장의료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3-4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3-5 산재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노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4 _____님의 이 일자리(직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1) 있다 → 문 25로 가십시오.
- (2) 없다
- (3) 모른다

문24-1 만약 노조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모른다
- 다른 설문지로 가십시오.

문25 _____님께서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1) 가입하고 있다
- (2) 가입하고 있지 않다

문25-1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것입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문25-2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가입 자격이 없어서
- (2)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 (3)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 (4) 사용자측의 만류로(회사측의 간섭으로)
- (5)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2

이름	
일련번호	가 -

☞ 다음은 지난 조사 당시에 다니셨으나 현재는 그만두신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지난 조사당시 _____님의 일자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 1-1) 확인시 틀렸다면, 아래 빈칸에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으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님의	지난 조사당시 응답한 내용	문 1. 확인	문 1-1.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
• 주로 하는 일 (예 : 자동차정비, 잡화판매, 경비, 제품검사 등)		(1) 맞다 (2) 틀리다	
• 직책/직위 (예 : 판매원, 인사과 대리, 경비원 등)		(1) 맞다 (2) 틀리다	
• 취업형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1) 맞다 (2) 틀리다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 근로형태 (시간제, 전일제)		(1) 맞다 (2) 틀리다	(1) 시간제 (2) 전일제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문 2 지난 조사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3.으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문 2-1 바뀌었다면, 그만둘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예 : 자동차 정비, 잡화 판매, 경비, 제품 검사 등)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2-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3 지난 조사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직책이나 직위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4.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문 3-1 바뀌었다면, 그만둘 당시 직책이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문 3-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4 지난 조사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1) 바뀌지 않았다 → 문 5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4-1 바뀌었다면, 그만둘 당시의 취업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문 4-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5 지난 조사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근로 시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1) 시간제 근로에서 전일제 근로로 바뀌었다
 (2)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 바뀌었다
 (3) 바뀌지 않았다 → 문 6.으로 가십시오.

↓

문 5-1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6 그만둘 당시 _____님의 이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 (7) 기타 _____

문 7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을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명 → 문 8.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

문 7-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1~4인
- (2) 5~9인
- (3) 10~29인
- (4) 30~49인
- (5) 50~69인
- (6) 70~99인
- (7) 100~299인
- (8) 300~499인
- (9) 500~999인
- (10) 1000인 이상
- (11) 잘 모르겠다

문 8 그만두실 당시에 주로 일을 하셨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재택 근로)
- (3)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4) 건설현장
- (5) 기타 _____

다음은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9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1) 정해져 있었다
- (2) 정해져 있지 않았다 → 문 9-3.으로 가십시오.
- (3) 모르겠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문 9-1) 정해져 있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 9-2) 정해져 있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르겠다

(문 9-3)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르겠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문 10 그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 (3) 모르겠다

다음은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1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하였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문12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1) 예 → 문 13.으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12-1) 그만둘 당시 이 자리에서 _____님의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고 계셨습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 문 16.으로 가십시오

문13 그만둘 당시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었습니까? 또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셨습니까?

- 일주일 _____시간
- 일주일 _____일 일한다

문14 그만둘 당시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 (1) 없었다 → 문 16.으로 가십시오.
- (2) 있었다

(문14-1) 그만둘 당시 이 자리에서 _____님의 초과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문15 그만둘 당시 _____님의 경우 잔업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 (1) 지급되지 않았다 → 문 17.로 가십시오.
- (2) 지급되었다

(문15-1) 그만둘 당시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 (1)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 (2)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3)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문15-2 그러면, 그만둘 당시 초과근로수당은 월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 월 평균 초과근로수당 _____ 만원

다음은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되었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문17 그만둘 당시 _____님의 임금은 어떤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또 그만둘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용어풀이 및 해설>

- 도급제 :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여 주시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적어주십시오.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액수
(1) 연 봉 계 약 제		연 _____ 만원
(2) 월 급		월평균 _____ 만원
(3) 주급제 /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 원
(4) 일 당 제		일당 _____ 원
(5) 시 간 급 제		시간당 _____ 원
(6) 도 급 제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 만원
(8) 기타		

문18 그만둘 당시 그 일자리(직장)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____님은 해당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경우는 ‘그렇다’에 해당합니다)

-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른다
- ⇒ 문 19로 가십시오.

문18-1 그렇다면 그만둘 당시 ____님께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1) 개인 성과급제
 (2) 집단 성과급제(팀, 부서)
 (3) 회사 성과급제
 (4) 해당되지 않는다

문19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임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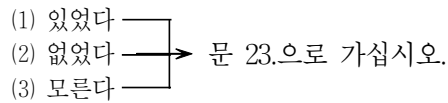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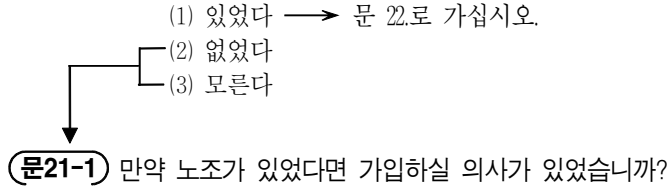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문20 ____님께서서는 이 일자리(직장)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문20-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문20-2 특수지역연금 ₁ (공무원, 군인, 교원)	가입되어 있었다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문20-3 직장의료보험 ₁	가입되어 있었다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문20-4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문20-5 산재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1 _____님께서 그만두실 당시 이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까?



문22 _____님께서는 그만두실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셨습니까?

(1) 가입하고 있었다

(2)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

문22-1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른다

↓

문22-2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입 자격이 없어서
 (2)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3)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4) 사용자측의 만류로(회사측의 간섭으로)
 (5) 기타 _____

다음은 그만두실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3 그 직장(사업)을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24 그 일자리를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1)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

- 두게 되었다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문24-1)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1)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2) 정리해고로 인해
 (3) 권고사직 (4) 명예퇴직
 (5) 정년퇴직 (6) 계약기간 끝나서
 (7)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8)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9)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10)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11)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12)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13)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로
 (14)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5)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6) 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
 (17)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18) 기타 _____

문25 _____님께서는 그 일자리를 그만 두었을 때, 법정(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을 받았거나 받게 되어있었습니까?

- (1) 받았거나 받기로 되어 있었다
 (2) 해당되지 않았다(근속기간 1년 미만 등) → 문 26.으로 가십시오.

(문25-1) 받기로 되어 있는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퇴직금 : _____만원

(문25-2)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실제로 받은 퇴직금 : _____만원

문26 _____님께서는 그 일자리를 그만 둘 때, 법정 퇴직금 말고 다른 퇴직수당 (예: 명예(조기)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이나 보상금 등)을 받았습니까?

- (1) 받았다 : 퇴직수당 _____만원
 (2) 받지 못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3

이름	
일련번호	가 -

☞ 다음은 지난 조사 당시에 일하였고 현재도 계속 하시는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지난 조사 당시 ____님의 일자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확인'란에 응답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 1-1) 틀렸다면, 아래의 빈칸에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으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님의	지난 조사당시 응답한 내용	문 1. 확인	문 1-1.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
• 주로 하는 일 (예 : 자동차정비, 잡화판매, 경비, 제품검사 등)		(1) 맞다 (2) 틀리다	

문 2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일자리(사업체)의 이름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 (1) 바꾼 적이 없다 → 문 3으로 가십시오.
- (2) 바꾼 적이 있다

(문 2-1) 그렇다면, 현재 일자리(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업체 이름 : _____

문 3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사업체)의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습니까?

(1) 옮긴 적이 없다 → 문 4로 가십시오.

(2) 옮긴 적이 있다

문 3-1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번이나 옮기셨습니까?

_____번

문 3-2 언제 현재의 일자리(사업체) 위치로 옮기셨습니까?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지역명은 시, 도 단위까지 써주십시오.)

■ 이사 시기 : _____년 _____월

■ 이사 장소 :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문 4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5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4-1 바뀌었다면,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4-2 언제부터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5 지난 조사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용어풀이>

- 고용주 /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아지), 농림수산업, 행상, 노점상)
- 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1) 바뀌지 않았다 → 문 6.으로 가십시오.

(2) 고용주/자영업자에서 가족종사자로 바뀌었다

(3) 가족종사자에서 고용주/자영업자로 바뀌었다

(문 5-1) 바뀌셨다면, 바뀐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문 6 주로 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채택근로)
- (3) 건설현장
- (4) 자신의 점포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5) 기타 _____

문 7 이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종사자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친지는 제외됩니다. 농번기나 비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고용된 종업원의 수 : (1) _____명 ➡ 문 8로 가십시오.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 문 7-1로 가십시오.

(문 7-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1~4인 (7) 100~299인
- (2) 5~9인 (8) 300~499인
- (3) 10~29인 (9) 500~999인
- (4) 30~49인 (10) 1000인 이상
- (5) 50~69인 (11) 잘 모르겠다
- (6) 70~99인

문 8 이 일자리에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또는 친지가 _____님 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 9 이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문10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 일 일한다

문11 현재 이 일자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적어 주십시오.

- (1) 연간 매출액 _____ 만원 → 문 12로 가십시오.
- (2) 잘 모르겠다

(문1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000만원 미만 | (8) 5억~10억원 미만 |
| (2) 1,000만~3,000만원 미만 | (9) 10억~30억원 미만 |
| (3) 3,000만~5,000만원 미만 | (10) 30억~100억원 미만 |
| (4) 5,000만~8,000만원 미만 | (11) 100억~500억원 미만 |
| (5) 8,000만~1억원 미만 | (12) 500억~1,000억원 미만 |
| (6) 1억~3억원 미만 | (13) 1,000억원 이상 |
| (7) 3억~5억원 미만 | (14) 잘 모르겠다 |

문12 현재 이 일자리에서 얻는 _____ 님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영업자·고용주만 대답해 주십시오)

- (1) 소득 : 월평균 _____ 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4

이름	
일련번호	가 -

☞ 다음은 지난 조사 당시에는 일하셨으나 현재는 그만두신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지난 조사당시 ____님의 일자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확인' 란에 응답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문 1-1) 틀렸다면, 아래의 빈칸에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으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님의	지난 조사당시 응답한 내용	문 1. 확인	문 1-1. 지난 조사 당시 바른 내용
• 주로 하는 일 (예 : 자동차정비, 잡화판매, 경비, 제품검사 등)		(1) 맞다 (2) 틀리다	

문 2 지난 조사 당시와 그만두실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3.으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문 2-1) 바뀌었다면, 그만둘 당시 주로 하시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주로 하던 일 : _____

(문 2-2) 언제부터 그만두실 당시에 주로 하던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3 지난 조사 당시와 그만두실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용어풀이>
 • **고용주 /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사, 노점상)
 • **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1) 바뀌지 않았다 → 문 4로 가십시오.
 (2) 고용주/자영업자에서 가족종사자로 바뀌었다
 (3) 가족종사자에서 고용주/자영업자로 바뀌었다

↓

문 3-1 바뀌셨다면, 바뀐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문 4 그만두실 당시에 주로 일하시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채택근로)
- (3) 건설현장
- (4) 자신의 점포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5) 기타 _____

문 5 그만두실 당시 이 일자리에는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종사자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친지는 제외됩니다. 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고용된 종업원의 수 : (1) _____명
 (2) 없다 → 문 6.으로 가십시오.
 (3) 잘 모르겠다

↓

문 5-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1~4인
- (2) 5~9인
- (3) 10~29인
- (4) 30~49인
- (5) 50~69인
- (6) 70~99인
- (7) 100~299인
- (8) 300~499인
- (9) 500~999인
- (10) 1000인 이상
- (11) 잘 모르겠다

문 6 그만들 당시 이 일자리에는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또는 친지가 ____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_명

문 7 ____님은 그만들 당시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셨습니까?

<해설>

-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하였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였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였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문 8 그만들 당시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셨습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일하셨습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하였다

문 9 그만들 당시 이 일자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적어 주십시오.

- (1) 연간 매출액 _____만원 → 문 10.으로 가십시오.
- (2) 잘 모르겠다

문 9-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000만원 미만 | (8) 5억~10억원 미만 |
| (2) 1,000만~3,000만원 미만 | (9) 10억~30억원 미만 |
| (3) 3,000만~5,000만원 미만 | (10) 30억~100억원 미만 |
| (4) 5,000만~8,000만원 미만 | (11) 100억~500억원 미만 |
| (5) 8,000만~1억원 미만 | (12) 500억~1,000억원 미만 |
| (6) 1억~3억원 미만 | (13) 1,000억원 이상 |
| (7) 3억~5억원 미만 | (14) 잘 모르겠다 |

문 10 그만들실 당시 이 일자리에서 얻었던 ____님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자영업자·고용주 만 대답해 주십시오)

- (1) 소득 월 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다음은 그만두실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1 그 일자리를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12 그 일자리를 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 (1) 계속 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문12-1)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1)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 (2)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3) 장사·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 (4) 소득이 적어서
- (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 (6)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7)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8)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9)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로
- (10)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11)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5

이름	
일련번호	나 -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에 새로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다니시는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이 일자리(직장)는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시작한 날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 2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1) 없었다 → 문 5로 가십시오.
- (2) 있었다

문 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 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한 방법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문 5.부터 문 8.의 문항 중 특히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래 <응답 예>에 응답한 것처럼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문 5. 일하는 곳의 이름	성공기계	건설현장	풍년상사	동사무소
문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아파트 건축	농산물 도소매	공공근로
문 7. 주로 하는 일	생산제품 검사	미장	채소류 판매	장목제거
문 8. 직책 또는 직위	생산부 종업원	없음	판매사원	없음

문 5 현재 일하시는 일자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곳의 이름 : _____

문 6 이 사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을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업종) : _____

문 7 현재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문 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3) 그렇다면, 언제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8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문 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직책 또는 직위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9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 문 8-2로 가십시오.

(문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문 8-3) 그렇다면, 언제 현재의 직책 또는 직위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9 _____님께서 이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 (2) 있다

(문 9-1) 전근하신 적이 있다면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몇 번 전근하셨습니까?

_____번

※ 문 9-2.부터 문9-3.까지는 전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근하신 것부터 그 전의 전근까지만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은 아래의 <응답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9-2) 전근은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9-3) 어디에서 어디로 전근하셨습니까? 지역명은 시, 도 단위까지 써주십시오.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응답표>

전근 순서	문 9-2. 전근 시점	문 9-3. 전근 장소
가장 최근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그 이전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문10 현재 이 일자리는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문10-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11.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10-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문10-1-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11 현재 이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시간제 근로
- (2) 전일제 근로

문11-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12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11-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시간제 근로
- (2) 전일제 근로

문11-1-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12 이 일자리(직장)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 문 14로 가십시오
- (7) 기타 _____

문13 현재 이 일자리(직장)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을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명 → 문 14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13-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 |
|--------------|---------------|
| (1) 1~4인 | (2) 5~9인 |
| (3) 10~29인 | (4) 30~49인 |
| (5) 50~69인 | (6) 70~99인 |
| (7) 100~299인 | (8) 300~499인 |
| (9) 500~999인 | (10) 1000인 이상 |
| (11) 잘 모르겠다 | |

문14 주로 일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주택 근로)
- (3)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4) 건설현장
- (5) 기타 _____

다음은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정해져 있다
- (2) 정해져 있지 않다 → 문 15-3.으로 가십시오.
- (3) 모른다 → 문 16.으로 가십시오.

(문15-1)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문15-2)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 } → 문 16.으로 가십시오.

문15-3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문16 현재의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 (3) 모른다

다음은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문18 _____님의 이 일자리는 현재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예 → 문 19.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18-1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 일 일한다

→ 문 22로 가십시오.

문19 현재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 일 일한다

문20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일)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 (1) 없다 → 문 22로 가십시오.
- (2) 있다

(문20-1)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초과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초과근로를 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 일 일한다

문21 _____님의 경우 잔업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 (1) 지급되지 않는다 → 문 22.으로 가십시오.
- (2) 지급된다

(문21-1)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1)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3) 일정한 기준이 없다

(문21-2) 그러면 _____님께서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_____만원

다음은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2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된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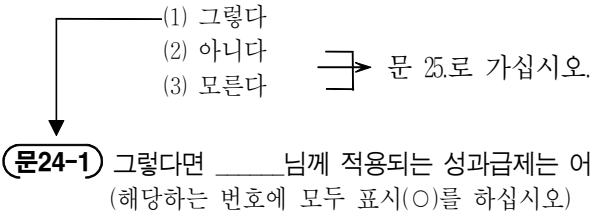
문23 _____님의 임금은 어떤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또 현재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어풀이 및 해설>

- 도급제 :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여 주시고, 현재의 임금수준을 적어주십시오.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액수
(1) 연 봉 계약 제		연 _____만원
(2) 월 급		월평균 _____만원
(3) 주급제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원
(4) 일 당 제		일당 _____원
(5) 시 간 급 제		시간당 _____원
(6) 도 급 제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만원
(8) 기타		

문24 _____님의 이 일자리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_님은 해당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1) 그렇다’에 해당합니다)



<용어풀이 및 해설>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1) 개인 성과급제 (2) 집단 성과급제(팀, 부서)
 (3) 회사 성과급제 (4) 해당되지 않는다

문25 현재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 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

(문25-1) 이 일자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임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문26 _____님께서 이 일자리(직장)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문26-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6-2) 특수지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6-3) 직장의료보험 ¹⁾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6-4)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문26-5) 산재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7 _____님 의 이 일자리(직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 28로 가십시오.

- (2) 없다
- (3) 모른다

(문27-1) 만약 노조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모른다
- 다른 설문지로 가십시오.

문 28 _____님께서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1) 가입하고 있다

(2) 가입하고 있지 않다

(문28-1)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것입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문28-2)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가입 자격이 없어서
- (2)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 (3)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 (4) 사용자측의 만류로(회사측의 간섭으로)
- (5)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6

이름	
일련번호	나 -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에 새로 시작하여 지금은 그만두신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_____님께서 그 일자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월에 시작하여
 _____년 _____월 _____월에 그만두었다.

문 2 이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1) 있었다
- (2) 없었다 → 문 5로 가십시오.

문 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 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한 방법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문 5.부터 문 8.까지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래 <응답 예>에 응답한 것처럼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문 5. 일하는 곳의 이름	성공기계	건설현장	풍년상사	동사무소
문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아파트 건축	농산물 도소매	공공근로
문 7. 주로 하는 일	생산제품 검사	미장	채소류 판매	장목제거
문 8. 직책 또는 직위	생산부 종업원	없음	판매사원	없음

문 5 지난 조사 이후에 새로 시작하셨으나 지금은 그만두신 이 일자리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일하는 곳의 이름 : _____

문 6 이 사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업종) : _____

문 7 이 일을 그만둘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1) 처음 시작할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3) 그렇다면, 언제 그만둘 당시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8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문 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직책 또는 직위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9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 문 8-2로 가십시오.

(문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문 8-3) 그렇다면, 언제 그만둘 당시의 직책 또는 직위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9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중 무엇에 해당하였습니까?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문 9-1) 일을 시작할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9-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의 취업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문 9-1-2) 그렇다면, 언제 그만둘 당시의 취업형태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10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 중 무엇에 해당했습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시간제 근로
- (2) 전일제 근로

(문10-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11.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10-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시간제 근로
- (2) 전일제 근로

문10-1-2 그렇다면, 언제 그만둘 당시의 취업형태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11 _____님의 이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 문13.으로 가십시오
- (7) 기타 _____

문12 이 일자리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을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명 → 문 13.으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12-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1~4인
- (2) 5~9인
- (3) 10~29인
- (4) 30~49인
- (5) 50~69인
- (6) 70~99인
- (7) 100~299인
- (8) 300~499인
- (9) 500~999인
- (10) 1000인 이상
- (11) 잘 모르겠다.

문13 이 자리에서 일하실 당시 주로 일하시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채택 근로)
- (3)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4) 건설현장
- (5) 기타

다음은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4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1) 정해져 있었다
- (2) 정해져 있지 않았다 → 문 14-3.으로 가십시오.
- (3) 모른다 → 문 15.로 가십시오.

(문14-1) 정해져 있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문14-2) 정해져 있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 } → 문 15.로 가십시오.

(문14-3)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문15 그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 (3) 모른다

다음은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6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하였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문17 이 일자리는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 (1) 예 → 문 18.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17-1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고 계셨습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하였다

→ 문 21.로 가십시오.

문18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었습니까? 또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셨습니까?

- 일주일 _____시간
- 일주일 _____일 일하였다

문19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 (1) 없었다 → 문 21.로 가십시오.
- (2) 있었다

문19-1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초과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이나 초과근로를 하셨습니까?

- 일주일 _____ 시간
- 일주일 _____ 일 일하였다

문20 _____님의 경우 잔업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었습니까?

- (1) 지급되었다 → 문 20-1.로 가십시오.
- (2) 지급되지 않았다 → 문 21.로 가십시오.

(문20-1)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 (1)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 (2)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3)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문20-2) 그러면, 초과근로수당은 월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_____만원

다음은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1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되었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문22 그만둘 당시 _____님의 임금은 어떤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또 그만둘 당시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용어풀이 및 해설>

- 도급제 :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여 주시고, 각각 현재의 임금수준을 적어 주십시오.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액수
(1) 연 봉 계 약 제		연 _____만원
(2) 월 급		월 평균 _____만원
(3) 주급제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원
(4) 일 당 제		일당 _____원
(5) 시 간 급 제		시간당 _____원
(6) 도 급 제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만원
(8) 기타		

문23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직장)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____님은 해당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경우는 ‘그렇다’에 해당합니다)

-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른다
- ⇒ 문 24로 가십시오.

문23-1 그렇다면 ____님께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1) 개인 성과급제
(2) 집단 성과급제(팀, 부서)
(3) 회사 성과급제
(4) 해당되지 않는다

문24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세금을 제외한 총임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문24-1 이 일자리에 처음 취업하셨을 때 임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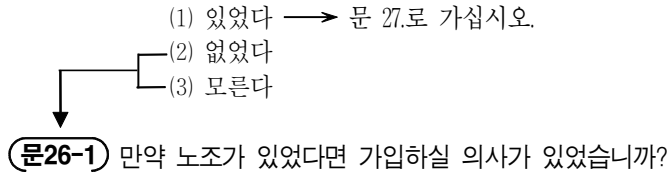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공제 후)
-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문25 _____님께서서는 이 일자리(직장)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문25-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문25-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문25-3 직장의료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문25-4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문25-5 산재보험	(1) 가입되어 있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6 _____님께서 그만두실 당시 이 일자리(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까?



- (1) 있었다
 - (2) 없었다
 - (3) 모른다
- 문 28으로 가십시오.

문27 _____님께서는 그만두실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셨습니까?

(1) 가입하고 있었다.

(2)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

문27-1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셨던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른다

↓

문27-2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가입 자격이 없어서
(2)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3)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4) 사용자측의 만류로(회사측의 간섭으로)
(5) 기타 _____

다음은 그만두실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8 그 일자리를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 (1)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문28-1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1)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 (2) 정리해고로 인해
- (3) 권고사직
- (4) 명예퇴직
- (5) 정년퇴직
- (6) 계약기간 끝나서
- (7)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8)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9)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10)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11)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12)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 (13)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로
- (14) 건강, 교령 등의 이유로
- (15)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 (16) 회사가 이사하여서(진근 발령을 받아서)
- (17)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 (18) 기타 _____

문29 _____님께서는 그 일자리를 그만 두었을 때, 법정(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을 받았거나 받게 되어있었습니까?

- (1) 받았거나 받기로 되어 있었다.
- (2) 해당되지 않았다(근속기간 1년 미만등) → 문 30.으로 가십시오.

문29-1 받기로 되어 있는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퇴직금 : _____만원

문29-2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얼마였습니까?

실제로 받은 퇴직금 : _____만원

문30 _____님께서는 그 일자리를 그만 둘 때, 법정 퇴직금 말고 다른 퇴직수당 (예: 명예(조기)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이나 보상금 등)을 받았습니까?

- (1) 받았다 : 퇴직수당 _____만원
- (2) 받지 못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7

이름	
일련번호	나 -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에 새로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하시는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이 일자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 2 이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1) 없었다 → 문 5로 가십시오.
- (2) 있었다

문 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 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하신 방법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문 5.부터 문 7.의 문항 중 특히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래 <응답 예>에 응답한 것처럼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문 5. 사업체 이름	하나식품	없음	대신자동차	개인택시
문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장미 및 식료품 소매	벼농사	자동차 정비	운수업
문 7. 주로하는 일	판매 및 돈관리	벼농사	자동차 정비 및 관리	운전

문 5 이 일자리(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업체 이름 : _____

문 6 이 일자리(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업종) : _____

문 7 현재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3) 그렇다면, 언제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8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고용주 /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사, 노점상)
- 무급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1) 고용주 / 자영업자
- (2) 무급가족종사자

(문 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9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문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고용주 / 자영업자
- (2) 무급가족종사자

(문 8-3) 언제 현재의 종사상 지위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9 이 일자리를 시작하신 이후 일자리(사업체)의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 (2) 있다

(문 9-1)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번이나 옮기셨습니까?

_____번

(문 9-2) 언제 현재의 일자리(사업체) 위치로 옮기셨습니까?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지역명은 시, 도단위 까지 써주십시오)

- 이사 시기 : _____년 _____월
- 이사 장소 : _____ 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 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문10 지금 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재택근로)
- (3) 건설현장
- (4) 자신의 점포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5) 기타 _____

문11 이 일자리에선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지는 제외됩니다. 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고용된 종업원의 수 : (1) _____명 \rightarrow 문 12로 가십시오.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rightarrow 문 11-1.으로 가십시오.

(문1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4인 | (7) 100~299인 |
| (2) 5~9인 | (8) 300~499인 |
| (3) 10~29인 | (9) 500~999인 |
| (4) 30~49인 | (10) 1000인 이상 |
| (5) 50~69인 | (11) 잘 모르겠다. |
| (6) 70~99인 | |

문12 이 일자리에선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또는 친지가 _____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문13 _____님은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받았다.

문14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문15 현재 이 일자리(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연간 매출액 _____만원 → 문 16.으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15-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000만원 미만 | (8) 5억~10억원 미만 |
| (2) 1,000만~3,000만원 미만 | (9) 10억~30억원 미만 |
| (3) 3,000만~5,000만원 미만 | (10) 30억~100억원 미만 |
| (4) 5,000만~8,000만원 미만 | (11) 100억~500억원 미만 |
| (5) 8,000만~1억원 미만 | (12) 500억~1,000억원 미만 |
| (6) 1억~3억원 미만 | (13) 1,000억원 이상 |
| (7) 3억~5억원 미만 | (14) 잘 모르겠다. |

문16 현재 이 일자리(사업)에서 얻는 _____님의 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영업자·고용주 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문16-1)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유형 8

이름	
일련번호	나 -

☞ 다음은 지난 조사 이후에 새로 시작하여 지금은 그만두신 일자리 ()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위에 적힌 일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그 일자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시작해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그만두었다.

문 2 이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1) 없었다 → 문 5로 가십시오.
- (2) 있었다

문 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 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한 방법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문 5.부터 문 7.의 문항 중 특히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래 <응답 예>에 응답한 것처럼 자세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문 5. 사업체 이름	하나식품	없음	대신자동차	개인택시
문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장학 및 식료품 소매	벼농사	자동차 정비	운수업
문 7. 주로하는 일	판매 및 도판리	벼농사	자동차 정비 및 판리	운전

문 5 이 일자리(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업체 이름 : _____

문 6 이 일자리(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업종) : _____

문 7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1) 처음 시작할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문 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하는 일 : _____

(문 7-3) 언제부터 그만둘 당시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8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어풀이>

- 고용주 /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십장(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상, 노점상)
- 무급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1) 고용주 / 자영업자
- (2) 무급가족종사자

(문 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그만둘 당시를 비교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문 9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문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고용주 / 자영업자
- (2) 무급가족종사자

(문 8-3) 언제 그만둘 당시의 종사상 지위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9 이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 일자리(사업체)의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었습니까?

- (1) 없었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 (2) 있었다

(문 9-1)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번이나 옮기셨습니까?

_____번

(문 9-2) 언제 그만둘 당시의 일자리(사업체) 위치로 옮기셨습니까?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지역명은 시, 도단위 까지 써주세요.)

- 이사 시기 : _____년 _____월
- 이사 장소 : _____ 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 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문10 그만둘 당시 주로 일하시던 곳은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재택근로)
- (3) 건설현장
- (4) 자신의 점포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5) 기타 _____

문11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지는 제외됩니다. 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고용된 종업원의 수 : (1) _____명 \rightarrow 문 12로 가십시오.
- (2) 없었다
- (3) 잘 모르겠다 \rightarrow 문 11-1로 가십시오.

(문1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4인 | (7) 100~299인 |
| (2) 5~9인 | (8) 300~499인 |
| (3) 10~29인 | (9) 500~999인 |
| (4) 30~49인 | (10) 1000인 이상 |
| (5) 50~69인 | (11) 잘 모르겠다. |
| (6) 70~99인 | |

문12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또는 친지가 _____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_____명

문13 그만둘 당시 _____님은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하였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받았다.

문14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셨습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일하셨습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문15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사업)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연간 매출액 _____만원 → 문 16.으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15-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000만원 미만 | (8) 5억~10억원 미만 |
| (2) 1,000만~3,000만원 미만 | (9) 10억~30억원 미만 |
| (3) 3,000만~5,000만원 미만 | (10) 30억~100억원 미만 |
| (4) 5,000만~8,000만원 미만 | (11) 100억~500억원 미만 |
| (5) 8,000만~1억원 미만 | (12) 500억~1,000억원 미만 |
| (6) 1억~3억원 미만 | (13) 1,000억원 이상 |
| (7) 3억~5억원 미만 | (14) 잘 모르겠다. |

문16 그만둘 당시 이 일자리에서 얻은 _____님의 소득은 월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영업자·고용주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문16-1)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소득 : 월평균 _____ 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었다

다음은 그만두실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 이 일자리를 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 (1) 계속 일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문17-1)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1)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 (2)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3) 장사/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 (4) 소득이 적어서
- (5)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 (6) 일이 임시적이거나 미래성이 없어서
- (7)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8)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9)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로
- (10)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11)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이름 _____

☞ 이제부터 _____ 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문 1 _____ 님께서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
 -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2) 주로 가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 (3)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 (6)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 (7)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8)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9) 기타 _____

문 2 _____ 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1) 일하였음 → 문 4로 가십시오.
- (2) 일시 휴직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3) 구직활동
- (4) 가사 혹은 육아
- (5) 학업
- (6) 퇴직하여서
- (7) 연로하여서

- (8) 심신장애
- (9) 자선사업·봉사활동 등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였음
- (10) 당분간 쉬고 있음 : 특별히 한 일은 없었으며, 직업을 구하지도 않았음
- (11) 기타 _____

문 3 그렇다면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1) 일을 한 적이 있었다 → 문 4로 가십시오.
- (2)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문 3-1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 (1)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미취업자 개인’으로 가십시오.
- (2) 가지고 있었다

문 3-1-2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시적 병 혹은 사고 때문에
- (2) 휴가나 교육 중이어서
- (3) 집안 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 (4) 노사분규 때문에
- (5) 조업중단 때문에
- (6) 일기불순(날씨가 나빠서)
- (7) 일감이 없어서
- (8) 기타 _____

문 4 그렇다면 _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 포함) → 문 5로 가십시오.
- (2)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경우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는 위의 ‘(1) 임금근로자’로 가십시오.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비임금근로자 개인’으로 가십시오.

-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문 4-1 가족(친척)의 일을 돕는 시간이 1주일 평균 약 18시간(하루에 3~4시간) 이상입니까?

- (1) 18시간 이상이다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비임금근로자 개인'으로 가십시오.
- (2) 18시간 미만이다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미취업자 개인'으로 가십시오.

다음은 현재 하시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 5번부터의 질문은 “개인용 예비조사”에서 현재의 일거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일자리를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여 주십시오.

문5 _____님께서서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만 일하실 수 있습니까?

- (1) 아니오 → 문 6.으로 가십시오.
- (2) 예

문 5-1 _____님께서서는 맡은 일이 완성될 때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셔야 합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5-2 _____님께서서는 다른 근로자의 후임으로 고용되어 그 사람의 남은 임기 동안만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5-3 _____님께서서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고용되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6 _____님의 일자리는 1년 내내 계속되는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1년 중의 특정 기간동안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 (1) 1년 내내 계속되는 일자리
- (2)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인하여 1년 중에 특정 기간동안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문 7 특별히 경기가 나빠지거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없는 한,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현재의 고용주와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8 _____님께서 현재 이 일자리에 얼마나 동안이나 일하셨습니다?

- (1) 3년 이상
- (2) 3년 미만

문 9 _____님께서 이 일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1년 이상
- (2) 1년 미만

문 10 현재의 일자리에 귀하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11 _____님께서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 다른 일자리로 파견되어 일하고 계십니까?

<용어풀이>

• 파견근로 : 고용되어 있는 회사(업체)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서로 다른 경우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문 12 현재의 일자리에 _____님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십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십니까? (단, 회사에서 제시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시는 것은 “(2)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일한다”에 해당됩니다)

- (1) 스스로 정한다
- (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한다

문13 _____님께서서는 업무상 다른 직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4 _____님께서서는 업무상 다른 근로자들의 일을 관리, 감독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명이나 관리, 감독하십니까?

- (1)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 → 문 15.로 가십시오.
- (2) 관리·감독 한다 : ① _____명
② 잘 모르겠다

(문14-1) _____님께서서는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봉급인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4-2) _____님은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업무상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5 _____님께서서는 일하시는 곳의 직원 채용이나 해고 등의 결정에 참여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6 _____님께서서는 업무상 회사의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7 _____님께서서는 현재의 고용주와 함께 일한 이후로 상위 직급이나 직위로 승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예 → 문 18.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문17-1) 그렇다면, _____님께서는 현재 그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하시거나 업적이 좋다면, 승진하실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7-2) _____님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승진한 분이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8 이 일자리에서 아래의 항목들 중 _____님께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지 않는다	모른다
(1) 퇴직금(퇴직시 받는 돈)			
(2) 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3) 부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4) 유급 연가, 월차, 휴가			
(5) 무급 연가, 월차, 휴가			
(6) 유급 병가			
(7) 유급 출산 휴가			
(8) 전세금이나 학자금 용자			

문19 지난주에 _____님께서 실제로 일한 모든 근무시간을 아래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문20 이 주된 일자리의 근로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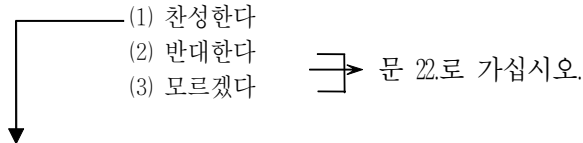
- (1)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 (2)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3)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	↓	↓
<p>(문20-1) 그렇다면,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 시간을 줄이고 싶습니까?</p> <p>(1) 예 (2) 아니오</p>	<p>문 21.로 가십시오.</p>	<p>(문20-2) 소득이 늘어난다면, 근로 시간을 늘이거나 더 오래 일하고 싶습니까?</p> <p>(1) 예 (2) 아니오</p>

문21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풀이>

- **법정근로시간** : 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문21-1) 줄이는 것에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을 1주일에 몇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주일에 _____ 시간

문22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직장)와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직무만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인사고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문22-1) 그렇다면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23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하고 있는 일은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이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준이 매우 높다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①	②	③	④	⑤
나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①	②	③	④	⑤

문24 현재의 일자리에 일하시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같은 직종의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

- (1) 현 직장에서와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 (2)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 (3) 거의 쓸모가 없다
- (4)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문25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 (1)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 (2) 현재의 일자리에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
- (3)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 (4)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싶다
- (5)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

→ 10 페이지, 문 33.으로 가십시오.

문25-1 그렇다면, ___님은 현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 (1) 구하고 있다 → 문 26.으로 가십시오.
- (2) 구하고 있지 않다.

문25-2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기 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_____
- (2)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_____
- (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_____
- (4)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_____
- (5) 구직 결과를 기다림 _____
- (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_____
- (7) 가사일 때문에 _____
- (8) 건강상 이유로 _____
- (9) 기타 _____

→ 10 페이지, 문 33.으로 가십시오.

구직 활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26 새로운 일(직장)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2) 친구, 친지의 소개
- (3)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4)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하여
- (8)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9) 기타 _____

(문26-1) 지난 조사 이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26-2) _____님께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할 경우는 ‘(1) 생활비를 벌려고’에 해당됩니다)

- (1) 생활비를 벌려고
- (2)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3)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 (4) 자신의 발전을 위해
- (5)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6)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7) 기타 _____

※ 다음의 문 27.과 문 28.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기>	(예1)	(예2)	(예3)	(예4)
문 27. 희망하는 일자리 혹은 사업내용	자동차정비업	식당	식당	아파트건설업
문 28. 희망하는 일의 종류	자동차정비공	음식 만듭기	혹 서빙하기	미장공

문27 _____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위의 보기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희망하는 일자리의 사업내용(업종)

--	--	--	--

문28 그곳에서 맡고 싶으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희망하는 일의 종류

--	--	--	--

문29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
- **고용주나 자영업자** : 내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 평균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1) 임금근로자 → 문 30.으로 가십시오.
 (2) 고용주나 자영업자 → 문 31.로 가십시오.
 (3) 가족종사자

문30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전일제 근로 → 문 31.로 가십시오.
 (2) 시간제 근로

문30-1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를 돌보려고
- (2) 가사일 때문에
- (3) 학업을 위하여
-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6)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7) 기타 _____

문31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월평균 _____만원

문32 다음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임금근로를 희망하시는 분은 (8)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9)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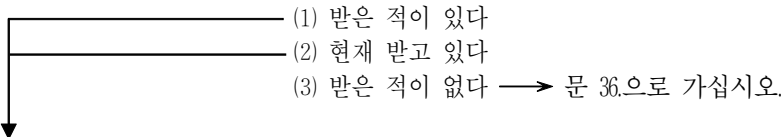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①	②	③	④	⑤
(4) 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회보험 급여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33 _____님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34 _____님께서는 지난 조사 이후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을 한 번이라도 수급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계십니까? 단, 직업훈련 수당은 제외됩니다.



문35 받은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급여를 받은 기간, 받은 방식과 1회 수급액, 총 수급액을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35-1)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보기 :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기타
(1) 노령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연금 (4) 사망일시금 (5) 반환일시금	(6) 사학연금 (7) 공무원연금 (8) 군인연금 (9) 반환일시금	(10) 휴업급여 (11) 장해연금 (12) 유족급여	(13) 보훈연금 (14) 실업급여	(15) 기타

(문35-2)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수급 받은 기간을 쓰십시오
 (만일 현재에도 계속 받고 있다면 끝난 시기에 “(2) 계속 수급중” 이라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끝이 났다면 오늘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수급 방식이 1년에 1회인 경우라도 앞으로 계속 수급 받으실 예정이면 “(2) 계속 수급중” 에 해당됩니다)

문35-3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수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한가지 사회 보험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다면,
 수급받고 있는 사회 보험을 중복하여 2번 적어주시고, 각각의 사회보
 험에 해당하는 수급방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보기 : 수급방식 >

- (1) 일시불 : 한꺼번에 수급받는 방식
- (2) 1년 1회 : 1년에 1회 수급하는 방식
- (3) 분기 1회 : 3개월에 1회 수급받는 방식
- (4) 월 1회 : 매일 수급받는 방식
- (5) 2주 1회 : 보름마다 1회, 1개월에 2회 수급받는 방식

문35-4 사회보험을 지급받을 때 1회에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 35-1. 사회보험의 종류		문 35-2. 받은 기간		문 35-3. 수급 방식	문 35-4. 1회 수급액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1		____년__월__일	(1) ____년__월__일 (2) 계속 수급중		원
2		____년__월__일	(1) ____년__월__일 (2) 계속 수급중		원
3		____년__월__일	(1) ____년__월__일 (2) 계속 수급중		원
4		____년__월__일	(1) ____년__월__일 (2) 계속 수급중		원

다음은 혼인상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36 지난 조사 이후 ____님의 혼인상태에 변화(결혼, 별거, 이혼, 사별 등)가 있었습니까?

- (1) 변화가 없었다 → 문 37로 가십시오
- (2) 변화가 있었다

문36-1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의 <보기>를 참조하여 변화가 일어난
 순서대로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지난 조사시기가 1999년 7월 4일이고,
1999년 8월에 이혼한 후 2000년 5월에 재혼한 경우

변화 내용					변화 시기	
1.	1.처음 결혼함()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1999년 8월
2.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2000년 5월
3.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응답지>

변화 내용					변화 시기	
1.	1.처음 결혼함()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2.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3.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4.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5.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3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친분 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1)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2)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친인척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친분 관계	①	②	③	④	⑤

(문37-1) 그렇다면, _____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33 _____님 닉의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문39 _____님 닉은 가장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문40 경제적 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_____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문 40-1.	IMF 원조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난 <u>지금</u> , <u>실질적으로</u> 귀택의 <u>경제적인 여건</u> 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40-2.	<u>앞으로 1~2년 후에</u> 귀택의 <u>경제 여건</u> 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40-3.	IMF 원조가 시작된 2년 전과 비교하여 <u>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 여건</u> 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40-4.	<u>앞으로 1~2년 후에</u> 우리 나라 <u>경제 여건</u> 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41 8촌 이내의 친인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평소에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직업	친척의 유무	아주 가깝게 지낸다	가깝게 지내는 정도다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대학교수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의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중앙일간지/방송의 기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장성급 이상의 군인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회의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판사/검사/변호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문42 오늘 날씨는 몇 월 몇 일입니까? 2000년 _____ 월 _____ 일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직장 전화번호	
응답 시간	시간 분 동안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면접 <input type="checkbox"/> 유치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전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전화
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 <input type="checkbox"/> 본인+대리	대리 이유	
면접원 성명	(인)	Supervisor 검증	(인)



이름 _____

☞ 이제부터 _____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문 1 귀하께서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
 -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2) 주로 가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 (3)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 (6)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 (7)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8)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9) 기타 _____

문 2 _____님께서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 (1) 일하였음 → 문 4로 가십시오.
- (2) 일시 휴직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3) 구직활동
- (4) 가사 혹은 육아
- (5) 학업
- (6) 퇴직하여서
- (7) 연로하여서
- (8) 심신장애
- (9) 자선사업·봉사활동 등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였음

- (10) 당분간 쉬고 있음 : 특별히 한 일은 없었으며, 직업을 구하지도 않았음
 (11) 기타 _____

문 3 그렇다면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 일을 한 적이 있었다 → 문 4로 가십시오.

(2)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문 3-1)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1)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미취업자 개인'으로 가십시오.

(2) 가지고 있었다

(문 3-1-2)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시적 병 혹은 사고 때문에
- (2) 휴가나 교육 중이어서
- (3) 집안 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 (4) 노사분규 때문에
- (5) 조업중단 때문에
- (6) 일기불순(날씨가 나빠서)
- (7) 일감이 없어서
- (8) 기타 _____

문 4 그렇다면 _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 포함)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임금근로자개인'으로 가십시오.

(2)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경우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는 위의 '(1) 임금근로자'로 가십시오.
 → 문 5로 가십시오.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문 4-1) 가족(친척)의 일을 돕는 시간이 1주일 평균 약 18시간(하루에 3~4시간) 이상입니까?

(1) 18시간 이상이다 → 문 5로 가십시오.

(2) 18시간 미만이다 → 잘못된 설문입니다. 면접원에게 문의하시어 '미취업자 개인'으로 가십시오.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 5번부터의 질문은 “개인용 예비조사”에서 현재의 일거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신 일자리를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여 주십시오.

문 5 현재의 일자리에서 _____님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일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하십니까?(단, 회사에서 제시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시는 것은 “(2)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서 일한다”에 해당됩니다)

- (1) 스스로 정한다
- (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한다.

문 6 _____님께서는 업무상 다른 직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7 _____님께서는 업무상 다른 근로자들의 일을 관리, 감독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명이나 관리, 감독하십니까?

- (1)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 문 8로 가십시오.
- (2) 관리·감독한다 : ① _____명
② 잘 모르겠다

↓
문 7-1 _____님께서는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봉급인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7-2 _____님께서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업무상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8 _____님께서서는 자신의 점포나 개인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9 _____님께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 10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도구, 장비, 물품, 재료 등)들은 일자리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_____님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용품의 예 : 건설 장비, 포크레인, 트럭, 컴퓨터, 문방구류, 시멘트, 휘발유 등)

- (1) 일자리에서 모두 지급한다
- (2) 일자리에서도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한다
- (3)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문 11 지난주에 _____님께서 실제로 일한 모든 근무시간을 아래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문 12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직장)와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직무만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문12-1 그렇다면, ___님께서서는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직장)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13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하고 있는 일은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이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준이 매우 높다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①	②	③	④	⑤
나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①	②	③	④	⑤

문14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시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같은 직종의 다른 일자리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

- (1) 현 직장에서의와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 (2)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 (3) 거의 쓸모가 없다
- (4)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문15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 (1)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 (2)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
 - (3)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 (4) 현재의 일에 추가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싶다.
 - (5)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
- } → 8페이지, 문 23.으로 가십시오.

문15-1 ___님은 현재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 (1) 구하고 있다 → 문 16.으로 가십시오.
- (2) 구하고 있지 않다

문15-2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기 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 (2)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 (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4)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5) 구직 결과를 기다림
- (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7) 가사일 때문에
- (8) 건강상 이유로
- (9) 기타 _____

→ 8 페이지, 문 23.으로 가십시오.

구직 활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16 새로운 일(직장)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2) 친구, 친지의 소개
- (3)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4)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하여
- (8)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9) 기타 _____

(문16-1) 지난 조사 이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16-2) _____님께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할 경우는 ‘(1) 생활비를 벌려고’에 해당됩니다)

- (1) 생활비를 벌려고
- (2)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3)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 (4) 자신의 발전을 위해

- (5)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6)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7) 기타 _____

※ 다음의 문 17.과 문 18.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기>	(예1)	(예2)	(예3)	(예4)
문 17. 희망하는 일자리 혹은 사업내용	자동차정비업	식당	식당	아파트건설업
문 13. 희망하는 일의 종류	자동차정비공	음식 만들기	홀 서빙하기	미장공

문17 _____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위의 <보기>를 참고하여 자세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희망하는 일자리의 사업내용(업종)

--	--	--	--	--

문18 그곳에서 맡고 싶으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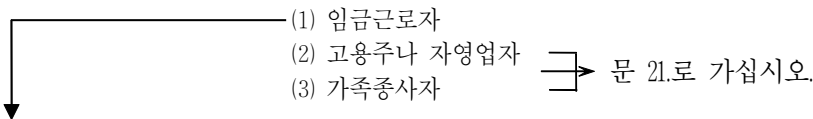
■ 희망하는 일의 종류

--	--	--	--	--

문19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
- 고용주나 자영업자 : 내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 평균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문20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전일제 근로 → 문 21.로 가십시오.
- (2) 시간제 근로

문20-1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를 돌보려고
- (2) 가사일 때문에
- (3) 학업을 위하여
-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6)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7) 기타 _____

문21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문22 다음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임금근로를 희망하시는 분은 (8)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9)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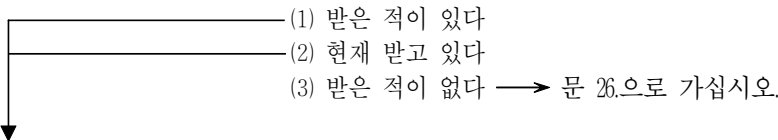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	①	②	③	④	⑤
(4) 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회보험 급여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23 _____님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24 _____님께서는 지난 조사 이후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계십니까? 단, 직업훈련 수당은 제외됩니다.



문25 받은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급여를 받은 기간, 받은 방식과 1회 수급액, 총 수급액을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25-1)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보기 :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기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사망일시금 (5) 반환일시금	(6) 사학연금 (7) 공무원연금 (8) 군인연금 (9) 반환일시금	(10) 휴업급여 (11) 장애연금 (12) 유족급여	(13) 보훈연금 (14) 실업급여	(15) 기타

(문25-2)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수급 받은 기간을 쓰십시오.

(만일 현재에도 계속 받고 있다면 끝난 시기에 “(2) 계속 수급중” 이라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끝이 났다면 오늘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수급 방식이 1년에 1회인 경우라도 앞으로 계속 수급 받으실 예정이면 “(2) 계속 수급중” 에 해당됩니다)

(문25-3)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수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한가지 사회 보험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다면, 수급받고 있는 사회 보험을 중복하여 2번 적어주시고, 각각의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수급방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보기 : 수급방식 >

- (1) 일시불 : 한꺼번에 수급받는 방식
- (2) 1년 1회 : 1년에 1회 수급하는 방식
- (3) 분기 1회 : 3개월에 1회 수급받는 방식
- (4) 월 1회 : 매일 수급받는 방식
- (5) 2주 1회 : 보름마다 1회, 1개월에 2회 수급받는 방식

(문25-4) 사회보험을 지급받을 때 1회에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 25-1. 사회보험의 종류	문 25-2. 받은 기간		문 25-3. 수급 방식	문 25-4. 1회 수금액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1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2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3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4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다음은 혼인상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26 지난 조사 이후 ____님의 혼인상태에 변화(결혼, 별거, 이혼, 사별 등)가 있었습니까?

- (1) 변화가 없었다 → 문 27로 가십시오
- (2) 변화가 있었다

(문26-1)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의 <보기>를 참조하여 변화가 일어난 순서대로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지난 조사시기가 1999년 7월 4일이고,
1999년 8월에 이혼한 후 2000년 5월에 재혼한 경우

변화 내용		변화 시기
1.	1.처음 결혼함()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1999년 8월
2.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2000년 5월
3.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응답지>

변화 내용		변화 시기
1.	1.처음 결혼함()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2.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3.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4.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5.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2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1)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2)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친인척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친분 관계	①	②	③	④	⑤

(문27-1) 그렇다면, _____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28 _____ 님 닥의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문29 _____ 님 닥은 가장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문30 경제적 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_____ 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문 30-1.	IMF 원조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귀택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30-2.	앞으로 1~2년 후에 귀택의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30-3.	IMF 원조가 시작된 2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30-4.	앞으로 1~2년 후에 우리 나라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31 8촌 이내의 친인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평소에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직업	친척의 유무	아주 가깝게 지낸다	가깝게 지내는 정도다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대학교수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의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중앙일간지/방송의 기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장성급 이상의 군인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회의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판사/검사/변호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문32 오늘 날짜는 몇 월 몇 일입니까?

2000년 _____ 월 _____ 일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직장 전화번호	
응답 시간	시간 분 동안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면접 <input type="checkbox"/> 유치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전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전화
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 <input type="checkbox"/> 본인+대리	대리 이유	
면접원 성명	(인)	Supervisor 검증	(인)



이름 _____

☞ 이제부터 _____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문 1 _____님께서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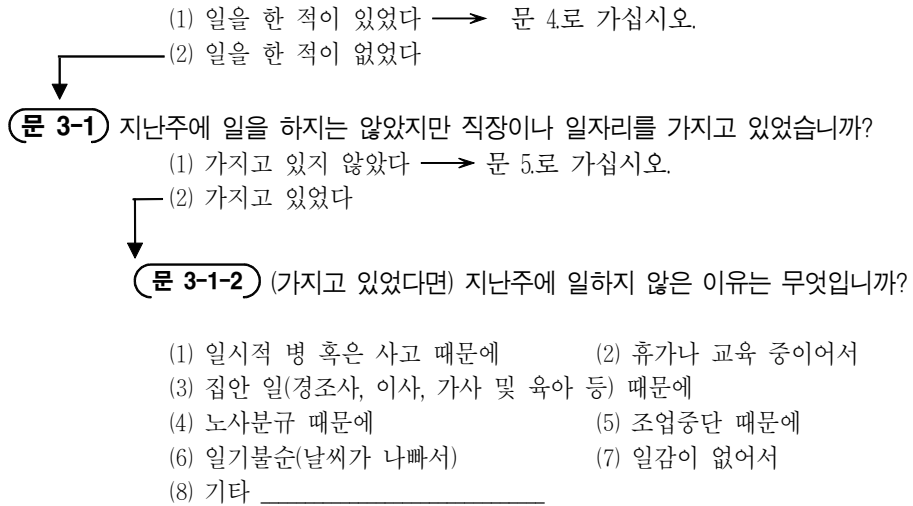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
 -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2) 주로 가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 (3)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 (6)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 (7)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8)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9) 기타 _____

문 2 _____님께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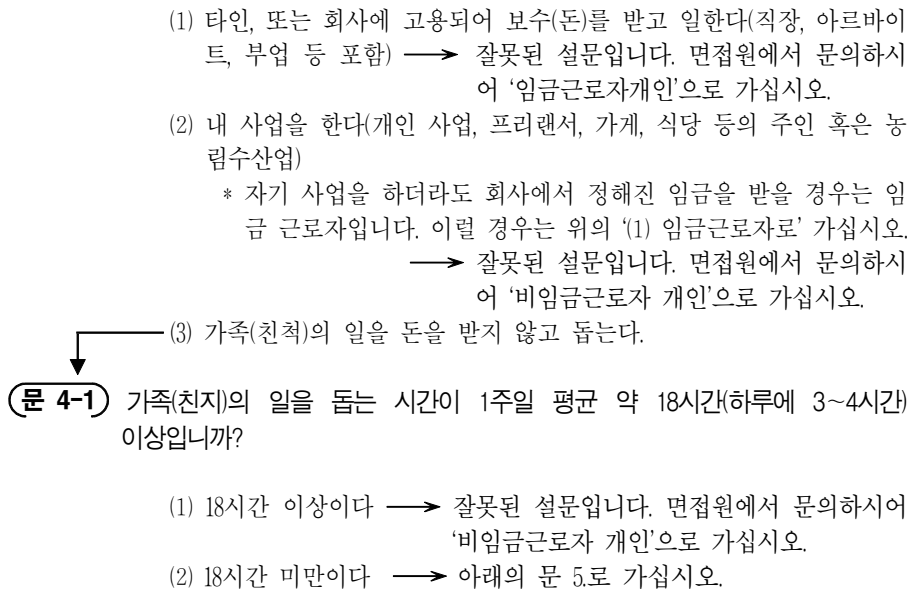
- (1) 일하였음 → 문 4로 가십시오.
- (2) 일시 휴직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3) 구직활동
- (4) 가사 혹은 육아
- (5) 학업
- (6) 퇴직하여서
- (7) 연로하여서
- (8) 심신장애
- (9) 자선사업·봉사활동 등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였음
- (10) 당분간 쉬고 있음 : 특별히 한 일은 없었으며, 직업을 구하지도 않았음
- (11) 기타 _____

문 3 그렇다면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 4 그렇다면, _____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재 미취업 상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5 현재 소득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구해보았다 → 문 7.로 가십시오.
- (2) 구해보지 않았다

문 6 지난 1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구해보았다
- (2) 구해보지 않았다 → 문 8.로 가십시오.

문 7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1) 일할 수 있었다 → 문 11.로 가십시오.
 - (2) 일할 수 없었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

문 8 그렇다면,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하시겠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문 10.으로 가십시오.

문 9 취업을 원하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
 - (2) 일자리(직장)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함
 - (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4)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5) 구직결과를 기다림
 - (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7) 가사일 때문에
 - (8) 건강상 이유로
 - (9) 기타 _____
- 7 페이지, 문 18.로 가십시오.

문10 일거리(직장)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업 때문에
 - (2)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 (3) 가사일 때문에
 - (4) 퇴직하여서
 - (5) 나이가 많아서
 - (6) 건강문제로
 - (7) 당분간 쉬고 싶어서
 - (8) 기타 _____
- 7 페이지, 문 18.로 가십시오.

※ 그렇다면, _____님께서 취업하고 싶으신 일거리(직장)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11 새로운 일(직장)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일한 경험이 없는 분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2) 친구, 친지의 소개
- (3)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4)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하여
- (8)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9) 기타 _____

(문11-1) 지난 조사 이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는 이전 직장을 마치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문11-2) _____님께서 직장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할 경우는 ‘(1) 생활비를 벌려고’에 해당됩니다)

- (1) 생활비를 벌려고
- (2)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3)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 (4) 자신의 발전을 위해
- (5)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6)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7) 기타 _____

※ 다음의 문 12.와 문 13.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기>	(예1)	(예2)	(예3)	(예4)
문 12. 희망하는 일자리 혹은 사업내용	자동차정비업	식당	식당	아파트건설업
문 13. 희망하는 일의 종류	자동차정비공	음식 만들기	홀 서빙하기	미장공

문12 _____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위의 보기를 참조하여 자세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희망하는 일자리의 사업내용(업종)

--	--	--	--	--

문13 그곳에서 맡고 싶으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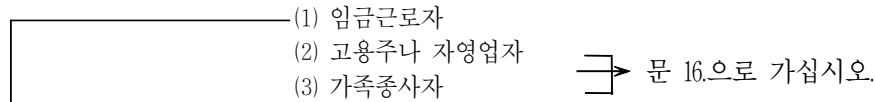
- 희망하는 일의 종류

--	--	--	--	--

문14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
- **고용주나 자영업자** : 내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 평균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문15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1) 전일제 근로 → 문 16.으로 가십시오.

(2) 시간제 근로

문15-1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아이를 돌보려고
- (2) 가사일 때문에
- (3) 학업을 위하여
-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6)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7) 기타 _____

문16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월평균 _____ 만원

문17 다음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임금근로를 희망하시는 분은 (8)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9)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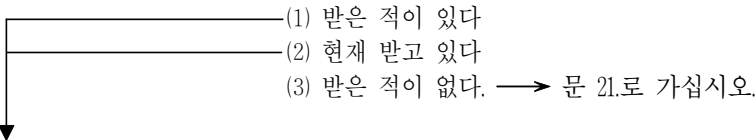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력, 기술, 기능이 모자란다	①	②	③	④	⑤
(4) 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사회보험 급여수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18 _____님께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9 _____님께서는 지난 조사 이후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계십니까? 단, 직업훈련 수당은 제외됩니다.



문20 받은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급여를 받은 기간, 받은 방식과 1회 수급액, 총 수급액을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20-1)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보기 : 사회보험의 종류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기타
(1) 노령연금	(6) 사학연금	(10) 휴업급여	(13) 보훈연금	(15) 기타
(2) 장해연금	(7) 공무원연금	(11) 장해연금	(14) 실업급여	
(3) 유족연금	(8) 군인연금	(12) 유족급여		
(4) 사망일시금	(9) 반환일시금			
(5) 반환일시금				

(문20-2)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수급 받은 기간을 쓰십시오.

(만일 현재에도 계속 받고 있다면 끝난 시기에 “(2) 계속 수급중” 이라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끝이 났다면 오늘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수급 방식이 1년에 1회인 경우라도 앞으로 계속 수급 받으실 예정이면 “(2) 계속 수급중” 에 해당됩니다)

(문20-3)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수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한가지 사회 보험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다면, 수급받고 있는 사회 보험을 중복하여 2번 적어주시고, 각각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방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보기 : 수급방식 >

- (1) 일시불 : 한꺼번에 수급받는 방식
- (2) 1년 1회 : 1년에 1회 수급하는 방식
- (3) 분기 1회 : 3개월에 1회 수급받는 방식
- (4) 월 1회 : 매월 수급받는 방식
- (5) 2주 1회 : 보름마다 1회, 1개월에 2회 수급받는 방식

문20-4 사회보험을 지급받을 때 1회에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 20-1. 사회보험의 종류	문 20-2. 받은 기간		문 20-3. 수급 방식	문 20-4. 1회 수급액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1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2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3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4	____년____월____일	(1) ____년____월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다음은 혼인상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21 지난 조사 이후 ____님의 혼인상태에 변화(결혼, 별거, 이혼, 사별 등)가 있었습니까?

- (1) 변화가 없었다 → 문 22로 가십시오
- (2) 변화가 있었다

문21-1 언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의 <보기>를 참조하여 변화가 일어난 순서대로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지난 조사시기가 1999년 7월 4일이고,
1999년 8월에 이혼한 후 2000년 5월에 재혼한 경우

변 화 내 용					변 화 시 기	
1.	1.처음 결혼함()	2.재혼()	3.별거()	4.이혼(O)	5.사별()	1999 년 8 월
2.		2.재혼(O)	3.별거()	4.이혼()	5.사별()	2000 년 5 월
3.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응답지>

변화 내용					변화 시기	
1.	1.처음 결혼함()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2.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3.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4.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5.		2.재혼()	3.별거()	4.이혼()	5.사별()	년 월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22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친분 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1)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2)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친인척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친분 관계	①	②	③	④	⑤

(문22-1) 그렇다면, _____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23 _____님 덕의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문24 _____ 님 닥은 가장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문25 경제적 여건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_____ 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문 25-1.	IMF 원조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난 <u>지금</u> , <u>실질적으로</u> 귀택의 <u>경제적인</u> 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25-2.	<u>앞으로 1~2년</u> 후에 귀택의 <u>경제</u>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25-3.	IMF 원조가 시작된 2년 전과 비교하여 <u>현재의</u> <u>우리</u> <u>나라</u> <u>경제</u> 여건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25-4.	<u>앞으로 1~2년</u> 후에 <u>우리</u> <u>나라</u> <u>경제</u>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26 8촌 이내의 친인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평소에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직	업	친척의 유무	이주 가깝게 지낸다	가깝게 지내는 정도다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대학교수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의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중앙일간지/방송의 기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장성급 이상의 군인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회의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판사/검사/변호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문27 오늘 날짜는 몇 월 몇 일입니까?

2000년 _____ 월 _____ 일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직장 전화번호	
응답 시간	시간 분 동안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면접 <input type="checkbox"/> 유치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전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전화
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 <input type="checkbox"/> 본인+대리	대리 이유	
면접원 성명	(인)	Supervisor 검증	(인)



이름	
----	--

☞ **만 1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분들에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70년 5월 1일 이후부터 1985년 4월 30일까지
출생한 분들만 답하여 주십시오)

문 1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_____님께서 현재 재학중인 학교, 학년,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졸업을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신 경우) 졸업하거나 그만두신 학교, 학년,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 보기>를 이용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보기>

• 고등학교 학교 유형		
(1) 인문고	(5) 상업고	(9) 과학고
(2) 농업고	(6) 수산고	(10) 외국어고
(3) 공업고	(7) 실업고	(11) 예체능고
(4) 2+1 공업고	(8) 종합고	(12) 기타
• 고등학교 전공 계열		
(1) 인문계열 일반과정	(5) 상업계열	(9) 가사계열
(2) 인문계열 직업과정	(6) 수산계열	(10) 예체능계열
(3) 농업계열	(7) 과학계열	(11) 기타
(4) 공업계열	(8) 외국어계열	
• 전문대학/대학의 유형		
(1) 일반대학	(4) 교육대학	(7) 기타
(2) 전문대학	(5) 기능대학	
(3) 산업대학	(6) 방송통신대학	
• 전문대학/대학이상의 전공 계열		
(1) 인문계열	(5) 의약계열	(9) 체육계열
(2) 사회계열	(6) 사범계열	(10) 기타
(3) 자연계열	(7) 음악계열	
(4) 공학계열	(8) 미술계열	

<응답 표>

재학한 학교	학년(학기)	유형	계열/전공	학교이름	소재지	졸업/그만둔 시기
고등학교	()학년				()도()시	____년 ____월
전문대학	()학년				()도()시	____년 ____월
대학교(4년제)	()학년				()도()시	____년 ____월
대학원(석사과정)	()학기				()도()시	____년 ____월
대학원(박사과정)	()학기				()도()시	____년 ____월

문 2 _____님께서서는 학교에 재학 중 휴학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1) 없었다 → 문 3.으로 가십시오.

(2) 있었다

문 2-1 (있었다면) 휴학하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이상 휴학을 한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부 터	까 지
첫 번째 휴학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두 번째 휴학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세 번째 휴학	_____년 _____월	_____년 _____월

문 3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중, 고등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이십니까?

(1) 재학중이다 → 다음 설문지로 가십시오.

(2) 휴학중이다

(3) 중간에 그만 두었다

(4) 졸업했다

문 4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그만 둘 당시 _____님의 건강상태는 어떠했습니까?

(1) 아주 건강한 편이었다

(2) 건강한 편이었다

(3) 건강이 약간 안 좋은 편이었다

(4) 건강이 아주 안 좋은 편이었다

문 5 _____님은 학교 재학중 혹은 졸업하면서 취득하신 기사/기술/기능 자격증이 있습니까?

(1) 없다 → 문 6.으로 가십시오.

(2) 있다

문 5-1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의 명칭(예: 토목기사 2급; 중장비기사 2급 등)을 모두 기록하여 주십시오.

자격증 _____

문 6 _____님은 학교 재학중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훈련이나 교육, 실습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문 7로 가십시오.

(2) 있다

문 6-1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동안이나 받았습니까?

훈련의 종류		
(1) 현장실습	(2) 학교내 실험/실습	(3) 취업지도/진로교육
(4) 위탁교육	(5) 인턴	(6) 기타:

훈련의 종류	기간		
	()년	()개월	()학기 동안
	()년	()개월	()학기 동안
	()년	()개월	()학기 동안

문 7 _____님은 학교 재학중 돈을 받고 취업하거나 일(아르바이트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없었다 → 문 8로 가십시오.

(2) 있었다

문 7-1 (있었다면)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하였습니까? (여러가지 일을 하였다면 가장 오래한 일을 적어 주십시오)

■ 취업내용 : (구체적으로) (예: 컴퓨터프로그래머, 백화점 안내원(보조원), 편의점아르바이트, 연구원조교, 건설공사현장, 학생과외 등)

■ 일한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 다음은 _____님의 졸업/중퇴/휴학이후의 구직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 8 최종적으로 학교를 졸업(중퇴)할 즈음 혹은 그 이후에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문 9.로 가십시오.

(2) 있다

문 8-1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두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2) 친구, 친지의 소개
- (3)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4)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하여
- (8)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9) 기타 _____

문 8-2 졸업/중퇴/휴학이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본 기간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습니까?

_____개월 _____주 동안

문 8-3 그렇다면 구직기간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셨습니까? 일주일에 보통 며칠 정도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루에는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일주일에 (____)일 정도

하루에 (____)시간 정도

문 8-4 졸업 이후 구직활동 결과 일자리 혹은 취업제의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문 9.로 가십시오.

(2) 있다 : (____)회

문 8-4-1 (있을 경우) 일자리(취업) 제의를 거절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없었다 → 문 9.로 가십시오.

(2) 있었다

문 8-4-1-1 (있었을 경우) 일자리 제의를 거절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13 _____님께서는 그 첫 일자리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 (1) 공개채용/채용시험을 통하여
- (2) 학교(학원)/선생님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3) 회사측의 스카우트(특별 채용)에 의하여
- (4) 가족/친지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5) 그 직장(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을 통하여
- (6) 본인이 직접 그 직장(사업체)에 찾아가서 문의/면담을 통하여
- (7) 기타 _____

문14 그러면 그 일자리에 지금도 취업하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 다음 설문지로 가십시오.
- (2) 지금은 그만 두었다 → 문 15로 가십시오.

※ 문 15에서 문 17까지는 아래의 <응답 예>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문 15.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아파트 건축	학교도서관	정보서비스
문 16. 주로 하는 일의 종류	생산제품 검사	매장	서류정리	프로그래밍
문 17. 직책 또는 직위	생산부 종업원	보조원	아르바이트생	평사원

문15 그 일자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업종) : _____

문16 그 일자리에서 _____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문17 그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문18 그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아래의 용어 풀이를 참조하십시오)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종업원을 둔 고용주
- (5)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6) 가족 종사자

문19 그 첫 일자리에서 님의 근무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 또는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시간제
- (2) 전일제

문20 그 첫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 문22로 가십시오.
- (7) 기타 _____

문21 당시 첫 일자리에서 전체 종업원은 몇 명 정도나 되었습니까?

- _____명 → 문 22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문2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1~4인
- (2) 5~9인
- (3) 10~29인
- (4) 30~49인
- (5) 50~69인
- (6) 70~99인
- (7) 100~299인
- (8) 300~499인
- (9) 500~999인
- (10) 1000인 이상
- (11) 잘 모르겠다

문22 당시 그 첫 일자리를 통해 _____님께 다음의 사회보험(혹은 퇴직금) 혜택이 주어졌습니까?

혜택의 종류	혜택을 받음	혜택을 받지 못함	잘 모르겠다
의료보험	(1) 혜택을 받음	(2) 혜택을 받지 못함	(3) 잘 모르겠다
국민연금	(1) 혜택을 받음	(2) 혜택을 받지 못함	(3) 잘 모르겠다
고용보험	(1) 혜택을 받음	(2) 혜택을 받지 못함	(3) 잘 모르겠다
산재보험	(1) 혜택을 받음	(2) 혜택을 받지 못함	(3) 잘 모르겠다
퇴직금	(1) 혜택을 받음	(2) 혜택을 받지 못함	(3) 잘 모르겠다

문23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와 그만 둘 당시 _____님의 월평균 소득(혹은 임금)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취업할 당시 : 월평균 _____만원
- 그만둘 당시 : 월평균 _____만원

문24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와 그만 둘 당시 _____님의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 취업할 당시 : 주당 평균 _____시간
- 그만둘 당시 : 주당 평균 _____시간

문25 첫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_____님께서 주로 하시던 일은 무엇이였습니까?

- (1) 처음 시작할 당시와 똑같았다 → 문 26으로 가십시오.
- (2) 처음 시작할 당시와 달랐다

문25-1 그만둘 당시에 주로 하시던 일은 무엇이였습니까?

■ 그만둘 당시 주로 하시던 일 : _____

문26 첫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_____님의 직책 혹은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처음 시작할 당시와 똑같았다 → 문 27로 가십시오.
- (2) 처음 시작할 당시와 달랐다

문26-1 그만둘 당시의 직책 혹은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그만둘 당시 직책 혹은 직위 : _____

문26-2 (다를 경우) 처음 직책/직위에서 승진하신 것입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문27 그 첫 일자리는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 (1)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직장에서 요구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 (2)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었다

문27-1 그렇다면 그 일자리를 그만 두신 구체적이 사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1)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 (2) 정리해고로 인해
- (3) 권고사직
- (4) 명예퇴직
- (5) 정년퇴직
- (6) 계약기간 끝나서
- (7)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8)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 (9)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10)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11)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 (12)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 (13)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로
- (14)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15)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 (16) 회사가 이사하여서(전근·발령을 받아서)
- (17)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 (18) 기타

(문27-2) 그렇다면 언제쯤 그 일자리를 그만 두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문28 첫 일자리에 _____님께서 주로 하셨던 일의 내용과 수준은 귀하의 교육수준, 기술/기능, 전공과 비교하여 어떠했습니까?

_____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1)수준이 낮았다	(2)수준이 맞았다	(3)수준이 높았다
기술/기능과 비교하여	(1)수준이 낮았다	(2)수준이 맞았다	(3)수준이 높았다
전공과 비교하여	(1)전혀 맞지 않았다	(2)그런대로 맞았다	(3)아주 잘 맞았다

문29 그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_____님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보셨습니까?

- (1) 찾아보았다
- (2) 찾아보지 않았다

문30 그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이후 _____님께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셨습니까?

- (1) 그렇다 → 문 31로 가십시오.
- (2) 그렇지 않다

(문30-1) (그렇지 않다면) _____님께서 향후 취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다음 설문지로 가십시오.
- (2) 그렇지 않다 → 다음 설문지로 가십시오.

문31 (그렇다면) 그 일자리에 지금도 취업하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문으로 가십시오.

한국노동패널조사

(신규조사자용 설문지 및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올바른 노동관련 정부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취업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취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모아진 설문지는 전국적으로 수집된 다른 설문지와 함께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집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전화 02-780-2355, Fax 02-784-768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0. 4

한국노동연구원

다음은 _____님의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_____님께서 현재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란?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보수)을 받고 일하거나 (직장, 아르바이트 등)
 (2) 내 사업을 하거나 (개인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십장(오야지), 혹은 농림수산업)
 (3)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지고 있다
 (2) 가지고 있지 않다 → 32페이지. '마.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문 2 현재 일자리를 모두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 모두 _____개

문 3 _____님의 일자리 중 가장 주된 일거리(직장)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 포함). → 다음 페이지. '가. 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2)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자기 사업을 하지만, 임금을 받을 경우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는 위의 (1)로 가십시오)
 → 15페이지. '나. 비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3)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15페이지. '나. 비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4)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32페이지. '마.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가. 임금 근로자이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가1 이 일자리(직장)는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 시작한 날짜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가2 현재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없었다 → 가 5로 가십시오.
(2) 있었다

가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가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한 방법은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가 5.에서 가 8.까지는 아래의 <응답 예>에 응답된 것처럼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가 5. 일하는 곳	성공기계	건설현장	풍년상사	동사무소
가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아파트 건축	농산물 도소매	공공근로
가 7.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생산제품 검사	미장	채소류 판매	장목제거
가 8. 직책 또는 직위	생산부 종업원	없음	판매사원	없음

가5 현재 일하시는 일자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일자리 이름 : _____

가6 이 사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을 하는 곳입니까?

- 주된 사업 내용(업종) : _____

가7 현재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가7-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가 8.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가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가7-3) 그렇다면, 언제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가8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 직책 또는 직위 : _____

(가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직책 또는 직위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가 9.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가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책 또는 직위 : _____

가 8-3 그렇다면, 언제 현재의 직책 또는 직위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가 9 _____님께서서는 이 일자리에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가 10.으로 가십시오.

(2) 있다

가 9-1 전근하신 적이 있다면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몇 번 전근하셨습니까?

■ _____번

※ 가 9-2.부터 가 9-3.까지는 가장 최근에 전근하신 것부터 그 전의 전근까지만 아래의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 9-2 전근은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 _____년 _____월

가 9-3 어디에서 어디로 전근하셨습니까? 지역명은 시, 도 단위까지 써주십시오.

■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응답표>

전근 순서	가 9-2. 전근 시점	가 9-3. 전근 장소
가장 최근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그 이전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가10 현재 이 일자리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가 10-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가 11.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가 10-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가 10-1-2) 그렇다면, 언제 현재의 취업형태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가11 현재 이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시간제 근로
- (2) 전일제 근로

(가 11-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가 12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가 11-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전일제
- (2) 시간제

(가 11-1-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가12 이 일자리(직장)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 가14로 가십시오.
- (7) 기타 _____

가13 현재 이 일자리(직장)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을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명 → 가 14.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가 13-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 | |
|------------|--------------|---------------|
| (1) 1~4인 | (5) 50~69인 | (9) 500~999인 |
| (2) 5~9인 | (6) 70~99인 | (10) 1000인 이상 |
| (3) 10~29인 | (7) 100~299인 | (11) 잘 모르겠다 |
| (4) 30~49인 | (8) 300~499인 | |

가14 지금 일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재택 근로)
- (3)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4) 건설현장
- (5) 기타 _____

다음은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15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정해져 있다
- (2) 정해져 있지 않다 → 가 15-3.으로 가십시오.
- (3) 모른다 → 가 16.으로 가십시오.

(가 15-1)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가 15-2)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 가 16.으로 가십시오

가15-3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가16 현재의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 (3) 모른다

가17 _____님께서서는 이 일자리(직장)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7-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3. 직장의료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4.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5. 산재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18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가19 _____님의 이 자리는 현재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예 → 가 20.으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가 19-1)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 가 23.으로 가십시오.

가20 현재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_____시간
- 일주일 _____일 일한다

가21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일)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1) 없다 → 가 23.으로 가십시오.

(2) 있다

(가 21-1)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초과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초과근로를 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에 평균 _____일 일한다

가22 _____님의 경우 잔업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1) 지급되지 않는다 → 가 23.으로 가십시오.

(2) 지급된다

(가 22-1)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1)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3) 일정한 기준이 없다

(가 22-2) 그러면 _____님께서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_____만원

다음은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23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된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가24 _____님의 임금은 어떤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또 현재의 임금 수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도급계 :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여 주시고, 각각의 경우에는 현재의 임금 수준을 적어주십시오.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액수
(1) 연 봉 계 약 제		연 _____만원
(2) 월 급		월평균 _____만원
(3) 주급제 /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원
(4) 일 당 제		일당 _____원
(5) 시 간 급 제		시간당 _____원
(6) 도 급 제		_____원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만원
(8) 기타		_____원

가25 이 일자리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_님은 해당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1) 그렇다’에 해당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른다

} 문 26.으로 가십시오.

(가 25-1) 그렇다면 _____님께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를 하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1) 개인 성과급제
- (2) 집단 성과급제(팀, 부서)
- (3) 회사 성과급제
- (4) 해당되지 않는다

가26 현재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 공제 후)
-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

(가26-1) 이 일자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임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공제 후)
-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27 _____님의 이 일자리(직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1) 있다 → 가 28로 가십시오.
- (2) 없다
- (3) 모른다

(가27-1) 만약 노조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모른다
- 가 29로 가십시오.

가28 _____님께서서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1) 가입하고 있다

(2) 가입하고 있지 않다

↓

(가 28-1)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른다

↓

(가 28-2)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입 자격이 없어서
(2)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3)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4) 사용자측의 만류로(회사측의 간섭으로)
(5) 기타 _____

다음은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 29 귀하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만 일하실 수 있습니까?

(1) 아니오 → 가 30.으로 가십시오.

(2) 예

↓

(가 29-1) 귀하는 맡은 일이 완성될 때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셔야 합니까?

(1) 예

(2) 아니오

(가 29-2) 귀하는 다른 근로자의 후임으로 고용되어 그 사람의 남은 임기 동안만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가 29-3) 귀하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고용되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가30 귀하의 일자리는 1년 내내 계속되는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1년 중의 특정 기간동안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까?

- (1) 1년 내내 계속되는 일자리
- (2) 계절적인 영향 등으로 인하여 1년 중에 특정 기간동안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가31 특별히 경기가 나빠지거나 귀하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없는 한,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현재의 고용주와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32 귀하는 현재 이 일자리(직장)에서 얼마 동안이나 일하십니까?

- (1) 3년 이상
- (2) 3년 미만

가33 귀하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1년 이상
- (2) 1년 미만

가34 현재 이 자리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35 _____님께서 현재 고용된 회사에서 다른 자리로 파견되어 일하고 계십니까?

〈용어풀이〉
• 파견근로 : 고용되어 있는 회사(업체)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서로 다른 경우

- (1) 예
- (2) 아니오
- (3) 모름

가36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십니까? (단, 회사에서 제시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시는 것은 ‘(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한다’에 해당됩니다)

- (1) 스스로 정한다
- (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한다

가37 귀하께서는 업무상 다른 직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38 귀하께서는 업무상 다른 근로자들의 일을 관리, 감독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명이나 관리·감독하십니까?

- (1)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 → 문 39로 가십시오.
- (2) 관리·감독 한다 : ① _____명
② 잘 모르겠다

(가 38-1) 귀하께서는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봉급인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 38-2) 귀하께서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업무상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39 귀하께서는 일하시는 곳의 직원 채용이나 해고 등의 결정에 참여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40 귀하는 업무상 회사의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가41 귀하께서는 현재의 고용주와 함께 일한 이후로 상위 직급이나 직위로 승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 가 42로 가십시오.

(2) 아니오

(가 41-1)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현재 그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시거나 업적이 좋다면 승진하실 수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가 41-2) 귀하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가42 귀하께서는 이 자리에서 아래의 항목들 중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는다	혜택을 받지 않는다	모른다
(1) 퇴직금(퇴직시 받는 돈)			
(2) 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3) 부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4) 유급 연가, 월차, 휴가			
(5) 무급 연가, 월차, 휴가			
(6) 유급 병가			
(7) 유급 출산 휴가			
(8) 전세금이나 학자금 용자			

가43 귀하께서는 이 주된 일자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2)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

(가 43-1) 그렇다면, 소득이 줄더라도 근로 시간을 줄이고 싶습니까?
(1) 예
(2)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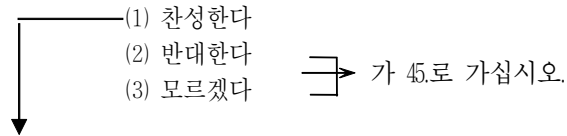
(가 43-2) 소득이 늘어난다면, 근로 시간을 늘이거나 더 오래 일하고 싶습니까?
(1) 예
(2) 아니오

다음 페이지, 가 44로 가십시오.

가44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어풀이》

- 법정근로시간 : 법에 규정된 기준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가 44-1) 줄이는 것에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을 1주일에 몇 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주일에 _____ 시간

가45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된 일거리 이외에 다른 일거리(직장)가 있으십니까?

- (1) 그렇지 않다 → 32 페이지. '마.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 (2) 그렇다

(가 45-1) 주된 일거리(직장)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일거리(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등 포함) → 20페이지. '다. 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2)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 * 자기 사업을 하지만, 임금을 받을 경우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 28페이지. '라. 비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3)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28페이지. '라. 비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4) 일주일에 18시간 미만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 32페이지. '마.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나. 비임금 근로자이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일자리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나1 이 일자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나2 이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없었다 → 나 5로 가십시오.

(2) 있었다



나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나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하신 방법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나 5에서 나 7까지는 아래의 (응답 예)에 응답된 것처럼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나 5. 사업체 이름	하나식품	없음	대신자동차	개인택시
나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장한 몇 식품 소매	벼농사	자동차 정비	운수업
나 7. 맡은 일의 종류	판매 몇 돈관리	벼농사	자동차 정비 몇 관리	운전

나5 이 일자리(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이름 : _____

나6 이 일자리(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주된 사업 내용 (업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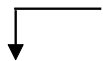
나7 현재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주로 하는 일 : _____

(나7-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나 8.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나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나7-3) 언제부터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

나8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오야지), 농림수산업, 행상, 노점상)
- **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1)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2) 가족종사자

(나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나 9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나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2) 가족종사자

(나8-3) 언제 현재의 종사상 지위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나9 이 일자리를 시작하신 이후 일자리(사업체)의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나 10.으로 가십시오.

(2) 있다

(나9-1)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번이나 옮기셨습니까?

■ _____번

(나9-2) 언제 현재의 일자리(사업체) 위치로 옮기셨습니까?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 이사 시기 : _____년 _____월

■ 이사 장소 :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나10 지금 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1) 회사, 가게

(2) 자기 집(채택근로)

(3) 건설현장

(4) 자신의 점포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5) 기타 _____

나11 이 일자리에선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종사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지는 제외됩니다. 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고용된 종업원의 수 : (1) _____명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
(나 1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4인 | (7) 100~299인 |
| (2) 5~9인 | (8) 300~499인 |
| (3) 10~29인 | (9) 500~999인 |
| (4) 30~49인 | (10) 1000인 이상 |
| (5) 50~69인 | (11) 잘 모르겠다 |
| (6) 70~99인 | |

나12 이 일자리에선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또는 친지가 _____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 _____명

나13 _____님은 이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나14 이 자리에서 _____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며칠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나15 현재 이 자리(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연간 매출액 _____만원 → 나 16.으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나 15-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000만원 미만 | (8) 5억~10억원 미만 |
| (2) 1,000만~3,000만원 미만 | (9) 10억~30억원 미만 |
| (3) 3,000만~5,000만원 미만 | (10) 30억~100억원 미만 |
| (4) 5,000만~8,000만원 미만 | (11) 100억~500억원 미만 |
| (5) 8,000만~1억원 미만 | (12) 500억~1,000억원 미만 |
| (6) 1억~3억원 미만 | (13) 1,000억원 이상 |
| (7) 3억~5억원 미만 | (14) 잘 모르겠다 |

나16 현재 이 일자리(사업)에서 얻는 ____님의 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 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영업자와 고용주만 대답해 주십시오)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나 16-1)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었다

나17 현재 이 자리에서 ____님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십니까? (단, 회사에서 제시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시는 것은 '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한다'에 해당됩니다)

- (1) 스스로 정한다
- (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서 일한다

나18 귀하께서는 업무상 다른 직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나19 귀하께서는 업무상 다른 근로자들의 일을 관리, 감독하십니까? 그렇다면, 몇 명이나 관리 감독하십니까?

- (1) 관리·감독하지 않는다 → 나 20.으로 가십시오.

(2) 관리·감독한다 : ① _____명
 ② 잘 모르겠다

(나 19-1) 귀하께서는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의 봉급인상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나 19-2) 귀하께서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업무상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나20 귀하께서는 자신의 점포, 개인 사무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나21 귀하께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나22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용품(도구, 장비, 물품, 재료 등)들은 일자리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용품의 예 : 건설 장비, 포크레인, 트럭, 컴퓨터, 문방구류, 시멘트, 휘발유 등)

- (1) 일자리에서 모두 지급한다
- (2) 일자리에서도 부담하고, 본인도 부담한다
- (3)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나23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된 일거리(직장) 이외에 다른 일(직장)이 있습니까?

- (1) 그렇지 않다 → 32페이지. '마.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 (2) 그렇다

(나 23-1) 주된 일거리(직장)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일거리(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다 5.에서 다 8.까지는 아래의 <응답 예>에 응답된 것처럼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다 5. 일하는 곳	성공기계	건설현장	풍년상사	동사무소
다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아파트 건축	농산물 도소매	공공근로
다 7. 하고 있는 일의 종류	생산제품 검사	매장	채소류 판매	장목제거
다 8. 직책 또는 직위	생산부 종업원	없음	판매사원	없음

- 다5** 현재 일하시는 일자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일자리 이름 : _____
- 다6** 이 사업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하는 곳의 사업 내용)을 하는 곳입니까?
 - 주된 사업 내용(업종) : _____
- 다7** 현재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다7-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다 8.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다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다 7-3) 그렇다면, 언제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다8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다 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직책 또는 직위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다 9.로 가십시오.

(2) 바뀌었다

(다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직책 또는 직위 : _____

(다 8-3) 그렇다면, 언제 현재의 직책 또는 직위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다9 _____님께서 이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다 10.으로 가십시오.

(2) 있다

(다 9-1) 전근하신 적이 있다면 지난 조사 이후 지금까지 모두 몇 번 전근하셨습니다습니까?

■ _____번

※ 다 9-2.부터 다 9-3.까지는 가장 최근에 전근하신 것부터 그 전의 전근까지만 아래의 <응답표>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 9-2) 전근은 언제 발령 받으셨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다 9-3) 어디에서 어디로 전근하신 것입니까? 지역명은 시, 도 단위까지 써주십시오.

■ _____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응답표》

전근 순서	다 9-2. 전근 시점	다 9-3. 전근 장소
가장 최근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 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 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그 이전의 전근	_____년 _____월	_____ 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 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다10 현재 이 일자리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용어풀이》

• 일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임시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입니다)

• 상용직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다 10-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여부가 바뀌었습니까?

(1) 바뀌지 않았다. → 다 11.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다10-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상용직
- (2) 임시직
- (3) 일용직

(다10-1-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다11 현재 이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 ·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시간제 근로
- (2) 전일제 근로

(다 11-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근로시간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다 12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
(다 11-1-1) 바뀌었다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전일제
- (2) 시간제

(다 11-1-2) 그렇다면, 언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다12 이 일자리(직장)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1)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2) 외국인회사
-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 (4) (재단, 사단)법인단체
- (5)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6) 나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있지 않다 → **다. 14로 가십시오.**
- (7) 기타 _____

다13 현재 이 일자리(직장)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입니까?

(본사, 지사, 지점, 공장, 현장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그룹사의 경우는 해당 계열사만을 응답해 주십시오.)

- _____명 → 다 14.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다 13-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 | | | |
|------------|--------------|---------------|
| (1) 1~4인 | (5) 50~69인 | (9) 500~999인 |
| (2) 5~9인 | (6) 70~99인 | (10) 1000인 이상 |
| (3) 10~29인 | (7) 100~299인 | (11) 잘 모르겠다 |
| (4) 30~49인 | (8) 300~499인 | |

다14 지금 일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1) 회사, 가게
- (2) 자기 집(재택 근로)
- (3)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 (4) 건설현장
- (5) 기타 _____

다음은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15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근로계약기간) 혹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정해져 있다
- (2) 정해져 있지 않다 → 다 15-3.으로 가십시오.
- (3) 모른다 → 다 16.으로 가십시오.

(다 15-1)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근로계약기간 : _____년 _____개월 _____일

(다 15-2) 정해져 있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_____님께서 원하신다면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 다 16.으로 가십시오.

다15-3 정해져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 (3) 모른다

다16 현재의 일자리에서 근로계약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았다
- (2) 받지 않았다
- (3) 모른다

다17 _____님께서서는 이 일자리(직장)를 통해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7-1. 국민연금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3. 직장의료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4. 고용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17-5. 산재보험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다음은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18 _____님께서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직장(일자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다19 _____님의 이 자리는 현재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1) 예 → 다 20.으로 가십시오.
- (2) 아니오

(다 19-1)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몇 일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 다 23.으로 가십시오.

다20 현재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_____시간
- 일주일 _____일 일한다

다21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근로(일)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1) 없다 → 다 23.으로 가십시오.

(2) 있다

(다 21-1)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초과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며칠이나 초과근로를 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다22 _____님의 경우 잔업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1) 지급되지 않는다 → 다 23.으로 가십시오.

(2) 지급된다

(다 22-1)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 (1)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3) 일정한 기준이 없다

(다 22-1) 그러면 _____님께서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 월평균 초과근로수당 _____만원

다음은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23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된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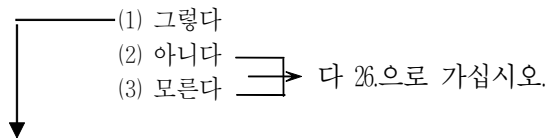
다24 _____님의 임금은 어떤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또 현재의 임금 수준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도급제 :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 건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 해당 여부란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하여 주시고, 각각의 경우에 현재의 임금 수준을 적어주십시오.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액수
(1) 연 봉 계약 제		연 _____만원
(2) 월 급		월평균 _____만원
(3) 주급제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원
(4) 일 당 제		일당 _____원
(5) 시 간 급 제		시간당 _____원
(6) 도 급 제		_____원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만원
(8) 기타		_____원

다25 _____님의 이 자리에서는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_님은 해당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과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1) 그렇다’에 해당합니다)



(다 25-1) 그렇다면 _____님께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 표시를 하십시오)

《용어풀이 및 해설》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1) 개인 성과급제 (2) 집단 성과급제(팀, 부서)
(3) 회사 성과급제 (4) 해당되지 않는다

다26 현재 이 일자리(직장)에서 _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 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

(다 26-1) 이 일자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임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1) 월 평균 _____만원(세금공제 후)
(2)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였다

다음은 노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 27 _____님의 이 일자리(직장)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1) 있다 → 다 28.으로 가십시오.
(2) 없다
(3) 모른다

(다 27-1) 만약 노조가 있다면 가입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1) 있다 → 32. 페이지.
(2) 없다 → '다.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3) 모른다

다23 _____님께서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1) 가입하고 있다

(2) 가입하고 있지 않다

↓

(다 28-1)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신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른다

↓

(다 28-2)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가입 자격이 없어서
(2) 노조활동이 불만족스러워서
(3) 가족, 친지, 동료 등 주위의 만류로
(4) 사용자측의 만류로(회사측의 간섭으로)
(5) 기타

→ 32페이지. '다.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라. 비임금 근로자이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만 답해 주십시오.

라1 이 일자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라2 이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1주일 이상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1) 없었다 → 라 5.로 가십시오.

(2) 있었다

↓

라3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 구직활동기간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라4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사용하신 방법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을 통해
- (2) 친구, 친지들을 통해
- (3) 공공 직업안내소를 통해
- (4) 사설 직업안내소를 통해
- (5) 신문, TV, 벽보 등의 광고를 통해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해서
- (8)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 (9) 취업하고 싶은 직장(일자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 (10) 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된 사람을 통해
- (11) 기타 _____

※ 라 5.에서 라 7.까지는 아래의 (응답 예)에 응답된 것처럼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응답 예》

	〈예 1〉	〈예 2〉	〈예 3〉	〈예 4〉
라 5. 사업체 이름	하나식품	없음	대신자동차	개인택시
라 6.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	김치 및 식료품 소매	벼농사	자동차 정비	운수업
라 7. 맡은 일의 종류	판매 및 돈관리	벼농사	자동차 정비 및 관리	운전

라5 이 일자리(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이름 : _____

라6 이 일자리(사업체)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주된 사업 내용(업종) : _____

라7 현재 이 일자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주로 하는 일 : _____

라 7-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라 8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라 7-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주로 하는 일 : _____

라 7-3 언제부터 현재 주로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까?

_____년 _____월

라 8 이 자리에서 _____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용어풀이》

-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오야지), 농림수산업)
- 가족종사자 :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씩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 (1) 고용 또는 자영업자
- (2) 가족종사자

라 8-1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종사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 (1) 바뀌지 않았다 → 라 9로 가십시오.
- (2) 바뀌었다

라 8-2 바뀌었다면, 처음 이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1)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 (2) 가족종사자

라 8-3 언제 현재의 종사상 지위로 바뀌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라9 이 일자리를 시작하신 이후 일자리(사업체)의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습니까?

(1) 없다 → 라 10.으로 가십시오.

(2) 있다



(라 9-1) 위치를 옮기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모두 몇 번이나 옮기셨습니까?

■ _____ 번

(라 9-2) 언제 현재의 일자리(사업체) 위치로 옮기셨습니까?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 이사 시기 : _____ 년 _____ 월

■ 이사 장소 : _____ 특별시/광역시/도에서
 _____ 특별시/광역시/도로 옮김

라10 지금 일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1) 회사, 가게

(2) 자기 집(채택근로)

(3) 건설현장

(4) 자신의 점포 없이 고객의 집이나 사업장(세일즈맨, 파출부 등)

(5) 기타 _____

라11 이 일자리에 고용된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임금·봉급을 받는 가족 또는 친지도 고용된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종사자,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지는 제외됩니다. 농번기나 바쁠 때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 고용된 종업원의 수 : (1) _____ 명 → 라 12.로 가십시오.
 (2) 없다

(3) 잘 모르겠다



(라 11-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 1~4인

(2) 5~9인

(3) 10~29인

(4) 30~49인

(5) 50~69인

(6) 70~99인

(7) 100~299인

(8) 300~499인

(9) 500~999인

(10) 1000인 이상

(11) 잘 모르겠다

라12 이 일자리에는 임금을 받지 않고 함께 일하는 가족 또는 친지가 _____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 _____명

라13 _____님은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해설》

-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규칙적**입니다.
-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입니다

- (1) 규칙적으로 일한다
- (2) 불규칙적으로 일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 (3) 불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라14 이 일자리에서 _____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 또 일주일에 보통 몇 일이나 일하십니까?

- 일주일 평균 _____시간
- 일주일 평균 _____일 일한다

라15 현재 이 일자리(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연간 매출액 _____만원 → 라 16.으로 가십시오.
- 잘 모르겠다

↓
(라 15-1)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의 보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 | | |
|-----------------------|----------------------|
| (1) 1,000만원 미만 | (8) 5억~10억원 미만 |
| (2) 1,000만~3,000만원 미만 | (9) 10억~30억원 미만 |
| (3) 3,000만~5,000만원 미만 | (10) 30억~100억원 미만 |
| (4) 5,000만~8,000만원 미만 | (11) 100억~500억원 미만 |
| (5) 8,000만~1억원 미만 | (12) 500억~1,000억원 미만 |
| (6) 1억~3억원 미만 | (13) 1,000억원 이상 |
| (7) 3억~5억원 미만 | (14) 잘 모르겠다 |

라16 현재 이 일자리(사업)에서 얻는 _____님의 소득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영업자와 고용주만 대답해 주십시오.)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라16-1)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1) 소득 : 월평균 _____만원
- (2) 적자(손해)를 보고 있었다

→ 다음 페이지. '마. 현재의 경제활동'으로 가십시오.

마. 현재의 경제활동

※ 이제부터 _____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마1 귀하께서는 평소 수입이 되는 일(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까?(‘평소란 조사일 이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합니다)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음
 -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 (2) 주로 가사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 (3) 주로 통학(학교, 학원)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 (6)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 (7) 통학(학교, 학원)만 하고 있음
 - (8) 아무 일도 하지 않음.
 - (9) 기타 _____

마2 _____님께서는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다습니까?

- (1) 일하였음 → 마 4로 가십시오.
- (2) 일시 휴직 : 일시 휴직이란, 일거리나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 (3) 구직활동
- (4) 가사 혹은 육아
- (5) 학업
- (6) 퇴직하여서

- (7) 연로하여서
- (8) 심신장애
- (9) 자선사업·봉사활동 등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였음.
- (10) 당분간 쉬고 있음 : 특별히 한 일은 없었으며, 직업을 구하지도 않았음.
- (11) 기타 _____

마3 그렇다면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가족의 소득활동을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1) 일을 한 적이 있었다 → 마 4로 가십시오.
- (2) 일을 한 적이 없었다

(마 3-1)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이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 (1) 가지고 있지 않았다 → 35 페이지, '바. 미취업자'로 가십시오.
- (2) 가지고 있었다

(마 3-1-1)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시적 병 혹은 사고 때문에
- (2) 휴가나 교육 중이어서
- (3) 집안 일(경조사, 이사, 가사 및 육아 등) 때문에
- (4) 노사분규 때문에
- (5) 조업중단 때문에
- (6) 일기불순(날씨가 나빠서)
- (7) 일감이 없어서
- (8) 기타 _____

마4 _____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 일자리에 대한 질문은 이 일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면접원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 응답한 일자리 중 하나를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 (1) 유형 가
- (2) 유형 나
- (3) 유형 다
- (4) 유형 라
- (5) 일자리가 없다.

마5 그렇다면 _____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한다(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 포함) → 마 6.으로 가십시오.
- (2) 내 사업을 한다(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
 - *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을 경우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는 위의 (1) 임금 근로자로 가십시오.
 - 마 6.으로 가십시오.

↓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마 5-1) 가족(친척)의 일을 돕는 시간이 1주일 평균 약 18시간(하루에 3-4시간) 이상입니까?

- (1) 18시간 이상이다 → 마 6.으로 가십시오.
- (2) 18시간 미만이다 → 35페이지, '바. 미취업자'로 가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대한 기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6 지난주에 _____님께서 실제로 일한 모든 근무시간을 아래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마7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직장)와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의 항목 중 (8), (9) 항목은 임금 근로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직무만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인사고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마 7-1) 그렇다면 ____님께서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직장)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마8 현재 주로 하는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하고 있는 일은	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이다	수준이 맞는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준이 매우 높다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①	②	③	④	⑤
나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①	②	③	④	⑤

마9 귀하께서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시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 기술은 동일 직종의 다른 일 자리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

- (1) 현 직장에서의와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 (2)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 (3) 거의 쓸모가 없다
- (4)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마10 현재 주로 하는 일(직장,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 (1)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한다
- (2)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
- (3)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
- (4) 현재의 일자리(직장)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직장)를 가지고 싶다
- (5) 다른 일자리(직장)로 바꾸고 싶다

(마 10-1) ____님은 현재 새로운 일자리(직장)를 구하고 있습니까?

- (1) 구하고 있다 → 36 페이지, 마 7.로 가십시오.
- (2) 구하고 있지 않다

(마 10-2) 다른 일자리로 취업하기 원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 (2) 일자리(직장)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함
- (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4)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5) 구직 결과를 기다림
- (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7) 가사일 때문에
- (8) 건강상 이유로
- (9) 기타 _____

→ 39페이지. 사 '모든 응답자'로 가십시오.

바. 현재 미취업 상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1 현재 소득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1) 구해보았다 → 바 3.으로 가십시오.
- (2) 구해보지 않았다

바2 지난 1개월 이내에 한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구해보았다
- (2) 구해보지 않았다 → 바 4.로 가십시오.

바3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1) 일할 수 있었다. → 바 7.로 가십시오.
- (2) 일할 수 없었다. → 바 6.으로 가십시오.

바4 그렇다면,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을 하시겠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바 6.으로 가십시오.

바5 취업을 원하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자리(직장)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 (2) 일자리(직장)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함

- (3)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 (4)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에
- (5) 구직결과를 기다림
- (6) 어린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 (7) 가사일 때문에
- (8) 건강상 이유로
- (9) 기타 _____

→ 39 페이지, '사. 모든 응답자'로 가십시오.

바6 일거리(직장)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학업 때문에
- (2) 아이들 키우는 일 때문에
- (3) 가사일 때문에
- (4) 퇴직하여서
- (5) 나이가 많아서
- (6) 건강문제로
- (7) 당분간 쉬고 싶어서
- (8) 기타 _____

→ 39 페이지, '사. 모든 응답자'로 가십시오.

※ 그렇다면, _____님께서 취업하고 싶으신 일거리(직장)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7 새로운 일(직장)을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일한 경험이 없는 분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학교, 학원, 스승의 추천이나 소개
- (2) 친구, 친지의 소개
- (3)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4) 사설직업안내소를 통해서
- (5) 신문, TV, 벽보 등의 구인광고
- (6)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 (7) 가족을 통하여
- (8) 인터넷, 천리안 등 전산망을 통하여
- (9) 기타 _____

(바 7-1) 지난 조사 이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이전 직장이 있었던 경우는 이전 직장을 마치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_____주 동안

(바 7-2) _____님께서 직장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할 경우는 ‘(1) 생활비를 벌려고’에 해당됩니다)

- (1) 생활비를 벌려고
- (2)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 (3) 본인의 학비 또는 용돈을 벌려고
- (4) 자신의 발전을 위해
- (5)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 (6)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7) 기타 _____

※ 다음의 바 8과 바 9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기>	(예1)	(예2)	(예3)	(예4)
바 8. 희망하는 일자리 혹은 사업내용	자동차정비업	식당	식당	아파트건설업
바 9. 희망하는 일의 종류	자동차정비공	음식 만들기	홍서빙하기	미장공

바 8 _____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위의 보기를 참조하여 자세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 희망하는 일자리의 사업내용(업종)

--	--	--

바 9 그곳에서 맡고 싶으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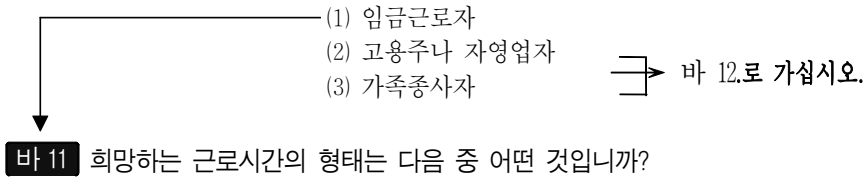
- 희망하는 일의 종류

--	--	--

바 10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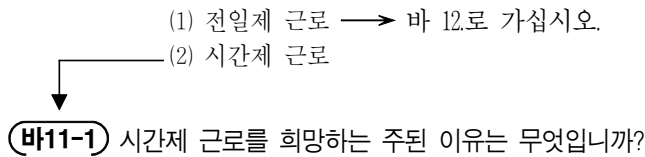
<용어풀이>

- **임금근로자** :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
- **자영업/고용주** : 내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족종사자** : 가족(친척)의 일을 일주일 평균 18시간 이상씩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



<용어풀이>

- **시간제 근로**
 -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근로** :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1) 아이를 돌보려고
- (2) 가사일 때문에
- (3) 학업을 위하여
- (4)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5)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6)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 (7) 기타 _____

바 12 그렇다면, 희망하는 일자리(직장)에서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 월평균 _____만원

바 13 다음은 일자리(직장, 사업, 일거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임금근로를 희망하시는 분은 (8)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9)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직상의 어려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창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력, 기술, 능력이 모자란다	①	②	③	④	⑤
(4) 경험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로환경이나 근로시간이 안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이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사. 모든 응답자

다음은 _____님께서 이전에 하시던 일(직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만 15세 이후 현재까지 __님의 일자리 또는 사업 경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2개월 이상 일(근무)하신 경우에만 일자리 또는 사업 경력에 포함됩니다. 현재 일자리가 있으신 경우 현직장을 제외하고 답해 주십시오.

사1 _____님께서 (취업자의 경우 현직장을 제외하고) 과거 한 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자리 또는 직장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1) 없다 → '아. 정규 교육, 사회 보험 및 기타'로 가십시오.
(2) 있다

(사 1-1) 그렇다면 만 15세 이후 몇 번이나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취업자의 경우는 현재의 일자리를 제외하고 답해 주십시오.

■ _____번

사2 만 15세 이후 일자리 또는 사업 경력에 대하여 (1) 일을 시작한 시기, (2) 일을 그만 둔 시기, (3) 어디에서 일하였는지, (4) 무슨 일을 하였는지, (5) 종사상의 지위를 먼저 일하신 순서대로 아래의 보기와 같이 기록하여 주십시오.

<보기>

순서	시작한 시기 19__년 __월	그만 둔 시기 19__년 __월	어디에서 일하였는지 (일한 곳의 사업내용)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하였던 일의 종류)	종사상의 지위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
1	1989년 2월	1991년 7월	벼농사	벼농사	4
2	1991년 9월	1995년 8월	인용강한류 소매	판대 및 돈관리	3
3	1995년 8월	1996년 2월	아파트 건축	벽돌쌓기	2
4					

《용어 풀이》

- 정규직 임금 근로자: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
-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단기간 계약직이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하는 경우(직장,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포함).
- 고용주나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 내 사업을 하거나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 경우(평소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순서	시작한 시기 19__년 __월	그만 둔 시기 19__년 __월	어디에서 일하였는지 (일한 곳의 사업내용)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하였던 일의 종류)	종사상의 지위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
1					
2					
3					
4					
5					
6					
7					
8					
9					
10					

아. 정규 교육, 사회 보험 및 기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_____님의 정규교육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1 _____님께서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 (1) 그렇다 → 아 2로 가십시오.
- (2) 그렇지 않다

(아 1-1) 그렇다면, _____님께서 최종 정규학교를 졸업(수료)하거나 그만 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 무학
- 졸업연도 : 19 _____년 졸업한 달 : (1) _____월
(2) 달은 잘 모르겠다

아2 _____님께서 전문대학(학교) 이상을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아 3으로 가십시오.

(아 2-1) 그러면, 다니신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이름과 학과, 다니신 기간을 아래의 보기와 같이 기록하여 주십시오.(현재 재학 중이면 '언제까지'에 현재라고 적어주십시오)

<보기>

번호	학교의 이름	학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1	한국 대학교	국문학과	1989년 3월	1995년 2월
2	우리 대학교	사회학과	1995년 9월	1997년 8월
3	우리 대학원	사회학과	1997년 9월	현재
4				

번호	학교의 이름	학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1			년 월	년 월
2			년 월	년 월
3			년 월	년 월
4			년 월	년 월
5			년 월	년 월
6			년 월	년 월

(아 2-2) _____님께서서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 휴학하신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아 3.으로 가십시오.

(아 2-3) 휴학하신 기간과 그 이유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휴학한 이유는 아래의 보기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응답합니다)

휴학한 이유		
① 군복무	② 취업	③ 어학연수/해외여행
④ 여타 개인사정으로	⑤ 기타	

(현재 휴학 중이면 '언제까지'에 "현재"라고 적어주십시오)

번호	휴학한 이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1		년 월	년 월
2		년 월	년 월
3		년 월	년 월
4		년 월	년 월
5		년 월	년 월

아 3 _____님께서서는 군대에 복무하신 적이 있거나 또는 현재 복무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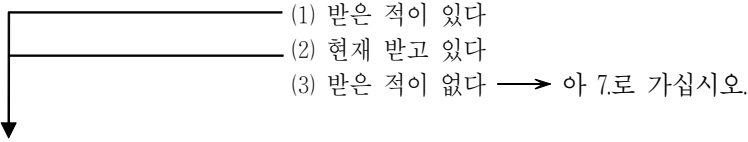
- (1) 복무한 적이 있다
 ■ 복무기간 : 19____년 ____월부터 19____년 ____월까지
- (2) 현재 복무하고 있다
 ■ 복무기간 : 19____년 ____월부터 현재까지
- (3) 없다

다음은 사회보험 급여수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4 _____님께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아5 _____님께서서는 지난 조사 이후 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등 사회보험을 한 번이라도 수급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계십니까? 단, 직업훈련 수당은 제외됩니다.



아6 받은 급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급여를 받은 기간, 받은 방식과 1회 수금액, 총 수금액을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 6-1)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사회보험의 종류를 아래의 예에서 찾아 번호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기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사망일시금 (5) 반환일시금	(6) 사학연금 (7) 공무원연금 (8) 군인연금 (9) 반환일시금	(10) 휴업급여 (11) 장애연금 (12) 유족급여	(13) 보훈연금 (14) 실업급여	(15) 기타

(아 6-2)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는지, 수급 받은 기간을 쓰십시오
(만일 현재에도 계속 받고 있다면 끝난 시기에 “(2) 계속 수급중” 이라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끝이 났다면 오늘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수급 방식이 1년에 1회인 경우라도 앞으로 계속 수급 받으실 예정이면 “(2) 계속 수급중” 에 해당됩니다)

(아 6-3)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수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한가지 사회 보험에 대해서 2가지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다면, 수급받고 있는 사회 보험을 중복하여 2번 적어주시고, 각각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방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수급방식

(1) 일시불 : 한꺼번에 수급받는 방식
(2) 1년 1회 : 1년에 1회 수급하는 방식
(3) 분기 1회 : 3개월에 1회 수급받는 방식
(4) 월 1회 : 매월 수급받는 방식
(5) 2주 1회 : 보름마다 1회, 1개월에 2회 수급받는 방식

(아 6-4) 사회보험을 지급받을 때 1회에 지급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 6-1. 급여의 종류	아 6-2. 받은 기간		아 6-3 수급 방식	아 6-4. 1회 수급액
	시작한 시기	끝난 시기		
1	____년 ____월 ____일	(1) 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2	____년 ____월 ____일	(1) 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3	____년 ____월 ____일	(1) 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4	____년 ____월 ____일	(1) ____년 ____월 ____일 (2) 계속 수급중		원

마지막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____님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7 아버님께서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결혼한 주부의 경우는 친정아버님을 뜻합니다)

학 교	졸업 여부
(1) 무 학	(1) 졸업
(2) 초등학교(보통학교)	(2) 중퇴
(3) 중학교(공민학교)	(3) 휴학
(4) 고등학교	(4) 재학 중
(5) 전문대학(사범학교)	(5) 수료
(6) 대학/대학교	(6) 잘 모르겠다
(7) 대학원 이상	
(8) 잘 모르겠다	

아8 _____님께서 만 14세일 무렵 아버님(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래의 보기와 같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보기>

	<예1>	<예2>	<예3>
(1) 일하신 곳의 사업내용	벼농사	아파트 건축	일용강화유 소매
(2) 하신 일의 종류	벼농사	자재조달 및 보급	장학판매 및 돈관리
(3) 직명 또는 직위	자영농	일용강급직	대표 또는 주인
(4) 종사상의 지위 1. 정규직 임금 근로자 2.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3. 종업원 있는 고용주 4.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5. 가족종사자	4	2	5

(1) 해당되시는 분 : ① 아버님 ② 어머님

(2) 일하신 곳의 사업내용 : _____

(3) 하신 일의 종류 : _____

(4) 직명 또는 직위 : _____

(5) 종사상의 지위

- ① 정규직 임금 근로자
- ②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 ③ 종업원 있는 고용주
- ④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 ⑤ 가족종사자

※ 다음은 _____님에 대한 몇 가지의 개인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9 _____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대전
- (5) 인천
- (6) 광주
- (7) 울산
- (8) 경기도
- (9) 강원도
- (10) 충청북도
- (11) 충청남도
- (12) 전라북도
- (13) 전라남도
- (14) 경상북도
- (15) 경상남도
- (16) 제주도
- (17) 북한
- (18) 외국

아10 그러면, _____님께서 만 14세일 무렵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외국에서 성장하신 경우는 나라 이름만 기입하십시오)

- _____특별시·광역시·도 _____시·군
- 외국의 경우 : _____

아11 _____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 | |
|--------------|---------------|
| (1) 없음 | (6) 원불교 |
| (2) 불교 | (7) 천도교 |
| (3) 개신교(기독교) | (8) 대종교 |
| (4) 천주교 | (9) 대순진리회 |
| (5) 유교 | (10) 기타 _____ |

아12 _____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실혼의 경우도 결혼한 것에 포함됩니다)

- (1) 미혼(한번도 결혼한 적 없다) → 아 16.으로 가십시오
- (2) 기혼 유배우(결혼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 (3) 별거
- (4) 이혼
- (5) 사별

아13 최초로 결혼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날짜를 잘 모르시면 결혼하신 만나이를 응답해 주십시오)

■ 최초 결혼 시기 : _____년 _____월 (만 _____세)

(아 13-1) 최초로 결혼한 분과 지금도 같이 살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 아 16.으로 가십시오.
- (2) 그렇지 않다

(아 13-2) 그렇지 않다면 최초로 결혼한 분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별거중이다
- (2)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다
- (3) 이혼하였다
 - 별거/사별/이혼한 시기 : _____년 _____월
 - 별거중인 경우는 아 16.으로 가십시오.

(아 13-3) 다른 분과 재혼하셨습니까? 또 재혼하였으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재혼하지 않았다 → 아 16.으로 가십시오
- (2) 재혼하였다
 - 재혼한 시기 : _____년 _____월

아14 최초의 결혼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전체 결혼 횟수는 몇 회입니까?

■ 총 _____회 결혼

아15 가장 최근에 결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가장 최근에 결혼한 시기 : _____년 _____월

(아15-1) 최근에 결혼한 분과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십니까?

- (1) 그렇다 → 아 16.으로 가십시오
- (2) 그렇지 않다

(아15-2) 그렇지 않다면, 최근의 결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별거중이다
- (2)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다
- (3) 이혼하였다

■ 별거/사별/이혼한 시기 : _____년 _____월

※ 다음은 자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16 _____님의 첫 번째 자녀는 언제 출산하셨습니다까?

- (1) 출산한 경험이 없다 → 아 17.로 가십시오.
- (2) 첫 아이의 출산시기 : _____년 _____월

(아16-1) _____님께서 낳으신 자녀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아들 _____명, 딸 _____명

아17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각각의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회적 친분관계는 친구 관계와 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1)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2) 여가 생활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4)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친인척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친분 관계	①	②	③	④	⑤

아18 그렇다면, _____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2) 만족스럽다
- (3) 보통이다
- (4) 불만족스럽다
- (5) 매우 불만족스럽다

아19 _____님 님의 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아20 _____님 님의 가장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류층
- (2) 중상류층
- (3) 중류층
- (4) 중하류층
- (5) 하류층

아21 경제적 여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문	항	매우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향상	매우 향상
아 21-1.	IMF 원조가 시작된지 2년이 지난 <u>지금, 실질적으로</u> <u>귀택의 경제적인 여건</u> 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아 21-2.	<u>앞으로 1~2년 후에</u> <u>귀택의 경제 여건</u> 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아 21-3.	IMF 원조가 시작된 2년 전과 비교하여 <u>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 여건</u> 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아 21-4.	<u>앞으로 1~2년 후에</u> <u>우리 나라 경제 여건</u> 이 어떻게 변화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아22 8촌 이내의 친인척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평소에 얼마나 가깝게 지내십니까?

직업	친척의 유무	아주 가깝게 지낸다	가깝게 지내는 정도다	별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
대학교수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의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중앙일간지/방송의 기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장성급 이상의 군인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국회의원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판사/검사/변호사	(1) 없다 (2) 있다	①	②	③

아23 오늘 날씨는 몇 월 몇 일입니까?

2000년 ____ 월 ____ 일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직장 전화번호	
응답 시간	시간 분 동안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면접 <input type="checkbox"/> 유치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전화 <input type="checkbox"/> 유치+전화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 <input type="checkbox"/> 면접+유치+전화
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 <input type="checkbox"/> 본인+대리	대리 이유	
면접원 성명	(인)	Supervisor 검증	(인)